

제 출 문

농림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관광농촌마을조성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5 년 12 월 25 일

주관연구기관명 : 경성전문대학관광농업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류선무

(경성전문대학 관광농업연구소장)

협 동 연 구 자 : 이규목(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교수)

신우균(공주대학교 조경학과교수)

이환철(한국관광농원협회장)

정태수(밀성관광농원대표)

요 약 서

I. 제 목(최종 연구개발목표)

1. 제목 : 관광농촌마을조성에 관한 연구
2. 목표 : 가. 관광농촌마을의 개념 정립
나. 관광농촌마을 모델 개발
다. 관광농업상품의 개발
라. 제 3 섹터개발 방식 도입

II.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1. 농촌의 고령화, 이농화 현상으로 농촌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필요성을 분석하여 관광농촌마을의 개념을 정립 하는데 있다.
2. 생산기반을 활용한 농산물을 유인요소로 관광사업을 접목한 관광농촌마을의 개발방법을 연구하는데 있다.
3. UR 및 농촌활성화 대책으로 개발이익이 마을주민 전체의 생업과 연계된 지역개발사업으로써 관광농촌마을 모델개발 및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Ⅲ.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및 범위

1.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가. 관광농촌마을의 개념

(1) 관광농촌마을의 구상

(가) 농촌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경제고도성장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의 도시화와 도농통합도시에서 농촌기능과 존립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국민여가 성향의 변화

관광은 의·식·주 다음 제 4의 생활필수품으로 국민여가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욕구도 다양해져서 여러가지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농민의식의 변화

농민들의 소득욕구가 증가하여 농·축·수·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술과 토지이용의 제고 방안에 대한 관광농업도입 및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라) 도농교류 촉진에 대한기대

도시 생활자의 대부분이 농촌출신이고 이들은 농촌지역에서 농작물의 재배, 수확, 체험등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농촌지역활성화에 끌어들이어서 그들이 소비하는 자금이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 농민에 대한 이해촉진 기회가 되도록 한다.

(마) 자연학습의 장소

교육부에서 주 5 일제수업 정책의 일환으로 가방없는날 수업 실시에 따라서 초·중·고생의 자연학습장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관광농촌마을의 성격

관광농촌마을의 성격은 농·축·수·임산물의 안정생산과 소득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과 농촌환경을 포함한 개발로써 농촌의 전통문화센터로서 도농교류의 장소이며 교육의 장소이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알맞게 계획된 신농촌지역으로써 관광농업 도입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삶의 터전이다.

(3) 관광농촌마을의 발전방향

농촌의 소득증대만을 생각하고 내방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질서한 개발이나 농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또 농촌 사회의 폐쇄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민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나. 관광농촌마을의 개발전략

(1) 사업계획의 수립

(가) 농촌에서의 관광레크리에이션 개발동향

국민의 여가욕구 증대에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도 많은 외식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휴식만이 아니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선

호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레크리에이션시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나) 사업의 추진체계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첫째, 농산어촌의 지역 특성과악 둘째, 조직 구조상의 전략 셋째, 지방 행정부와의 조정협의 넷째,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다) 지역이미지의 확립

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관광농촌 지역의 이미지확립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 유통이 동일지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단체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마을전체의 활성화 대책이고 나아가서 농산어촌의 안정을 촉진하는 사업들이다.

(라) 추진체의 결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명회, 공청회등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올수 있는 비전의 제시이다.

이때 작목반이나 영농회 조직을 활용하면 이해가 빠르다. 따라서 그 구성주체는 주민주도형·관주도형·농업법인형·제3섹타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시설의 도입

(가) 경영 계획

시설의 도입은 지역의 환경과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시설이용자의 욕

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설경영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경합관계지역의 시설상황과 앞으로의 경영규모, 이용상황, 부지면적, 교통접근 관계를 검토하여 어떠한 형태의 경영방식을 선택하는것이 좋을 까를 연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경영방침은 경영이념의 구축, 주요유치권의 설정, 주력상품의 개발과 구성, 공간 설계의 이념, 인재확보와 육성, 지역의 생산체제와 협조 방침, 판매촉진, 광고선전, 신상품 개발, 외부자본과의 제휴방침,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 도입시설의 종류

관광농촌마을 지역의 도입시설들은 일반관광지와는 다르게 자연을 응용해서 어울리는 시설도입이 필요하다. 즉 체험시설, 관광농업시설, 레크리에이션시설, 숙박시설, 기반시설, 자연건강, 식품시설등이 필요하다.

(3) 지역이미지의 조성

관광농촌마을의 이미지조성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산업구조를 일부 변경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고유미를 살리면서 환상적인 관광농업개발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독창성을 살릴 것. 둘째, 소박한 농촌 인심을 살릴 것. 셋째,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이다.

다. 관광농촌마을의 마케팅 전략

(1) 관광농업상품의 마케팅

관광농업은 생산기술보다 농업경영에 비중이 크고 다시 관광과 접목되어 3차산업화한 것이다. 따라서 관광농업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

략으로써는 마케팅믹스 즉, 신상품개발 전략, 가격정책전략, 유통경로 전략, 홍보서비스전략이 필요하다.

(2) 유형·무형의 상품 종류

관광농업의 상품에는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이 있다. 이들의 활동별 개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광농원에서의 활동 : 각종과일따기, 감자캐기, 버섯따기, 식물공장 견학, 꽃씨따기, 가축사육, 젓짜기, 민속놀이, 인형극 등.
- 체험농원에서의 활동 : 동식물채집, 벼베기, 나무가꾸기, 목공예실습, 야생조류관찰, 식물및 곤충관찰, 천체관찰 등.
- 농산가공활동 : 김치 담그기, 떡만들기, 두부만들기, 과실주만들기, 치즈만들기 등.
- 도시교류활동 : 농업생산행사참여, 유적지 시찰, 농업관련기관 견학, 도농학생교류, 민속놀이 배우기, 예절배우기 등.
- 농·축·수·임산물 판매활동 : 무공해 농·축·수·임산물 판매, 향토음식 판매, 각종 꽃판매, 농약·씨앗·비료 판매

(3) 프로그램의 작성 방법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진행일정표등을 계획할 세워서 실천한다.

(4) 가격정책 전략

관광농업의 수입원은 음식 판매비, 숙박비, 기념품 판매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관광객수를 증가시키든가 판

요약서

매 단가를 높이든가, 생산성을 높여서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축·수·임산물은 유인요소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타 숙박, 음식등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5) 유통경로 전략

관광농업상품은 제품이 이동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상품 자체가 생산과 소비가 현장에서 이루어짐으로 농·축·수·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첨단 방법이다.

(6) 홍보서비스 전략

과거의 농업경영에서는 홍보나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관광농업의 경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홍보방법에 따른 유치 계획,接客서비스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라. 지역진흥과 이벤트 전략

(1) 지역진흥과 관광

(가) 관광활성화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관광지라고 하는곳은 즐겁고 쾌적한 관광활동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내방하여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매력성, 유인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적절한 수용체제 셋째, 환경의 쾌적성 유지가 필요하다.

(나) 관광활성화 방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수요, 욕구변화에 따라서 첫째, 스포츠

기능, 체험참가기능, 보양기능, 휴양기능이 도입되어야하고 둘째, 종업원 및 지역주민 전체의接客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며 셋째, 관광산업 육성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넷째, 관광진흥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단기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 장기적활성화 대책 : 관광정책의 확립(기본계획작성·개발조례작성), 환경 및 관광자원보호·관리(보호조례·관리체계), 관광지 기반시설의 정비와 매력제고(편의시설 확충), 관광지 경영조직의 확립(관광발전조직구성·사업 육성, 전문가 육성)
- 단기적활성화 대책 : 교통시설문제(시설확충·도로정비),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책(관광지구조개편·기능 차별화), 매력적인 관광상품개발(지역자원의 활용·심벌시설), 관광지의 코스화(관광지점·루트형성), 특별행사개최(민속행사·특별행사), 서비스향상(接客서비스·의식계몽), 향토요리·특산품개발(요리연구·특산품개발), 정비운영방식의 선택(사업계획의 선정·주체선정·재원조달 연구), 이미지 제고와 홍보강화(안내소운영·심벌선정), 비수기 대책(요금체제개선·객층선택), 사업추진전략전개(장기발전계획·비전제시)

(2) 이벤트행사의 개최

(가) 개최의 목적

이벤트행사의 개최 목적은 지역진흥, 지역교류 활성화, 지역주민에

요약서

대한 계몽 등 여러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관광농촌에서의 이벤트행사

농산어촌지역에서 관광농업 개발은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도해 보지만 어려운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하여 농·축·수·임산물의 생산을 작부체제를 세우고 여러 종류의 작물이나 가축 그리고 품종을 배합해서 년중생산체제를 갖추거나 비수기대책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벤트 행사를 년중 또는 월별로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내방객의 안정성유지가 가능하므로 경영의 성공과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마. 농촌지도자 육성

(1) 농촌사회는 몰락할것인가

농업은 모든산업의 기반으로써 농업도 하나의 직업으로 택할 수있는 농어민 후계자의 양성이 필요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똑심있게 헤쳐나야할 새로운 농촌지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농촌이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농촌은 선망의 생활터전이 될것이다.

(2) 새로운 농촌지도자상

인간은 이해관계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관광농촌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지식은 차지하더라도 이러한 인간사를 어떻게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단결해서 지역주민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일이다. 그래서 농촌 지도자는 경

영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사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강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3) 새로운 농촌지도자의 역할과 양성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멸사봉공의 희생을 담당할 사람이 지금 농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농촌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농촌스스로는 희생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선의의 외부자본과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도자의 양성은 농과 대학에 R. O. T. C 장학제도같은 혜택을 부여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고급엘리트농군을 양성하던가 기업체 조기 명예퇴직자 중에서 농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보수교육을 시켜서 경영감각있는 농업경영자를 양성해야 한다.

바. 제 3 섹터란 무엇인가

(1) 도입필요성

농민들은 첫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척의욕이 적고 둘째, 의욕이 있어도 지역 특성에 알맞는 관광농업 개발지식이 부족하며 셋째, 풍부한 개발지식이 있어도 자본력이 약하다. 오직 전·답·임야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농민스스로 타개하여야 하며 능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즈음 외국의 국가원수나 장관들이 한국의 경제 지원이나 공장유치를 위해서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듯이 지방화시대의 재정확립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도 그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정의

사업추진체제가 국가정부(지방정부)가 담당할때는 제 1 섹타라 하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민간 부분(기업, 개인)이 담당할때는 제 2 섹타. 그리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민간과 국가 정부가 결합해서 시행할때는 제 3 섹타라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사업추진할 때를 제 4 섹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기업이 협동 추진할 때는 제 5 섹타. 지역주민과 일반기업이 협동추진할때는 제 6 섹타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동참여하는 삼자 협동개발방식(Joint sector)도 있다.

(3) 한국농촌활성화를 위한 3자 협동개발 방식의 선택

문민정부에서는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42 조원의 특별회계와 15 조원의 농특세를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은 개발지식부족, 자본력부족(담보물건 부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때 국가의 노력만이 아니고 외부힘(자본, 지식)이 촉진역활을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국가 발전(특히 농촌)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조세수입은 한계성이 있고 관광농업분야를 선도해 나아가갈 담당공무원들도 그 개념이나 실천적방법을 잘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의의 외부자본이나 개발지식은 더욱 필요하다.

사. 해외관광농업의 동향

관광농업의 원천인 유럽지역에서는 60년대부터 그린 투어리즘정책이라고 시작하여 70년대에 체계화시켜서 발전일로에 있다.

그 목적은 농촌소득의 향상, 지역개발(활성화), 농촌환경의 보전(정비), 국민여가 공간의 확보, 도농교류촉진, 이해등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는 국민복지 증진정책으로 여가 욕구충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 강하고 일본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만은 지역개발성향이 강하고 한국은 소득향상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시설 도입을 많이 하고 있다.

(1) 독일의 관광농업

(가) 독일 관광농업의 특징

- ① 환경애호사상과 관광
- ② 전원이나 농가에서의 휴가
- ③ 그린투어리즘의 탄생
- ④ 다양한 숙박시설과 설비의 충실

(나) 농지 정비와 환경보전 정책

- ① 자연보호에 따른 경관 보전법
- ② 농촌경관을 보호하는 농지정비법

(다) 「농촌에서 휴가를」 사업의 전개

- ① 농가민박의 역사
- ② 임대객실에서 시골호텔로의 변화
- ③ 지역별 농촌 민박의 분포
- ④ 농촌민박의 서비스

(라) 「농가에서 휴가를」의 사업 추진체제

- ① 독일농업 협회

- ② 독일농업협회의 엄격한 인정조건
- ③ 독일농업협회의 안내서
- ④ 식량농업성 정보서비스의 활동

(마) 정보지의 발행과 정보의 제공

(2) 프랑스의 관광농업

(가) 프랑스 관광농업의 특징

- ① 그린 투어리즘의 배경
- ② 그린 투어리즘의 역사
- ③ 농촌의 숙박시설
- ④ 민박경영의 지원체제
- ⑤ 가맹민박의 품질관리와 등급
- ⑥ 앞으로의 그린투어리즘의 과제

(3) 화란의 관광농업

(가) 농촌지역에서의 변화

(나) 농촌관광의 역할

(다) 농촌관광에 대한 정부 정책

(라) 화란의 캠핑법

(마) 농촌지역 구조계획

(바) 야외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정부정책

(4) 일본의 관광농업

(가) 농촌관광의 동향

(나) 북해도에서의 대응 전략

- ① 기존경영시설의 운영상황
- ② 신특정 옥크샤 농장
- ③ 암추정 대초원의작은집
- ④ 사리정 감자집
- ⑤ 대광시 목장숙소
- ⑥ 구지안정 초원공화국
- ⑦ 민박등록제도
- ⑧ 족기정 장기체제형 농촌휴양구상

(다) 강산현에서의 교류

- ① 전개 방향
- ② 미감촌의 경우
- ③ 방정마을의 경우

(5) 대만의 관광농업

(가) 대만의 관광농업 지원시책

- ① 휴한농업(레저농업)
- ② 휴한농업의 육성계획
- ③ 휴한농업지구 지정요건
- ④ 휴한농업지원
- ⑤ 휴한농업지구의 운영

(나) 대만의 관광농원 개발사례

- ① 탁란 관광농원
- ② 대중관광농장
- ③ 대촌향 포도관광과수원
- ④ 가의 관광농장
- ⑤ 옥금향 관광농원
- ⑥ 대계 관광농원
- ⑦ 베이보우 관광농원

2. 모델 개발의 공간계획

가. 서론

(1) 과업의 목적과 의의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대한 제이론 및 개발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기반으로 중산간지역에 적용시켜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① 목표 년도(2001년)
- ② 계획 년도(1995년)

(나) 공간적 범위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 2리(약 800만 m²)

(다) 내용적 범위

현황분석 및 공간의 계획, 투자 및 운영 계획의 제시

(3) 계획의 수행체계 및 과정

과업시행 → 환경조건의 분석 → 개발기본 구상 → 개발기본 계획 사업 계획 → 결론

나. 환경조건

(1) 입지및 접근성

(가) 지리적 위치

계획대상지는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일대로써 이 지역은 양자산(해발 709.5 m)과 앵자봉(해발 666.8 m)이 연이어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지역 중앙의 용담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경작지가 지형의 경사에 따라 계단상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임야로써 전형적인 산림지역이다.

(나) 접근성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52.3 km(자동차로 1 시간)지점에 위치하고 주변도시로는 서쪽에 성남, 용인, 광주, 북쪽으로는 하남, 양평, 남쪽으로는 여주와 이천이 위치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에서 약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 자연 환경 분석

(가) 지형및 지세

마을주위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 쌓여있고 동향만이 터진 전형적인 산촌이다.

(나) 경사및 방향

계곡을 중심으로 마을 주변과 일부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한편이다. 대부분의 방향은 남향과 서향.북향의 산비탈이고 동향만이 평탄지이다. 따라서 마을 위쪽 급경사지에는 유희농지가 많고 산에 의해서 일조량이 적다.

(라) 수문

마을 주위의 산으로부터 계곡을 따라 흐르는 주어진은 년중 마르지 않고 수질이 양호하여 지역주민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많은 도시인이 찾아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 색생

산등성이나 경사면에는 신갈나무, 벚나무, 리기라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 동쪽 경사면에는 굴참나무가 많이 분포하며 계곡주변에서 발견되는 수종은 산속보다 다양한 수종으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록수보다 활엽수의 분포가 많아서 봄·가을의 순록과 낙엽이 아름다운 자연수목에서 수확되는 산나물, 도토리, 밤, 자연 버섯 등의 임산물도 다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채취하러 찾아오고 있다.

(바) 경관

계곡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도로가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 갈때는 마을 입구 부분만 보이다가 서서히 펼쳐진다.

마을은 아래마을과 윗마을로 분리되며 곳곳에는 지역 특산물인 버섯 재배 시설이 무계획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유희경작지가 많아서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

(3) 인문사회 환경

(가) 토지이용 현황

① 지목현황

전체토지면적	8082357m ² (816ha)
임야율	7,101,978m ² (717ha. 88%)
전	360,217m ² (36ha 4%)

답 276,869m²(27ha 3%)

② 토지소유 현황

현지인소유 2,381,171m²(29%)

외지인소유 3,665,201m²(45%)

군유지 56,131m²(1%)

재무부 284,771m²(4%)

산림청 1,695,080m²(21%)

③ 토지활용 현황

총경지면적 : 639,677m²(전·답·목장용지)

유흡지 : 459,534m²(72%) 논 288,470m²(63%)

밭 168,473m²(37%)

활용지 : 180,143m²(28%) 논 108,396m²

밭 71,747m²

※ 외지인소유는 유흡지가 많음.

(나) 인구및 산업구조

① 인구

세대수(1995.5 현재주민등록상) 59 가구 남 106명, 여 99명 ※실가구수 52 세대

② 소득수준

년평균 농업소득 425 만원

년평균 농외소득 648 만원

계 1073 만원

(다) 도로및 교통환경

대도시 세력권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광역 생활권에 속하고 지역 생활권으로는 행정구역상 여주지역 정주생활권이지만 실생활권은 양평생활권 및 이천생활권이다. 대상지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에서 13km 지점으로 곤지암에서 3번국도와 연결되고 양평에서 광주로가는 329번지방도로로 이어진다.

(라) 시설물현황

1990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면서 화장실, 취사장, 매표소, 주차장,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었고 1992년 밀성관광농원이 조성되었다.

(마) 전설

- ① 신랑바위와 각시바위
- ② 마을이름에 얽힌 전설

(바) 종합분석

버섯을 특산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유희농지 활용대책을 세우고 관광농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4) 관광환경

(가) 국민의 여가 성향및 국민 관광

① 국민의 여가

가족단위 관광이 증가, 1일생활권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회복욕구 증가

② 국민관광

참여형, 체험형, 관광증가 → 관광지 확대(비지정관광지)
→ 농촌 관광증대

(나) 배후지역의 관광자원

여주군 : 신록사, 세종대왕릉, 명성왕후생가, 서희장군묘,
영월루

이천군 : 설봉산, 이천온천, 이천도예품

용인군 : 용인자연농원,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양평군 : 양평프라자, 용문사, 소금강 계곡

광주군 : 천지암, 미리내성지, 남한산성 국립공원

(다) 관광객추이

여주군관광객수(93년) : 824,907명(년평균증가율 10%)

(5) 지역거주민 의견조사

(가) 조사분석 목적및 조사 방법

- ① 목적 : 관광농촌마을의 도입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② 방법 :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소집해 25가구가 참석 직접 면접 방법으로 조사 실시

(나) 거주민의 관광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의견분석

① 관광농촌마을 개발에 대한 의견

찬성 : 72%

반대 : 4%

그저그렇다 : 24%

② 개발 형태에 대한 의견

레저도입형 : 64%

농촌체험형 : 12%

- 민속마을형 : 12%
- 자연학습형 : 4%
- 별장형 : 4%
- 무응답 : 4%
- ③ 농촌체험형으로 개발될 때 재배작물에 대한 의견
 - 임산부산물 : 68%
 - 채소류 : 12%
 - 곡류 : 8%
- ④ 개발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 3자협동개발 : 40%
 - 지역민+외부자본 : 24%
 - 지역민 : 12%
 - 지역민+자치단체 : 8%
 - 자치단체 : 8%
 - 기타 : 8%
- ⑤ 주민의 참여 의사
 - 적극참여 : 32%
 - 능력에따라 참여 : 48%
 - 참여의사없음 : 16%
 - 무응답 : 4%
- ⑥ 결론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레저도입형태로 개발되기를 희망하나 자본력의 부족으로 차선책인 농촌체험형으로 개발하되 농촌환경에 알맞는 약간의 레크리에이션시설도입이 필요하다. 특산품 개

발로는 버섯, 산채류가 적당하고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외부자본에 의한 자금동원을 실감하고 있으며 개발참여 의사는 자기능력에 따라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6)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계획

① 제 3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소규모 무공해산업의 제한적, 계획적입지를 허용
-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 근교 농업으로 기술집약적 환경농업 육성
- 관광 위락 시설확충

② 여주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 자연조건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중산간지역은 노인 휴양소, 휴양 단지, 스키, 눈썰매장, 체험농장(관광농원)을 유치하고 구능지형의 농업 이외의 지역중 보전임지등 농촌산업지역, 준도시 지역에는 농업과관련된 주말 농장, 민박촌등을 유치
- 산북 관광휴양단지로 개발 계획

(나) 관련법규

①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해당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용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농어촌정비법상 휴양단지 개발 가능지역임

- 환경영향평가법상 대단위개발일경우 해당됨(3 만평이상)
- 환경보전법상 팔당호 상수원수질 보전지역임(특별관리지역)
- 건축법상 상수원보호지역은 200 평이하만 건축 가능
-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종인 농어촌 휴양시설업으로 개발가능
- 산림개발 법상 보존임지임

(다) 기본구상

(1) 개발 기본 방향 설정

- 도시민의 참신하고 새로운 농촌체험형 관광 욕구를 수용
- 농촌환경보전을 원칙으로한 개성을 가진 관광농촌마을조성
- 지역민 전체의 생업과 연관된 지역개발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 되도록 개발
-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모

(2) 관광이용객 수용력 추정

(가) 이용자 수용추정 방법

현지주민(이장, 관광농원 경영자)의 의견과 여주군 관광객 증가율을 참고로 하였으며 계절별 분포사항은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나) 내방자추정 객수

- ① 연간 이용객수 : 150,000 명
- ② 연간 숙박객수 : 37,500 명
- ③ 최대일이용객수 : 2,500 명

④ 최대시이용객수 : 1,600 명

(3) 도입활동및 시설의 구상

(가) 기본 방향

농민의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마을 개발 계획의 하나인 관광농촌마을 계획으로써 일차적으로 농민의 거주공간이자 생산공간인 마을에 농업이외의 산업활동을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향상과 동시에 날로 다양해져가는 도시민의 여가 욕구를 수용하고자 한다.

(나)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

①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도로와 하수처리장이 주요시설로써 도로는 기존의 마을 도로와 임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발전단계에서 필요시 확장하며 기타 산책로나 등산로, 자연학습로는 기존임도를 정비이용한다.

하수처리장은 산북면 정주권 개발 계획에의해 조기 설치한다.

② 공공편의시설

공공편의시설은 주차장과 공중화장실등이며 진입도로변과 각 시설지 주변에 분산배치한다.

③ 영농시설

지역특산물인 버섯을 재배하는 단지를 기존 마을의 자기 소유 토지에 배치하고 버섯생산을 집중육성하여 버섯을 통해 마을전체를 이미지 메이킹 한다.

④ 숙박시설

단체 숙박시설은 기존 관광농원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되 단체숙박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다목적 운동장을 배치하여 동적활동을 수용한다. 또한 가족단위 숙박객은 지역주민의 빈방을 개보수하여 민박시설로 활용한다.

⑤ 레크리에이션 시설

가족동반 이용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눈썰매장, 소동물원, 미니 골프장, 트림파크등 유희시설을 배치한다.

⑥ 전시판매 교육시설

농산물을 저장하고 직판할 수 있는 직판장을 동선 계획과 병행하여 계획하고 이용객의 구매를 유도한다.

버섯 교육및 실험, 연구, 전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버섯 박물관을 대상지역의 중심부에 배치하며, 자연학습로는 기존의 임도에 병행 설치한다.

(다) 각 시설별 기본구상

① 기반시설

- 도로의 확장시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200m 마다 조그만 공간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히한다.
- 보도는 폭원 1.2m 정도로서 각 시설에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② 공공편의시설

- 주차장은 마을의 입구부분과 유희시설부분, 피크닉장

입구 3곳에 분산 배치한다.

-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주차장에 인접 배치하고 피크닉장 주변에도 배치한다.
- 광장은 진입광장, 중심광장, 자유광장등 용도에 따라 3군데 분산 배치하며 안내소 및 안내판은 진입광장과 요소요소에 배치한다.
- 휴게소는 관찰보도가 끝나는 지점이나 전망이 좋은곳에 설치하며 마실물을 준비하도록 한다.

③ 영농시설

- 버섯재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전시 판매의 범위내에서 농가 주위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버섯 집단재배지역은 농가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져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야하며 그 곳에서 버섯 따기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야한다.
- 주말농장은 대체적으로 주민의 거주지에 근접한 유희농지에 대규모 주말 농장을 분산 배치 한다.
- 양어장은 현재 조성중인 것을 그대로 활용하며 인접한 논이나 인공방사지를 부대설치하여 미꾸라지나 비단잉어, 금붕어 잡기를 병행한다.

- ④ • 단체 숙박시설은 진입 부분의 기존숙박시설(관광농원) 지역에 조성하므로써 단체이용객들이 기존마을을 거쳐서 지나지 않도록 유도 하며 옥내집회소, 간이 운동장, 단체객을 위한 주말 농장, 양어장 등을 함께 조성한다.
- 민박은 농촌이 가진 고유한 전원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으로 개보수한다.

⑤ 레크리에이션 시설

- 피크닉 시설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곡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설치한다. 주변환경은 야생화, 산책과 자연학습, 가벼운 등산을 위한 도로를 연결시킨다.
- 눈썰매장은 겨울철에 대비하여 도입하는 시설로써 사면 길이 50m 정도의 작은 코스로 놀이동산으로 이용한다.
- 드림파크는 유희시설지의 외곽경계부에 배치하며 이용객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덤브링, 조합놀이대, 모래밭 시설을 도입한다.
- 소동물원은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토끼나 염소 등을 사육한다.

⑥ 전시판매 교육 시설

- 버섯박물관은 중심광장에 안내센터, 버섯박물관, 음식점등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을 찾는 이용객들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 음식점은 식사(향토요리)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의 판매 부대시설과 인접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보행도로에서 관람, 구매, 식사 등의 제반 활동이 연결 되도록 편의성을 제고 한다.
- 자연관찰로는 기존임도를 활용하여 자생식물로써 약용, 식용식물을 중심으로 관상가치가 높은것이거나 기타 농촌의 자연환경을 응용한 것을 관찰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4) 도입시설의 종합

구 분	시 설 명	건축면적	부지면적	비 고
영농시설	버섯재배장		100,000m ²	각 가구별로 분리 유치
	저온저장고 버섯가공시설	300m ²	1,000m ²	공가등 기존 가옥의 활용
	주말 농장		30,000m ²	단위 대여경지규모는 평균 50m ²
	양 어 장	300m ²	2,000m ²	양어관리시설 포함(기존 관 광농원내 포함되어 있음)
전시·판매 시설	버섯박물관	600m ²	3,000m ²	중심광장이 수용
	음 식 점	300m ²	1,500m ²	(건축면적×5)=대지면적
	기념품판매소	300m ²	1,500m ²	
숙박시설	단체숙박 개인민박	1,000m ²	5,000m ²	4 동 : 단체숙박, 1 동 : 개인 민박
	옥내집회소	1,000m ²	5,000m ²	단체활동 수용및 다용도 이용
	민 박			기존 마을에서 수용
레크리에이 션 시설	계곡경관보존 및 피크닉장		40,000m ²	길이 2km 이상 계곡따라 lin- ear 하게 배치, 화장실 포함
	눈썰매장		1,500m ²	폭30m×길이 50m=1,500m ²
	가족골프 놀이시설		900m ²	9 홀 36par 의 소규모
	트림파크		4km	보존녹지속에 소규모
	어린이놀이시설		900m ²	덤블링 등 트림파크와 함께 구성
	소동물원		100m ²	토끼, 염소 등 소동물 사육
	물놀이공간			물놀이공간은 계곡가에 조성
	미꾸라지 잡기원		100m ²	양어장과 근접하게 조성

요약서

	자연관찰로		1-2km	기존임도에 병행설치
기본시설 및 공공편익 시설	주차장(공동이용)		11,000m ²	승용차10,000m ² +버스1,000m ²
	주차장(분산배치)			기존 마을, 숙박지 등에서 수용
	도 로			폭원 5.5m, 200m 간격으로 bay
	보 도			폭원 1.2m, 자연관찰로/등산로
	광 장		6,000m ²	진입/자유/중심광장으로 위치, 기능에 따라 3분함
	공중화장실	100m ²	500m ²	주차장, 유희시설군 등에 배치, 피크닉장 주변에 간이 화장실
면 적 계		3,900m ²	210,000m ²	

라. 기본 계획

(1) 토지이용 계획

(가) 기본방향

- 기존의 자연 환경과 농촌 환경 및 풍치를 보존하며 환경 질서에 따른 토지 이용
- 부지의 잠재력과 공간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 각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기능성 있는 토지이용
- 장차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토지이용

(2) 동선 계획

(가) 기본방향

- 마을내에 분포하고 있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
주진입은 329번 지방도로에서 진입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0m
마다 교차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을 형성
- 산책로, 자연관찰로, 등산로 등은 지형에 따라 조성하되 편리성 제
고
- 주차장은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간별 집단화를 유도하여 효
율성 제고

(3) 시설물 배치 계획

(가) 기본 방향

- 환경 체계와 질서를 존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하는 계획
-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 하는 계획
- 시설 상호간의 관련성과 기능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계획
- 안전성과 쾌적성 그리고 편리성을 고려한 계획

(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 영농 시설 지구

- 기존의 재배 및 경작지에 배치
- 생산성, 관리 운영을 고려한 배치
- 시각성을 고려한 집단 배치

■ 중심지구

- 중심 활동 지구로 전시, 판매, 숙박시설의 배치

- 비교적 고밀도 배치가 요구되나 충분한 open space 확보
- 성격과 기능이 같은 시설물의 조합 배치

■ 레크리에이션 시설 지구

-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
- 대규모 시설은 지향하고 마을 환경에 맞는 소규모 시설
- 안전성과 흥미성, 편리성 고려
- 가족단위의 휴식, 놀이 공간 구성

(4) 경관 계획

(가) 기본방향

- 주변의 자연 풍치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경관 구성
- 향토 식물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와 통일된 경관 구성
- 옥외 시설물(장치물)은 단순 형태로 디자인 하되 시각성과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

(5) 기반시설 계획

(가) 환경문제및 대책

①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문제및 대책

㉠ 수질, 오염과 대책

- 개발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2.6% 210,300m²이며 개발시 발생 토사유출량은 16,719.15 ton/년(45.81ton/일)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써 수질보전이 절대적인 사항으로써 철저한 절감대책이 요구된다.

- 그 대책으로써 유출되는 토사는 침사지(물막이공)를 설치하여 유속을 감소시키고 공사시 절성토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가설 배수로를 절토법면하단, 성토부하단및 부지조성 중앙부에 실시하고 각 지선하류 지점에 침사지를 설치하다.
- 폭우시 과도한 성토법면지역은 폴리에치렌비닐을 이용하여 법면 붕괴를 방지 한다.
- 나대지 상태의 법면은 사방공사를 실시한다.

㉔ 대기오염과 대책

- 관광농촌마을 건설공사시에 일시적 현상으로써 먼지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량의 운행과 토사운반시 발생먼지는 차도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호흡기 계통의 장애, 안질같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 토사운반 차량은 흙더미 덮개를 씌워 운반하고 진입도로에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며 도로 및 공사장에서는 주기적 살수를 실시하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한다.

㉕ 폐기물의 발생과 대책

- 공사장 사용장비의 폐부품과 공사장인부들이 사용후 폐기하는 장갑등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양이 크지 않으므로 분류보관 했다가 소각 등의 처리를 한다.

㉖ 소음진동공해와 대책

소음진동공해 발생은 차량의 엔진소음, 마찰음, 충격음등으로 예상되며 주위가 대부분 산지로 둘러쌓여 있

어서 산지의 차단 효과로 소음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㉓ 토양 오염과 대책

관광농촌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보전형 사업으로써 지역내에 토양오염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오염원은 없다.

② 조성사업후 이용과정에서의 환경문제 및 대책

㉔ 수질오염과 대책

- 관광농촌마을의 1일 최대이용객수 2500명 중 최대 숙박인원은 625명으로 이때 발생하는 총 오수배출량은 $377\text{m}^3/\text{일}$ 이며 오수배출농도는 B.O.D $195\text{mg}/l$, S.S $137\text{mg}/l$, T-N $38\text{mg}/l$, T-P $8\text{mg}/l$ 이며 B.O.D 부하량은 $73.5\text{kg}/\text{일}$ 이며 SS 부하량은 $51.7\text{kg}/\text{일}$ 이다. 이러한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인근 하천및 남한강 수질악화, 오염시키므로 적절한 저감 대책이 요구된다.
- 오수처리시설은 각 발생원별로 자연유하에 의하여 오수의 차집이 가능한 시설물의 지하에 설치하여 토지이용 및 경관상의 효율을 도모한다. 오수흡관은 직경 300mm 을 이용하여 차집하고 관리의 편리상 관길이 50m 당 맨홀을 설치한다.
- 증수도(오수의처리후 재사용)의 도입시설을 설치한다.
- 방류수 저류조(연못)을 설치한다. 그리고 방류수를 재 활용한다.
- 비료 및 농약성분의 유출을 방지한다.

㉕ 대기오염과 대책

- 숙박객을 위한 숙박시설의 온방시스템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용되는 연료는 경유이므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법적규제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방지장치를 할 필요는 없고 완전 연소를 위해서 노내의 온도상승, 충분한 연소시간, 충분한 산소 공급, 적당한 공기혼합등이 필요하다.

㉔ 폐기물발생과 대책

- 관광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생활 폐기물로 음식물류, 알루미늄, 캔류, 지류, 비닐류, 빈병등으로 총 1,269kg/일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가연성분은 1,054kg/일, 불연성분은 215kg/일이다.
- 폐기물을 단지내및 인근에 매립할경우 악취및 해충서식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 음식 채소류는 퇴비화하고 종이류, 플라스틱류, 목재는 소각처리하고 빈병류는 수집,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㉕ 소음진동공해와 대책

- 사업완료후 발생하는 소음은 이격거리 5m에서 54dB(A)로 환경기준 도로변 “가” 및 “나” 지역의 소음도 65dB(A)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진동은 특별한 진동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차량의 통과에의한 도로 교통소음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주행속도의 제한, 경적사용금지, 도로변 관목의 배열식재, 시설물 방음벽설계, 도로 표

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㉔ 토양오염과 대책

- 토양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수질및 대기 오염물질, 폐기물과 침출수를 매체로 하거나 혹은 가족골프놀이 시설에 살포되는 농약, 비료 등의 약제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 토양오염 절감대책은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 방지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농약이나 비료에 의한 오염은 유기질비료의 사용과 천적관계의 자연적인 해충방제를 실시한다.

③ 환경관련 시설 면적 및 소요비용

3. 관리 및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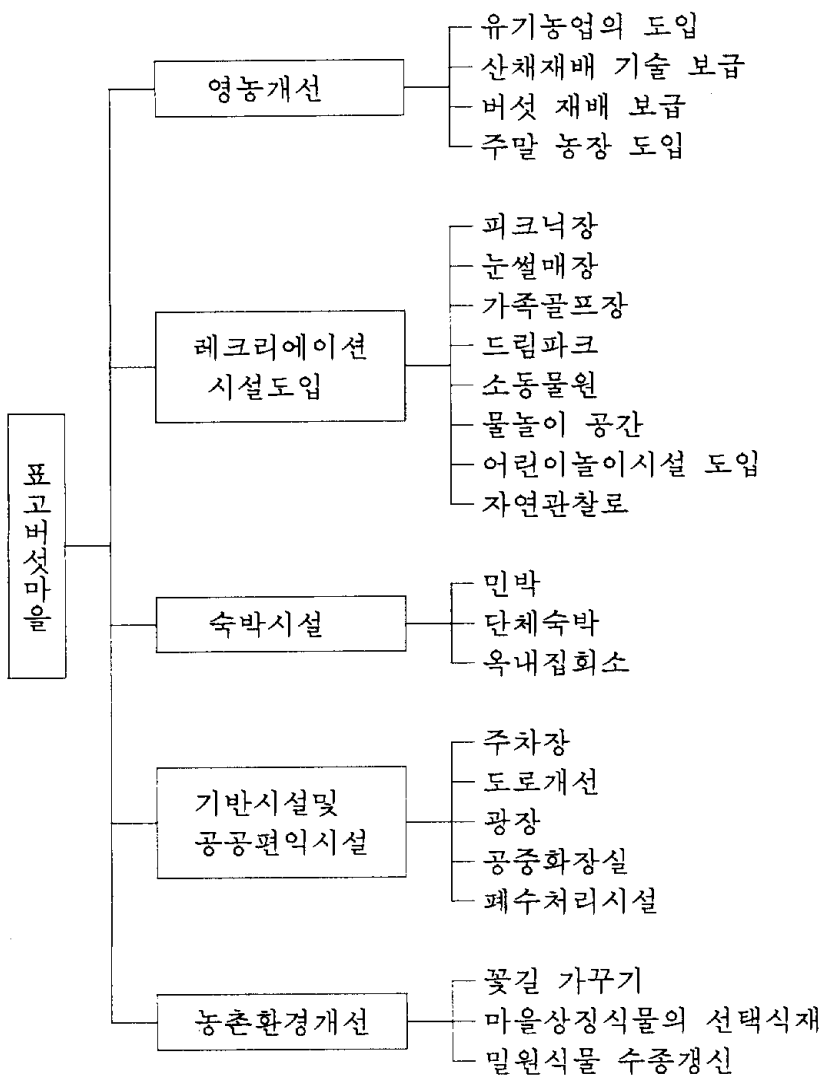
가. 하품2리의 진흥방안

(1) 지역의 특징

- (가) 강원도 산골의 성격을 띤 산골마을로 농업기반이 취약하다.
- (나)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비지정 관광지로 육성되고 있다.
- (다) 하품2리를 비롯하여 면전체가 버섯 주산단지다.
- (라) 전체 경지 면적중 72%가 유휴농지이고 45%가 외지인 소유이며 현지인 소유는 29% 밖에 되지 않는다.
- (마) 주민등록상 총가구수는 59 가구이나 실제가구수는 53 가구이고 전업 농가는 15 호이며 한씨, 박씨 집성촌으로 되어있으며 외지인은 지역민과의 융화는 적은 편이다.

(바) 신랑바위와 각시바위의 전설이 있으며, 마을뒷산에 주어 사라는 절터가 있어서 천주교 발생지와 관련이 있다.

(2)진흥목표



(3) 진흥방법

- (가) 버섯마을의 이미지화 제고
- (나) 3계절형 관광 농촌마을의 조성
- (다) 관광농업의 도입
- (라) 레크리에이션시설의 도입

나. 관광농업 상품의 개발 및 운영 방법

(1) 관광농업 상품의 개발

(가) 무형상품의 개발

모든 상품의 개발은 우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상품 개발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망없는 날 수업의 초·중·고학생 및 가족을 위한 농촌체험학습 및 자연학습 활동의 이 지역 무형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내용대상	농사체험	농산가공활동	자연체험	오락활동	문화체험
초·중·고 학생	모심기, 버베기, 감 자캐기, 고구마캐기, 토마토, 참외, 수박, 고추, 버섯 따기	도토리묵 만들기, 두부만들기, 버섯요리 강습	곤충채집, 식물채집, 자연학습코스, 버섯박물관관람, 폐수처리장환경교육	물놀이, 피크닉, 동물원에서놀이, 숲길메타기, 도립과크, 덩블링, 비누라지잡기	신라바위, 각시바위 방문, 신록사탐방, 세종대왕능탐방, 예절배우기(제사지내는법, 족보보는법, 민박)
가족단위	도토리 따기, 산밤 따기, 주말농장가꾸기, 버섯 따기	도토리묵 만들기, 두부만들기, 버섯요리 강습	산림욕, 버섯박물관관람	낚시, 피크닉	신라, 각시바위 방문, 신록사 방문, 세종대왕능방문, 민박

(나) 유형의 상품 개발

- ① 버섯 전골
- ② 버섯 샐러드
- ③ 버섯 갈비탕
- ④ 버섯 수육
- ⑤ 느타리버섯회
- ⑥ 느타리삼계탕
- ⑦ 느타리버섯산적
- ⑧ 버섯볶음
- ⑨ 팽이버섯조림
- ⑩ 버섯 잡채
- ⑪ 버섯 모듬 전골
- ⑫ 표고버섯 밥

- ⑬ 표고 꼬치구이 ⑭ 돼지갈비표고찜 ⑮ 표고죽
⑯ 표고탕수

(2) 관광농업 상품의 운영 방법

유형·무형의 관광농업상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유형상품(음식물, 농산물) 판매나 1일 방문객의 유치보다는 학생이나 가족동반의 체재시간을 늘려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무형 관광농업 상품을 많이 판매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이나 입지조건만이 아니고 이웃지역의 문화적요소나 산업적 요소(공장시설)을 응용하면 더욱 좋다.

(3) 관광농업상품의 판매전략

(가) 관광객 유치 표적시장의 선정

관광농촌마을 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려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오지 않으면 관광객이 발생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판매촉진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판매대상이 단체객 위주로 해야 수익이 증대 된다. 그래서 금년부터 국민학교의 가방없는날 수업에 견학, 수련, 실습, 관찰을 위한 활동이 월 1회 학급, 학년, 학교 단위로 실시 하게 되어 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년때 자연학습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강이남의 초·중·고학교를 유치권으로 설정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강이남위치 초·중·고 학교수 및 학생수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명)
국민학교	242	10,541	453,646
중 학 교	172	6,066	316,050
고등학교	129	5,273	260,262
합 계	546	21,880	1,029,958

(나) 유치 전략

- ① 방송국·신문사·잡지사·기업체사보 등에 보도자료 발송
- ② 한강이남 초·중·고학교의 교장 및 학년주임 섭외
- ③ 각종여성단체·종진회·기업체·행정기관·농수축임협·은행을 상대로 교류협정 또는 회원제 모집
- ④ 버섯오리강습회 또는 산채 뜯기, 도토리줍기, 버섯아가씨 선발대회등 이벤트 행사 개최
- ⑤ 유기 농산물 생산홍보 및 선물보내기
- ⑥ 자매결연업체내에 직매 센터개설로 관광객 유치 업무 및 특산물택배 실시
- ⑦ 고객관리카드 작성 활용
- ⑧ 제2고향 회원을 모집

다. 사업추진 계획

(1) 운영주체의 선정과 추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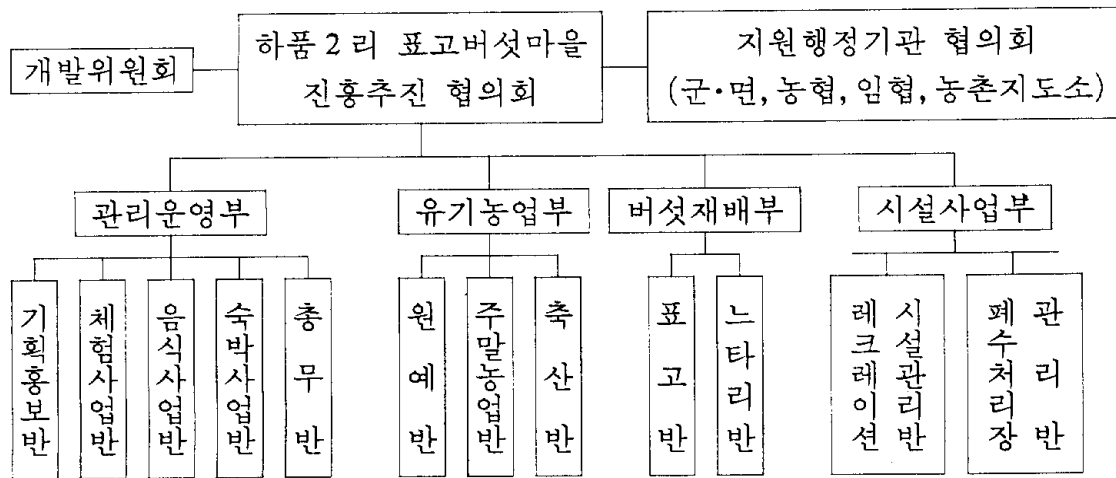
관광개발에 있어서 운영주체는 첫째, 개인,기업에 의한 단독 개발,

들째, 지역주민에의한 협동개발 셋째,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공영개발 넷째, 제 3 섹타에 의한 개발 방식이 있으나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품 2 리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계가 있고 개발위원회(10명), 느타리 표고작목반(15 농가), 부녀회(35명) 영농후계자 1명(32세)이 있다.

그외 현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이 40인이 있으며 관광개발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5-6명 정도 있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지역민, 외지인, 관계행정기관)을 총 망라한 공청회를 통하여 추진협의체 구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추진협의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의조정
- 각종이벤트의 기획 개최
- 홍보 판매의 일체적 실시
- 영농기술, 경영연수, 인재 육성
- 지역 특산물의 개발
- 각종시설의 관리운영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의견조정
- 개발 사업에 대한 선정 및 규제외 규칙제정
- 마을의 장단기 발전 계획

(2) 제 3 섹터 개발 방식의 도입과 추진 방법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개발의욕은 높지만 경영개념과 개발지식은 부족하다. 그리고 현지의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이 많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불가분한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들 구성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제 1 섹터(국가, 지방자치단체)

- ① 인허가 절차가 용이하고 보조 용자사업이 가능하다.
- ② 반면 서비스 정신과 책임감이 약하다.

(나) 제 2 섹터{주민, 기업(외지인)}

- ① 농업에 대한 일상활동, 체험을 통해서 세심한 계획수립
- ② 기획력, 자금부족(농민)

(다) 제 3 섹터(민관협업체)

- ① 제 1 섹터와 제 2 섹터의 장단점보완
- ② 기획력, 자금력이 충실해진다.
- ③ 종합적 전문적인 사업으로 자금, 시설이 큰 사업을 실시 가능

사업주체 또는 운영주체로써 역할을 분담한 통합조직이 만들어지면 각 주체의 특징을 발휘할수 있는 활동이 시작된다. 그 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계획의 수립

- 둘째, 공청회를 통한 투자지분에 대한 개발이익 설명후 동의서 작성
- 셋째, 출자자본 토지나 자본에 대한 감정 평가실시
- 넷째, 출자금액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 다섯째, 공유토지 면적에 대한 차지(임대) 및 매수
- 여섯째, 개발이익의 독식 또는 잠식방지를 위한 개발 조례 작성

(3) 이익의 배분 방법

하품 2 리 경우 어느 한섹타의 사업만으로는 사업존립이 어렵고 버섯 박물관(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레크리에이션 시설(외지인), 숙박 및 음식(지역주민 또는 외지인), 유기농업(지역주민) 등 각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서로협력함에 있어서 가진자가 베풀고 없는자는 베푸는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생이익이 적을때는 소액투자자는 정상배당하고 고액 투자자는 소액 또는 무배당을 고려할수 있다.

라. 개발상의 문제점

(1) 사업추진상의 문제

- (가) 토지이용 계획상 수익발생시설 용지와 비수익발생 용지인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 문제
- (나) 농어촌 정비법상의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3만평한도 이기때문에 마을 전체에 산발적으로 시설토지이용시 유권해석 문제
- (다) 제 3 섹타 개발 방식 도입시에 농어촌정비법상 개발주체의 인정 문제
- (라) 개발이익의 배분상의 문제

(2) 법률상의 문제

-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나) 환경보전법상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용허가의 제한
- (라) 산림거발법상 보존임지 내에서의 행위제한
- (마) 하천법에 의한점용허가
- (바) 공중 위생법상의 민박시설운영, 단체, 급식, 매점의 판매 검사
- (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해당여부
 - (아) 건축법상 제한행위
- (자)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용료 징수문제
- (차) 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혜택

4. 투자계획

가. 기본방향

나. 투자재원 조달방안

공공부분

민간부분

정책자금 활용방안

다. 사업분야별 투자주체 검토

라. 재원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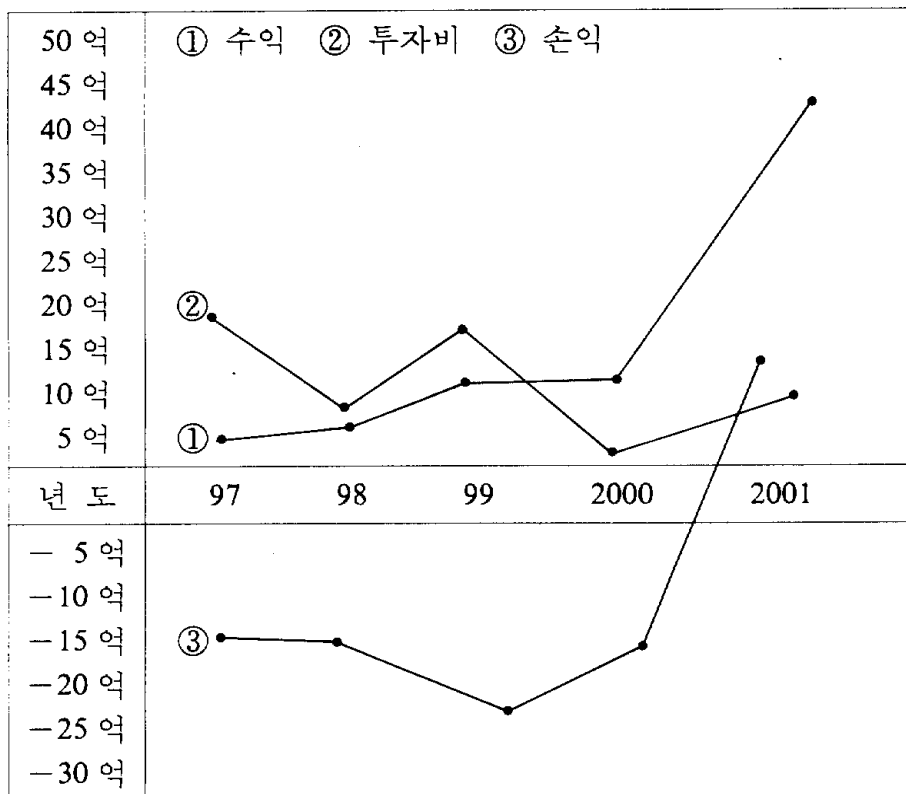
시설별 재원별 투자계획

시설별 세부 투자비

마. 수익성분석

(단위 : 천원)

내년용도		1997	1998	1999	2000	2001
투자		2,186,000	901,000	1,766,000	506,000	826,000
수익	유치목표	33,000	36,000	40,000	44,000	150,000
	객단가	20	22	24	26	28
	금액	660,000	798,600	960,000	1,144,000	4,200,000
손익		-1,526,000	-1,628,000	-2,434,000	-1,796,400	1,577,600



5. 결 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이 농업 정책을 실시하여 왔고 상당액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농업은 산업 구조상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였고 UR 협상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점점 더 어려운 형편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이고 경지면적이 대략 200만 ha 일때 그 활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은 목재 생산 보다는 레크리에이션적이용이 더욱 필요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한계 농지는 농업적 이용과 비농업적 이용으로 분류될 것이다. 농업적 이용은 기반조성에 의하여 기계화, 시설화 된 유기농업의 도입으로 환경농업이 지속될 것이며 비농업적이용 방법은 공업, 건설 입지가 좋은 곳은 농공단지, 주택단지가 될것이고 입지조건이 불리한 산골짜기 다락논, 밭등 유휴농지는 레크리에이션적이용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때 레크리에이션적이용이란 일반적인 관광개발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관광 농촌마을 개발이란 농업기반에 관광관련지식(시설)이 접목되는 것이므로 농업에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존생업과의 연결등 사업계획수립이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업계획은 그 지역의 자원성(관광자원), 접근성(교통조건), 자금력, 면적규모, 영농기술등에 따라서 활성화의 추진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 (가) 인재의 육성
- (나) 관광농촌마을의 개발범위와 모델 설정
- (다) 개발방식(주체)의 선택

- (라) 행정기관 및 지역 상공인의 지원 필요
- (마) 활용 대책
- (바) 실천 의지

IV. 연구개발사업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현재관광농업개발의 연구수준이 하드웨어범위를 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모델개발의 실천적방안이 될 수 있다.
2. 자원별·입지별 모델개발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가능하다.

V.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방안

- (1) 지방화시대의 정주권 지역개발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 (2)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
- (3) 도농교류 촉진사업으로 활용가능하다.
- (4) 유희농지 활용 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
- (5) UR대응책으로 활용가능하다.
- (6) 도농통합도시의 신농촌 개발모델로 활용가능하다.

Summary

Every nation of the world as well as our nation has carried out agricultural policies and has supported lots of funds. But agriculture has been degraded to a declining industry becaus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various causes including U.R make the situation even worse. So we must urgently consider a counterplan when our national land has 65% of forest and has 2 million ha of agricultural l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use of forest for the purpose of recreational use instead of its lumber produce, and marginal land excluding agricultural promoting area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use. In other words agricultural use leads to continue environmental agriculture with the help of organic agriculture like mechanization or facilities by making foundation. In non-agricultural use, on the other hand, the place which is good for industry or construction leads to a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or housing area. The idle land such as a rice field or a farm, which is inconveniently located, has best effects on the recreational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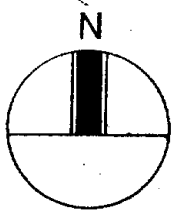
The word "recreational use" has different meaning. It is not tourism development. The tourism development of the rural village is related with the knowledge of tourism on the basis of agriculture. So it is difficult, without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for us to set up the plan linked with a vocation.

The success of this plan depends on the condition of the area, that is, resources(tourism resources), approach(traffic condition), funds ability, area size and agricultural skill. So we must examine these.

- a) training men of talent.
- b) Setting up the developing scope and the model of the rural village for tourism.
- c) selecting the developing method.
- d) supporting of the government, or of the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of the area.
- e) the counterplan of the application.
- f) The will of practice.



0 100 200 300 M



관광농촌마을 조성 계획

기본 계획도

A. 레크레이션 공간

1. 소동물원
2. 가족골프 놀이시설
3. 눈썰매장
4. 트림파크
5. 주차장
6. 중심광장
7. 버섯박물관
8. 매점 및 기념품판매소
9. 음식점

B. 단체활동 공간

10. 양어장 및 미꾸라지 잡기원
11. 주말농장
12. 단체숙박
13. 옥내집회소
14. 다목적 운동장

C. 진입공간

15. 진입광장
16. 주차장

D. 기존마을권역

17. 버섯재배장
18. 주차장 및 휴게광장

E. 경관보전권역

19. 피크닉장
20. 주말농장
21. 산책로 및 자연학습로



목 차

제출문	1
요약서	2
제 1 장 서언	6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64
제 2 절 연구의 목적	67
제 3 절 연구의 방법	70
1. 연구의 범위	70
2. 연구대상지역	70
3. 조사기간	71
4. 연구방법	71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73
제 1 절 관광농촌마을의 개념	74
1. 관광농촌마을의 구상	74
가. 농촌환경의 변화	74
나. 국민여가 성향의 변화	75
다. 농민의식의 변화	76
라. 도농교류촉진에 대한 기대	77

목 차

다. 자연학습의 장소제공	78
2. 관광농촌마을의 성격	79
3. 관광농촌마을의 발전방향	80
가. 제휴의 형태	81
나. 주민의 이용	81
다. 농산어촌의 시설	82
제 2 절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전략	82
1. 사업계획의 수립	82
가. 농촌에서의 관광레크리에이션 개발동향	82
나. 사업의 추진체계	85
다. 지역이미지의 확립	87
라. 추진체의 결성	91
2. 시설의 도입	94
가. 경영계획방침	95
나. 도입시설의 종류	96
3. 지역이미지(Image)의 조성	98
가. 지역의 독창성을 살릴것	99
나. 소박한 농촌인심을 살릴것	100
다. 지역환경과의 조화를 이룰것	101
제 3 절 관광농촌마을의 마케팅 전략	102
1. 관광농업 상품의 마케팅(Marketing)	102
가. 신상품 개발전략	103
나. 가격정책전략	118
다. 유통경로전략	120
라. 홍보서비스전략	123

제 4 절 지역진흥과 이벤트 전략	138
1. 지역진흥과 관광	138
가. 관광활성화의 필요성	138
나. 관광활성화 방안	139
2. 이벤트 행사의 개최	145
가. 개최목적	145
나. 관광농촌에서의 이벤트 행사	146
제 5 절 농촌지도자 육성	148
1. 농촌사회는 몰락할 것인가?	148
2. 새로운 농촌지도자상	149
3. 새로운 농촌지도자의 역할과 양성	152
제 6 절 제 3 섹타(Sector)란 무엇인가?	154
1. 도입의 필요성	154
2. 정의	156
3. 한국농촌활성화를 위한 3자협동 개발방식의선택	157
4. 제 3 섹타 사업의 장단점	160
가.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160
나. 독립성·기동성을 가진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161
다. 민관 각각의 장점활용에 의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161
라. 문제발생의 원인과 내용	163
제 7 절 해외관광농업의 동향	163
1. 독일 관광농업	164
가. 독일 관광농업의 특징	164
나. 농지정비와 환경보전정책	167
다. 「농촌에서 휴가를」사업의 전개	168

라. 「농가에서 휴가물」의 사업추진체제	172
마. 정보지의 발행과 정보의 제공	175
2. 프랑스의 관광농업	175
가. 프랑스 관광농업의 특징	175
3. 화란의 관광농업	190
가. 농촌지역에서의 변화	190
4. 일본의 관광농업	203
가. 농촌관광(Green Tourism)의 동향	203
나. 북해도에서의 대응전략	205
다. 岡山縣에서의 교류	212
5. 대만의 관광농업	216
가. 대만의 관광농업 지원시책	216
나. 대만의 관광농원 개발사례	218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229
제 1 절 서론	230
1. 과업의 목적과 의의	230
2. 계획의 범위	230
3. 계획의 수행체계 및 과정	231
제 2 절 환경조건	232
1. 입지 및 접근성	232
가. 지리적 위치	232
나. 접근성	233
2. 자연환경 분석	234
가. 지형 및 지세	234
나. 경사 및 방향	234

다. 기후 및 기상	241
라. 수문	243
마. 식생	243
바. 경관	244
3. 인문사회 환경	248
가. 토지이용 현황	248
나. 인구 및 산업구조	251
다. 도로 및 교통환경	259
라. 시설물 현황	261
마. 전설	262
바. 종합분석	264
4. 관광환경	267
가. 국민의 여가성향 및 국민관광	267
나. 근린 배후지역의 관광자원	269
다. 관광객 추이	273
5. 지역거주민 의견조사	275
가. 조사분석 목적 및 조사방법	275
나. 지역거주민의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의견 분석	276
다. 결론	278
6.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279
가. 관련계획	279
나. 관련법규	283
제 3 절 기본구상	292
1. 개발기본 방향설정	292
2. 관광이용객 수용력 추정	292
가. 이용객수요추정	292

나. 내방자추정객수	293
3. 도입활동 및 시설의 구상	294
가. 기본방향	294
나.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	295
다. 각 시설별 기본 구상	298
4. 도입시설의 종합	338
제 4 절 기본계획	340
1. 토지이용/교통 및 동선계획	340
2. 시설물 배치계획	341
3. 경관계획	342
4. 기반시설계획	363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385
제 1 절 하품 2 리의 진흥방향	386
1. 지역의 특징	386
2. 진흥목표	387
3. 진흥방법	389
제 2 절 관광농업상품의 개발 및 운영방법	394
1. 관광농업상품의 개발	394
2. 관광농업상품의 운영방법	407
3. 관광농업상품의 판매전략	410
제 3 절 사업추진계획	415
1. 운영주체의 선정과 추진체계	415
2. 제 3 섹타의 도입과 추진방법	418
3. 이익의 배분방법	423

제 4 절 개발상의 문제점	424
1. 사업추진상의 문제	424
2. 법률상의 문제	425
제 5 장 투자계획	429
1. 기본방향	430
2. 투자재원 조달방안	430
3. 사업분야별 투자주체검토	432
4. 재원별 투자계획	434
5. 수익성분석	436
제 6 장 결론	439
1. 인재의 육성	441
2. 관광농촌마을의 개발범위와 모델설정	442
3. 개발방식(주체)의 선택	443
4. 행정기관 및 지역상공인의 지원필요	444
5. 활용대책	445
6. 실천의지	449
참고문헌	451
별첨 : 관광농촌부락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453

표 목 차

표 2-1 사업추진체계	86
--------------------	----

목 차

표 2-2 농업형태의 재구축기구	90
표 2-3 유치권 설정의 사고방법	96
표 2-4 관광농업지역의 도입시설 종류	97
표 2-5 활동별 개발내용	106
표 2-6 농사캠프 일정표	115
표 2-7 관광농촌마을의 년중 행사계획표	147
표 2-8 제 3 섹타의 사업화단계·운영단계	162
표 2-9 독일 농가민박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171
표 2-10 대가민박등급기준	187
표 2-11 대실민박등급기준	187
표 2-12 쾌적한 지역 만들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중점운동	204
표 2-13 시설정비상황	213
표 3-1 계획의 수행체계 및 과정	231
표 3-2 최근 10여년의 기후의 변화	241
표 3-3 목본 및 초본현황	244
표 3-4 지목현황	248
표 3-5 토지소유대비 지목현황	249
표 3-6 여주군 산북면의 인구 및 산업인구	252
표 3-7 대상지의 농업현황	259
표 3-8 년도별 농가소득	260
표 3-9 비지정 관광지 지정으로 설치한 시설	261
표 3-10 밀성관광농원 부대시설	261
표 3-11 종합분석	264
표 3-12 주요관광자원 지정현황	269
표 3-13 여주군 및 주변군의 관광객수·관광수입	270
표 3-14 주변 관광자원 현황	272

표 3-15 경기도 관광농원 현황 및 특징	273
표 3-16 평균 증가율에 의한 여주군 관광객 수요예측	274
표 3-17 피조사자의 구성	275
표 3-18 관광마을 도입에 대한 의견	275
표 3-19 개발형에 대한 의견	277
표 3-20 재배작물에 대한 의견	277
표 3-21 개발운영주체 의견	277
표 3-22 주민의 참여의사	278
표 3-23 서울근교권의 국토종합개발계획	280
표 3-24 국토이용관리법	283
표 3-25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6
표 3-26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287
표 3-27 농어촌 휴양사업의 육성	288
표 3-28 금지행위 및 개선명령	288
표 3-29 민박농어가의 지정육성	289
표 3-30 환경영향평가법	290
표 3-3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점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290
표 3-32 건축법	291
표 3-33 관광진흥법	291
표 3-34 하품 2 리 내방현황	293
표 3-35 내방자 추정객수	293
표 3-36 관광농촌마을 환경보전방안	296
표 3-37 종합	298
표 3-38 진입도로의 도로구조령 3 조	299
표 3-39 보도의 기준	300

목 차

표 3-40 양어지 시설의 세부시설기준	309
표 3-41 양식장의 못	310
표 3-42 트림파크의 설계기준	315
표 3-43 놀이시설의 의의	325
표 3-44 해설의 방법	336
표 3-45 도입시설 면적산정	338
표 3-46 주요공간별 식재계획	342
표 3-47 공사시 장비투입 대수 및 소음도	366
표 3-48 각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373
표 3-49 국립공원 폐기물 배출량 및 조성비	374
표 3-50 본 관광농촌마을의 폐기물 발생량	375
표 3-51 품목별 재활용 현황	375
표 3-52 재활용 회수율 및 회수량	376
표 3-53 각종 제진장치의 실용성능	379
표 3-54 도로교통소음도 예측	381
표 3-55 환경관련시설의 면적 및 소요비용산출	383
표 4-1 하품 2 리 체험활동 예시	395
표 4-2 하품 2 리 년중체험상품 판매계획표	408
표 4-3 초·중·고 학생 1박 2일 상품개발사례	409
표 4-4 책가방없는 날의 필요성	411
표 4-5 국민학교 현황	411
표 4-6 중학교 현황	412
표 4-7 고등학교 현황	413
표 4-8 하품 2 리 버섯마을 추진협의회(가칭) 조직도	416
표 4-9 업무의 전개 및 분담모식도	421
표 5-1 농림수산사업 정책자금 현황	431

표 5-2 사업주체별 검토	432
표 5-3 사업(시설)별 투자주체검토	433
표 5-4 수익성분석	436
표 6-1 경기도내 자연발생유원지	447

그 림 목 차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232
그림 3-2 대상지로의 접근도	233
그림 3-3 표고분석도	235
그림 3-4 지형단면도	237
그림 3-5 경사분석도	239
그림 3-6 기온과 강수량의 지난 10 여년간의 변화	242
그림 3-7 기온 월별변화	242
그림 3-8 평년강수량	242
그림 3-9 토양분석도	245
그림 3-10 지목현황	248
그림 3-11 토지소유현황도	250
그림 3-12 토지활용현황	250
그림 3-13 유휴지의 토지현황	251
그림 3-14 토지활용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251
그림 3-15 지목별현황도	253
그림 3-16 토지소유현황도	255
그림 3-17 토지활용현황도	257
그림 3-18 3차원 모델링	265
그림 3-19 종합분석도	267

목 차

그림 3-20 주변 관광자원 현황도	271
그림 3-21 가족골프놀이시설의 예	323
그림 3-22 토지이용/교통 및 동선계획	343
그림 3-23 시설물 배치계획--Key Map	345
그림 3-24 진입공간 평면도	347
그림 3-25 단체활동공간 A	349
그림 3-26 단체활동공간 B	351
그림 3-27 레크레이션공간 A	353
그림 3-28 레크레이션공간 B	355
그림 3-29 기존마을 및 경관보존공간 A	357
그림 3-30 기존마을 및 경관보존공간 B	359
그림 3-31 경관계획도	361
그림 3-32 우수처리공정 및 중수도시설	369
그림 3-33 소각로 형태	378
그림 3-34 토양오염 경로	382
그림 4-1 하품 2 리 지역의 필요장비계획	388
그림 5-1 수익성 분석	437

사 진 목 차

사진 3-1 안내판 (대상지 현황)	303
사진 3-2 안내판 (내장산 국립공원 사례)	303
사진 3-3 안내판 (외국 사례)	303
사진 3-4 안내판 (외국 사례)	303

제 1 장

서 언

제 1 장 서 언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의 발달, 뉴스매체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도시공해로부터 탈출하여 자연이 풍부한 환경하에서 휴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찰이나 명승지, 해수욕장 등 특정한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관광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1일 생활권에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의 자연학습과 농사체험 그리고 심신수련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한편 도시가 비대해짐에 따라 도시근교의 농지는 공장부지나 주택지로 감소하고, 지가가 상승하여 농지의 보존방법이 어렵게 되어 농촌의 인구감소로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하여 유희농지가 증가하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특별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업의 존립대책 등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농촌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래에는 도시로부터 탈출하여 자연이 풍부한 지곡과 산, 하천이 있는 농산어촌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의 증가와 농산어촌에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시도하려는 농민의 욕구는 무엇인가 새로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농어민들은 1차산업인 농수축산물, 산림, 어업을 유인요소로 활용해서 도시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고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함

으로써 1차산업인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상업농 경영인 관광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¹⁾

그리고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이란 의·식·주 다음인 제 4의 생활필수품으로 등장하여 제 2의 창조생활로 일반대중 속에 깊숙히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시대에 있어서 관광개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국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에서 관광수요를 어떻게 육성하고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같은 관광수요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개시켜 나아갈 것인가하는 측면이다. 즉 관광사업을 개발, 경영하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경우 관광을 받아들이는 관광지의 입장에서 볼 때, 관광개발을 그 지역개발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대하는 바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부동산업자나 대도시 자본가의 꿈같은 관광개발계획만 믿고 토지를 헐값으로 내놓았으나 개발은 생각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익은 진출해 온 외부자본가에 의해서 회수되어가고 지역에서는 오물처리, 사고의 발생과 같은 관광공해만이 남는 경우가 많다.

또 관광이 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일부 관광숙박업자나 기념품 판매업자에 국한되어있고 지역주민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인식마저 들게한다.

그러면 관광개발은 그 지역에 관광공해만을 남게 하는 것인가? 따라서 공업개발과 관광개발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관광개발방식의 도입이 그 지역입장에서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인가? 그러한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광개발 문제를 지역경제, 지역사회라는 입장에서 재검토 하지 않

1) 류선무, 1993, 관광농업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p. 23

으면 안된다. 관광을 중요한 지역산업으로 발전시켜온 기존 관광지는 물론이고 지리적 조건이나 공업입지에 부적당한 낙후지역 즉 한계농지나 유희지에 있어서 관광을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과열화한 기현상인 토지붐(boom)때문에 전국의 미개발 관광지가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고, 무질서한 개발과 도시자본의 진출이 지역주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그 독점적 개발이 원주민을 추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외부압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또한 무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관광을 지역개발의 축으로 하는 발상은 중요시 된다고 할지라도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개발방식이 최선인가를 검토하는데는 소홀하였으며 모든 외부자본이나 공공기관에 맡겨왔던 훌륭한 관광지라도 지역사회와 무관한 집단의 장소라면 그것은 도시인을 위한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지역주민과 환경, 문화에 대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침입자라고 생각할 때 이제까지의 관광개발에는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

우리는 헌법에 거주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전국 어느곳에나 가서 희망하는 직업을 택하여 종사해도 국가경영정책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급격한 탈농촌화는 도시빈민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농촌을 기반정리하고 기계화, 시설화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고 경작할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며 그들의 삶은 도시생활자와 같은 수준의 소득,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써 주어진 환경여건에 적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즈음 급변하고 있는 농촌의 환경은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2) 류선무, 1993, 설악권지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관광개발학회, p. 51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가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레저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 농업도 시대에 부응하여 작부체계를 고치고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활용해서 농촌을 재개발하고 환경을 농촌공원화 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농촌생활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에 65%(6,460,000 ha)가 산림이고 그 중 31%(200 만 ha)가 조림면적이다. 그러나 산림은 빨라야 20~30 년이 되어야 자본회수가 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조림을 하는 것이지 자본회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본래 산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목재의 생산이라든가 산소(O₂)의 공급으로 공해요인을 줄인다는 기능도 있지만 근래에는 부산물(버섯, 꽃꽂이 소재, 약초 등)의 생산이나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의 기능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휴양림 조성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국의 농지면적이 대략 200 만 ha 이고 그중에서 농업진흥지역(100 만 ha)를 제외한 한계농지(117 만 ha)은 유휴농지화(4%) 되어가고, 그 활용방안이 문제시 되고 있다. 물론 그 지역을 농촌산업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소규모의 공장이나 주택단지를 유치한다고 해도 그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유휴, 한계지역이 있으며 그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대개 오지이고 경작조건이 좋지않아 생산비 또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휴지나 한계농지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시

민이 즐겨 찾아오고 있으며 그 추세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일부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하여 비지정관광지(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무엇을 해볼려고 하여도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력이 없어서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84년 부터 관광농업정책을 실천하여 1994년도까지 전국에 246 개소를 지정 46,108,000,000 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까지 읍면당 1 개소씩 전체 1,435 개소의 조성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려면 년중 개장형이라야 경영이 성립되고 그렇게 할려면은 자본금이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5억 정도(최소 1억내외)의 자금이 필요한데 농민으로서는 정부의 지원금의 혜택을 수용할 수 있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그림의 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담보능력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농가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농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관광농업의 운영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생산과 지역활성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운영실정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은 관광발전의 법칙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투하자본에 따라서 한계생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00 평 내외의 관광농원 규모로서는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관광농업에 관심있는 사람들 중에는 휴양단지(3만평 규모)도 있고, 그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으나 휴양단지 보다 더 크게 하려고 할 때에는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일반 관광지 개발로 실시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떠한 규정이나 법령에 구애받지 말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규정을 고쳐

서라도 모든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희망이다.

즉 관광농업 개발방법을 보급함에 있어서 개인형, 단지형, 지역형, 관주도형, 제 3 섹타형(민관협동개발방식)으로 다양화 해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해서 보급하고 싶은 방식은 제 3 섹타형이다. 이 개발방식은 일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방식으로서 관광농업개발에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최선의 방식을 취사선택하여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시간과 자본을 소비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를 똑같이 답습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농촌은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자본력도 부족하다. 그러나 그들대개는 유희토지와 임야를 가지고 있다.

한편 도시에서는 아이디어와 자본력이 있으나 관광개발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토지구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 양자의 입장을 지방행정기관이 의견을 조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념으로 응용해 보자는 것이다.

현대 행정이란 국민복지를 위한 행위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분명히 우리나라 농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농업이라고 하는것은 떠오르는 샛별처럼 우리농촌의 한 분야를 비추어 농촌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도화선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관광농업정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고 자주 바뀌는 정책방향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의 고초는 아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고 관광농업을 외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책임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관광농업의 역사가 짧고 실천하는 사람마다 종사하는 분야가 다양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외국의 사례를 분별 없이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적 관광농업 기술개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무만 보고 이야기 했지, 숲을 보고 이야기 하는 안목은 부족했다

고 생각한다.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관광농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서 관광농업을 연구하는 학자나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선구자적으로 실천했던 농민들, 우리모두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적이었으며 시행착오를 겪었던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농업 육성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그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할때이다.³⁾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변화의 준비를 올바르게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본인의 연구와 국내외의 현지를 답사했던 때에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관광농업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범위

관광농촌부락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전략들을 분석하여 실전에서 응용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심층분석함으로써 관광농촌부락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중산간지역의 관광농촌부락모델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연구대상지역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 2 리

3) 류선무, 1993, 농어촌 관광농원대표자 경영교육교재, p. 134 농협중앙회 농촌개발부

3. 조사기간

가. 설문조사 : 1995 년 1 월 20 일 ~ 25 일 (6 일간)

나. 현지조사 : 1995 년 1 월 25 일 ~ 4 월 25 일 (3 개월)

4. 연구방법

가. 별첨된 설문지를 가지고 부락회의를 통한 지역민들의 관광농촌부락 조성에 관한 의욕과 개발방향에 대하여 1 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나. 지역의 입지조건과 경작상황을 조사하여 관광농촌부락조성에 필요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 관광농촌부락 조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전략들은 국내외 관계문헌과 연구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라. 설문조사 및 토지대장의 자료처리는 SA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고, 각종 지형분석은 PC 용 GIS 패키지인 ARC-INFO 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제 1 절 관광농촌마을의 개념

1. 관광농촌마을의 구상

가. 농촌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경제고도성장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도시로 이탈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폐농가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가내공업성격의 조그만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의 환경을 파괴하여 농토이용의 제고와 농촌재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과거 60년대 우리 농촌은 새마을운동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획일화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어 농촌고유의 모습과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는 정주권거말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의 도입과 주택개량사업으로 농촌의 도시화현상까지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구역개편으로 도농통합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한 성격과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인가? 농촌과 도시의 기능은 서로 상관하면서도 기능은 달라야 할 터인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는 장기적 안목에서 그 농촌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농촌지역은 도시로부터 활력을 도입하여 정주권내의 농산어촌 사회를

활성화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농림수산업은 양질의 농·수·축·임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적 생활의 터전으로서 자연의 환경공간을 유효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국민여가 성향의 변화

관광은 의·식·주 다음 제 4의 생활필수품으로서 국민여가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욕구도 다양해져서 여러가지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도 과거에는 장거리 여행에서 근래에는 1일 생활권 내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어촌이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자연적 환경공간에서 건전한 생활의 장소로 활용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활동변화는 첫째, 명소 고적지를 볼 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친숙하고 경관을 즐기는 여행이 늘고 있다. 둘째, 교통편이 철도에서 자가용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자동차 이용은 버스이용의 단체형에서 자가용차의 가족, 친구, 소그룹형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자연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이용의 다변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자연환경에서의 휴양활동과 둘째, 친구, 친척, 가족단위의 향토음식을 겸한 친목활동 셋째, 무공해 농수산물의 재배 또는 직접수확이나 체험 넷째, 자녀들의 자연학습 및 심신수련과 같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원하고 있다.⁵⁾

따라서 이러한 자연이 풍부한 농촌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공간의 유용한 활용과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4) 류선무, 1984,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p. 180, 형설출판사

5) 류선무, 1993, 관광농업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p. 66, 농촌진흥청

다. 농민의식의 변화

과거 우리 농민들은 봄이 되면 씨앗 뿌리고 가을되면 수확해서 시장에 출하 하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도시인이 사주기만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유통구조가 복잡해져서 도시인이 원하는 농·수·축·임산물을 보기 좋게 포장해서 원하는 시기에 출하 하지않으면 기대하는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것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예상 소득을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인건비에 비하여 소득이 적은 농작물은 재배를 포기하여 유희농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농기계나 첨단 생산시설들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을 계획하고 수지맞는 작부체계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산간 오지에서는 경작 조건이 좋지 않아서 유희농지가 증가하는 반면 자연환경은 풍부하여 도시인들이 계곡을 찾아서 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무질서한 농촌환경의 이용은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된 환경의 정화는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농촌의 자연환경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대대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활용하며 살아 왔다. 그러나 상기의 현상들은 역할이 바뀌어 이용은 도시인이 하고 정화는 지역민이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 정성에 맞지 않는 일로써 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래에 일부 지역에서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받아 폐기물처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오물수거료 정도로 입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환경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들은 그들의 생활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다면 생존권의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요즘 농촌지역에 관한 여러가지 상황들은 농촌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변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기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감안하여 현재의 경작방법을 바꾸어

농촌농·수·축·임산물을 유인요소로 하고 그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농업의 도입을 서두르고, 그렇게 하여 농촌지역의 자연 환경을 규모있게 개발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농·수·축·임산물의 안정된 생산을 도모하고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라. 도농교류촉진에 대한 기대

요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촌출신이고 도시가 크면 클수록 관광발전의 법칙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중력과 원심력의 법칙에 의하여 도시로부터 탈출하여 농촌지역에 가서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며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촌체험학습장, 텃밭가꾸기, 1농협 1부락 자매결연 사업은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촌지역의 유희농지를 개발하여 450평 규모로 분양하여 집도 짓고 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 민박단지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레크리에이션(Recreation)기능을 강화하여 휴양림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근래에는 서울 특별시와 농협중앙회에서 공동으로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무공해 채소의 안정된 생산과 공급으로 도시와 농촌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기의 현상들은 농산어촌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토지이용을 제고시키고 농촌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의 휴양지 제공으로 도농교류 촉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로 나갔던 노동력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대책이 도시인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이때 소비되는 자금이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농촌의 소득과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서 도시인과 농촌주민과의 접촉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해를 촉구하는 장소가 되어 준다면 국민통합과 복지국가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마. 자연학습의 장소제공

우리 인간은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 물질문명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다. 더욱이 신세대들은 시험공부와 과외활동에만 치중하여 자연환경의 접촉기회가 줄어들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면 참을성 없이 자살행위가 발생하는가 하면 전자오락에 정신착란 증세를 나타내는 기사를 볼때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먹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있는 농·수·축·임산물의 생산과정과 이름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의 고마움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후세들의 교육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국에서는 주 5일제 수업으로 환경교육을 커리큘럼화 해서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5년도 부터 시범학교를 지정 주 5일제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농촌지역은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도시보다는 인간성이 살아있는 곳으로써 많은 농촌의 문화와 노인들의 존재로 예의범절이 다소나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규모있게 개발된 장소에서 초중고생들의 동식물들의

관찰을 통한 자연학습과 심신수련, 농사체험 그리고 농촌문화와 예절로서 인간성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관광농촌마을의 성격

농촌지역은 농민들의 생활터전이고 도시인의 농·수·축·임산물과 노동력의 공급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구성은 소득이 여러가지 제요인에 의해서 파괴되어 농촌환경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1차산업인 농·수·축·임산물을 유인요소로 활용하고 관광사업과 접목하여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도입으로 생산과 소비가 현지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상업농경으로 농촌소득의 고부가가치 방법과 고용증대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농·수·축·임산물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문화와 풍부한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무형의 관광농업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관광농업정책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의 관광농원의 역할로써는 개인농가의 농업경영개선으로 소득증대의 방법은 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개발이나 활성화의 역할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것은 개발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금보다 기반시설과 생산시설들의 막대한 자금의 수요와 경영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42조억원과 농특세 15조억원을 농촌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나 농민 개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담보력이 취약하여 수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고 개발 아이디어도 부족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유원지)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막대한 개발 자금이 필요한 시설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마을 다수 희망 농가들의 협의체나 외부자본가와 지역민간의 협의체가 개발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은 능력에 맞게 관광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즉 눈썰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은 지방자

치 단체나 협의체에서 개발운영하고 지역주민은 민박이나 각종 무공해 농·수·축·임산물의 제공과 더불어 향토음식의 판매 등 소자본 운영이 가능한 분야에의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더불어 잘사는 마을로써 농촌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즉, 관광농촌마을의 성격은 첫째, 농·수·축·임산물의 안정생산과 소득만을 생각하지 않고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또 그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모두를 포함한 농촌환경을 종합한 개발로써 둘째, 농촌사회에 있어서 살아 숨쉬고 있는 전통문화센터로서 도농교류의 장소이며 교육의 장소이다. 즉, 도시생활자가 농촌으로 밀려오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 농촌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농외소득 증대와 취업기회만을 생각하고 많은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의 도입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자연환경의 파괴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역 특성에 알맞게 계획된 신흥농촌 지역이다. 넷째, 관광농업의 도입으로 농업생산, 경영의 안정은 물론 그 지역 산업의 활성화나 주민의 생활 안정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⁶⁾

3. 관광농촌마을의 발전방향

지금까지의 관광농업 개발은 초보적 단계여서 소위 농외소득 증대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한 나머지 내방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농촌의 고유문화나 환경, 그리고 자존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촌사회의 고립성이나 폐쇄성의 탈피가 요청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농촌마을의 개발과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내방자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즉,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지역환경의 재평가에 의한 자랑스러운 자세의

6) 류선무, 1984,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p. 236, 형설출판사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함과 내방자에 대해서는 지역환경의 주체적 유지에 대해서 이해와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적극적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국민적 여가선용의 기회증대에 의한 내방객 증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정의 도시지역 주민과 제휴에 의해서 안정적 이용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요즈음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지역특산품의 선전이나 자기 지역에 많이 찾아오도록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회사원들은 하기휴양이나 보양관광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은 M.T.와 야유회를 위해서 이러한 농촌지역을 찾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을 제휴, 협력의 체제로 확립함이 필요하다. 이때 농산어촌과 도시 내방자와의 제휴형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감안 되어야 한다.

가. 제휴의 형태

- (1) 도시와 농촌의 행정기관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이용 또는 상호 교류를 위한 협정이여야 한다.
- (2) 자매결연 관계의 형식을 맺는 것이 좋다.
- (3) 초중고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다.
- (4) 도시의 종친회나 지역주민회, JC.와 제휴하는 것이 좋다.
- (5) 기업체, 은행등의 고객서비스로써 도시주민의 이용객과 농촌체험학교 개설을 행하는 것이 좋다.

나. 주민의 이용

- (1) 농산어촌 지역의 숙박시설 등을 도시주민에게 알선할 수 있을 것
- (2) 초중고 학교의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행할 것
- (3)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를 행할 것
- (4) 문화적인 단체와의 교류를 행할 것

다. 농산어촌의 시설

- (1) 민박이나 공적 숙박시설(학생수련원, 교육연수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
- (2) 도심의 농협(유통회사)이 농촌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직송에 참가 할 수 있을 것
- (3) 도시생활자의 내방객 증가에 따라서 농·수·축·임산물의 기념품 개발과 교육적, 오락적 요소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⁷⁾

이상과 같이 농촌지역 주민은 현대적 감각의 경영기술이 부족하므로 지역자치단체나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농촌지도소와 같은 교육기관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다.

제 2 절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전략

1. 사업계획의 수립

가. 농촌에서의 관광레크리에이션 개발동향

요즈음, 우리나라는 핵가족 시대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평소 아이들에게 충분한 보살핌을 하지 못한 마음의 포기로 외식 기회를 갖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웃 친지와 인간관계의 유대를 위해서 가족끼리 동반여행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까운 야외(농촌지역)에 가서 향토 음식을 즐기고 공해에 찌든 마음과 몸을 정화하고 그곳에서 향토 음식을 즐기고 돌아온다. 이러한 행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이 변화할 때 마다 더욱 충동을 느끼고 있다.

7) 일본농촌개발기획위원회, 1980, 농촌공학연구, p. 21, 농촌개발기획위원회

예를 들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백운계곡에는 여름철을 비롯하여 4 계절 시원한 막걸리와 이동갈비를 먹으려고 많은 도시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 포천군 내촌면 송우리에는 보신탕 마을이 있는데, 주변의 우거진 소나무 숲과 농촌 풍경이 어우러져 도시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에는 순두부 마을이 있는데 계곡사이의 부락으로 주위의 산세와 마을 앞에 개울이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옛날 고향에서 먹던 순두부 맛이 향수를 달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부락들은 처음에는 한집이 시작했었으나 그 음식맛과 주변의 환경이 어우러져 한집 두집 경쟁적으로 증가해서 부락 전체가 부업형태 또는 전업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의 매력을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 농촌의 생활 문화, 생산기술등을 대상으로 본존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의 매력을 어떻게 인출해서 강조할 수 있을까? 셋째, 현재는 없어졌지만 재생, 재현 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넷째, 매력은 남아 있지만 크게 손상되어 있어서 어떻게 개선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다섯째, 찾아오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 매력의 자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어느 정도의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 또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경영이 성립될 수 있을 까를 정확하게 살펴서 평가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 특산품을 만들고 향토요리를 개발해서 이름있는 관광마을이 탄생하게 되고 이것은 년중 이벤트 행사의 개최로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향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지만 근래에는 참가형과 체험형의 욕구가 증대해서 외국의 농촌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시설들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농촌콘도미니움), 오토캠프장, 캐빈, 방가로, 롯지, 팬션, 민박 등이 있고, 레크리에이션 시설로는 다목적 광장, 테니스 코트 등 각종 스포츠 시설과 체험농장, 낚시터, 해수욕장, 스키장, 수영장, 사이클링크, 트림파크, 오리엔티링크, 미니 골프장, 잔디 스키장 등 각종시설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자원의 관광화로 관광마을을 조성해 가는 것은 날이 갈수록 확대 일로에 있어서 관광마을으로써는 활력의 원동력이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써 제공되고 있지만 마을 전체의 계획성 없는 개발로 무질서한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관광사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관광마을을 조성할 때는 몇가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지역사람들은 항상 생활의 일과로써 지내오던 일과 주위 환경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매력과 유인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재발견 하고 창조해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둘째, 관광객이 찾아오므로써 생기는 활력(마음, 물건, 돈, 정보 등)을 지역에 있어서는 순환, 축적,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

셋째, 관광사업은 그 지역의 자원만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인재, 기술, 정보를 총동원한 광범위한 지역 진흥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관광사업으로 새로운 관광마을 조성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지방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보다 밀접한 복합산업으로써 역할이 필요하며 또 그 지역과 지방 행정부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의 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양자의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의 육성과 협의체의 설치가 요망된다.⁸⁾

나. 사업의 추진체계

농산어촌이 1차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UR 대책 등으로 인하여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며 순응하려하는 몸부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즉, 무공해 농·수·축·임산물을 유인요소로 활용해서 2·3차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산업을 어떻게 관광사업과 접목하여 추진해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사업성패의 핵심으로써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 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5가지를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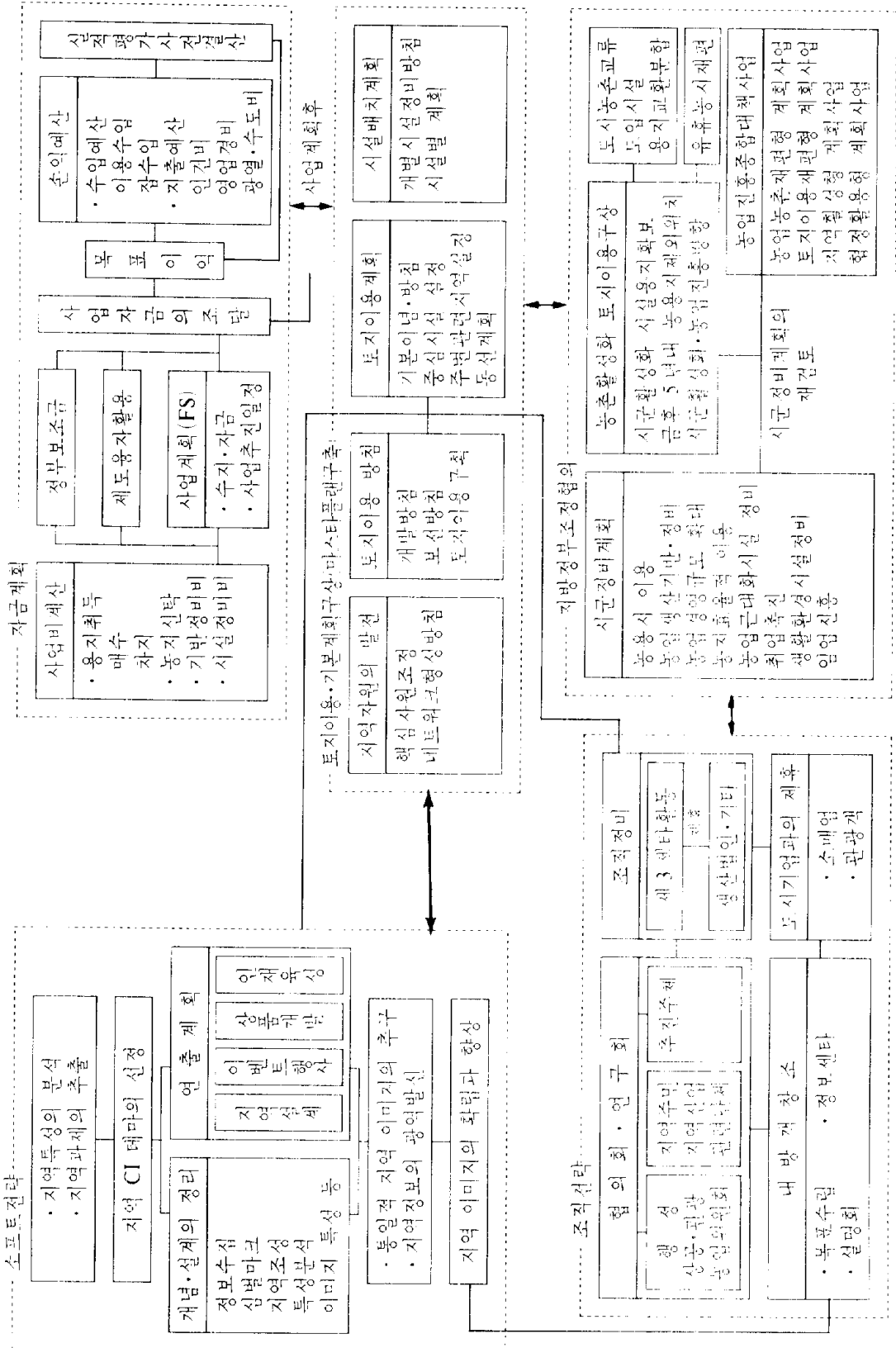
첫째, 농산어촌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것은 그 지역의 이미지 확립과 발전의 방향성을 정하고 또는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즉,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전개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보다 폭넓은 레크리에이션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둘째, 조직구조상의 전략이다. 즉, 사업추진을 개인농민이 하든 영농조직체가 한다고해도 행정 및 농업관련단체의 협조는 필히 최저한도의 관계유지가 있게 마련이다. 지역 진흥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행정, 관련단체 주변지역의 주민이 관련을 맺게 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은 도시주민이기 때문에 도시의 관련기업(여행사, 기업체, 유통업체 등)과 손을 잡게 되므로 이러한 조직들은 관광객의 증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셋째, 지방 행정부와의 조정협약이다. 사업추진, 기구에 있어서 민관공

8) 일본관광협회, 1994, 관광 337 호, p. 13, 일본관광협회

〈표 2-1〉 사업추진체계



* 자료 : 일본, 사연대응형 레저파크, p. 64

동의 협의 조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원활하게 모든 일이 잘 추진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지방 행정부의 협조로 농촌재개발 차원에서 농산어촌의 정비계획을 재검토 하게 되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계획서 작성과 관계 협의 및 새로운 개발을 위한 사업의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즉, 그 지역의 자원과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들의 이용방침(개발 및 보존의 범위설정)을 명확하게 하여 도입 시설들의 종류 규모 배치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계획시설들에 관한 사업비 산출을 한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시설의 도입과 정비등이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⁹⁾

다. 지역이미지의 확립

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왜 지역의 이미지 확립과 그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궁금하게 생각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 관광에 있어서는 이미지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이것은 관광객이 목적지역을 찾아올 때는 대개의 경우 그곳에 대한 지식과 주위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호기심을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인공레크리에이션 시설단지로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엄격하게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으며, 관광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이러한 인공 레크리에이션 관광단지와는 다른 지역산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9) 일본 종합 유니콤, -----, 자연대응형 레저파크, 종합유니콤, p. 63

농산어촌에 있어서 산업의 구조는 생산, 가공, 판매, 유통이라고 하는 단계로부터 성립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각 단계의 전과정이 동일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정되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지역과 협력체제(생산위탁, 가공위탁, 판매위탁 등)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변의 생산체제는 관광농촌부락조성의 시설운영체제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즉, 현재의 농·수·축·임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판매형태를 잘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므로 종래의 농업경영형태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개발동향에 따라서 지역의 생산, 경영체제와 협력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름있는 상표를 부착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개성있는 지역이미지를 조성해 나아가야 도시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이 생긴다.

지역 이미지의 확립과 양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지역자원의 발견과 조화가 중요하다. 지역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 계곡, 개울과 호수, 초원이라고 한 자연적 자원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으로써 역사적 인물, 절, 무형문화재(창, 극), 제사, 세시풍속, 전래동화, 문화 등이 있다. 이와같이 현재 관광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장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자원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보다 지역전체의 도입시설들에 대한 이미지 확립과 시설내의 수용으로 상품화, 이벤트화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질 수 있으며 개성있는 지역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의 활성화 대책이고 나아가서 농산어촌의 안정을 촉진하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가지만의 정부투자사업이나 각종 이벤트개최등의 단발적인 사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

고 기본적으로 농업에 있어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변화를 시도하여야 되고,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도입도 이러한 입장에서 정비되지 않으면 발전성이 없다. 여기서 농업에 있어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 1 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수·축·임산물 생산의 기술 개발과 향상이다. 산업혁명의 이노베이션(innovation : 기술혁신)은 전 사업 분야에 걸쳐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고도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산업 형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농촌 지도소, 농협, 축협, 수협, 임협 등 관계 기관과의 제휴에 의해서 기술지도체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새로이 도입된 시설과 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양질의 농·수·축·임산물은 생산자의 마음과 얼굴이 담겨진 지역특산물로써 소비자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 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기술의 개량과 신상품의 개발이다. 지역에 있는 가공공장과 협력해서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지역내의 관광업자(기념품점, 숙박업소들)와 계약을 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인근 중소도시에 출하시키기도 한다.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음에 대도시 진출도 가능하여 지며 이것은 판매 경로의 개척으로 많은 도시사람들이 생산지역을 찾게 되는 요인인 것이다. 제 3 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매점과 통신판매 체인점이라고 한 판매, 유통에 있어서 개혁이다. 또 지역에 있어서 정보센터의 정비(도시주민의 욕구와 도시측 정보의 지역환원)와 지역주민의 활력을 동원한 민박, 음식점의 정비와 향토요리의 제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제 3 차 산업의 혁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시설면에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 차 산업혁명에서부터 3 차 산업혁명을 통합해서 지역특산품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을 개발하는 전략을 세우고 제 4 차 산업혁명을 목표로 지향해 나간다면 흥미있는 시설들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표 2-2〉 농업형태의 재구축기구

생산형태 · 경영형태의 재통합	정보수집 · 시험연구 · 조직의 정비	시장정보, 최신기술의 정보수집과 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상품개발 생산체제의 강화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 정비와 고부가가치상품의 확보 가공품 개발과 유효한 판매대책에 의한 경영안정화 도모
	유통 · 판매 경로의 효율화	소비자의 얼굴이 보이는 유통경로 개발 소비자와 대화할 수 있는 유통 · 판매체제의 개발
	상표의 확립	유명상품의 개발 판매촉진 전략의 전개와 상표이미지 향상
	이벤트, 도시 · 농산 · 어촌 교류사업 충실	생산자의 마음과 소비자 욕구와 연결한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의욕을 도모한다.
	인재 육성	가공비용과 유통마진의 지역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농업기업가 육성

자료 : 일본, 자연대응형 레저파크 p. 65 종합유니콤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개발이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전체의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 이러한 거점 농촌지역 개발은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를 주어 전체 지역 진흥을 도모하게 되고 이것은 지역 주민의 의식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이다.¹⁰⁾

10) 일본종합유니콤, ?, 자연대응형 레저파크 p. 65, 종합니콤

라. 추진체의 결성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농촌부락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과연 지역주민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분명히 그 계획을 누가 수립했던 간에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주민은 일심단결하여 총화체제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획을 수립한 사람만이 마음만 급했지 지역주민의 반응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농산어촌지역주민의 교육수준이 낮아 잘살아 보자는 의욕만 앞서 있지 그 계획내용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찬성하는 사람수 보다 글썩라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둘째, 현재 농사방법만으로도 욕심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아쉬운 점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 셋째, 찬성은 하지만 자금능력이 없다거나 관광개발 될 경우 마을이 혼잡해 지거나 자녀교육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경우 대개는 집성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씨족간에 보이지 않는 암투로 어느 성씨가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무조건 반대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연 병든자식에게 눈 발팔아 돈마련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시키는 것과같이 어느정도 강제성을 띠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부락회의(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느정도 이해시키고 자생조직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때에 1차산업을 바탕으로 관광산업화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영농조직이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면,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동지적 결합체로써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도 양해하기가 쉽다. 사람들이란 이해관계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유지(개발위원회)들을 조용히 불러서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으쓱한 기분을 갖게하고 다시 마을 전체의

제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찬성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기서 책임자와 구성원들의 조직체를 결성한다. 이 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넣지 말고 사업이 잘 추진될 때, 가입 희망을 표시하면 아량을 베풀어 가입시키는 것이 좋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익이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게 한다면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그 비전(vision)이 확실하여 확신을 가질 때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현재의 여건을 약간 변경하여 경영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막대한 행정지원(자금)을 하면 처음에는 기분에 들떠서 몸만 바쁘지 위압감을 느낀다든가 생각보다 어느 개인에게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조직체가 와해되기 쉬우므로 생산기반시설은 일찍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자금이 필요한 규모가 큰 시설들은 사업시작 후 1~2년 후에 도입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재미를 느껴가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지도가 선행되어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과 같이 추진협의체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장단점은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주도형

주민주도형은 제일 쉬운 조직체이나 아이디어면이나 담보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부업형태의 경영참여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민 주도형의 구심체는 마을 개발위원회, 작목반, 영농회 등이 될 수 있다.

(2) 관주도형

관주도형은 지방 정부가 직접 또는 별도 조직 운영체를 조직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에 얽매이기 쉽고 서비스업에 대한 관료주

의가 발휘되어 관광객에 대한 불쾌감과 순발력이 약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그러나 각종 허가절차나 관계부서 업무협조는 잘 할 수 있으므로 조직원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책임자는 관에서 임명하여 소신있게 이끌어 가다가 정상 운영이 될 때에는 지역주민에게 이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농업법인형

농업법인형은 그 지역 출신의 외지 자본가나 단위 농협, 축협, 수협, 임협에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개발토록 하고 적정의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농어민도 영농법인을 조직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자체 예산 확보와 세제상 혜택이 있어서 매력이 크다.

(4) 제 3 섹터형 (민관협동개발방식)

농민들은 농지나 임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관광농업 상품개발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비하여 자금동원 능력도 부족하고 담보능력도 없어서 정책지원 융자금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디어나 자금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의 오해나 과도한 부동산 구입에 따른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실정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공동의 이익을 사전에 조정하여 주며 사업착수 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중립적 자세에서 협조, 지도, 감독,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때의 운영체는 기업농 형태, 즉 영농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농민의 토지나 임야를 감정평가한 후 현물투자하고 개발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외부자금 도입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모든 참여자는 월급을 받고 종사하며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자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의 발언권이 강해져 종속관계가 성립되지나 않을까 걱정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현재 영농방식으로는 도저히 농업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농외소득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 더 좋은 방법이 없으므로 현재의 영농수입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외부 자본가를 연결하여 자금을 도입할 때는 그 지역 출신의 연고가 있거나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투자처를 레저산업에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예상수익이 공산품 제조보다 적다손 치더라도 1차산업인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사람의 신정이 중요하다. 이것은 한 회사, 한 농촌돕기 운동과 같이 더불어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야 하며, 유력기업의 투자처 알선차원에서 시행되면 실패되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활동이 행해져야 하고 취득 상속세의 감면뿐만이 아니라 투자가 시작된 후 5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농어촌정비법 규정의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 의거 관광농업 개발시에도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시설의 도입

시설을 도입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관광에 관련하여 수입을 증대한다는 것은 그 수입원이 첫째, 음식이요 둘째, 숙박 셋째, 관광기념품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업구조와 지역 특색에 알맞는 시설이 도입되어야 하지 다른 곳에서 보았던 시설이 좋아서 그대로 도입되면 안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시면 먼저 집안을 치우고 그리고 정성을 다한 성의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이에 수반되는 것들을 확대하여 관광마을 조성에서도 마을환경정비와 향토음식개발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리

한 때에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영계획방침

시설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것은 그 지역을 찾아오는 도시사람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된 시설들을 보면 유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역점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시설들은 훌륭하지만 이용자가 적고 자본회수가 생각했던 것 처럼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설개발에 있어서 유치권을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유치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지역특성을 파악해서 자기의 지역과 경합관계에 있는 유사한 시설들의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등 기초자료조사가 필요하다. 즉 경영규모, 이용상황, 부지면적, 교통접근관계 등을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시설은 어떤 형태 또는 경영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정하여야 한다.

또 중점목표의 선택과 동시에 중요한 사항은 개발 또는 경영하고자 하는 시설에 있어서 경쟁적 시설과 분명한 기술 등 몇가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꼭 있다. 이때에는 도입되는 시설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해서 판단한다음 경영의 방향과 이념을 설립해 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이미지가 흐트러지기 쉽다.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항목을 정리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정리해서 개발시설의 경영방침을 확립한다. 여기서 사업경영상의 중요한 방침은 경영이념의 구축 주요유치권의 설정, 주력상품(유형, 또는 무형상품)의 개발과 상품구성(서비스의 질도포함), 공간설계의 이념, 인재확보와 육성, 지역의 생산체제(가공, 유통체제도 포함)와 협조방침, 지역사회(농촌사회)와 협조방침,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판매촉진, 광고선전(도시지역과 연결관계) 전략, 신상품 개발, 차별화전략(상표화), 외부자본(교통, 여행사도 포함)과의 제휴방침, 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¹¹⁾

〈표 2-3〉 유치권 설정의 사고방법

분류	유치권 인구	주경영 형태	이용자 행동	경영방식
1 차 유치권	0.6 만명	부업형		
2 차 유치권	0.6 만명 ~ 4 만명	수익지향형 경영 (소매점형)	주말이용형	지역산품 제공형
3 차 유치권	4 만명 ~ 30 만명	대량판매형 경영 (슈퍼마켓형)	계절이용형	지방도시 레크리에이션 제공형
4 차 유치권	30 만명 ~ 100 만명	복합종합형 경영 (백화점형)	숙박 이용형	경유지형 대도시 상표형
5 차 유치권	100 만명 ~ 200 만명	리조트형 경영	목적형	
6 차 유치권	200 만명 ~			

나. 도입시설의 종류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는 도입시설들이 일반관광지와 같은 인공레크리에이션 시설보다는 자연을 응용해서 어울리는 시설들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청룡열차나 바이킹, 메리고라운드, 회전복마 등 전통시설보다는 같은 전통시설이라도 로데오나 밤바카 정도의 시설도입이 좋고 경사지를 활용한 잔디스키나 눈썰매장, 천수담에는 바다 골프 등오락시설이나 잔디광장, 각종 다목적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개 관광농촌마을에는 농업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신화된 생산기반시설인 체험학습시설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관광농원에서 관찰, 재배, 수확의 직접체험이나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실습을 할 수

11) 전제서, p. 72

있는 실험실 시설들이 필요하고 가족단위, 단체객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숙박시설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 외에 기반시설로써 도로정비, 상하수도, 전화, 전기 등의 시설정비가 필요하다.

이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시설들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의 기능 밖에 못하는 시설들이 있다. 예로서 화장실은 필요불가결 하면서 수익은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우선 순위나 투자 방법에 있어서 완전무결하게 설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시설로 했다가 자금능력이 생겼을 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도입시설의 선택을 해야한다.

〈표 2-4〉 관광농업지역의 도입시설 종류

종 류	내 용
체험시설	농작업, 재배수확 등의 체험농장, 농산가공, 목공예실, 족세공예실, 도예실습실, 종이가공실, 자연동식물 실험실, 우주관찰실, 탐조시설
관광농업시설	관광농원, 허브농원, 휘성파크, 관광목장, 관광식물원(온실포함), 과수공원촌, 자연휴양림, 산림공원, 향토박물관, 농업박물관, 어촌박물관, 자연박물관
레크리에이션 시설	야외광장, 다목적 스포츠 광장, 승마장, 오리엔트링크 코스, 심신단련장, 수영장, 미니골프, 골프연습장, 미로찾기, 템버링, 싸이크링크 코스, 낚시터, 잔디광장, 교통공원, 자연학습원, 약초원, 야조원, 야생식물원, 소동물원, 수생식물원
숙박시설	케빈, 펜션, 롯지, 민박, 농촌콘도미니움, 연수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오토캠프장
기반시설	도로정비, 전화,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농산물집하장, 농산물 공동판매장, 저온 냉장고 시설, 농기구 창고, 비닐하우스(유리), 식물공장, 유기농업농장, 폐수처리시설
자연건강 식품시설	전통·향토음식 조리실, 야생초식, 과일채취 조리실, 농원과실주 및 가공 제조교실, 약초채취 및 조제교실

3. 지역이미지(Image)의 조성

현대 관광은 이미지의 확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대략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어떠한 기대감에 대한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관광농촌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방문 동기와 목적, 희망 활동과 불편 사항, 필요시설 및 상품 그리고 농원에 대한 평가 및 운영 개선사항을 종합 분석 정리해보면 현재 이용자들은 이웃 관광지에 왔다가 또는 다른 사람이 가자고 권유해서 그리고 전에 와 보았더니 좋아서라든가 관광농원의 이미지가 좋아서 방문하게 되어 자연환경에서의 휴양과 관광농원에서의 향토음식을 즐긴다든가 친구, 친척, 가족 등의 친목활동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사항은 관광농원이란 이미지가 말해주듯, 새, 개구리, 매미 소리 등의 시골 풍경 감상과 낚시 철렵, 물고기 잡기 와 같은 옛날 시골 생활의 추억을 살릴 수 있는 분위기와 휴양시설(오솔길, 잔디밭 등)이 잘 꾸며진 자연환경 속에서 휴양하며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토속음식(보양, 보약음식 또는 토속주 등)먹기와 신선한 과일 따먹기 및 농작물의 재배, 수확체험 그리고 무공해 농·수·축·임산물(종자, 비료, 농기구 포함) 및 토산품을 사가기를 원하며, 현재는 30~40 세(55.4%)의 이용자가 많고 어린이 이용이 적지만 자녀의 자연 공부 및 심신수련의 장소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어린이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추면 새로운 이용자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¹²⁾

이상과 같이 관광농촌 마을의 이미지 조성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의 일부를 반영함으로써 지금 까지 그 지역 환경이 적응하면서 살아온것을 새로운 탈바꿈으로 농산어촌의 고유미를 살리면서 환

12) 유선부, 1992, 한국관광농업의 운영실태 분석과 조속중대방안에 관한 연구, p. 113

상적인 관광농업의 개발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의욕적인 개발에 몰두한 나머지 산악지역에 있어서 해안지역에서나 알맞는 시설이나 음식(회)이 개발된다면 또는 다른 지역에서나 어울리는 시설을 모방한다면 그 마을은 아주 이상한 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관광농촌 마을을 조성할 때에는 현황분석과 성격의 부여로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 형성으로 이미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의 독창성을 살릴것

우리들은 가끔 회식 모임에서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른다. 즉,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이러한 노래를 애창하는 것은 몸은 도시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농산어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 하는 말과 같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의 농촌지역에서는 향토수종인 진달래를 많이 심고 가로수는 살구나무 그리고 집울타리에도 살구나무와 꽃을 많이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것을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계절성을 감안하여 그 지역에 도시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 또는 유치 목표 시기에 개화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한 농가에서 6,000 평의 자기 토지에 창포만을 심어서 개화기에는 그 꽃을 감상하려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 농가는 꽃감상의 기회와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년중개장으로 관련기념품(꽃무늬가 들어간 티셔츠, 티스폰 등)을 판매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 목석원의 경우는 ‘갯돌이의 일생’이란 주제

를 가지고 제주도 산야와 바닷가에서 수집한 돌로 28 개 장면의 갑돌이 일생을 형상화 하고 있는데 전설을 돌맹이와 나무가지로 형상화해 뚝으로써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깜찍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¹³⁾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의 독창성 있는 주제들을 살리는 것들로써 많은 사람들의 유인력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설의 경우는 자본만 있으면 단기간 내에 조성할 수 있으나 어우러진 나무의 숲이나 분위기는 단기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을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합심 동결하여 사전에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나. 소박한 농촌인심을 살릴것

도시로부터 농산어촌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기에서의 서술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많은 욕구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다. 그러나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갈까.

또 농산어촌 지역에서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증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가지 시설의 도입과 향토음식 개발로 도시인에게 제공하지만 그 속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바가지 요금으로 나타난다면 그곳을 찾아온 사람이 또 다시 그곳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산어촌에서의 생활과 문화는 옛부터 나름대로의 인간미 넘치는 인심과 소박함이 있었다. 그래서 민박에 관광객이 숙박할 때 돈은 받고 향토음식을 제공하지만 써비스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찌서 내놓는다면 관광객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떠나갈 때는 시골 된장이나 오이, 호박 몇개라도 가지고 가서 맛보시라고 선물로 내놓는다면 그사람은 그 지역에대한 추억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13) 박석희, 1989, 신관광자원론, p. 248

그러면 그 서비스한 물건들이 얼마정도의 가격이 될 것인가? 대개의 경우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돌아간다. 또 가지고 온 돈이 부족하여 그냥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올 것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것이다.

또 민박농가에서 방문했던 사람에게 가끔 전화를 하고 안부와 불편했던 점이 없었는지 묻는다면 자연스런 인간관계와 유대가 깊어질 것이다.

다. 지역환경과의 조화를 이룰것

관광농촌마을의 조성은 지역에 알맞는 작물의 재배방법(유기농법의 도입)이나 경영방식을 약간 변형시키거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이와 관련된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생산기술에 관한 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시설이 좋은지 어떻게 꾸며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더욱이 건축의 양식이나 색깔, 배치 등은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는 일로써 어려운 문제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농원의 경우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민박이라고 지어놓은 건축물이 군인들의 병커같은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필요이상 호화스런 시설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도입되는 시설들은 고급화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농촌 실정으로는 자본력이 약해서 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시 건물로 적은 비용에 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이러한 때에 지역환경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 3 절 관광농촌마을의 마케팅 전략

1. 관광농업 상품의 마케팅(Marketing)

관광농업은 생산기술보다 농업경영에 비중이 크고 다시 관광과 접목되어 3 차 산업화 한 것이다. 앞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며 교통의 발달, 교육수준의 향상, 메스컴의 발달, 도시공해로 부터의 탈출 등 주요인에 의해서 레저(Leisure) 산업은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관광농업의 수요시장은 무궁무진하며 그 존립형태는 중소기업농의 형태로 지역조건에 따라서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그래서 농업도 레저 산업시대의 도래에 맞춰서 존립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전념했지 어떠한 농산물을 판매하면 좋을까 하는 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관광농촌마을의 조성 목표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지역개발, 환경보전과 도시민의 휴양장소제공, 도농교류의 촉진,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등 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이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관광농업의 운영실태는 모방경영이 많고 대부분 찾아오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농원의 각종 시설물들은 자본이고 자본이란 회전율을 높여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관광농원의 이용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적극적으로 도시지역인 관광시장을 찾아가서 관광농업 이용에 대한 욕구를 환기 시키고 동기를 유발시켜서 구름같이 관광객이 찾

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관광농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 으로서는 마케팅 믹스 즉, ① 신상품개발전략, ② 가격정책전략, ③ 유통 경로 전략 ④ 홍보,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가. 신상품 개발전략

(1) 개발방법

관광농업 상품의 개발은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이구 동성으로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관광농업은 모방경영이 많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나 외국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의 도입이 많다. 그러나 관광농업상품의 판매는 자기가 생산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관광객의 욕구에 맞는 상품의 판매이므로 관광객 욕구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관광농업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향은 첫째, 자연환경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회복과 둘째, 친구, 친척 가족 단위의 향토 음식을 겸한 친목활동 셋째, 무공해 농·수·축·임산물의 재배, 또는 수확이나 넷째, 자녀들의 자연학습 및 심신수련과 같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농업 상품의 개발은 이와같은 욕구 충족에 맞는 상품이 개발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범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 즉,

- 가)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의 수준
- 나) 관광농업 지역을 찾는 동기와 목적
- 다) 교통수단
- 라) 소비구조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자가지역의 관광농업 상품 개발과 소비자층을 선택 하게 된다.

관광농업 상품중 가장 좋은 상품은 풍부한 자연환경 즉 맑은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 저야 하고 그 외에 유형, 무형의 관광농업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농업 상품은 그 특성상 1차 산업인 농·수·축·임산물을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농촌지역에 찾아오게 하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 지게 하는 상업농이므로 유형 또는 무형의 관광농업 상품이 독립적으로 존립해서 판매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데에도 농·수·축·임산물 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서 성과를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복합성을 가진 패키지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사의 소그룹이 그냥 찾아와서 향토음식을 겸한 친목활동을 하도록 음식상품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성격의 관광농업을 개발하고 회원모집에 각 분야의 학술단체 저명인사 교수 의사 변호사 최고경영자 등에게 분양하면 이들에게 정년후에 무력함을 달랠 수 있는 일거리가 제공될 수도 있어 2박 3일 또는 1주일의 숙박을 겸한 사원교육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연학습 심신수련 등의 상품 개발로 가능하다. 이러한 관광농업 상품은 체재일수를 증가시켜서 향토음식 판매 때보다 음식, 숙박, 기념품 판매, 시설 이용료 등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광농업상품의 개발은 유형의 농산물이나 기념품만이 아니고 풍부한 환경, 장소제공이나 연수교육시설의 설치로 얼마든지 다양한 종류의 관광농업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광농업상품의 개발은 자기 관광농업지역의 유치권을 상대로 관광객 욕구 파악과 이용객층의 선택으로 주력상품과 부수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광농업경영은 연중 개장형으로 운영되어야만 종업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성립되므로 월별로 이벤트 상품의 개발이든
가 요일별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학생을 상대로한 농사체험, 자연
학습, 심신수련이든가 토요일, 일요일 연휴에는 가족단위 향토음식같은 주
력상품과 부수 상품을 배합해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광농업 상품의 개발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유행을 창조해서 새
로운 수요객층을 개척해 나가듯이 관광농업 경영자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
어의 개발로 새시대에 맞는 관광농업 상품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앞으
로 많이 생겨날 관광농업 경쟁시대에 대비해서 자기 관광농업 지역에서만
이 창출해 낼수 있는 관광농업상품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농업이 앞으로 농촌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좋은 결과를 초래한
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검토없이 기반시설에 과잉투자하고 수익발생 시
설에는 소액투자한다면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흑자도산하기 쉽다. 그래
서 관광농업 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관광객의 욕구 파악에 의한 대상선정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 개발비용, 개발기간, 자금회전, 수익분석을 검토한
후에 시대성과 자기능력에 맞는 장기, 단기 상품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
하다.¹⁴⁾

(2) 유형, 무형 상품의 종류

(가) 활동별 개발내용

〈표 2-5〉 참조.

(3) 프로그램의 작성방법

(가) 자연체험활동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도시환경속에서 성장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연과 접하는 기회가 적어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일

14) 류선무, 1993, 관광농업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p. 66, 농촌진흥청

〈표 2-5〉 활동별 개발내용

내 용	개 발 대 상 활 동
관광농원에서의 활동	각종 과일따기, 딸기따기, 감자캐기, 고구미캐기, 산채뜯기, 버섯따기, 등 각종 채취활동 식물공장 관람, 꽃 감상·이름 맞추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견학 정소관리 및 짓짜기, 토끼·양털깎기, 가축사육 물놀이, 등산, 각종스포츠(싸이클, 테니스, 바다카프, 케이트볼 등)활동 민속놀이활동(재기차기, 널뛰기, 썰매타기, 자차기, 팽어치기, 공기놀이, 그네뛰기, 연날리리기, 인형극 등)
체험농원에서의 활동	동식물의 채집, 꽃밭가꾸기, 씨앗뿌리기, 벼베기, 씨앗채집, 누에치기, 나무가꾸기(전지, 전정, 접목, 삽목, 수정 등) 목공예 실습, 흙공예 실습, 도자기 만들기 야생조류의 관찰, 곤충 및 식물의 생태관찰 및 실험 천체관찰(별자리 그리기)
농산가공 활동	김치담그기, 손칼국수 만들기,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한과 만들기, 배주 만들기, 부 만들기 과실주 만들기, 썸 만들기 치즈 만들기, 캬피스 만들기
도시교부 활동	농업 생산 행사에 참석(귀농일), 노인정, 유적지 지킴, 부업단지, 농장 방문 농촌행사에 참석(민속행사), 농산물 가공공장 및 농업관련 관계기관 견학 도시와 농촌학생 교류행사(민박) 민속놀이 배우기(농악, 탈춤 등) 전설 이야기 듣기(역사, 인물, 기념물 등) 예절 배우기(제사지내는 법, 족보 보는 법, 삼상오륜 등)
농·수·축·임산물 판매활동	무공해 농·수·축·임산물의 판매(유기농산물, 수경재배 농산물) 향토음식 판매(보신, 보양, 민속주) 각종 꽃(분재, 선인장, 난, 질화) 판매 농기구(꽃삽, 꽃가위, 화분), 각종씨앗(채소, 화훼, 묘목), 비료판매

환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콘크리트 숲속에서 자연과 유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체험 활동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일부로써 인간의 위치를 알고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상품을 개발해 본다.

① 자연과 인간

㉠ 개요

자연은 수많은 생명이 이어진 고리로써 인간도 그 고리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문명이란 이름으로 자연의 균형을 깨뜨려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면 건전한 자연관을 형성해야 한다. 자연농장 활동은 오랜 세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왔던 농업을 청소년들에게 수련거리로써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인생관을 형성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한다.

㉢ 과정

- 자연의 변천,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의 차이 등 여러가지 자연에 대한 사고방법과 바람직한 자연인식에 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
- 조별로 강의를 듣고 느낀점을 토론하고 각자의 자연관을 발표한다.
- 분임토론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한다.

○ 활동 1. 강의

준비물 필기도구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 자연관의 역사적인 변천과 동·서양의 자연관의 차이에 관해서 강의를 듣는다.
- 자연관의 차이에 따른 삶의 방식의 차이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에 관해서 설명을 듣는다.

유의사항 : 강사에게 강의주제와 참가자들의 수준 강의장소 강의 시간을 사전에 알려준다. 참가자수에 적합한 강의장소를 선택하고 참고자료로 유인물이나 게시물을 준비한다.

○ 활동 2. 토론

준비물 필기도구

분임토론

- 분임토론을 위해 조를 나눈다.
- 조별로 모여 서양의 자연관과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 논의한다.
- 동서양의 자연관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 자연관의 차이에 따라 삶의 방식과 자연에 대한 대처방법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 한다.
- 각자의 자연관을 발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한다.

○ 종합토론

- 조별토론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조별 대표가 토론한 내용을 발표한다.
- 자연농장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연관을 정립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각자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다.
- 강사나 지도자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종합토론을 마무리한다.

○ 활동 3. 평가

- 참가자들에게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관해서 미리알려주었는가?
- 주제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였는가?
- 강사에게 사전에 강의 주제와 참가자들의 수준, 강의장소, 강의시간을 알려주었는가?
- 참가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인물이나 게시물을 준비하였는가?
- 강의와 토론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였는가?
- 활동전에 강의장소를 확인하고 좌석배열에도 유의하였는가?
- 정해진 시간내에 강의를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는가?
- 강의가 끝난 후에 질의와 응답이 자유롭게 이루어 지도록 유도했는가?
- 토론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는가?
-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나) 농촌이해활동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한다. 생산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인류가 처음 생산을 시작한 곳은 농촌이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이루어 지면서 점차 농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농현상으로 농촌에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농촌은 더욱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가고있다. 따라서 농촌이해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이 농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먹거리의 생산처임을 알고 우리 농촌과 농민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이라는 제목의 상품을 개발해본다.

① 우리몸엔 우리농산물

㉠ 개요

최근 들어서 많은 양의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입 농수산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물은 운반과정에서의 변질을 막기 위해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보다 일등히 낮은 가격으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리 농촌의 생활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의 문제점을 알아 분으로써 우리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인형극과 사진전 활동을 통해서 수입 농산물의 문제점과 농촌의 현실을 알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에 앞장 서도록 한다.

㉡ 과정

- 농수산물 수입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형극을 구성해 본다.
- 우리 농산물과 농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회를 갖는다.

○ 활동 1. 수입농산물의 문제점 알아보기

준비물 : 보조지, 마분지나 종이접시, 나무젓가락이나 막대기, 분드나 스퀘어 테이프, 색종이, 색연필, 효과음악

조사와 대본쓰기

-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사한다.
- 현재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다.
- 수입농산물이 우리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고발하는 형식의 인형극 대본을 창작한다.

인형만들기

- 등장인물의 특징을 분석한다.
-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인형을 제작한다.

- 인형을 만들 때는 종이, 종이봉지, 버리는 양말이나 헝겂, 스티로폼 등 여러가지 재료를 활용할 수 있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종이고리 인형과 막대기 인형이 있다.
- 종이고리 인형은 손가락에 끼워서 움직이는 것으로 크기가 작으므로 관객이 소규모일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막대기 인형은 종이접시가 두꺼운 종이에 나무젓가락 등을 붙여서 만드는 것으로 인형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인형극 연습과 발표

- 참가자들의 성격에 맞는 배역을 결정한다.
- 배역이 결정되면 모두 모여 맡은 역할에 따라 대본을 읽는다.
- 인형의 크기에 맞는 무대를 꾸민다.
- 효과음을 준비한다.
- 대사와 인형의 동작을 연습한다.
- 인형극을 상연한다.
- 인형극을 마친 후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농촌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의사항 : 인형극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짧고 명확한 내용으로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인형을 등장시키는 것이므로 개성있는 인물 설정과 청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대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대에 올릴 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인형을 작동할 때 장갑을 사용해 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활동 2. 우리농산물 사랑하기

준비물 : 사진기, 필름

- 사진전의 주제를 정하고 사진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토론한다.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한다.
- 개인별 또는 조별로 나누어 미리 알아놓은 장소로 나가 사진 찍을 대상을 찾는다.
- 적절한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 사진을 찍는다.
- 사진을 현상·인화한다. 그 중에서 잘 된 사진을 선정해 전시회에 알맞는 크기로 확대 인화한다.
-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본다.
- 전시공간이 확보되면 작품을 보기 좋게 배열한다.
-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 전시회를 마친 후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농촌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의사항 : 사진전의 주제는 우리농산물 애용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폭넓게 선정할 수도 있고, 좀 더 내용을 세분화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과일 사진전이나 우리 축산물 사진전, 농촌 풍경 사진전 등을 비롯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의 풍경을 담을 수도 있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수입농산물에 관한 사진전도 기획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사진을 잘 찍는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사진을 찍는 과정에 우리 농산물을 아끼는 마음을 길러주자는 것이므로 사진을 찍고 전시회를 갖기 이전에 그 기본 취지를 알게 하는데 치중하도록 한다.

평가

- 준비활동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였는가?
- 참가자들에게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관해 미리 알려주었는가?
- 활동 전에 이 활동이 갖는 의의에 관해 설명하였는가?

- 활동전에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관해 설명하였는가?
- 활동전에 농산물 수입개방과 수입 농산물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였는가?
- 참가자들의 수준에 맞게 활동 내용을 설명하였는가?
- 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는가?
- 농산물 수입개방과 수입 농산물에 관한 조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본이 창작되었는가?
-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는 인형을 제작하였는가?
-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었는가?
- 인형극과 사진전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였는가?
- 활동이 끝난 후에 느낀점, 의문점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였는가?

(다) 농사체험 활동

오늘날 경제개발과 성장이 가져다 준 물질적인 풍요는 청소년 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쁨을 모른채 소비의 주체로만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들에게는 농산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하여 땀흘려 일하는 기쁨과 노동의 신성함을 느끼고 농작물이 성장하는 모습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사체험 활동 영역에서는 간단한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배우고 가축의 사육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농사캠프”라는 제목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① 농사캠프

㉠ 개요

청소년기에 야외에서 보낸 몇일동안의 캠프 활동은 오랜 시간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농사캠프는 관광농원과 같이 청소년 활동이 가능한 농장의 야영지나 민박을 이용해 단기간의 농사체험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자연농장 활동을 집중적으로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 목표

농장에서의 캠프활동을 통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농사체험을 해보고, 야외에서의 집단 생활을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 과정

- 캠프가 가능한 농장을 알아보고, 활동할 날짜와 기간, 교통편을 결정한다.
- 정해진 날짜에 농장으로 가 캠프활동을 시작한다.
-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활동을 진행한다.
- 일정을 마치고 캠프장소를 정리한 후 귀가한다.

○ 세부일정내용

- 집합 및 출발 :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명찰과 기념품, 일정표를 나누어 준다.

별미하는 참가자를 확인해 멀미약을 먹인다. 준비물들을 점검한 뒤에 참가자들을 승차시킨후, 다시 한번 인원을 점검하고 출발한다.

- 이동 : 나누어 준 유인물을 보도록 하고 일정을 소개한다.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와 간단한 율동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오락시간으로 활용한다.
-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 농장에 도착하면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하고, 자기소개 시간을 갖는다. 숙소나 야영지의 이용법을 알려주고, 각자의 짐을 정리하도록 한다.

〈표 2-6〉 농사캠프 일정표

날짜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06 : 00 ~ 08 : 00		· 기상 및 명상 · 체조 · 아침식사	· 기상 및 명상 · 체조 · 아침식사
08 : 00 ~ 12 : 00	· 집합 및 출발 · 이동 · 농장 도착	· 농사체험 활동 · 신체활동	· 평가 및 폐회식 · 견학활동 - 축산농장 방문
12 : 00 ~ 14 : 00	· 점심식사 ·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 점심식사 · 휴식	· 점심식사 · 출발
14 : 00 ~ 18 : 00	· 강의와 토론 - 자연과 인간 · 관찰활동 - 들꽃 관찰 - 지렁이 관찰 - 거미 관찰	· 강의와 토론 - 더불어 사는 길 · 농촌 알기 활동	
18 : 00 ~ 20 : 00	· 저녁식사 · 휴식	· 저녁식사 · 휴식	
20 : 00 ~ 24 : 00	· 전통문화 활동 - 농악놀이 · 친교활동 · 취침 · 지도자 회의	· 발표회 - 인형극 발표 - 사물놀이 발표 - 농요 발표 - 소고춤 발표 · 캠프파이어 · 취침 · 지도자 회의	

제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 강의와 토론(자연과 인간) : 전문가를 모시고 자연에 대한 사고 방법과 바람직한 자연인식에 관해 강의를 듣는다. 조별로 나누어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토론하고 각자의 자연관을 이야기 한 후, 전체가 모여 종합토론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연과 인간’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한다.
- 관찰활동 : 논밭 주변에서 자라는 들꽃을 관찰해 봄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논밭에서 사는 지렁이와 거미를 관찰해 봄으로써 이들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자세한 활동방법은 ‘들꽃과의 만남’과 ‘예쁜 지렁이 귀여운 거미’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한다.
- 전통문화활동 : 전문강사를 모시고 농악놀이를 배우고 실습해 봄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농민들의 정서와 농촌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간단한 사물놀이 방법과 농요부르기 소고춤을 배운다. 자세한 활동방법은 ‘신나는 농악놀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 친교활동 :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자연스러운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조별로 조장을 선별하고 조 노래와 조 구호등을 준비해 발표한다.
- 지도자 회의 : 오늘의 활동내용을 검토하고 내일의 활동을 계획한다.
- 농사체험 활동 : 농장의 논밭을 돌아보고, 농작물들을 관찰한다. 손질이 필요한 것은 손질해 주고 익은 것은 수확한다. 수확한 채소는 점심식사 때 이용한다. 활동이 끝나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자세한 활동방법은 ‘채소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한다.
- 신체활동 : 야외활동의 특성을 살려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농장 근처에 있는 산을 오른다거나 개천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맨발로 흙위에서 노는 시간을 갖는다. 맨발로 노는 자세한 놀이방법은 ‘맨발로 흙을’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한다.
- 강의와 토론(더불어 사는 길) : 전문가를 모시고 농업의 환경 효과와 유기농업의 필요성에 관해 강의를 듣는다. 조별로 나누어 강의를 듣고 느

긴 점을 토론하고, 전체가 모여 종합 토론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 사는 길’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한다.

- 농촌알기활동 : 우리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고, 특히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즉석 대본을 만들어 있는 재료를 활용해 인형극을 꾸며본다. 인형극의 준비가 어려우면 연극으로 꾸며 본다. 자세한 활동방법은 ‘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한다.
- 발표회 : 전통문화활동 시간에 배운 농악놀이를 사무놀이, 농요부르기, 소고춤으로 조를 나누어 발표하고, 또 농촌알기 활동 시간에 준비한 인형극이나 연극을 발표한다.
- 캠프파이어 : 모닥불을 피워 캠프활동의 마지막 밤을 축제 분위기로 이끈다. 모닥불 주위에서 게임과 노래, 율동 등을 즐기고 장기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농악놀이의 판굿을 벌리고 캠프파이어를 마무리한다.
- 평가 및 폐회식 : 캠프기간 동안의 전체일정을 평가하고, 각자의 활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폐회식을 하고 농장을 출발한다.
- 견학활동 :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축산 농장을 방문하여 축산기술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가축들의 생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세한 활동 방법은 ‘동물농장에서의 하루’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한다.

○ 유의사항

농사캠프의 일정은 구성의 편의상 2박 3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농사캠프 활동을 실시할 때는 활동 시기와 장소, 지도자의 의도 등에 따라서 3박 4일이나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또는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몇달에 걸쳐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세부일정의 내용도 지도자에 따라 자연 농장활동의 내용을 더 삼입할 수도 있고, 또는 자연농장활동과 관계가 없더라도 즐거운 캠프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실시는 지도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¹⁵⁾

나. 가격정책전략

관광농업상품으로 개발된 풍부한 자연환경, 잔디밭, 주차장, 진입로 포장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들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소제공을 위한 기반시설들은 투자비용이 많음에 비하여 서비스 시설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지 직접 수익을 발생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병이 나서 병원을 찾을 때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관광농업 지역에서의 식사는 향토음식 요금 외에 기분이 좋은 분위기라던가 품위있는 인적 서비스가 관광객의 욕구 충족으로 가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적 요소의 상품들은 분위기를 창출해서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유인요소이지 직접적인 수입원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관광농업 상품의 판매 수입원은 음식판매대금, 숙박요금, 기념품(농산물 포함)판매대금,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이다.

그래서 관광농업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찾아오는 관광객수를 많게 한다든가 둘째, 판매단가를 높여서 수익을 올리든가 셋째, 생산성을 높여서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상적인 방법은 첫번째 방식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같은 농업적 요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그 지역의 지역산업과 지역환경, 문화 등을 활용한 부형의 상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인해서 체재시간이나 체재일수를 늘리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가격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과일 따기 농원에서 수확, 포장, 출하비용의 절감으로 발생하

15) 박준기, 1993, 자연농장활동 p. 11, 51, 125, 한국 청소년 개발원

는 비용을 판매원가에 도입하여 관광객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선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 자연적으로 점심 때는 향토요리를 판매한다든가 숙박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면 이것은 농산물만을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의 증대로 수익의 발생이 많아진다. 이것은 관광농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화제 거리가 되고 이웃에 전해져서 좋은 선전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과실나무를 꺾는다든가 채취한 과실을 감춘다든가 하는 손실분량은 가격결정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관광객이 돌아갈 때는 대개 50% 이상이 기념품(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므로 상, 중, 하의 3 단계로 가격을 분류하고 대개 많이 사가는 중의 상품은 부담없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든가 하의 상품이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고품은 오후에 세일가격으로 처분하면 관광객들은 좋아한다. 이러한 판매기법은 신선도가 떨어져도 관광객이 소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므로 재고를 처분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서 가격, 질, 양 면에서 관광농업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자기 농원만의 특징적 상품이나 무형의 주력상품들은 정상 가격으로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다.

입장료의 경우에는 계절별(성수기, 비수기), 요일별, 연휴관계, 오전, 오후, 단체, 개인, 학생, 어른, 알선업체 등에 따라서 차별화의 가격결정이 필요하다. 다만 입장료의 징수는 관광농원의 내부시설인 서비스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입장객수를 늘려서 식사나 숙박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고 진입의 통제가 어려울 때는 시설별로 요금을 징수하거나 입장료 대신 청소비 명목으로 일괄 징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설 비용이 많이 투자된 별도시설, 즉 곤충원, 식물원 같은 시설들은 투자액과 유지관리별로 입장객수로 나눠서 입장료를 결정한다. 민

박이나 방가로의 숙박요금도 시설의 크기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관광농업의 경쟁시대에 돌입해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관광농업의 요금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관광농업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농원협회를 중심으로한 협정요금의 준수라든가 시설별로 해당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등의 신고로 바가지 요금의 인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관광농업의 가격정책 전략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서 검토,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관광농업상품의 생산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건설비, 영업비, 인건비, 에너지) 둘째, 고정비는 어떻게 변하는가(이자, 부채, 유지관리비) 셋째, 판매비는 어떻게 변하는가(수수료, 광고선전비, 세금) 넷째, 가격조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현금지불기간, 조건, 판매량, 보증금) 등을 관광농업 경영자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하며, 한편 관광시장에 대해서도 첫째, 판매상황은 어떻게 변하는가(경쟁관계) 둘째, 수요는 어떻게 변하는가 셋째, 시장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넷째, 상품이용률은 어떻게 변하는가 등이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제 결과에 근거하여 판매성과를 올리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격이나 가격조건을 높게 또는 낮게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의 여건이나 제품 정책을 검토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 유통경로전략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처럼 판매 경로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드물다. 더욱이 농수산물의 판로 선택이 생산자에 의해서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도매업자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근래에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정책으로 아파트 단지나 고속도로 주변에 직거래 상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관광농업상품은 제품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품 자체가 생산과 소비가 동일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광농업 상품은 개발·생산한 경영자가 직접 판매촉진 활동을 하면 판매수익이 증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도매업자(관광회사, 전문업체)와 판매 유통의 역할을 분담하는 수 밖에 없다.

즉 관광농업 경영자는 관광시장의 이용객층을 선택하고 찾아가서 자기 관광농업 지역의 상품들의 특징과 가격을 소개하는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관광업계에서는 인솔자나 방문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비를 포함하여 판매액의 10%를 교재비로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다음 기회의 재방문과 다른 고객을 소개받는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재방문을 위해서는 인솔자나 대표자의 고객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객관리 카드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취미, 방문했을 때의 목적 등을 누적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는 직업별, 단체별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방문횟수나 이용실적에 따라서 생일축전이나 연말에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가끔 시간이 있을 때는 경영자가 직접 안부전화를 해서 직장이나 전화번호의 변경유무를 확인하다든가 이벤트 행사의 안내, 방문했을 때의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문의하여 관광농업 운영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농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 유치권 내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반대로 관광객이 전화로 예약을 청하여 오는 수가 많다. 이 때에는 친절하고 간단하게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예약을 받아 두지만 혹시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약을 확인하고 이행 조건들을 설명하여 두어야

한다. 재예약은 방문했을 때의 서비스와 불만 요소들의 유부와 관계가 깊다.

한편 근래에는 관광회사, 청소년 심신수련, 자연학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단체의 요청으로 관광농원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과의 제휴 가능성은 신용도와 이용실적에 따라서 전속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가격조정도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첫째, 과실따기 관광농원에서 생산과정까지는 관광농업 경영자가 책임을 가지고 종사하지만 수확단계에서는 관광회사로부터 일시불로 대금을 받고 수확물의 처분권을 넘겨 주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관광농업 경영자는 판매후 영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농업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회사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청소년 심신수련이나 자연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게 일정기간 건물의 사용을 임대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도 건물사용이 무질서하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수가 많다.

둘째, 관광농업상품을 개발할 때에 투자부담을 이기지 못하거나 인력의 부족, 업무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숙박시설, 식당, 매점 등의 운영권을 외부업자에게 일정기간 전세금을 받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조건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관광농업의 이미지가 흐려지기 쉽다. 예를 들면 관광농원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푸근한 시골인심에 매력을 느끼는 관광객에게 사람에게 시달려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서서히 이용객들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과의 제휴관계를 맺을 때에는 첫째, 제휴의 상대방이 관광농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즉 단순한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의 보전과 자연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 관광농업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농촌지역의 개발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관광농업 경영자와 외부업자와의 계약이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때에는 농협이나 농촌지도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개입이 좋다. 셋째, 경영의 주도권은 관광농업 경영

자가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력이나 관광농업경영이 미숙한 입장에서 약삭빠른 외부업자와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경제적인 조건이나 관광객의 알선이라고 한 실질적인 것보다는 관광농업 그 자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숙박의 경우 요즈음 관광객의 이용실태는 좋은 숙박시설만을 고집하지 않고 민박을 선호하며 이동하면서 여러지역을 순회하며 휴가를 즐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광농원협회나 농협, 수협을 통한 체인이거나 콘도미니엄식의 운영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이상과 같이 판로의 선택은 관광시장의 위치, 판매내용, 판매지역, 고객의 구조, 그리고 결합의 가능성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서 판로선택이 결정되거나 결정적일 수 있다.

라. 홍보서비스전략

(1) 관광농업 홍보의 의의와 기능

일반적으로 관광지 홍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의 관광객이라도 더불어서 오게 하고 관광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효과를 높이는 데에 있다. 그 효과로서는 관광객의 소비행위가 지역외의 금전을 획득해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가져오게 하고 고용기회가 증대되며 지역산업의 진흥과 관련산업의 활성화, 자산가치의 증대, 그에 따른 세수의 증대 따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착안해서 큰 이익만이 추구될 경우에는 활기찬 관광농원의 특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한편 관광농업의 홍보효과로서는 도농교류의 촉진, 농촌에 대한 이해, 지역문화의 교류, 지역주민의 지역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 향토애의 고양, 농촌자원가치 증대에 따른 사회적 효과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관광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이

용객 모두가 관광농업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농업은 지역발전의 도화선으로서 지역산업, 지역문화, 지역환경을 활용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 관광행정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외국 예로서는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경 중심가에 사무소를 두고 관광사업자와 상공과 직원이 함께 상주하면서 관광객 유치활동과 토산품 판매활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근태에는 대만이나 한국에도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광선전과 광고홍보가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래 이것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주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한 광고활동(알림)을 가리키고 후자는 지역내에서의 이해관계를 제거하고 지역 외에 대한 지역이미지를 향상, 사회적 신뢰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정보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에 이용자의 쾌적성을 높이기도 하고 관광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정보활동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광선전과 관광홍보활동은 그 내용과 실천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나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관광농업의 홍보기능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관광을 하고 싶다든가 관광농업 지역에서 휴식, 오락,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관광의욕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때에 관광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시켜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한 행동이 관광농업 지역으로 찾아오게 하는 데에 관광농업에 대한 정보인 관광유발 동기가 필요한 것이다. 즉 관광농업 지역에서 즐기거나 볼거리, 먹거리는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는 어떻게 가면 좋은가, 그곳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교통편은 좋은가, 숙박관계등의 요금은 얼마인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현대의 관광은 자기가 알고 있던 이미지의 확인이라고 한다. 많은 관광

객은 관광농원에서 농촌의 풍경과 인심 그리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일들을 홍보자료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따라서 홍보자료의 배부는 이용객층과 지역을 선정해서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해서 욕구충족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안내 팸프렛이나 포스터의 제작은 문안, 도안, 색상, 배치, 재질 등 제작기법과 표현방법, 설명방법, 구성내용 등을 연구해서 제작해야한다. 왜냐하면 안내서는 관광객이 관광농업 지역에 오기전에 자기지역을 소개하는 자료이므로 관광객은 그것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므로 관광농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올 때는 요소요소에 안내판을 설치해 찾아가는 방향과 남은거리, 환영인사를 기재함으로써 궁금하거나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농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이때의 입간판은 자연미가 있게 제작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는 말과 같이 관광농업 경영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농업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해야 한다.

(2) 홍보방법

관광객들은 어느 지역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오나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때의 전달매체로서 우선 인쇄매체인 신문, 잡지, 우편이 있고, 전파매체인 TV, 라디오가 있으며, 전시매체인 입간판, 포스터, 애드벌룬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광농업 지역의 이용자 동반관계와 정보취득원이 친구, 친척, 가족, 직장동료인 점으로 보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고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과 고객관리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유력한 유명인사나 TV, 신문, 잡지사 기자를 초청해서 설명회, 이벤트 행사에 참가한 취지나 방문소감의 기사를 쓰도록 하고 또는 계절 뉴스로 취급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적

은 비용으로 선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대선전은 관광농업 지역의 혼잡으로 오히려 관광농업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이용자의 소감, 반응,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광고의 선전시기는 개원 또는 이벤트 행사 개최하기 1개월 전 정도가 좋다. 광고비용의 책정은 지역형편에 따라 매상고의 5~10% 정도는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형편에 비추어 관광농업 운영에 광고비용의 지출이란 인식의 부족과 자금력이 약해서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산업관광이라 하여 공장이나 농장을 관광코스에 의무적으로 편입하게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광농원만이 홀로 존립해서 영업을 하는 것 보다는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지화 지역산업(가공공장, 비닐하우스 단지, 축산단지, 부업단지 등) 그리고 지역환경과 문화재를 활용한 패키지 관광농업상품을 개발하여 숙박과 식사는 관광농업지역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도농 교류촉진에 의한 농촌의 이해를 도모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농림부에서는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문교부나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초중고학생의 농촌체험이나 심신수련을 위해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교통부에서는 고향이나 농촌지역에서 휴가보내기로 국민관광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 녹색관광, 농촌관광, 농업관광)이라하여 관광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3) 유치계획

관광농촌지역 방분에 있어서 관광농업등의 진흥을 극대화시키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내방객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여러가지 시설들이 정비되어 있고 이것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농어업등의 종류와 그 지역 입지조건과 특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지명도의 향상과 PR 의 실시

- ① 관광농촌마을을 강력히 홍보한다.
- ② 대절버스 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농원에 직접 오게하고 특별히 농·수·축·임산물의 직매센터와 직거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농·수·축·임산물의 쇼핑센터가 되게 한다.
- ③ 지역의 자연환경이 춘하추동 사계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관광농원, 체험농장, 농·수·축·임산물의 각종 생산 및 정보활동을 뉴스매체에 제공한다.
- ④ 화제성 있는 이벤트를 개최해서 대중매체에 소개한다.
- ⑤ 매년 새로운 특산물을 개발해서 내방객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고, 요리방법 콘테스트 대회를 개최하여 내방객에 의한 특산물 판매와 선전이 되게 한다.
- ⑥ 종합안내소에 관광농원, 체험농원 농·수·축·임산물 또는 년중행사 등의 최신정보를 미리 안내한다.

(나) 내방객의 계속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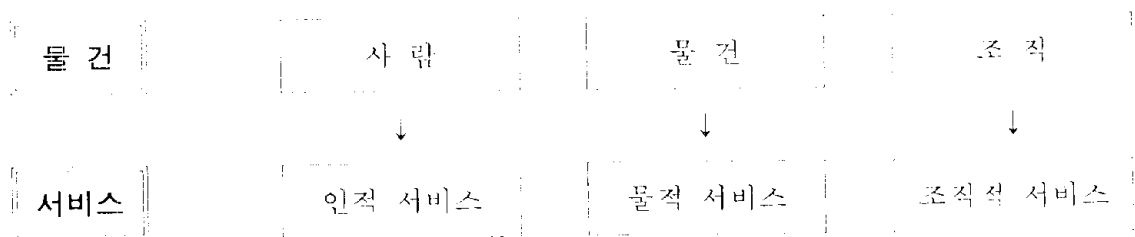
- ① 관광농원, 체험농장 또는 야외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이 유지할 것
- ②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소박한 농산어촌의 참모습을 제공하므로써 그곳을 찾은 내방객이 마음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게 한다.
- ③ 다른 지역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 지역 자체만의 독특한 체험농원, 체험시설, 관광농원을 만든다.
- ④ 맛과 질이 좋은 농산물을 내방객에게 제공하고 또한 개성있는 토산품을 개발한다.
- ⑤ 그지역만의 독특한 향토요리를 개발해서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의의와 기능

(가) 서비스의 의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서비스란 용어가 우리 주변의 어디서나 적용되고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우리의 생활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가정 서비스를 비롯하여 상거래 서비스, 직장서비스, 기술서비스, 인간관계서비스, 각 업종별 서비스, 공복서비스와 이해관계를 초월한 헌신봉사 등의 인적, 물적 서비스가 항상 인간 생활과 같이 하고 있다. 물건의 판매는 무형적인 서비스를 동반함으로써 비로소 그 자체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현대의 경제사회에 같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들의 경제사회에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가치물이 유통되고 있어 이중에 유형의 가치물을 재화라 부르고 있다. 무형의 가치물이라 함은 관광객을 안내하고 사람이나 재화를 수송하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조사하기도 하고 통신하기도 하는 등 그 자체로는 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이동, 정보의 창조,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기능과 가치로서 형성되는 무형의 가치 또는 그 용역을 총칭하여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서비스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활동에 있어서 물질인 농·수·축·임산물과 무형인 서비스는 일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광의로 해석하면 사람·물재·조직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협의로 해석하면 물재라는 것은 시장에 제공된 물건으로써 쌀이나 사과 등의 농·수·축·임산물과 같은 물질적인 재이다. 조직재라는 것은 시장에 제공되는 조직이라는 것으로 정보, 기술 등의 추상적인 재이다. 그리고 서비스재라는 것은 시장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적서비스 물적 서비스 조직서비스 모두가 포함된다.¹⁶⁾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활동에 있어서 서비스의 주체는 물건 농·수·축·임산물이지만 판매촉진을 위한 유용한 기능의 작용은 무형의 인적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경재배나 유기농법에 의해서 무공해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해서 관광객에게 제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양질의 상품을 서비스 한것이다.

그러나 판촉활동을 위해서 조직서비스로서 팜프렛이나 뉴스매체를 통하여 도시인에게 정보를 알리고 관광농촌 마을에 찾아온 내방객에게 깨끗한 복장, 예의바른 언어,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했다면 이것은 무형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까지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해서 도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그래서 농·수·축·임산물의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으나 상품화 하여 판매하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다. 다시 말해서 농어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원하는 가격에 도시소비자들이 사주기만을 바랬지 그들이 어떠한 상품을 원하고 상품의 규격이나 포장상태·판매전략 등에는 소홀한 점이 많았었다. 요즈음 처럼 농·수·축·임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관광농업 상품에는 많은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이 있다. 관광농업

16) 오정환, 1994, 서비스산업론, p. 19, 기문사

상품이란 1차산업인 농·수·축·임산물을 도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유형의 상품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산어촌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 즉 맑은 공기,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환경 속에서 일정한 시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무형의 상품도 있다.

즉 향토음식이나 지역특산물은 유형으로 제공되지만 민박이나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 농촌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은 무형의 상품이다. 그래서 관광객 욕구에 맞는 농·수·축·임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수·축·임산물 단독으로는 부가가치가 적고 관광농촌 마을의 각종 시설의 내용이나 배치 규모는 어떻게 꾸미고 이것을 어떻게 결합하여 판매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것은 농업적 요소는 유인요소로 활용하고 그 지역의 문화나 환경, 산업들을 응용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관광농촌마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관광농업 상품은 생산과 소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장소의 이동이 불가하고 저장성이 없으며 제공되는 인적서비스와 조직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무형의 상품이 많다.

예를 들면 전항의 신상품개발전략에서 어는 관광농촌마을의 관광농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뿌리찾기 무형 상품을 개발해서 잊혀져가는 조상의 얼과 예의범절, 제사지내는 법, 삼강오륜 그리고 두부만들기, 한과만들기, 자연학습, 심신수련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3박 4일 또는 1주일의 초·중고학생 단체객을 유치한다면 숙박, 음식, 기념품,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 증가로 단순한 향토음식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는 상당히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상품의 개발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농산어촌의 고용력이 창출되고 소득의 증대로 도시로 떠난 사람들의 U턴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接客 서비스 방법**① 종업원 마음의 준비**

식당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업은 다른 사업들 처럼 상품을 생산하여 중간상인에게 넘겨주는 것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상품이 그 장소에서 즉시 소비되어지는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식당은 어느 업종보다도 많은 복합적 요소가 서로 작용해 가며 운영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가고, 고객들이 그들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경영자나 고용인들이 하나의 투철한 전문인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이 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식당 업자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리기술 보다는 오히려 부엌 밖에서 고객을 직접 접하며 일하는 서비스 요원들의 인간 다루는 기술이 점차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다루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다양하고 복합적 요소를 터득하여야 한다. 인간은 각기 그 사회적 배경과 교육정도, 그리고 성격이 다르며, 또 환경과 조건 상태에 따라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 다루는 기술은 다른 기계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

서비스란 인간의 욕구 심리를 잘 알아서 고객의 태도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대화로서 상호간에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식당에서의 서비스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며, 업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계속 품격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 품격 높은 서비스란 것은 다만 종업원들이 재빠르게 시간에 맞춰 시중드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들은 존경하며, 친절하게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대접하여 주는 것이 곧

품격 높은 서비스인 것이다.

종업원들은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서비스 종업원들이 서비스 전문인으로서 고객을 접대하는 데에 따라서 고객들은 그 업체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다시 그 업체를 찾게 되며, 또 서비스 종업원들의 능력에 따라 판매량도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습득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훈련을 통하여 봄에 배이도록 연마함으로써 많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종업원 훈련은 단지 업체의 성공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종업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훈련 지침서는 경영주와 종업원 그리고 고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이 관광업의 성장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관광종사원의 일원이 되는 서비스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불가피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 지침을 통하여 서비스 요원들이 하나의 전문 기술인으로 승격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② 접객 서비스 방법

전문서비스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전문인답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가치가 나타난다. 전문적 서비스란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인으로서의 태도와 용모를 갖추고 모든 서비스 절차에 맞게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메뉴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고객이 주문하도록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고 장만된 음식을 구미가 돌도록 날라다 주며, 고객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전문적 서비스는 자신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기술적으로 고객을 접대하는 것이다. 종업원이 이같은 전문적 서비

스인으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고객은 반드시 다시 업체를 찾게 될 것이고, 종업원의 서비스 기술을 칭찬하며 전문 서비스인으로서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 전문서비스인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서비스 규칙은 다음과 같다.

- a. 고객이 당신 업체에 들어오면 주저하지 말고 극진히 환영하며 귀빈으로 모신다. 또 고객이 의자에 앉을 때 도와주고 담배불도 붙여주면서 고객에게 업체를 기억시킬 수 있을만한 모든 재료들을 서슴없이 제공한다. 업체에 대한 첫인상이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항상 각별히 모셔야 한다.
- b. 절대로 다른 동료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고객들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항상 스스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신속히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동료들과 한 팀이 되어 움직인다.
- c. 빈 접시는 즉시 치우도록 하여 식탁위에 접시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고객 앞에서 지저분한 접시를 포개어 놓지 않도록 하며, 또 접시를 치울 때에는 지나치게 많이 운반차에 실지 않도록 한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보기에도 좋지 않다.
- d. 빈손으로 식당과 부엌사이를 출입하지 않는다. 항상 식탁 위를 살펴서 더러운 접시가 있는지, 또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살피고 효율적으로 동작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 e. 말은 식탁을 완벽하게 차린다. 양념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양념을 채워두고, 꽃병의 꽃은 항상 싱싱하게 꽂아두고, 항상 깨끗한 재떨이를 준비해 둔다.
- f. 조리실에서 음식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거나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즉시 직속상관에게 알리도록 한다. 절대로 그 문제로 조리실의 동료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상관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또 고객이 불평을 할 경우에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한다.
- g. 주문받을 때 혹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주문 받은

음식을 재확인한다.

- h. 집기류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입이 닿는 곳을 잡지 않도록 하고,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룬다. 뜨거운 접시를 다룰 때는 깨끗한 냅킨을 접어서 사용한다.
- i. 식탁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식탁 위가 지지분하거나 그 위에 그릇이 쌓여 있어서는 안된다. 더러운 재떨이나 접시, 그리고 음식 부스러기들을 치우도록 한다. 만일 접시에 음식이 남아 있을 때는 반드시 “다드셨습니까?”라고 묻은 다음 접시를 치운다.
- j. 음식이나 음료는 항상 쟁반에 받쳐서 나른다. 또 항상 깨끗하게 접혀진 냅킨을 가지고 다니면서 접시를 다루도록 한다. 음식을 나룰 때는 당신이 다룰 수 있을 정도만 담아 나른다. 항상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서로 부딪힐 경우도 있으며,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경우도 있다.
- k. 쟁반은 항상 준비식탁에 질서있게 쌓아 놓는다. 만일 쟁반을 무질서하게 늘어놓으면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게된다.
- l. 쟁반을 떨어뜨려 음식이 쏟아졌을 경우에는 곧 그곳은 냅킨으로 덮거나 빈의자로 막아놓고 청소한다.
- m. 당신은 메뉴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문서비스 인들은 업체의 메뉴를 완전히 알고 고객의 주문에 적절한 조언을 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즐겁게 식사하도록 도움을 준다.
- n. 고객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접시를 치우지 않는다. 절대로 식탁위로 가로질러 손을 뻗지 말고, 음식을 고객 앞에서 다룬 접시에 꺾어 모으지 않도록 한다.
- o. 후식을 낼 때에는 새로 끓인 뜨거운 커피와 함께 제공한다. 이 때에는 커피가 충분히 뜨거운지, 설탕과 크림이 충분한지 확인 하도록 한다. 또 같은 식탁의 다른 고객에게도 커피를 더 원하는지 문의하여 더 원한다면

컵과 컵받침을 날라다 준다.

- p. 고객에 따라서는 식사후 음주를 하며 즐기는 경우가 있다. 서브가 잘 되도록 카테일 웨이타를 도와주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문서비스 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켜야 할 몇가지 규칙들이 있다.

- a. 책임 맡은 식탁의 고객이 아닐지라도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한다. 한 팀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도 울줄 알아야 한다.
- b. 다른 동료들과 한가하게 어울려 서 있거나 잠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
- c. 아무리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의 지시나 허가 없이는 이를 시행하지 말고 업체에서 원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 d. 일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 태도를 취한다. 불평은 일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킨다. 즉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불쾌감과 불만족만 안겨준다. 만일 사태가 극심하면 불평만 하지 말고 즉시 상관에게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청한다.
- e. 고객과 대화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절대로 논쟁적인 대화는 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치, 종교, 성문제와 개인문제 등과 같은 것이다. 만일 고객이 만족하지 않거나 불평을 할 경우에도 논쟁을 피하고 즉시 상관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말긴다.
- f. 작업하는 도중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이를 잘 알고 있는 책임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여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 g. 보고는 신속히 한다. 병이 났다거나 하여 자기가 맡은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한다.

- h. 서비스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제때에 예상하여 그보다 한 발 앞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나 좋은 서비스란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 i. 작업시간에는 껌을 씹어서는 안되며, 흡연은 지정 장소에서만 하도록 한다.
- j. 식당의 청결은 자신의 협조로 얼마나 열심히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 종이 조각이나 작은 물체가 떨어져 있으면 곧 이를 치우고, 적은 곳일지라도 수선이 필요하면 즉시 이를 수리하도록 보고한다.
- k. 항상 깨끗한 재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달도록 한다. 또 머리는 단정하게 빗고, 작업장에 나오기 직전에는 샴푸어를 하고 방취제를 사용한다.
- l.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중요하듯이 손님을 전송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항상 감사의 표시를 전하도록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손님의 물건을 잊지말고 챙겨 드리고 외투를 입을 때는 입기 편하게 도와준다. 손님의 접대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다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레스토랑의 가치를 높이려면 말할 나위없이, 손님 영접으로부터 시작하여 식탁을 차리고 서비스를 하고 손님을 배웅하고 다시 식탁을 차리는 과정을 빈틈없이 업체의 규칙에 맞도록 시행해 가야 한다.

㉠ 식탁치우기

식탁치우기는 식탁 차림보다도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하며, 하나의 팀으로서 동료와 힘을 합해 함께 하도록 한다. 식탁 치우기는 곧 레스토랑의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a. 사용된 냅킨은 세탁물을 모아두는 장소로 옮겨 놓되, 유리조각이나 종이조각 또는 음식물이 묻어있는지 조심히 살펴서 더러운 것은 따로 분류하여 두었다가 세탁시에 두번 손질을 하지 않도록 한다.
- b. 식탁위의 모든 그릇과 수저, 컵 등을 옮길 때에는 그릇을 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c. 식탁보를 새것으로 바꿀 때에는 양념그릇을 식탁 한 곳에 모아놓고 더러워진 식탁보는 빼서 세탁물 바구니에 넣고 깨끗한 식탁보를 깐다. 그리고 양념그릇을 깨끗이 닦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상을 차려 놓는다.

㊤ 팁 수입을 올리는 요령

팁은 손님이 서비스의 수고비로 지불하는 식대와는 별개의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점차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자주 다녀오면서부터 점차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되었다.

물론 일급 호텔처럼 손님들에게 봉사비로 무조건 식사대의 15% 를 지불하도록 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의 팁은 웨이터들의 서비스 질에 따라 손님들 임의대로 주게 되므로 웨이터들이 자신의 수입을 올리는 길은 팁을 많이 받는 것이다.

대개 손님들이 지불하는 팁의 액수는 식사대의 10~15% 이지만 간혹 서비스 질의 고하에 따라 그 액수가 좌우되기 때문에 자신의 요령에 따라 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이 필요하다.

- a. 항상 자신의 몸가짐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가질 것
- b. 고객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할 것
- c. 항상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손님을 대하되, 능률적으로 처리할 것 (지나친 도움은 도리어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 d. 감사함을 느낄 때는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함을 표시할 것
- e. 손님이 도움이 필요한지 항상 주의깊게 신경을 쓰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은지 물어볼 것
- f. 주문한 음식은 가능한 한 지체없이 서비스 하여 줄 것
- g. 항상 음식에 딸려 나가는 특정한 양념들을 혼동없이 제공할 것
- h. 업체의 특별요리등을 잘 설명해 줄 것

- i. 커피나 물 등 음료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할 때 즉시 서비스 할 것
- j. 거스름돈을 손님에게 가져다 줄 때에는 항상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전할 것¹⁷⁾

제 4 절 지역진흥과 이벤트 전략

1. 지역진흥과 관광

가. 관광활성화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관광지라고 하는 곳은 즐겁고 쾌적한 관광활동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내방하여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즐겁고 쾌적한 관광지란 첫째 관광자원 등의 매력에 유지 강화되어야 하고, 둘째, 관광객의 관광욕구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수용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관광지 환경의 쾌적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되어야 하고 지역경제효과가 올라가는 경우지만 이 경우 지역의 환경과 시설들이 잘 유지되고 향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 1 유형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경제적 효과도 높은 지역이지만, 제 2 유형은 내방객은 많으나 경제적 효과는 떨어지는 경우로써 구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 제 3 유형은 관광객은 적으나 고급객층의 선택으로 경제적 효과는 올라가는 지역이고, 제 4 유형은 관광객도 경제적 효과도 떨어지는 지역이다.

17) 전길희, 1994, 레스토랑 서비스, p. 11~12, 161~167, 기문사

		지역경제효과		
		증	감	
관광객	증	제 1 유형	제 2 유형	← 활성화 필요지역
	감	제 3 유형	제 4 유형	← 비활성화 지역

(물론 이 지역도 활성화가 필요함)

이상과 같이 관광지의 활성화 문제를 정리해 볼때, 농산어촌의 자연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 새로운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지금까지는 지역주민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였다기 보다는 관광객 스스로 이 지역의 관광자원에 매력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주민들은 상기한 바와 같은 제반문제점들에 의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효과만을 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도움으로 지역관광 개발에 전환점으로 기대되는 바 지역주민이 주도적 참여하에 새로운 장단기적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관광활성화 방안

우리가 관광지의 이용 활성화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관광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관광지 활성화의 특징적 사항을 먼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의 매력에 대해서 많은 지역들은 처음에는 자연환경과 사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용이 많았지만 관광수요의 변화에 따라 스포츠 기능, 체험, 참가기능, 보양기능, 휴양기능 등을 투입하여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시설에 있어서도 새롭고 고급스럽게 시설을 정비해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관광자원이 단조로움보다는 여러시설을 복합해서 유인성을 만들고 관광지 전체의 환경과

그 지역의 생활, 문화까지도 포함해서 부지 전체가 관광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래의 경향이다. 그리고 특별활동의 개발을 활성화해서 농·수·축·임산물을 활용한다던가 도시인의 바쁜 시간을 고려해 밤의 이용을 증대한다던가 비수기에 부양책으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휴양지의 매력을 증대시켜 활성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둘째, 관광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서어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종업원의接客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뿐만이 아니라 해외 그리고 지역주민까지도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을 도모하려 애쓰고 있다. 정보서어비스에 있어서도 관광행동의 광역화에 따라 하나의 관광지만이 아니고 지역주변을 포함해 광역선전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내에서는 알기쉬운 관광안내, 유도표시, 테마와 시간별로 코스의 원활화를 위해 연구하는 등 상세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관광산업의 운영체계에 있어서 관광정책은 서서히 그 중대성이 높아져가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또 근래에 있어서 리조트의 정비와 관광지의 정비가 소관부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의 조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횡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광협회에 있어서도 많은 관광지가 사무국을 두고 협회독립의 특색있는 활동은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관광지 운영의 추진모체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관광정책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의 정비면에서 도로, 주차장의 정비는 각 관광지에 무척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쓰레기의 처리와 하수도 정비 등은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련 관광지의 쾌적성이 꼭 중요시 되고 있고 지금까지 손대지 못했던 처리기능과 지역변경 또는 어떠한 기반환경에 문화성의 투입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관광진흥의 이

념에 있어서는 비전을 명확히 가지고 확실하게 장기전략으로서 준비를 실행해 나가고 계획등에 의한 기본적인 이념을 명확히 해서 아름다운 지역만들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근년의 특징으로서는 국제화의 콘벤션 투어(Convention Tour)의 적극적인 유치와 그에 휴양기능대응이 현저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

(가) 관광정책의 확립

① 관광진흥의 기본계획 작성

㉠ 지역권역 개발기본계획의 보완과 연계 개발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비한 장기발전 기본계획 작성 필요

㉡ 장기발전 기본계획 작성시 각종 지역단체의 참여와 역할 분담

<예 : 산학협동,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행정기관, 농협, 수협, 임협, 축협, 농촌지도소 등>

② 지방조례 및 개발 유도를 위한 원칙작성

㉠ 지방 의회기능의 강화, 개발원칙을 지키기 위한 점검기능의 강화와 주민 합의 조달기능의 강화

㉡ 관광지 이미지 보존을 위한 규제 및 유도

㉢ 관광토지이용계획의 정책에 의한 규제 및 유도

(나) 환경 및 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

① 법규제와 관련한 보호관리 방안

㉠ 지방 조례규정 작성

<예 : 개발행위, 지도요강, 자연과 환경의 보존에 관한 조례>

㉡ 자연 자원의 보호와 이용의 적정화에 따른 역사, 문화적 보존 활용

② 보호관리체계의 확립

- ㉠ 관광업 관계자의 공동의식에 의한 협의회 구성
- ㉡ 지방행정체계의 강화

(다) 관광지 기반시설의 정비와 매력 제고

- ① 편의 시설의 확충
〈예 :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 처리〉
- ② 환경미화와 경관의 조성

(라) 관광지 경영 조직의 확립

- ① 관광발전 조직구성
 - ㉠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기능강화
 - ㉡ 관광발전 위원회 구성
 - 지방의회 관광정책 자문요청
 - 지방산업의 소비촉진 토산품 개발 등 경제효과 제고방법 연구
- ② 관련사업의 육성
 - ㉠ 관광상품의 개발
 - ㉡ 경영기법의 도입(관광객 욕구파악)
- ③ 관광경영 전문가의 육성
 - ㉠ 행정조직 및 관련업체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및 활용

(2) 단기적인 활성화 대책

(가) 교통시설 문제

- ① 교통시설의 확충
 - ㉠ 도로의 확충 및 정비
 - ㉡ 기존 관광지와 신규관광지의 재편
 - ㉢ 수요량변화에 따른 관광욕구에 적응한 관광지 재편

(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책

- ① 대규모 개발에 경합보완대책 필요
 - ㉠ 관광지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함
 - ㉡ 기능분담과 차별화에 의한 공존공영이 필요

(다) 매력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 ① 지방자원의 재발견
 - ㉠ 지역산물의 활용
 - ㉡ 매력적인 시설만들기(지역특성을 생각하는 것)

(라) 관광지의 코스화

- ① 관광대상의 거점화
 - ㉠ 기능의 개성화, 다양화에 따른 매력적 거점 형성
<예 :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코스 등 상품 개발>
 - ㉡ 관광루트의 형성
<예 : 순환버스 설치>

(마) 특별행사 개최

- ① 지역 민속행사 개최
- ② 콘벤션형 특별행사 개최

(바) 서비스의 향상

- ① 관광관계자의接客 서비스 향상
 - ㉠ 관광관계자의接客연수 실시
 - ㉡ 바가지 요금 방지
- ② 지역민의 계몽운동 전개
 - ㉠ 관광관계자의接客연수 실시
 - ㉡ 의식환기를 위한 행사개최
 - ㉢ 지역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습과정에 관광교육 실시

(사) 개성적인 요리 토산품 개발

- ① 요리 및 제공의 연구
 - ㉠ 음식의 매력을 높일 것
- ② 토산품 특산품의 개발
 - ㉠ 특산품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 특산품 소재점검과 특성파악
 - ㉢ 소비자의 욕구파악과 판로확립

(아)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비운영방식의 선택

- ① 실현성이 높은 사업계획의 선정
 - ㉠ 장단기 관광발절 계획의 실천회의
〈예 : 공청회개최 지방의회심의〉
 - ㉡ 사업의 효과와 지역효과의 제고
- ② 사업주체의 선정
 - ㉠ 공공, 민간지역 등 사업주체를 선정
 - ㉡ 공존공영 원칙의 도입
 - ㉢ 기업성과 공공성의 발휘
- ③ 관광용지 취득 및 자원조달과 운영의 연구
 - ㉠ 관광용지 취득 연구 지상권 분양
 - ㉡ 정부융자
 - ㉢ 지역자금 동원연구

(자)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홍보강화

- ① 관광지의 개성제고
 - ㉠ 사계절 관광지의 심벌선정
- ② 관광객 마음을 움직일 수있는 선전
 - ㉠ 적절한 이미지의 선택

<예 : 녹음테이프 활용, 포스터>

- ㉞ 과다한 선전은 역효과
 - ㉟ 화제성 있는 소재로 자연스럽게 선전
- ③ 안내소 운영제도의 개선

(차) 비수기 대책

- ① 요금체제의 개선
 - ㉞ 할인요금의 명시
 - ㉟ 비수기 상품개발
- ② 객층의 선택
 - ㉞ 수요성향에 따른 관광객의 흡수
- ③ 밤의 매력 부양
 - ㉞ 밤의 행사개최
 - ㉟ 밤의 경관 연출

(카) 사업추진의 전략전개

- ① 명확한 비전에 기초한 계획적 사업의 추진
- ② 장기 발전계획의 대응¹⁸⁾

2. 이벤트 행사의 개최

가. 개최목적

이벤트 행사의 개최목적은 일반적으로 지역진흥, 지역 교류의 활성화, 지명도의 향상, 지역주민에 대한 계몽활동 등 여러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한 이벤트는 관광객의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서 보다

18) 류선무, 1993, 설악권 지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p. 54~59, 강원관광개발학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관광계절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비수기 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벤트의 목적을 달리함에 따라서 개최시기의 고유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특유의 계절(자연, 특산품, 민속행사)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활동하기 편한 시기에 실행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이벤트 행사의 개최동기는 첫째,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개 그 지역의 우려되는 요인이 있다던가 활성화를 위해서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즉 지역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교류기회 창출, 지역이미지 상승, 낙후지역의 진흥,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 등의 경우이다. 둘째는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기획 실시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지역의 고유행사(민속, 행사 등)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찾아올 일이 있을 때에 기획 실시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 행사의 개최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획내용의 참신성, 차별화, 이벤트 간의 제휴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관광농촌에서의 이벤트 행사

농산어촌 지역에서 관광농업개발은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활용형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의 관광농업 경영은 생산기술이 아니라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경영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즉 관광농업경영이란 연중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경영이 성립될 수 있고 종업원의 안정고용이나 찾아오는 내방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유인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농·수·축·임산물들의 생산은 대개 그 수확시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19) 일본관광협회, 소화 62년, 이벤트전략, p. 1~13, 일본관광협회

〈표 2-7〉 관광농촌마을의 년중 행사계획표

행 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광 농원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딸기 따기 산채 뜯기 과일 따기 젓소 관리(젓짜기)							_____					
체험 활동	씨앗 뿌리기 나무 가꾸기 동식물의 생태관찰 및 실험 천체 관찰 목공예			_____				_____					
농산 가공 활동	김치 담그기 손칼국수 만들기 두부 만들기 떡 만들기 한과 만들기												
도시 교류 활동	모심기, 벼베기 예절 배우기 유적지 방문 농업관련 공장, 기관견학							_____				_____	
농축 수산물 판매	향토음식 농기구, 씨앗, 비료 무공해 농·수·축·임산물												

한 계절만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또 관광객의 발생도 여름철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외의 계절은 자연적으로 휴업상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하여 농·수·축·임산물의 생산을 작부체계를 세우고 여러종류의 작물이나 가축 그리고 품종(조생, 중생, 만생)을 배합해서 년중생산 체제를 갖추거나 비수기대책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벤트행사를 년중 또는 월별로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내방객의 안전성 유지가 가능하므로 경영의 성립과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 행사는 우천시에 대비해서 실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원이 많이 왔을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준비 그리고 운영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제 5 절 농촌지도자 육성

1. 농촌사회는 몰락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한 가정, 회사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 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사회 현상은 어떠한가? 도시로 이농현상에 의해서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 되어 노동력 부족으로 유희농지가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우르과이 라운드 협약에 의한 앞으로의 불안감 등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자의 자유가 있고 농민도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떠한 일에 종사해도 국가전체 경영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급속한 도시로의 이동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기반정리와 기계화로 농촌인구는 줄어드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토지와 임야 등이 주택단지 공장부지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농경지를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관리 농민은 필요한데 이들의 소득, 문화, 교육, 환경 등의 수준은 도시근로자와 비교해서 같게는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농격차에 의한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게 되어 지역 갈등에 의한 국민정서가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산업의 기반으로 농업도 하나의 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농어민 후계자의 양성이 필요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뚝심있게 헤쳐 나갈 새로운 농촌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농고가 없어지고 농과대학에 입학생들은 농업에 종사하려고 입학한 사람수 보다 졸업 후 다른 분야에 진출하려 하니 농과대학에서는 남의 자식만 키우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도 정부에서는 각도별로 농업 또는 수산, 임업 등의 전문대학을 세워서 영농후계자를 양성한다고 하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의 지도자 양성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현재의 농촌사회는 여러가지 여건의 급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뀌어 삶의 가치와 질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농촌은 선망의 생활터전, 그리고 선망의 직업으로 농자천하지대본의 명예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농촌지도자가 가야할 길이라면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출발할 수 밖에 없다.

2. 새로운 농촌지도자상

인간은 이해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 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가는 속아서 넘어가기 전에는 그럴듯한 이유로 사양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에는

감언 이설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면 관광농촌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지식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인간사를 어떻게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단결해서 지역주민들을 이끌어 나아가갈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경상북도 상주군 하북면 입성리 귀빈래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청화산 관광농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2년 8월 현재 13가구(학사농군 7가구와 지역주민 5가구)가 45만평(임야 70%, 전 24%, 담 6%)에 청정채소 작목반을 결성하고 비닐하우스 2,000평, 축사(젖소) 2동, 양계 1,000수, 그리고 재배작물로는 상추(50%), 미나리, 케일, 치키리 엠디아브, 콩나물, 깻잎을 수경재배하고 유기농법으로는 신선초, 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 수박, 단호박,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다. 작물의 종류와 면적은 조정회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매대금은 독립채산제로 하며, 작업은 품앗이로 해결한다.

지금은 이웃주민이 많이 동참하게 되어 30농가 8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동조하는 이웃주민의 수가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지도자급에 있는 조삼수 회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식회의 전에 유지들을 불러서 미리 설명을 하여 의견 조정을 하고 지도하며 경영철학과 미래 지향적 사고로 비전을 제시하여야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할분담으로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에 찬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관광농원의 성격은 미약하지만 일심단결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인재쉼터를 살펴보면 하천변의 1,200평 공유지분 토지를 소유하고 휴게소 형태의 먹거리(산채비빔밥) 특성을 살려가면서 마늘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채는 삶아서 급속냉동하고 채소는 자급자족하며 된장은 시골식으로 담귀서 사용한다. 회계관계는 일일 결산·월말결산·년말결산·지분결산(보험 등 공제)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94년) 재투자 관계로 배당을 못하고 있으나 95년 부터는 월급도 지급(현재까지는 노력봉사)하고 96년

부터는 이익도 배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사관리는 13호 농가(소양댐 수몰후 상단부 거주주민)가 총무후보 → 총무 → 회장 → 감사의 순서에 입각한 순환보직으로 사전에 업무의 파악과 고충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애로사항으로서 첫째 업무 분야별 전공 담당자가 없고, 둘째 전후반 1회씩 재고 파악을 하나 이것이 어렵고, 셋째 잔금(꼭 200만원씩을 항상 준비해서 고정지출은 근무조가 즉시결재함)과 현금은 근무조(조편성을 하며 농사에 종사하며 1일 씩 근무)인계시 실시하여 1일 결산은 지출만 기록하고 있다.

1982년도에 작목반을 조직하고 88년도에 휴게소를 설치해서 90년에 개장했으나 94년 현재 이익배당은 고사하고 인건비(월급)도 못받는 형편에 안색이 피로에 지쳐서 노랑참외 같은 데도 눈동자만은 빛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작목반을 이끌고 있는 오정진 회장(62세)은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살아 생존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금강설악권 관광개발이 되면 우리의 입지조건은 경유지형에 위치하고 있어서 천혜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 말에 회원들은 공감하고 피나는 노력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정진 회장은 사심을 버리고 강한 책임의식으로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 강원도의 어느 관광농업지구의 예를 들어보자. 그 마을의 이장은 피나는 노력 끝에 정부지원사업인 관광농원사업을 유치해서 마을 개발위원회에 동의를 얻고자 했으나 용자금이란 결국은 빛이라 선포 나서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관광농원사업이 공감은 가나 위험부담은 맡고 싶지 않은 상태여서 하는 수 없이 뜻이 맞는 몇사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호수가 있고 그 위쪽에는 깊은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휴양림이 조성된 상태이다. 그 중간 지점에 개울을 따라서 철골을 세우고 천막을 쳐서 토종닭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뜻하지 않은 장

마로 철골이 전부 떠내려가서 참여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본전 생각에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라 용자금 때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자금을 들여서 던져보다 튼튼하게 천막을 세우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익이 눈에 띄게 발생하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던 주민들이 동네 공동재산을 몇사람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헐뜯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이 내심 괘씸은 하지만 아량을 베풀어 마을 전가구가 공동참여해서 운영하고 각 가구별로 통장을 만들어 연말 결산을 통해서 적은 이익금이지만 입금시켜주니 신이나서 더욱 적극적이고 이웃의 휴양림도 위탁관리 수속을 밟고 있다.

이상의 세곳에 경우를 보면 신념에 찬 비전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새로운 농촌지도자란 농사할 때는 농사꾼이요, 작부 계획을 세울 때는 농학박사요, 판매할 때는 장사꾼이 될수 있는 1인 3역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누가 무어라고 해도 화내지 않으며 비전을 제시하고 내 몸을 불태워 불빛을 밝힌다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3. 새로운 농촌지도자의 역할과 양성

농업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은 별도로 하고 어떠한 이유던간에 선택을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발을 들여놓고 보니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만둘 수 없는 상태여서 자꾸만 수렁에 빠지는 형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지금의 농촌현실이다.

그러나 그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소리도 질러서 구조를 청하기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몸부림 쳐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누가 구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때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지금 농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이다.

실질적으로 농촌의 형편이 과거보다는 나아졌고 생활하기가 편해졌다고는 하나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려고 해보면 지식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개행정으로 농어민들의 자진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관공서에 찾아가서 도움받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담보능력을 갖춘 농어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 전과는 다르게 친절해 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몸에 배어있는 고압적 자세의 태도에 친근감과 설득력을 가지고 끈덕지게 물어보고 알아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주고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사회에 배어있는 배타성의 타파이다. 농촌지역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그 범위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 그 부가가치의 증대가 일반 그룹회사의 운영실적 만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활성화 한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서는 국가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이 한국의 경제력을 믿고 한국 기업의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농촌에서도 선의의 외부자본과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이때 지역주민과 외부 자본가와의 사이에 교량적 역할 로써 일할 수 있는 농촌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에서 역할 분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것이 종속이론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의식은 자기가 부족한 점이 많을 때 느끼는 것이지 그일에 만족하고 삶의 가치기준을 농촌지역 활성화에 두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의 양성은 의도적으로 양성할 수도 있으나 우선은 농업이 매력적인 산업으로써 직업으로 택하여도 남부끄럽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

램을 커리큘럼화해서 적성에 맞는 학생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농과대학에 ROTC 장학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고급 엘리트 농군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체에서 조기 정년퇴직한 경영감각을 갖춘 고급인력을 농업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재무장하여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사업계획이 치밀하고 훌륭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농산어촌에 농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해서 정열을 불태우고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제 6 절 제 3 섹터(Sector)란 무엇인가?

1. 도입의 필요성

요즈음 제 3 섹터 또는 S.O.C. 법(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끔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 관광농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느낀 결론은 일반적으로 농어민들은 첫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척의욕이 적고, 둘째 의욕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지역특성에 알맞는 관광농업개발 지식이 부족하며, 셋째 풍부한 개발지식을 갖고있다고 해도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력이 없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좌절에 빠져들기 쉬운 형편이다. 오직 가지고 있는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임야 뿐이다. 그러면 본인자신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농어민)을 잘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더불어 잘사는 방법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다. 지금 세계 각 국가는 그 경제체제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로서 양대산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지금은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시장경제원리를 신봉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완전승리로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무역마찰, 또는 문어발식 기업의 등장 등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중국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 상황의 흐름속에 농촌경제의 부흥, 나아가 농산어촌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활성화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정부에 있지만 2차적으로는 기업 또는 국민에게도 있다. 이러한 때에 각자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나누어 충실히 진행시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융통성 있게 유기적으로 활동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근대국가의 개념은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있으며, 정부에서는 삶의 질을 현재보다 더욱 향상시킨다고 여러가지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기업 또는 국민들이다. 여기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나아가 그 이윤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는 높였지만 현재까지는 기업의 문어발식 신장에만 노력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평가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도 이익의 사회환원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이고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업을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생산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 농산어촌의 주민들도 배타성을 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에 농산어촌, 농산어촌내에 농어민이라는 위치, 그러한 맥락에서의 환경적응 방안은 무엇인가 또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변화를 요구당하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위기의식을 깨달아야 한다.

요즈음 선진국들의 지방정부책임자를 비롯하여 후진국가의 원수들이 한국의 경제지원, 공장유치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대일 청구권자금과 해외차관으로 이만큼 한국 경제의 건설을 이끌어 온 것이 아닌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근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지사가 자기지역을 선전하기도 하고, 군수가 지역특산품 선전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주어진 여건과 능력범위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지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허황된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의 확립,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정의

섹타(sector)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군사적 의미로써 작전 구역 또는 분야, 지역등의 해석을 하고 있으나 흔히 행정학의 지역개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제3섹타라고하면 “민관협동 개발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 목적의 달성, 또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관광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이며, 사업추진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이때에 사업추진 체제가 국가정부(지방정부)가 담당할 때에는 제1섹타라고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민간부문(기업 또는 개인)이 담당할 때를 제2섹타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에는 공익성이 강해서 어려운 것을 국가적으로는 필요해서 사업을 국가정부와 민간부문이 결합해서 시행할 때

를 제 3 섹터라고 한다. 여기에는 각종 공사, 농업부분에서는 각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방자치체와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를 제 4 섹터라하고 지방자치체와 일반기업이 직접 협동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를 제 5 섹터라고 한다. 또 지역주민과 일반기업이 협동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 6 섹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 지역주민이 공동참여하는 삼자협동개발방식(Joint sector)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 3 섹터(민관협동개발방식)의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구미제국에 있어서는 소비자 단체나 주민조직운동, 권리보호단체 등의 임의적 운동단체로써 비영리활동 부분이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비영리단체(기관) 등을 가리키고 있다.²⁰⁾

그러나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일본에서는 관주도하에서 공익법인 성격이 강하고 관광농업개발에 있어서는 관광농업단지, 체험학습농장, 농업공원, 관광목장, 지역특산물 생산 등의 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한국농촌활성화를 위한 3자협동 개발방식의 선택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42 조원의 특별회계와 15 조의 농특세를 투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서는 농업법인(합명, 합자, 유한회사)을 설립하여 외지인도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는 농산어촌을 위한 자금은 많은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또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물건이 없어서 그리고 운영자금은 부족한데, 해당이 안되어서 안타까와하고 있다. 여하튼 문민정부의 배려로 책정된 예산만으로 우리나라 농산

20) 出井信夫, 제 3 섹터 비즈니스, 1990, 일간공업신문사 p. 23

어촌이 활성화되어 농어민의 삶의 질이 도시인과 같아진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국가의 노력만이 아니고 농촌외부의 힘(자본과 지식)이 촉진역할을 한다면 더욱 좋을 일이 아니겠는가? 먼저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 농어민들은 농지와 임야만 가지고 있지 개발자금이나 지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농발법의 농업법인 설립에서 외지인의 준조합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지역형 관광농업의 경우 대략 50억 이상 필요)이 필요한데, 농어민들의 출자금 동원능력이 약해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준조합원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총자본금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 투자하고 싶어도 투기로 매도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는 투자와 투기는 구별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래서 도시의 유동자금을 농촌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 국가발전(특히, 농촌)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조세수입은 한계성이 있고, 관광농업분야를 선도하여 나아갈 담당공무원들도 그 개념이나 실천적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의의 외부자본이나 개발지식은 더욱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기는 그 지역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지역주민에 의해서 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국가에서 개발할때는 허가절차나 법적제도적 지원은 쉬우나 관광농업이 서비스업종인 만큼 요구되는 친절성, 그리고 보직이동에 의한 사업성과에 대한 무책임, 투자예산의 한계성 등을 보완해주는 3자협동 개발방식(Joint sector)이 필요한 것이다. 실천적방법으로서는 농어민의 토지나 임야의 재산평가에 의한 현물과 자본출자 또는 지상권만의 분양으로 참여하고 선의의 외부자본가는 총개발비용의 51%와 개발지식을 투자하며 정부에서는 총개발비용에서 양자가 출자금액을 제외한 부족한 자금만을 출자 또는 용자, 보조하고 행정적(법적)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제 3 섹터, 제 4 섹터, 제 5 섹터, 제 6 섹터의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S.O.C. 법)이 제정되어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농촌관광개발의 길은 초헌법적으로 법적 어려움은 덜게 되었다.

그러나 본래 S.O.C. 법은 건설, 교통분야에서 도로, 항만, 공항 등 공공성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제정되었고, 아직 농밭법이나 농어촌정비법, 산림개발법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 규정은 삽입되어 있지 않다. 만약 농업관계법령이 삽입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의 기반조성 등 공공성투자는 경지정리, 기계화시설, 저온냉장고, 유통시설 등 비교적 수익성이 적은 시설들이다. 그러나 관광농업분야에서는 관광농업단지, 어촌박물관, 관광목장, 플라워 파크, 스키장, 관광탄광촌, 휴양림 등 지역환경과 연계한 수익성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때 개발이익이 어느 한 섹터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허가부서의 엄격한 심의와 참여자들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모두가 좋다는 말이 있다. S.O.C. 법 제정당시 정경유착이란 우려의 말도 있었으나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정부정책의 한계성을 느끼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이 법을 활용한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3자 협동 개발방식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때의 S.O.C. 법의 농업부분 도입목적은 첫째, 황폐화되어가는 농업의 보존이며, 둘째, 농어민들의 소득향상, 셋째, 산업사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화해가는 관광욕구가 농산어촌에서 무공해 농수축산물의 재배, 수확, 체험이므로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회복의 여가공간의 제공이다. 이러한 일들을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고 기업, 도시인, 농어민 각자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요즈음 삼성그룹에서는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1 회사 1 농촌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본인도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

년 70년대 어느 한 부락을 회사와 자매결연하여 아주 빈곤하였던 산골부락이 전국에서 4위로 잘사는 부락이 되었다. 재삼이야기하지만 기업도 국가사업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태어나서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지, 소유의 욕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상 3자 협동 개발방식(Joint sector)의 도입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구상계획을 밝혔을 뿐 아직 더 연구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다른 부처에서는 여러가지 염려를 뿌리치고 실천하고있는 만큼 농림수산부에서도 모델을 시험적으로 시도해보아야 할 줄로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선택은 정책입안자의 소신과 의사결정권자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

4. 제 3 섹터(민관협동개발방식) 사업의 장단점

제 3 섹터사업은 공공사업 또는 민간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 문제나 과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착수하게 되는 비교적 새로운 사업방법이다. 이것은 환언하면 지역에 있어서 장래의 발전 또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제 3 섹터 사업의 사업화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물론 제 3 섹터 사업의 실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지역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인재, 정보, 기술 등의 교류가 증대되어서 나아가 지역의 인재육성,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신과 애향심의 고취라고 하는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제 3 섹터 사업의 기대되는 장점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세수, 또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과 양

여금, 보조금 등의 예산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차입에 있어서도 기채의 제한이 있는 등 대규모 사업은 착수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제 3 섹터사업은 자치단체의 출자에 부가해서 민간의 자금이 도입되므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도 크게 착수할 수 있다. 사업규모는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제 3 섹터의 추진력에 따라서 자금력과 노하우를 갖고있는 대규모의 민간기업이 중추적으로 참가하면 보다 대규모의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독립성, 기동성을 가진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제 3 섹터는 자치단체로 부터 독립한 조직으로서 사업에서 수익을 목표로 운영을 행하는 것이여서 장래비용을 모두자신이 부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하며, 또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업환경 변화에 기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것이어서 공익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품성(지역특산물), 레저(leisure)사업에도 착수가 가능하며 사업선택의 폭이 자유스럽고 넓다. 한편 공공사업에서는 수익사업의 실시는 계약을 받고 보조금 등에 의한 사업에는 사용범위의 제약과 사후계획수정도 어려워 사업내용도 고정화, 한계성이 있다.

또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의회심의가 필요하고 의회대책 등으로 필요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며, 기동적인 운영은 곤란한 면이 있다.

다. 민관 각각의 장점활용에 의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제 3 섹터 사업은 지역경영의 일환으로서 지역에서 민관의 역할분담아래 착수되는 사업이라는데서 공공, 민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교묘하게 활용함으로써 1+1>2 이상의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들면, 관광개발에 있어서 여러가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접근도로

의 정비, 인접공유지의 환경정비, 도로상의 안내소의 설치, 운영상 제휴하기 쉬운 문화시설의 설치, 지역 특산품의 개발, 제조, 판매에 있어서 신상품의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 제 3 섹터사업의 실시,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또 민간측에서는 사업분야에 정통한 인재, 경

〈표 2-8〉 제 3 섹터의 사업화단계 · 운영단계

사업화 단계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의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의 부재 - 의사결정의 지연(잡다한 모임) - 사업환경의 급격한 악화(인건비, 자재비의 상승 등) ■ 민관의 의견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의 대화부족(특히, 의사결정자간) - 관측의 인식부족(사업수익, 세부적 비용 등) - 민측의 인식부족(지역협조 등) - 최고경영자, 담당자간의 불충분한 의사 소통 ■ 주민, 의회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사와 다른 사업계획 - 불투명한 사업추진 - 관측의 안이한 민간일임자세 - 부실한 사업계획 - 생활환경파괴의 위협 ■ 부정사건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민관의 부당한 개입 - 불투명한 자금계획 - 책임소재가 불투명 - 관측의 체크기능의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부진에 의한 침체 ■ 팽대하는 적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이한 수지계획> - 달콤한 사업예상(고수입, 저비용, 낙관적인 판매가격) - 과대한 초기투자 ■ 자금비용의 낮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충분한 운영체제> - 경영전문가, 전문인재의 결여 - 중추적 역할을 할 민간기업의 부재 - 협력체제 의미 확립 <낮은 경쟁력> - 상품의 차별화가 불충분 - 서비스 불충분 - 높게 책정한 이용요금 등 ■ 사업수행능력의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사업의욕(관측의 심한 간섭으로 민측이 의욕상실) - 책임대응능력의 불리 - 사업규모에 비해서 낮은 자본금 ■ 공정성의 결여(소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의회에서 불충분한 사전 설명 - 불투명한 사업운영 - 사업내용의 공익성에 대한 회의

영노하우(know-how)를 제공한다. 따라서 각각의 장점을 살린 제휴계획이 가능하고 운영에 있어서 경쟁력이 상승한다.

라. 문제발생의 원인과 내용

제 3 섹타 사업은 상기의 장점을 기대하고 착수하지만 실현에 있어서는 결코 장미빛 사업만은 아니다. 제 3 섹타사업이 민관공동사업, 신규투자사업, 지역산업이라는 고유의 성격은 면도날의 양면과 같이 사업화의 여러단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위의 표 2-8 과 같다.²¹⁾

제 7 절 해외관광농업의 동향

관광농업의 원천인 유럽지역에서는 60년대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70년대에는 체계화 시켜서 발전일로에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전혀 관광농업의 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농업자체의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농촌의 재정비, 환경의 보전 그리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관광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농촌관광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은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정책이라고 하여 농촌관광, 녹색관광, 농촌체험등 각국이 그 실천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나 공통된 사실은 농촌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활성화), 소득증대, 환경보전(정비), 도농교류이해촉진, 도시인의 여가공간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증대에 비중을 더 두고 실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유럽은 농촌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소득증대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21) 제 3 섹타연구회, 제 3 섹타 전략, 형성 5년 시사통신사, p. 16~20

지역개발(활성화)과 사회복지향상이란 유럽형의 관광농업을 변형 발전시키고 있으며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이나 지역개발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 관광농업의 형태는 대략 두가지 형태로 구별되는데 첫째는 농촌환경정비 차원에서 농가나 축사를 고쳐서 민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각종 놀이시설(낚시, 바다골프, 수영, 잔디밭, 배구, 테니스 등)을 설치해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게 하거나 각종 농사일에 참여시켜서 농사체험을 하게 하는 형태와 둘째는 공유지나 사유지를 임대료를 받고 일정면적(30~50평 규모)으로 분할하여 그곳에 조그만 집(5평규모)을 짓고 주말이면 그곳에서 휴식과 농사일에 종사하므로써 여가를 증기는 주말농장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들을 살펴보면 관광농업의 원조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형태의 발전은 오히려 일본이나 대만이 지역실정에 맞게 농업공원이나 지역개발의 활성화 방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각국의 관광농업의 설립배경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관광농업

가. 독일 관광농업의 특징

(1) 환경애호사상의 관광

독일인이 가지고 있는 전원애에 대한 관심은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여 「독일인은 산에서 태어나서 언젠가는 산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산림과 초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전원에서의 휴가를 지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유럽 어느 국가의 국민보다 높다. 그래서 휴가갈 곳을 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테니스나 골프등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가와 쾌적한 호텔이 있는가 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상태에서 산책이라든가 농촌 그 자체의 자연에 대한 관

심등 자연환경과 풍경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인의 국민성이 환경애호사상의 관광을 탄생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이들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이다.

(2) 전원이나 농가에서의 휴가

독일에서 실행하는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을 영국이나 불란서의 그린 투어리즘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 즉 독일에서는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농촌관광(Rural Tourism) 또는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정의는 일반적으로 전원에서의 휴가와 농가에서의 휴가로 구분된다.

전원에서의 휴가는 조그마한 호텔과 식사가 곁들인 가족동반의 펜션(여인숙수준의 숙박 : pension) 등에서 1주일정도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농가에서의 휴가는 농촌의 민박등의 휴가시설에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농가에서의 휴가는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그린 투어리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유명한 관광지와 근대적 호텔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말하자면 보통의 농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시적인 경관과 약간의 손질을 한 농가 등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잘 보전되고 있다.

(3) 그린 투어리즘의 탄생

독일에서 그린투어리즘의 시작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에 접하고 있는 알프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조건은 불리하여 지역조건을 배경으로 낙농과 축산이 성행하였지만 과소문제와 노동력 부족등으로 곤란을 겪었다. 따라서 생산비의 절감과 구조개선과제는 주정부의 농업정책에 반영하게 되었으나 워낙 지역의 대부분이 악조건이어서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규모의 확대나 경영의 개선을 도모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소규모라도 가족농업을

중심으로 농가사이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농업기계등의 과잉투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낙농과 축산과 관광을 연결한 그린투어리즘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농업진흥정책은 첫째, 교육수준의 향상 둘째, 경영간의 협력 셋째, 농업기반, 농촌생활기반의 정비 넷째, 판매제도의 개선 다섯째, 농촌적 자연환경의 유지이다. 이상의 정책중에서 무엇보다 흥미를 끄는 것은 다섯번째의 농촌적 자연환경의 유지에 대한 정책이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계획, 산림기능계획의 3가지를 주축으로 자연이 농민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재산으로 인식시켜서 농촌의 자연을 유지해 나아간다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발상저변에는 농촌적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만을 가리키거나 복초지의 보존만이 아니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써의 보전이 국민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적 이해를 얻어야 했지만 저비용 또는 규모화대라고 하는 농업생산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에서는 농업대국인 독일에서도 오랜시간이 걸려야만 했다. 연방정부도 70년대 여러가지 농업구조개선정책을 발표했지만 바이에른주에서 제창한 “농업은 만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발상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이해되었고 이러한 농업과 관광의 접목이 조건이 나쁜 지역에서 농촌과 농업을 지킬수 있다는 운동은 인접주 지역으로 확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가에서 시작한 숙박업의 겸업농가는 증가하게 되었고 “농가에서 휴가를”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집약하게 되었다.

(4) 다양한 숙박시설과 설비의 충실

독일의 그린투어리즘의 특징을 대표하는 요소는 농가, 농촌공간에서의 휴가를 충실히 보내는 데에 있다. 현재 독일 농촌에서 휴가시설로는 농가의 민박을 비롯하여 승마코스, 골프장, 스키장, 테니스, 수영 등 스포츠시

설, 산책로, 호반에서의 낚시 또는 수영시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환경이 뛰어나고 조용한 환경을 정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다목적 온천시설이나 향토박물관, 음악당도 있고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시설로써 방문객도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다. 농가자신도 숙박과 식사이외에 사유지를 활용해서 승마와 캠프장, 또는 오토캠프장을 만드는 농가도 많아지고 있다. 숙박시설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들면 빈방을 빌려주는 민박(Privat Zimmer), 휴가용으로 집전체를 빌려주는 임대대가(Ferienwohnung), 여관(Gasthaus), 펜션(Pension : 여인숙), 간이호텔(Motel), 유스호텔(Youth Hotel) 등 다양하다. 또한 독일의 그린투어리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농가식당의 육성이다. 이것은 민박과 더불어 자연경업을 육성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대상이 된다.

나. 농지정비와 환경보전정책

(1) 자연보호에 따른 경관보전법

독일 그린투어리즘에 있어서 농지정비를 해나아가는 데에는 환경보전의 우선이다. 프랑스 등의 유럽제국의 그린투어리즘은 어디까지나 휴가환경의 정비에 진흥이라는 인상이 있지만 독일은 농지정비와 연계한 그린투어리즘이란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1976년 제정한 자연보호에 따른 경관보전법은 독일농업의 취급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농촌개발의 촉진과 지역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지정비법의 범위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농촌정비를 농업생산 공간으로만 보는것이 아니고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생활공간으로써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연방정부의 움직임이상 주정부가 선행하게 되었고 바이에른주에서는 연방법에 앞서서 1973년 바이에른주 자연보호법을 제정했는데 그 기본적인 이념은 다음과 같다.

바이에른주 자연보호법 제 1 장 제 1 장 제 1 항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터전이고 인간의 환경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써 보호, 보전하고 때로는 창출 되어야 한다. 식물과 동물 자연환경의 부분적 요소를 과학적으로 향토보전적 기반에서 보호해야 한다.

(2) 농촌환경을 보호하는 농지정비법

농촌의 공간정비계획을 시행할 때쯤인 1976년 개정된 농지정비법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농림업에 있어서 생산과 노동조건 개선과 전반적인 토지개량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한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과거 농지정비법이 오직 농림업의 생산향상과 전반적인 토지개량촉진에 역점을 둔 반면 이번에는 진일보한 농촌지역활성화를 목표로한 지역개발촉진에 비중을 두었다는 의미가 있다. 농촌활성화의 일환으로써 산책로, 승마, 레크리에이션공간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기본조건으로써 가능한 자연의 경관을 보호할 의무가 명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의 그리투어리즘 자체가 개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와 토지정비의 사이에 구체적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독일의 큰 특징이다.

다. 「농촌에서 휴가를」 사업의 전개

(1) 농가민박의 역사

독일의 그리투어리즘을 말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농촌에서 휴가를(Uvlaub autdem Bauernhof)」 사업의 존재이다. 독일에서도 전원지역에서 휴가와 농촌에서의 민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이에른주의 한 촌락으로서 200년 이상 전부터 민박을 시작했다는 농가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이 가업을 계승하고 있다. 도시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제1차 세계대전 후 교통망이 발달해서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판매원, 지식층의 가족들과 같은

여유가 있는 계층이지만 무엇보다 소박한 농촌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 농가에 체재하면서 산책을 즐겼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그 다양한 숙박객을 위해서 특별히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친척을 숙박시키는 것과같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게 준비되었다. 독일의 농촌에서는 호스피타리티(Hospitality)라 하여 자기집을 방문한 손님을 우대하는 습관이 있다.

농촌의 민박도 시대변천에 따라서 부업이 있는 방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비율은 70% 이라고 하며 증가추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관광객을 받아드린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그 이전에는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농가의 가족과 공동사용했어야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침실도 같이 사용했다. 1960년대 중반에도 대부분의 농가가 자기의 농지에 관광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규격과 품질규정이 일정하지 않고 선전도 하지 않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바이에른주 등의 일부지역에서 실내에 화장실과 목욕탕을 설치하는 예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부터 농가의 민박이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부업이 달린 방을 임대해주는 형태도 이시대에 화란에서 도입된 것이다.

(2) 임대객실에서 시골호텔로의 변화

농촌민박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농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B&B 형태(숙박과 아침제공)이다. 독일에서는 아침식사와 침실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은 영업허가가 필요가 없고 그 수입도 매상고에 관계없으며 침실수가 7베드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과세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객실수가 15베드 이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것은 숙박업이 전업이 아니고 농가의 부업으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숙박객이 직접 취사할 수 있도록 부업이 달린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B&B 형태의 숙박시설은 전체의 2할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부엌이 있는 경우 전체 또는 2층의 일부를 부엌, 화장실, 목욕탕을 설치하고 농가로서는 식사의 제공없이 임대하는 형태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시골호텔이라고 표현되는 인기있는 숙박시설이다. 이러한 것이 증가하는 이유는 숙박객이 민박가족과의 접촉을 가능한 줄이고 자기 가족만의 휴가 생활을 지내고 싶다는 요망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농촌에서의 휴가도 아파트형식의 숙박시설을 이용객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B & B 는 농가주부에게 수고를 끼친다는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가의 조식은 대개 빵과 커피 또는 홍차, 부식에 치즈와 소세지, 잼, 소간요리 정도이다. 우유 등도 나오지만 결국은 숙박객의 조식준비는 농가의 주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3) 지역별 농촌민박의 분포

현재(1985년) 독일에는 약 19,600 호의 농가민박이 있다. 이 숫자는 독일 농가전체의 약 2.6%이다. 지역적으로는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주, 바덴뷔텐베르크주 북부는 니더작센주, 슈레스비히홀스타인주 등에 집중되어 있다. 농가민박이 널리 알려진 지명들은 남부에서는 흑림(黑林)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봉들이 있고 북부는 발트해연안과 북해연안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북부 독일 농촌민박은 대농장이 많기 때문에 민박규모도 크고 그중에는 부지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경우도 적지 않다. 숙박객의 어린이 단체가 숙박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남부는 산악지대가 많기때문에 경지 조건이 협소하고 민박의 객실수는 비교적 소규모가 대부분이다.

(4) 농촌민박의 서비스

농가의 민박이 숙박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표 2-9 와 같다. 실내의 설비가 충실함은 물론 스키나 승마, 자전거대여등을 하고 있다. 이외

에도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의 도입과 개·닭도 사육하여 함께 놀게한다던가 농가의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체험학습의 교육장이 되기도 한다.

〈표 2-9〉 독일 농가민박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① 침실내에 위생적인 시설이 있다	83.5(%)
② 개·닭 등의 동물과 어울릴수 있다	73.4
③ 복수(2실)의 방이 있다	59.0
④ 숙박객이 농작업을 할 수 있다	56.0
⑤ 동계에는 가까운 스키장이 있다	52.0
⑥ 농가의 부지내 또는 가까운 곳에 테니스장이 있다	44.0
⑦ 근처에 낚시터가 있다	40.0
⑧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	38.0
⑨ 자전거를 대여한다	33.0
⑩ 빵굽기 강습회를 기획한다	20.0
⑪ 영어를 말한다	20.0
⑫ 2층에 샤워와 화장실이 있다	16.0
⑬ 근처에서 승마할 수 있다	16.0
⑭ 농지내에서 낚시가 가능하다	16.0
⑮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15.0
⑯ 신체장애자 시설이 있다	11.0
⑰ 어린이 단체를 환영한다	10.0
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8.0
⑲ 여러가지 활동을 제공한다	7.5
⑳ 다이어트 식품을 제공한다	7.0
㉑ 식품가공 실습을 지도한다	6.0
㉒ 농가에서 승마를 할 수 있다	6.0
㉓ 프랑스어를 말한다	6.0
㉔ 수렵이 가능하다	5.0
㉕ 미술 교습지도가 가능하다	5.0
㉖ 캠프객을 받을 수 있다	5.0
㉗ 단체객을 받을 수 있다	4.0
㉘ 자가제조 포도주가 있다	3.6
㉙ 무공해 채소를 제공한다	2.0

라. 「농가에서 휴가를」의 사업추진체제

독일에서 「농가에서 휴가를」의 사업추진체제는 연방정부와 각주정부외에 독일농업협회(D.L.G), 식량보급성 보급정보서비스협회(A.I.D) 등의 활동이 유명하다. 전자는 농가에 의한 숙박시설의 운영과 품질의 기준에 대해서 지도하고 후자는 농가민박경영자의 연수프로그램과 보조정책등의 정보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농민연맹과 농민은행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1) 독일농업협회(D.L.G)

D.L.G는 「농가에서 휴가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로써 프랑크푸르트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85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이지만 오랫동안 농업종사자와 식품산업을 촉진시켜온 단체이다. D.L.G의 활동목적은 농촌의 생활과 농가의 수입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농업관계의 견본시를 넓혀나아가는 활동이 유명하다 특별히 닭고기, 돼지고기제품(75년부터) 농업기계, 부속부품, 수리부품의 분야(85년부터) 축산품을 중심으로 한 분야(89년부터) 낙농기술, 식품가공기술의 분야(88년부터)의 4분야 견본시는 국제적 규모로 실행하고 있다. D.L.G가 농가의 관광객을 받는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1965년 부터이고 그당시 농가가 자기의 농지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갖는 것이 시작되었고 또한 규격이나 품질은 제각각이었다. D.L.G는 농가독자의 상품에도 품질기준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지도하게 되었고 익년(1966년)에는 그 당시의 기준에 합당한 농가를 선정해서 처음으로 안내서를 만들었다. 현재는 안내서의 내용과 재본이 훌륭하지만 그 당시에는 게재농가수가 315호였고 지역도 바이에른주와 핫센주뿐이었다. 1972년부터는 농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보증마크가 도입되어 1981년부터는 품질보증마크가 있는 농가만을 기재하였고 현재는 1500농가만이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D.L.G가 창설된 이래

식품이나 기호품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신뢰성을 농가민박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D.L.G 마크의 엄격한 인정조건

D.L.G의 안내책에 기재될려면 D.L.G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선발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품질보증마크의 교부는 R.A.L(국립특허기관)이 인정하는 D.L.G 점수 마크에 관한 기본규칙에 따라서 각 지역의 담당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최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농협관계자, 자치체관계자, 지역진흥관계자, 관광협회, 금융기관, 호텔관계자, 음식점협회,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그중에 1명은 여성이다.

(나)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결정통지후 14일 이내에 서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D.L.G는 재심을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첫번째와 동일할 때는 재심결과 통지후 14일 이내에 중재재판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다) 품질보증마크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그후 계속하여 마크를 사용하려면 재심에 합격해야 한다. 재심의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재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라) 품질보증마크 사용을 위한 평가는 다음의 숙박형태로 분류한다.

- ① 농가내의 객실
- ② 농장내에 휴가용 가족단위 리조트하우스
- ③ 농장에서의 캠프
- ④ 보호자 없이 어린이들의 숙박

(마) DLG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임대객실부분관계(객실수, 라운지등), 급식시설, 위생관계
- ② 휴가용 가족단위 리조트하우스 부분관계(침실, 주방, 부엌 위생관계)
- ③ 캠프부분관계(캠프장, 휴게소, 취사장, 세면장, 위생관계)
- ④ 보호자없이 어린이들의 숙박(침실, 라운지, 놀이터, 급식관계, 위생관계)

※ 전형태의 공통기준 : 안정성, 농장전체적인 분위기, 농장의 수용태세 및 설비, 일반적인 관광시설, 주변관광 및 휴양의 입지조건

(3) D.L.G(독일농업협회)의 안내서

D.L.G의 안내서는 매년 발행한다. 여기에는 독일 전체 D.L.G 추천 민박이 기재되며 민박의 전경 칼라사진과 이용시설들이 그림으로 표시된다. 즉 농가민박의 위치, 접근방법(역이름, 거리) 경영자이름, 민박명칭,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객실(침대)수, 요금, 위생관계 실내시설의 유무, 근처관광지, 환경의 설명, 사육가축의 종류, 레크리에이션시설,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류, 근처에서 취사가가능여부, 낚시, 승마, 보트, 수영 가능여부 등이다.

(4) A.I.D(식량농업성 보급정보서비스협회)의 활동

독일수도 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ID는 그 업무가 농업의 보급사업을 하는 단체이지만 농가민박 경영에 수반하는 연수, 보조사업 제도등을 알리는 팜플렛트를 발행하고 있다. 또 농가민박을 개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건축비, 투자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도 한다. 그리고 농가가 민박의 경영상태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경영부기와 유사한 조사표를 작성해서 각각 항목에 따라서 실적을 기입하면 경영분석이 가능하도록 경여지도를 하고 있다.

마. 정보지의 발행과 정보의 제공

A.I.D에서는 민박을 경영하는 농가에 많은 정보를 제공,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 (1) 민박경영농가로써 관광객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가 고령자는 어떻게 대하여야하는가, 어린이 동반손님은 어떠한가, 설비, 구비 희망품목은 무엇인가,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용절감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이다.
- (2) 농가에서 휴가, 법률, 세금, 보험제도 즉 법률문제로서 계약에 관한 수속 절차와 의무, 개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평가 농림업에 관계되는 수입의 과세제도(세금, 소득세, 영업세) 각종 보험제도의 해설 등이다.
- (3) 휴가계절전에 사전준비해야 할 사항 즉 고객을 받기 위한 내외적인 조건 증·개축에 관한 구조적, 기술적 문제, 자금경비에 대한 예산산출, 노동시간의 지침, 경영판단, 고객안내에 대한 설명준비등이다.
- (4) 장애자를 위한 민박
- (5) 고령자를 위한 민박²²⁾

2. 프랑스의 관광농업

가. 프랑스 관광농업의 특징

(1) 그린투어리즘의 배경

프랑스에서는 1936년에 연간 법정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정착되면서 주휴 이외에 유료휴가를 갖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차대전 후에는 법정유급

22) 山崎光博의2인 1994, 그린투어리즘 P114~133 요약 가의광협회.

휴가일수가 증가해서 1981년에는 최저 5주간이 되었다. 그리고 금일에는 장기휴가습관이 정착해서 프랑스인의 1년 생활사이클을 좌우 할 정도이다.

프랑스인이 휴가라고 말할 때는 연속 4일 집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연간 1회이상 휴가에 참여하는 수는 전인구의 60%나 된다.

프랑스의 여름은 저녁 10시가 넘어도 환하고 관광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휴가는 여름에 간다. 그래서 프랑스인 사이에서는 휴가를 어디에서 지낼까, 언제 출발할까라로 하는 화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7, 8월에는 휴가를 떠나는 차로 고속도로가 체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휴가를 분산해서 가도록 지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 국토는 36,551의 시, 군, 구, 읍으로 분할되어있고 농촌이라고 하는 말은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인구 2000인 이하의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단위 9할이 농촌이고 프랑스인 4명중 1명이 농촌에 살고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는 19세기 중엽 도시인구는 증가했지만 근년에는 대도시 인구는 감소하고 농촌의 인구증가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 증가는 인구 1000명 이상의 행정 단위에서 볼 수 있고 인구 200명 이하(전체의 3할 이상)의 행정 단위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두꺼운 돌로 벽을 쌓아서 만든 오래된 민가는 지방의 재산이지만 근대적 설비를 들여서 주거환경을 꾸민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하고 있다.

과소화가 진행된 농촌에서는 매각의 간판을 내건 빈집들이 눈에 띈다.

1982년 조사로는 농촌에 있는 농가 중 10%는 빈집이고 16%는 별장이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여가를 시골에서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상점의 영

업이 법률로 금지되어있는 프랑스의 일요일은 도시에서는 식당도 문을 닫는 곳이 많고 거리도 한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외로 나간다.

봄에는 산림에서 프랑스를 탐색하고 여름에는 개울근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가을에는 잼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열매를 따기도 하고 산림과 목장에서 버섯따기와 자연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지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국인 프랑스에서는 1930년까지는 농업인구가 전노동인구에 40%를 차지했지만 전후 농업합리화정책으로 현재는 6% 정도이고 대개 고령인구이다.

농지는 변함없이 국토의 60% 가깝게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 농촌은 고향이고 농가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장소이다.

프랑스에서 최근 생활의 궁핍함을 호소하는 농업종사자들의 데모가 빈번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트랙타로 간선도로를 봉쇄하는 행동이 일어나도 일반국민들은 불편해 하지 않으며 갈채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경찰도 강력하게 대처하지는 않는다.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은 자기들의 생활철학을 살리고 지켜주는 존재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2) 그린 투어리즘의 역사

18 세기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제창했고 프랑스의 귀족들 사이에는 농촌에서 생활을 즐기는 것이 유행 했었다. 메리 안토와트는 페르사유 궁전의 부지내에 초가지붕의 농가를 설치해서 연못에는 농가의 여성상 조각을 꾸며 놓았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서서 수렵을 즐기기도 하고 산림과 전원을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일반인이 자연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긴다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람들은 태양을 찾아서 지중해 연안으로 떠나고 해변지역에서 휴가를 지낸다는 것은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오

래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촌의 건축물과 문화를 지키자는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제창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린 투어리즘의 시작이다.

1949년 전쟁에 의해서 황폐한 농촌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Loge et auberge France 전국연맹이 조직되었고 수년 후 농업회의소 상임회의는 농업관광협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농촌에 오래된 농가를 관광객에게 대여해 주는 대가민박이 등장해서 본격적인 민박조직인 지드 더 프랑스(Gite de France)가 탄생했다.

지드 더 프랑스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농촌(인구 2000명 이하)에 있는 민박으로서 창립목적은 첫째, 농촌에 있는 노후주택의 복구 유지 둘째, 농촌인구의 유출방지 셋째, 양질의 저요금숙박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농업성은 농업종사자가 농장에 있는 주택을 개조하거나 부지내에 개축해서 도시민에게 대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농민에게는 부수입의 수단이 되었고 도시민들과 교류의 장소가 되었다. 1959년에는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가족휴가촌협회도 설립되었다.

그 후 농업성은 민박사업의 보조를 줄여서 지드 더 프랑스 전국연맹으로 발전시켰고 연맹창립후 최초로 발행한 안내서에는 150농가정도 민박이 기재되었지만 장기휴가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저요금의 민박수요는 증가하고 연맹에 가입수는 증가하여 지금은 5만정도이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관광국이고 작은 군, 읍, 면에도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민박과 농가의 관광사업도 이러한 조직에 의해서 국내외의 관광객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그린 투어리즘의 발전은 농촌의 문화를 지키고 농민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도시민에게는 장기휴가를 저렴하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뿐만아니

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린 투어리즘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의해서 발전하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점점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국토정비지방개발국의 협력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정비계획이 실행되었다.

또 1964년에는 레크리에이션시설과 숙박설비가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녹의 휴가지로 명명하고 프랑스 녹의 휴가지연맹이 탄생했다.

프랑스에 있어서 그린 투어리즘은 1971년 농촌관광진흥센터에 있는 “농촌관광(T.E.R)”이 탄생됨에 따라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T.E.R은 관광관련단체,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30여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T.E.R은 관광성, 농업자, 유럽경제공동체(EC)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 제조직의 정보교환과 공동협약에 장이 되기도 하고 그린 투어리즘 촉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 제안도 하고 있다. 또한 가입조직인 전국 자전거연맹은 프랑스 전국토에 3,500 km의 자전거 코스를 만들고 도보여행자와 함께 이용하게 만들었다. 꽃이 아름다운 마을을 표창하는 협회도 있고 오래된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마을이 가입하는 협회도 있다. 또 프랑스에는 농촌관광에 종사할 인재를 육성하는 센터와 농업학교가 전국 각지역에 수없이 많다.

프랑스에 있어서 그린 투어리즘은 지드 더 프랑스에 의해서 정착 발전되었지만 농가에 의한 관광사업의 발전은 담보상태였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관광협회를 설립했지만 이것은 농업회의소가 의뢰하는 농업시찰단체여행을 기획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농민이 실제로 관광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7년으로서 1981년에는 농업관광협회에서 관광객을 받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에 어서오십시오」라는 상표로 네트워크(Network)를 조직하면서 부터이다.

농업종사자가 행하는 관광사업은 1988년 정부법령에 의해 법률적으로 농업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농업관광협회는 적극적으로 농가의 관광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현재 「농가에 어서오십시오」의 가입자 수는 지드 더 프랑스의 1/25 이 넘지 못하지만 농가의 관광관련조직으로는 최대이다.

(3) 농촌의 숙박시설

프랑스 숙박시설의 총수용능력은 약 415 만명(호텔 110 만명, 캠프장 250 만명, 휴가촌 30 만명, 민박 23 만명, 유스호텔 2 만명)이고 그 중 별장의 침대총수는 1,130 만이다.

숙박시설의 변화는 호텔보다 요금이 싼 민박에 머물기 때문이다. 민박시설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호텔숙박객수는 전체 숙박인원에 5.4%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프랑스 농촌에는 호텔이외에 숙박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가) 캠프장(Camping)

관광숙박시설로써는 최대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별 1 개에서 별 4 개까지 분류되어 있는 캠프장 중에서 농가의 부지내에 있는 캠프장도 포함되어 있다.

농촌지역의 캠프장 경영은 사영 52%, 공영 41%, 협회가맹 6%, 기타 1%로 되어 있다.

(나) 휴가촌(Village de Vacances)

가족이 지내기에는 적당한 스포츠시설, 각종 문화, 오락시설, 숙박시설을 겸비하고 있다.

비영리목적의 휴가촌에는 지방당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있고 농촌 관광개발에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㉔) 대가민박(Gite Rurale)

농촌에서 머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가민박은 집 한채이든가 가옥의 독립된 부분(아파트형식)을 1주간이나 주말단위로 대여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가족과 그룹이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린 투어리즘의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가민박은 프랑스 그린 투어리즘을 탄생시킨 숙박형태이다.

(㉕) 대실민박(Chambre d'hôte)

손님들의 침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실민박은 귀족이 살던 성이나 농가(중세기의 성과 수도원이 농가로 된 경우도 포함), 민가 등 여러가지가 있다. 침실과 세면대 이외에 민박이용자가 원하는 시설(응접실, 부엌)을 갖춘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식이 제공되지만 요구에 의해서 중식과 석식이 제공되기도 한다. 프랑스는 19세기 후반부터 대실민박이 등장했지만 대가민박이 빨리 정부에 인가를 받아 보급되었기 때문에 대실민박의 보급은 담보상태이다.

정부가 법률로 대실민박을 인정하고 지드 더 프랑스에 대실민박을 증가시키도록 장려하게 된 이유는 구루노 부르 동계올림픽(1986년)에 호텔 숙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 후 대실민박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㉖) 가구를 갖춘 주거계절임대(meubl  saisonnier)

일반적으로 민박보다 고급스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별장과 같은 특징이 있지만 대실민박과 같이 일부방만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 의해서 임대는 1주일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등급은 3단계로 보통, 쾌적, 고급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민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러한 형태와 대가민박, 대실민박의 차이점을 두고 여러 번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자금 지원의 기준을 정했다.

(바) 기타 민박

농가에 민박해서 농가에 체재민박, 승마민박, 어린이민박, 요금이 싼 간이민박, 단체민박이 있다.

이상의 프랑스 민박의 특징은 그린 투어리즘의 역사에서 본 바와 같이 농촌의 노후화한 집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박사업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옛 구옥들은 대부분 석조건물이고 외기(냉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하고 지붕은 허물어졌지만 벽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촌의 건물을 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즘은 석조건물의 신축은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나 부르크집을 건축하는 형편인데 근대적 가옥이나 아파트는 벽난로를 만들고 있지만 농촌의 오래된 집들은 구식 벽난로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 도시인들은 이러한 농가에서 휴가를 지낼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것은 프랑스인들의 꿈을 유혹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집들은 각 방들이 독립해서 있다. 그래서 대실민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던 방에 세면대와 욕실을 설치하면 충분하다. 특히 농촌의 옛집들은 벽이 두껍기 때문에 호텔보다 쾌적성이 뛰어나다. 민박경영자는 관광객에게 침실을 제공해도 사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또 큰 대가민박에서는 두 가족을 함께 받아도 자존심의 침해를 받지 않고 이용자수가 많으면 대실민박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프랑스 대실민박은 조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때의 조식은 빵에 버터, 잼을 바르고 커피, 홍차, 크코아를 마시는 간단한 식사이다. 테이블위에 30 종류의 자가용 잼을 놓기도 하고 집에서 만든 케키, 치즈를 내놓는 민박도 있지만 대개 수종류의 자가제조 잼을 내놓는 정도이다. 점심, 저녁을 내놓는 민박도 요리는 비슷해서 보통의 프랑스요리를 내놓을 때도 접시를 바꾸거나 치울 필요가 없다.

대가민박에서 이용객은 자취를 하게 되고 출타시에 청소를 하게 되어 있

기 때문에 민박경영자의 일은 상당히 간편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4 환은 휴가를 보낼 때 친척과 친구의 집을 선택하고 그들은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그룹이 자기가 아는 지방에 올 때에는 자기 집에 머무는 것 같이 서스름없이 이야기 한다. 프랑스 가정에서는 친구방이라는 2인정도 숙박가능한 별도의 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대는 프랑스 민박을 발전시킨 이유의 하나이다.

민박경영자는 생활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정도의 관광객을 받고 외부인과 접촉함에 따라서 생활의 변화를 느끼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편 숙박이용자도 호텔이용때와는 다르게 예절 갖춘 태도로 행동한다. 이것은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민박에서 더욱 현저하다. 대개의 경우 민박경영자와 이용객이 함께 식사하지만 동석한 친구(동반한 관광객)도 친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민박의 인테리어는 경영자의 취미나 취향에 따라 정해지지만 특히 주부의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

지드 더 프랑스나 「농가에 어서오십시오」에서는 가맹자에게 관광가이드 북과 팜프렛트 등을 민박에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대가민박에서는 체재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과 상점 아침장이 열리는 요일, 간단한 향토요리책, 관광객안내책(각국말로) 등도 유인물로 정리해서 비치해 놓는다. 또한 민박경영자는 가까운 농가식당의 정보와 맛있는 향토생산물을 직접구입할 수 있는 농가의 주소 등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4) 민박경영의 지원체제

민박경영의 자금지원은 장기간 농업성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전부터 지방분권됨에 따라 정부지원은 지역개발과 같은 큰 사업만 지원하고 개인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박경영자에 대한 보조금과 저이자대출액, 그에 수반하는 지급조건은 지방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르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

부공인의 민박연맹의 기준에 합격해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드 더 프랑스나 「농가에 어서오십시요」 등 유력한 네트워크(조직망)에 가맹하고 있는 민박경영자가 유리하다.

보조금을 받은 경영자는 10년간 매년 최저 3개월은 민박영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가민박의 경우 임대기간이 연속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10년이 경과되면 민박을 폐업해서 자기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

금융기관도 그런 투어리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관이 농촌관광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또 프랑스 각지역에는 농촌관광사업을 행하기 위한 연수센터가 많이 있고 연수비는 정부, 지방기관에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세재상의 우대 조치도 주민세는 대가민박에 있어서 민박으로 임대하지 않는 시기에 경영자가 주거 할 경우 직업세가 과세된다. 대실민박은 경영자의 주거에 일부이므로 당연히 과세된다.

직업세는 대가민박에는 민박이 인구 2000명 이하의 읍, 면, 동 터에 위치하고 경영자 주거의 일부로 부지내에 있고 그리고 임대가 연간 6개월이 내일 경우 이상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면제된다.

대실민박은 1박단위로 대여 임대되는 경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대가민박인 경우 1991년부터 면세되고 있다. 다만 임대계약 1건의 금액이 1만프랑(2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기타 민박에 관한 세율은 숙박비에 5.5%, 식사료에 18.6%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식포함 숙박비를 설정하고 있는 대실민박의 경우는 요금의 4분의 3에 5.5%, 4분의 1에 18.6%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이 1350프랑(340,000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가 되고 1,350프랑~5,400프랑(350,000원)의 경우에는 감세된다. 민박경영에 의한

수입은 상공업으로 취급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매상고가 2만6천 프랑(6,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수입의 반액을 수익으로 견적을 내서 과세 신고하면 된다.

농업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농가의 경제에 관광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1988년에는 농업종사자가 행하는 관광사업과 생산물직매도 법률적으로 농업활동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었다. 21세에서 58세까지의 농업종사자가 관광사업을 시작하면 설비투자액에 대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액은 최고 28만프랑(7,000만원) 한도이다.

(5) 가맹민박의 품질관리와 등급

지프 더 프랑스 전국연맹에 가입한 민박은 연맹이 정하는 최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민박경영자가 연맹에 가입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각 민박형태별로 계약서에 날인해야하고 연맹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이용객은 전국 어느 곳에 민박을 이용해도 안심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게 된다. 연맹에서 발행한 전국 안내서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앙케이트 용지가 비치되어있고 민박 경영자는 이용객의 의견을 물어서 좋고 나쁜 점을 가리지 않고 소속지방협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객의 의견은 연맹의 품질관리부에서 집계하여 분석 결과를 민박 경영자들에게 전하여 준다.

민박의 등급은 프랑스 호텔이 별의 수로 나누는 것 같이 민박은 보리이삭으로 표시해서 1~4개로 분류한다. 물론 이삭의 수가 많으면 가옥과 환경조건이 좋고 쾌적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연맹가입자는 자유로이 이용요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많은 것이 고액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전국판 안내서와 지역 소책자에는 어린이 민박과 「어서오십시오」 민박을 제하고는 모든 민박에 등급이 표시되고 있다. 등급은 이용객이 민박을 선

택할 때에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연맹의 큰 사업 중에 하나이다.

연맹에서는 민박등급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점검표)을 민박형태별로 작성하고 있다. 지역민박협회에서 민박농가를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한 실사로 등급을 부여한다. 결정된 등급은 5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보리어삭이 있는 등급표시마크를 부착한다.

따라서 가맹조건과 등급결정기준은 대가민박의 경우 조용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에 정원이 갖추어져 있고 1가족이 휴가를 지내는데 필요한 시설과 비용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실(방) 이상의 침실, 전기와 온수 공급설비, 화장실, 세면대, 목욕탕, 부엌, 생활에 필요한 비용(가구, 조리기구, 식기 등)이 필요하다. 또 정원에는 그늘이 있고 기린대어풀과 어린이 놀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하계에만 임대하는 민박은 난방설비가 없어도 된다.

대실민박의 경우는 농촌에 정원이 있는 주거환경이다. 호텔, 식당, 다방, 소유와 악취가 있는 상점근처에 있는 방은 인정하지 않는다. 침실에는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문과 커튼, 조명기구, 시트를 갈 수 있는 침대, 테이블과 의자, 난방설비, 수건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공되는 침실의 수는 1채당(一軒) 10실(15인수용)까지이고 침실의 넓이는 2인당 12m² 이상, 3인당 15m²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리어삭 4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 하나의 크기가 최저 18m²가 필요하다. 위생상태는 심사의 중요대상이고 침실에 온수기 나오는 세면대가 있고 6인당 하나의 공동화장실과 욕실이 있으면 보리어삭 1개의 등급이 된다. 보리어삭 2개는 침실당 세면대 1개와 샤워 또는 욕조가 있고 화장실은 공동(6인당 1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보리어삭 3~4개는 세면대 샤워 내지 욕조 화장실이 1실마다 전용으로 침실에 인접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표 2-10〉 대기민박등급기준

점 검 사 항	보 리 이 삭			
	1 수	2 수	3 수	4 수
〈환경과 옥외설비〉(35 점) 공해유무, 입지조건, 주차공간, 지방 특색유무, 정원의 상태, 옥외시설 등	16 점	16 점	25 점	29 점
〈건물의 상태〉(35 점) 객실의 배치와 넓이, 조명, 위생상 태, 난방 등	16 점	21 점	25 점	29 점
〈실내설비와 인테리어〉(35 점) 바닥, 벽의 상태, 가구, 침구, 부엌 설비, 전기제품, 위생설비, 인테리 어 등	16 점	21 점	25 점	29 점
합계	48 점	58 점	75 점	87 점

〈표 2-11〉 대실민박등급기준

점 검 사 항	보 리 이 삭			
	1 수	2 수	3 수	4 수
〈환경과 접객〉(32 점) 민박교통편, 공해유무,接客대료 등	12 점	16 점	20 점	26 점
〈체재의 쾌적성〉(32 점) 방의 배치, 인테리어, 조식의 질, 서비스상태 등	12 점	16 점	20 점	26 점
〈침실의 상태〉(32 점) 침구, 난방, 조명상태 등	12 점	16 점	20 점	26 점
〈위생설비〉(32 점) 욕실, 화장실, 세면대 상태, 위생상 태 등	12 점	16 점	20 점	26 점
합계	48 점	64 점	80 점	104 점

※ 등급기준에 따른 장비설치 예
 보리이삭 1 개 최소한 렌지와 냉장고
 보리이삭 2 개 오븐, 다리미, 세탁기 등이 추가
 보리이삭 3 개 믹서, 커피믹스, 전화, TV 가 추가

(6) 앞으로의 그린 투어리즘(농촌관광)의 과제

프랑스에서는 농촌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오래동안 성장산업으로 보여진 농촌관광은 1987년 매상고가 570억프랑(약 10조42,500억원), 연간 3억2,700만박(전국관광숙박일수의 18%를 차지)을 기록했다. 장래의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a) 부가가치가 있는 농촌관광

겨울스포츠가 성행하였기때문에 스키장이 있는 산업지역 관광지는 해변지역과 같이 고급 휴가지역이 되었다. 관광성 조사에서는 전원지역의 휴가 체재비용은 호화스런 고급관광지 보다 약 3할이 싸다.

프랑스에 있어서 농촌관광은 해변지역에서 장기휴가를 지내려는 사람들에게 싸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려는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때문에 전원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휴가를 보내는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다.

농촌의 숙박시설 중에는 요금이 싸고 질도 떨어지는 곳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쁜 이미지를 타파해서 농촌에도 질 좋고 고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진흥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성에서는 세계각국에서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해변과 산악지역의 관광객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지역의 관광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 다수는 지역사람과 접촉해서 프랑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민박을 좋아한다. 독일과 스위스 등 프랑스보다 경제력이 있는 국가의 관광객은 질 좋은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전원지역에서 휴가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인접 제국의 관광객은 프랑스 농촌관광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도 사람들이 혼잡한 유명한 관광지보다 조용한 전원지역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

겨서 농촌관광이 좋아지고 있다.

농촌의 최대매력은 조용한 휴식장소이다. 전원에서 휴가를 지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교를 산책해서 자연을 접촉하고 성과 교회를 방문하고 맛있는 향토요리를 먹고 독서하는 일에 즐거움을 발견하고 싶다고 답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농촌관광은 농촌에서 승마, 테니스, 골프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엇이든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공한 예로써 페인 드 로와즈지방의 지역관광위원회에서는 16 개의 자전거 코스를 만들고 자전거여행과 호텔을 패키지로 판매하였더니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은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좋아졌다. 또 전국 등반연맹은 안내자를 동반해서 도보여행을 하고 참가자의 화목을 매일 숙박지의 간이민박에 차로 수송하는 조직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하천과 운하의 카누투어에도 응용되고 있다.

(나) 농가의 관광사업촉진

농업회의소에서는 프랑스에서 관광사업을 행하고있는 농가는 약 2 만호 전농가의 약 2 % 라고 발표했지만 스웨덴 20 %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7 %, 서독의 4 %에 비교하면 낮은 비율로써 농가의 관광활동촉진을 외치고 있다. 1987 년에 T.E.R(농촌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을 행하고 있는 농가는 2 만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맹에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써 그 비율은 40 % 정도(어린이민박과 농장캠프장 80 %, 대실민박 35 %, 기타민박 40 %)지만 실제로는 30 %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지드 더 프랑스에는 비농업가맹자가 많기 때문에 농가 우선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연맹의 경영전략은 이용객들이 높은 등급의 민박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농가 건물은 대대적 수리를 하지 않으면 등급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관광객이 그다지 오지않는 지역에 있는 보리이삭 1 개의 농가민박은 년간을 통하여 관광객이 오지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노후화 건물을 지킨다는 연맹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근대적 시설로 고쳐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민박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가민박은 대실민박에 비교해서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금리와 공사비에서 자기부담이 늘어나고 임대수입은 년간을 통해서 분산수입되고 해서 수입이 적은 농가가 대가민박을 시작하기는 곤란하다.

보조금지급은 도시인이 농촌에 있는 낡은 농가를 구입해서 수리한 후 민박을 치고 노후에는 자기가 별장으로 이용하던가 자식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에 편리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상의 문제와 더불어 빈번히 바뀌는 세제의 복잡성과 사회보장 부담금의 새로운 적응도 농가의 관광활동을 어렵게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에서는 정부가 농가의 관광농업지원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다.²³⁾

3. 화란의 관광농업

가. 농촌지역에서의 변화

(1) 농촌지역에서의 변화

화란의 농촌지역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요한 몇가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농촌의 장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3) 山崎光博외 2인 1994. 그린 투어리즘 p. 58~101 요약 가의광협회

- (가) 농촌지역의 감소, 농촌인력의 상당한 감소, 생산방법의 현대화와 집약화, 환경문제에 따른 농업분야의 재편성
 - (나) 농업과 직접관련 없는 새로운 활동의 발달로 토지사용의 양태를 변경할 강력한 경제 다양화 현상
- 이러한 변화로 특정지역에서 농촌의 상대적 중요성이 고용 및 농업 생산면에서 저하되고 있다.

(2) 농업관광의 역할

- (가) 경제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농촌관광은 특정 농촌지역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농토, 물, 건물 노동력 등을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농촌은 자연을 찾는 관광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다. 또 농촌은 주업이든, 부업이든 관광을 통하여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 곳에 따라서는 농촌생활 수준과 농촌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농촌의 상점과 각종시설도 개선될 수 있다. 끝으로 농촌과 도시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나)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관광은 농촌생활과 농장관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쓰레기, 농장개방, 교통량의 급증으로 농장관리에 방해를 받는다. 관광용 사회간접자본 개발로 농토가 복잡한 도로망으로 뒤덮히게 된다. 끝으로 주변의 농장개발이 제한을 받게 된다.
- (다) 농업관광이 농장에서의 휴양이라면 바람직하지만 어디까지나 농장의 농업적 성질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 농촌에서의 관광사업은 어디까지나 농업의 부업으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관광이 농장사업을 관광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데 충분한 목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라) 좋은 관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농장의 주변은 경치와 환경이 좋고,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관광농장은 또 관광농장과 도시·마을,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길, 도로와 수로의 망(網)속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농장은 자전거타기, 산책, 승마, 카누 같은 노선을 따라가

는 스포츠와 연계될 수 있다. 그외에도 시민농원(Allotment Gardening), 취미로 하는 동물사육, 승마, 골프, 주말 여가활동과 같은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여가활동도 가능하다.

(마) 이런 관점에서 농가의 능력과 기존 농장시설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농촌측의 접객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며 방문자는 그들이 농촌의 손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농촌관광에 대한 정부정책

(가) 화란에서는 “농업·자연관리, 어업성”(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이 농업, 자연경관, 농업관광을 포함하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야외 여가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부정책은 1993년 발표된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정책문서”에 명시되었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자전거타기, 산책, 승마와 같은 자연지향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농촌지역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 정부정책의 하나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국 산책 및 자전거 도로망(Network)를 실현하는 일이다. 화란에는 농촌지역에 약 3,000 킬로미터의 산책 장거리 도로망을 갖고 있다. 이 도로망은 공공도로로 자원봉사 단체들이 측량, 표지설치, 관리를 맡고 있다. 또 전국에 약 20,000 킬로미터의 장거리 자전거 도로망이 발달되어있다. 도로는 설정이 되어 있으나 아직 표지설치가 다 되어있지 않으며,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자전거 도로망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다 실현되면 농촌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유는 이런 도로망에 따라 많은 음식, 숙박시설이 필요하므로 농촌과 관광사업이 공히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다) 지금까지 화란의 농업관광은 캠핑법(다음에 설명) 시행으로 가능하게 된 농장캠핑에 국한되었었다. 이 법에 따라 지방 정부당국은 농장의 캠핑금지를 면제하고 3월 15일부터 10월 31까지 농장에 최고 캠핑 장비

5 개의 설치를 허용한다. 그 이외에도 연중 어느때라도 6주간 최고 텐트 5 개 또는 텐트 2 개와 추레이터(캠프밴, 카라반 등 포함) 3 대의 캠핑을 허용한다. 이상을 합하면 농장에 6주동안 최소한 10 개의 캠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1992년에는 화란에서 약 1,200-1,500의 농장이 캠핑장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농촌에서는 휴경의 농장에서 캠핑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그룹으로 농장건물이나 캠핑용이 아닌 건물에서 하룻밤을 지낼수 있다. 앞으로 생산 쿼타, 농산물가 하락, 환경적 조치 등 때문에 더 많은 농토와 농가건물이 사용하게될 전망이다. 이런 것들을 관광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환경위생, 구획계획, 가축방해금지 등 규제로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정부가 관광목적에 위한 토지와 건물의 재 사용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마) 얼핏보면 농장캠핑은 부업으로 보이지만 적지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평균 275 시간 노동에 7,400 길다(\$ 12,690)의 소득을 올린다.)

그러나 농장캠핑을 부업으로 보면 그리 좋은 것은 못되며 보통 이득이 적다. 연구결과를 보면 연 2,000-10,000 길다(\$ 3,700-18,500)정도다. 캠핑수입 이외에도 농민은 휴일 숙박(개인 또는 집단), 캐라반 주차, 농산물 판매 등으로 수입을 올린다. 화란에서 농장에서의 B & B(아침식사와 침대제공)은 그리 흔하지 않다. 특히 장거리 산책자나 싸이클 리스트들이 이런 시설을 좋아하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에 필요한 투자와 수익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수입은 10,000 길더(\$ 18,50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 경제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장캠핑이나 기타 상술한 농가활동은 부업적인 것이지만 보다 매력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관광객의 수준 높은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현재 “농업·자연관리, 어업성의 야외 레크리에이션부”는 농장에서의

휴일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촌관광과 관련된 여러가지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로 개발을 위한 주 단체로는 “장거리 산책로 재단”(Long-distance Footpaths Foundation) 과 “전국 싸이클 플랫폼”(National Cycling Platform)이 있다. 농장캠핑과 관련한 단체는 “휴일농장 사용자 및 공급자 연합”(Association of Users and Suppliers of on-farm Holidays)과 “농장캠핑 공급 농민협회”(Association of farmers supplying on-farm camping opportunities)가 있다.

(4) 화란의 캠핑법

(가) 캠핑법 제정의 중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캠핑의 다양화
- 캠핑 규칙의 통일화
- 최소한의 위생규칙 설정
- 구획계획과의 관계설정

(나) 캠핑법은 1984년 12월 12일 발효됨

정부가 허가하는 장소외에는 캠핑을 금한다는 원칙에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각 지방 정부가 관할구역내에서 캠핑금지 또는 허용에 관한 캠핑규정을 갖고 있다. 지방당국은 허가, 면제, 완화(dispensation)의 구분으로 캠핑허용 장소를 지정한다.

(다) 1990년초 “야외 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이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현재의 캠핑법이 여기에 통합되었다. 시(市) 새법에 따르면 농장캠핑 허용 최대 캠핑천막(또는 기타기구)의 수는 5개에서 10개로 증가된다.

(라) 허가를 요하는 캠핑과 방가로 장소

대부분의 캠핑장과 방가로 장소는 캠핑법에 의한 허가사업이다. 당국

은 허가시 조용히 하기, 안전, 위생, 자연 및 경관보호에 관한 많은 조건과 제한을 부과한다. 또 캠핑법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한다.

- 요금표 게시
- 사업주가 청구하는 캐라반 매매 소개비(또는 매매가에 대한 비율)
- 임대기간, 임대연기 및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규정
- 캠핑 숙박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의무사항
- 캠핑 숙박자의 수칙

(마) 허가를 면제받는 캠핑장소

다음과 같은 소규모 캠핑영업은 당국의 허가 면제 받는다.

- 소규모 농장은 3월 15일-10월 31일 기간 농장에 캠핑장구 5개까지 설치하는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다.
- 그룹캠핑(농림, 자연관리, 수산성이 인정하는 단체나 조직)은 연 100일간까지 캠핑장에서 캠핑이 허용된다.
- 우발적인 캠핑은 연간 최장 6주간 캠프장에서 천막 5개까지의 캠핑을 할 수 있다.
- 연간 100일을 넘지않는 레크리에이션이면 캠핑용이 아닌 통나무집, 농장건물 또는 기타 건물에서 숙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고 따라서 캠프장의 규칙이 적용한다.

(바) 규제가 완화된 캠핑

집과 인접하지 않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특수한 경우 그 땅위에서 캠핑할 수 있다. 당국은 연중 천막 1개 또는 추레이러 천막 1개의 캠핑을 허용한다. 3월 15일-10월 31일 기간에는 천막 2개를 더 추가 허용한다.

(사) 자유로운 캠핑

소위 “자유로운 캠핑” 또는 “단기적 캠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캠핑장이 아닌곳에 천막 3개를 72시간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런식의 캠핑은 토지주인의 허가를 득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아) 캠프장에서의 위생규칙

화란의 대부분의 캠프장과 휴가용 코티지에서는 위생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위생규칙은 화장실, 세탁시설, 샤워장과 상수도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당국은 허가전에 현장을 점검한다.

〈캠프장에 대한 연구결과〉

Wageningen 농업대학이 캠프장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캠프 이용자들은 조용한 환경, 소규모 장소, 개별적 접촉 등이 이용 주목적이라고 한다.
- 농민들은 재정적 욕구, 농토와 건물의 활용, 사람 접촉욕망, 도시민과의 경관(景觀) 공유(共有), 캠프장 수요충족 등이 캠프장 설치의 주목적이라고 한다.
- 정부의 농민에 대한 캠핑허가 면제가 캠프장 증대에 기여한다.
- 홍보가 잘되면 농장캠핑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될 전망이다.
- 농가의 절반정도는 농장캠핑 이외에도 민박, 캐라반 주차, 농산물판매 등을 겸하면서 수익을 보충한다.
- 캠핑장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려면, 위치가 휴양지로서 적절한 곳이어야 하고, 농장캠핑에서 적절한 숫자의 캠핑도구(천막 등) 설치를 허가 면제 해야하며, 캠핑장의 내방객 점유율이 높아야 한다.

(5) 농촌지역 구조계획 (Structure Plan for Rural Areas)

화란정부는 1993년 6월 30일 발효 5년간 유효한 “농촌지역구조계획”이란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인구조밀한 화란의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히 농촌지역을 손상함이 없이 가용토지의 적정적 사

용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참고로 1993년 기준 화란의 국토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용 토지 60%(원예 3.6%, 경작지 24.5%, 초토 32.1%)
- 비농업용 토지 40%(수면지역 15%, 수림지역 8%, 주택지 5%, 자연지역 4%, 간접자본 4%, 레크리에이션지역 2%, 산업지역 1%, 기타 2%)

(가) 목 적

농촌지역의 보호, 농촌관광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10년간의 기존환경시설의 보호와 새로운 개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있다.

우선 순위는 농업, 자연과 경관, 임업, 연안 및 내수어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관심은 농업과 자연의 균형유지에 있다.

(나) 농업용 토지사용 계획

지속적, 안정적, 경쟁적 농업육성에 목표를 두고 분야별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다.

-온실원예, 구근(球根)재배, 수목재배, 현재 이러한 원예농업은 시장 확대와 같은 이유로 더 확장해야 될 전망이며 확장은 현재 원예농업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주변으로 확산해야 한다.

-토사지역에서의 축산

환경보호 지구에 있는 가축농장을 적절히 이전하고 축사(畜舍)를 개선한다.

(다) 환경보호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토지사용계획

인공경관지를 지정,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지역 설정, 국립공원 증가, 수목지대 확장, 완충지대 설치 등의 정책을 강구한다.

-인공 경관지

10 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바 이들은 그의 문화적·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에 기여할 수 있는 경관이 좋은 농업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농업·임업·경관, 야외 레크리에이션이 모두 잘 조화 되도록 한다.

— 농촌지역 전략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1,000-3,500 헥타르의 대규모 자연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말한다. 16 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20 년 계획이다.

—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최소한 1,000 헥타르 이상의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현재 화란에는 10 개가 있으나 앞으로 16 개로 늘릴 예정이다.

— 산림녹화

산림지역을 현저하게 확장한다. 2,010 년까지 총 63,000 헥타르 면적의 나무를 도시, 농촌, 자연 개발지역 등에 식목할 예정이다.

— 완충지대 설치 정책

환경보호를 위해 3 단계 완충지대 설치 계획을 개발했다. 첫째, 보호지역을 수도와 같은 자연 경계선으로 격리시킴으로써 완충지대 설치 필요성을 줄인다. 둘째, 필요시 보호지역을 수리적(水理的)으로 격리시키는 추가적 기술조치를 취한다. 셋째, 보호지역 외곽 경계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한다.

— 기 타

특정의 자연녹지, 수목림 또는 휴양지가 도로 전신주 부설 등으로 그 용도가 변경될 때는 보상한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 책임을 지며 독립 기관인 “공동시행서비스본부”(Goint Implementation Service)가 시행을 담당한다.

(6)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정부정책

(가) 화란의 농촌지역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지역은 점점 감소 추세지만 아직 국토의 70%가 농업, 축산업, 원예, 산림에 이용되고 있다. 농업은 주로 농산물 생산이 주목적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점차 농업지대의 보호, 자연보호 및 레크리에이션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 정책은 이러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도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데 있다.

(나) 야외 레크리에이션

대규모 레크리에이션은 최근의 일로 2차 대전후 특히 60년대 여가 시간의 증대에서 비롯된다. 1961년 48시간 노동은 40-38시간으로 감소되었다. 또 비노동 인구의 급증(조기퇴직, 연금수령자, 구직자), 소득과 여가시간 증대가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을 가증시켰다. 1985년의 통계로 레크리에이션 관광은 그 소비 지출에 있어 총 소비지출의 10%, 또 고용에 있어 총 고용의 6%를 차지한다.

야외 레크리에이션이란 산책, 자전거타기, 수상 스포츠와 같이 휴식과 자기개발을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용도로 점점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한데 1985년 총 72,200 헥타르를 점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농원	4,401 헥타르
공원과 가든	15,362 헥타르
휴일 레크리에이션 지역	17,636 헥타르
평일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지역	15,818 헥타르
레크리에이션용 숲지대	17,831 헥타르
스포츠 용지	7,200 헥타르
내륙 수면(水面)	150,000 헥타르

(다) 정 책

자연 및 경관보호와 함께 야외 레크리에이션 정책에 대한 책임은 농어

제 2 장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업성에게 있다. 농어업성은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타부처와의 협조

(경제성, 사회복지성, 보건 문화성, 교통 공공사업성, 주택, 지역 개발, 환경성)

- 휴일 레크리에이션, 일상 레크리에이션, 수상 스포츠, 낚시, 승마, 시민 농원 및 애완동물에 대한 정책

-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배치, 구조, 관리 :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농촌지역으로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야외 레크리에이션 정책의 주요목표는

① 모든 국민의 자발적 참여 도모

② 자연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려

(라) 휴양자(Holidaymakers)

휴양자에 대한 정부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대상의 폭을 넓히되 특히 노령자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안전, 정숙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형태에 대한 정보 확산

- 적절한 도로표지 설치의 필요성

- 민간·정부연구소의 연구활동 계획

(마) 시 설

1985년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구조적 계획”으로 시설 확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됨(이 계획은 25년간 유효)이 계획은 현존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보존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확보하는 지역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유형

- 산책과 자전거 타기

자전거타기가 가장 인기있는 종목으로 1,100 만대의 자전거가 있으며 연 150 만명이 조직적인 자전거타기에 참여한다. 회란에는 또 3,000 키

로의 산책길과 20,000 키로의 자전거길이 있다. 산책길과 자전거길을 더 확장하고 도로표지와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수영과 일광욕

18 세 이상자 4 명에 1 명이 수영 또는 일광욕을 한다. 일기 좋은날에 최고 200 만명을 넘는다. 시설정책은 관계 부처와 협조 수질을 향상 시키는 일이다.

-낚 시

110 만명의 낚시인(바다 및 내수)이 있으며 내수에서의 낚시는 허가 제도이다. 허가 수수료는 고기보호, 관리, 홍보, 연구, 음식문화 비용 등에 사용된다.

-수상 스포츠

20 만개의 요트와 모타보트가 있으며 950 개의 선착장(marina)에서 15 만척의 각종 배를 보호하고 있다. 내수 수상 스포츠가 인기있는 데 전국에 윈드써핑이 40 만, 카누 9 만개, 조정선 15 만척, 고무보트 약 50 만개가 있다. 연간 약 100 만명이 정기적으로 물놀이를 한다고 하며 수상 스포츠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시설확충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설 선착장을 늘려서 수상 스포츠를 장려하고 수상 스포츠의 기술을 홍보하는데 두고 있다.

-시민농원(Allotments)

빈곤한 농업노동자의 구제목적으로 농촌에서 시작 도시로 확산된 소위 레저형(Leisure) 시민농원들이다. 177,000 명 이상의 회원이 시민농원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협회가 시민농원을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나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하는 개인적 시민농원도 있다. 화란 시민농원의 특징은 그 다양성에 있다고 한다 정부는 비전문(아마추어) 원예교육·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애완 동물

2,200 만의 애완동물(애견 170 만, 고양이 170 만)와 120 만의 애완조류가 있으며, 30 개의 동물원에 연간 550 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승 마

약 38 만명의 화란인이 연간 10 회이상 승마에 참여한다. 전국에 900 개의 레크리에이션용 승마장과 2,000 개의 마사회가 있으며 조직의 확대와 승마수칙의 장려가 정부의 정책이다.

— 휴일 레크리에이션

100 만 가구가 천막, 55 만 가구가 캐라반, 26,000 가구가 캠핑용 캐라반을 소유한다. 또 전국에 임대용 코테지 15,000 채, 별장·휴가용 코테지, 프랫(flat) 등이 8-10 만채가 산재해 있으며 많은 외국인이 화란을 방문한다. 캠핑법은 휴일 레크리에이션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공원

○ 목 표

국립공원의 목표는 야생동물과 자연보호 및 개발, 환경교육 및 홍보, 레크리에이션 기회의 증대, 연구 등에 두고 있다. 현재 약 20 여개의 국립공원 또는 공원에정 지역이 있는데 이들은 동시에 자연보호 지역이다.

○ 안내와 교육

안내센터는 공원의 입구나 공원 가까운데 있는데 안내센터는 안내서, 도로망, 지도, 책자 등을 준비, 배포한다. 대부분의 안내소에는 “스트리트”를 통한 공원 소개를 한다. 또 그룹 관광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도 예약할 수 있으며 장애자의 접근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안내센터는 통상 연중개장 한다.

○ 교 육

공원내 뿐만 아니라 공원 인근에서도 지역주민, 학생, 기타 내방객을 위한 교육계획을 운영한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Work-Camps, school-projects(학교실습), 안내자 동반 관광 등의 과정도 마련하고 있다. 모든 고원에는 산책로, 자건거길, 물이 많은 지역에는 카누 루트가 있다. 곳곳에 새와 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 관망대도 있다.

○ 연 구

공원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한다. 여가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면상승, 허용수준, 특정의 관리 기능 등 모두가 연구대상이 된다.

○조용한 레크리에이션

방가로, 캠프장과 같은 보다 영구적인 레크리에이션 시설물의 설치에
공원내에서 금지된다. 공원에서는 산책, 자전거, 카누, 새 구경 같은 자
연에서의 여가활동만이 허용된다.²⁴⁾

4. 일본의 관광농업

가. 농촌관광(Green Tourism)의 동향

일본의 관광농업의 전개는 각 지역에서 여러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
다. 그 선진사례로써 九州에서는 熊本縣의 阿蘇町, 中國地方에는 岡山縣
作東町, 그리고 東北에서는 秋田縣 合川町, 北海道에서는 帶海市을 중심
으로 十勝野一帶의 市町村을 들 수 있다.

(1) 熊本縣 阿蘇町

대규모 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생명을 지켜주는 물과 녹의
생명보고라는 개념으로 지역농가가 지역영농주체의 “그린(NTF)”를 설
립해서 장래의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또 옛날부터 공유지를 토
대로한 가축(소)의 주인제도, 농용지의 전용, 골프장 등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岡山縣 作東町

縣의 전지역에서 九州區를 선발 “岡山농촌형 휴양사업”을 전개 빈가옥이
나 구옥(헌집)을 개축 중심건물(대표 상징 건물)과 롯찌(숙박시설)를 건
설하는 등 숙박시설의 정비, 임대농원, 체험농장, 캠프장, 테니스 코트
등 교류 시설의 정비, 초가지붕에 난로(일본식)가 있는 농가와 물레방아
간의 복원등이 실시되고 있다. 1989 년부터 시작된 숙박시설은 자취를 원칙으
로 1 박에 3,000 엔(3 만원) 이하를 받고 있지만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4) 박송택외 2인 1994. 선진국 관광농업 사례연구 p. 117~134 요약 한국관광공사

(3) 秋田縣 合川町

1991년부터 체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즉 도시 주민들을 농가에 초대해서 민박시키고 교류를 심화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지정을 받은 合川町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산촌단기유학「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농가에서의 숙박과 개울에서의 놀이, 농작업 체험이 인기가 있다.

이웃 마을인 太田町에서는 仙台市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인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인 우주비행선, 눈썰매(엔진부착), 싸이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농촌에서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정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쾌적한 지역만들기 운동은 1991년 6월 5일 개최한 제 19 회 전국 농업대회에서 “21 세기를 향한 농업, 농촌진흥을 위한 쾌적한 우리 마을 만들기”라는 농협운동이 발표되었다.

이 운동은 일본의 농촌을 산간농업지역, 평지, 중간농업지역, 도시화 지역의 3 지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중점시책을 만들었다.

그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대책에서부터 지역환경보전, 정비대책까지 7 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4 번째에 농촌전원도시 건설, 농촌형 휴양정비대책이 감명있게 받아들여졌다. 이 중에서 농촌형 휴양정비대책은 기본적으로 민박협회의 조직화와 서비스 시설수준의 향상이 제기되었고 그 대상지역에 있는 산간 농업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으로써 민박, 농업공원, 임대농원, 별장, 어린이촌 등 교류시설의 정비를 제기하고 있다.

〈표 2-12〉 쾌적한 지역 만들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중점운동

주요 내용		중점운동
① 지역토지이용대책	★ 지역토지 이용계획의 책정 • 토지이용 의향 조사의 실시 • 집락토지이용계획만들기	토지이용계획 책정운동

② 지역농업진흥대책	<p>★ 지역농업진흥계획의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영농집단의 육성 • 농용지 이용조정의 추진 • 기계시설의 효율적 이용 • 고부가가치 농업확립 • 고령자, 부인에 적당한 농업의 진흥 • 3H 농업의 확립 <p>영농센타의 설치 영농진흥기금의 조성</p>	지역영농집단 육성운동
③ 농업후계자, 노동력 확보대책	<p>★ 후계자, 노동력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책정 	
④ 농촌전원도시 건설, 농촌형 휴양정비대책	<p>★ 농촌전원도시건설, 농촌형휴양정비계획의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사업체제의 확립 • 토지활용상담의 실시 • 농촌형 휴양정비 계획 책정 • 민박협회의 조직화와 서비스, 시설수준향상 	토지활용상담 활동
⑤ 농업농촌관련사업진흥대책	<p>★ 농업농촌관련사업진흥계획의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가공판매·음식시설의 설치 • 도시농촌교류관계시설의 설치(농업공원 등) 	자매농협만들기 운동
⑥ 생활종합센타 기능정비대책	<p>★ 생활종합센타기능정비계획의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상담활동의 실시 • 생활문화교실활동의 실시 • 건강, 고령화대책활동의 실시(급식서비스, 기구의 공급, 간호용품, 간호지도자육성) • 생활구매사업의 재편정비 (점포, 생필품공동구매, 식료품택배사업 등) • 청년·부인의 조합가입추진 	체험·이웃돕기 운동 상설거점 만들 기 운동
⑦ 지역환경보전정비대책	<p>★ 지역환경보전, 정비계획의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의 정비(정화조, 상하수도) • 자원환경관보전, 미화운동의 실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콩쿠루 대회

나. 북해도에서의 대응전략

각지역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읍, 면)의 보조사업을 기반으로 많은 농업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일본에서 유일한 유럽의 광대한 농촌에 필적할만한 규모의 북해도에서는 그 풍부한 공간과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관심이 일찍이 시작되었다.

1988 년에서 1997 년까지를 대상으로한 제 5 기 북해도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도시전원종합지역”을 슬로건으로 도시활력과 편리성 그리고 전원생활의 여유와 윤택함이 공생하는 마을 만들기와 기본목표로 되어 있다.

또 농촌형휴양에 대해서는 농촌의 각종자원을 활용해서 취미농원, 관광농·목장, 산림욕과 물고기잡기 등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설비를 정비하고 도시주민과의 교류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 체재학습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북해도에서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활동의 특색중 하나는 농가 민박의 새로운 형태를 이미지화한 농장여관(민박)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 농장여관(민박)이 교류하기 시작해서 지역연구회가 결성되었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광농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장여관 경영자, 행정기관 담당자, 지역관계자들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농장여관 활동에 대해서는 북해도청 농촌계획과에서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 기관지에 농장여관통신을 발행하고 신속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농장여관 체재경험자 등의 설문조사, 농장여관 건설촉진에 필요한 제도연구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 기존경영시설의 운영상황

(가) 新得町 옥크샤 농장

① 경영개요

9 ha 의 목초지에 약 40 두의 양을 사육하며 농업에는 2 년전에 신규로 참여해서 영국식 농가건축을 이미지화한 2 층건물로 1 층을 양고기 중심의 식당, 2 층을 4 실의 농장여관(민박)으로 하고 있다. 1 인 1 박 2 실에 평일 6500 엔(65000 원), 토요일, 일요일은 7500 엔(75000 원)이 기본

② 동기

이 전부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8 년에 전직해서 농업과 식당, 농장여관을 동시에 시작함.

③ 특색

양 모험투어(털깎기, 뜨게질하기 등), 초목염색합숙 등을 이벤트로 하는 마을임, 때로는 양 1 두를 바베큐도 실시함.

④ 과제

방 4 개로는 어중간하기 때문에 장래확장을 검토중 양의 증두에 의한 축산부분의 충실, 산책할 수 있는 환경정비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경관조성, 축산환경의 개선, 화장실수세식화, 교류증가에 의한 농장여관보급, 타농가의 우유제공 등 지역으로써의 부가가치향상, 농촌휴양특색의 명확화, 건물에 대한 장기저리용자제도의 창설.

(4) 鹿追町 大草原의 작은 집

① 경영개요

30 두의 경종말을 사육, 1988 년에 자작 상징건물로 식당을 개업(현재는 다방코너), 1989 년 두번째 상징건물로 공예점을 개업, 1990 년, 3 번째 건물로 상징건물(120 평)이 완성되서 본격적인 식당이 시작되었다.

1991 년에는 10 명용 1 동, 5 명용 2 동(자취식 시골오두막집)을 개업, 10 명용의 경우 1 동에 28000 엔(280000 원), 5 명용을 15000 엔(150000 원)

② 동기

밭작물의 농업경영이 불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을 모색할 때 캐나다에서 전부터 좋아하던 상징건물을 발견

③ 특색

상징건물을 형제들과 보조원을 포함해서 자작으로 건축하고 투자를 최소화시켰다. 이것은 성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개척정신이였다.

④ 과제

승마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방문객이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 농장의 활동은 앞서 나가고 있으나 지역과의 연계활동이 과제임, 행정기관의 홍보역할기대, 보조금이 끝나면 경쟁에서 홀로서기 하지 않으면 안됨, 용자제도의 완화와 수속의 간소화 희망.

(다) 斜里町 감자집

① 경영개요

감자와 옥수수 등 1ha 전작경영, 저농약감자, 무농약옥수수, 호박을 경작, 산지적거래로 실시, D형 창고를 개조한 식당과 방가로에서 숙박업경영 1박 2실에 3,000엔(3,0000원), 5000평에 약초를 심고 방문객에게 임대 경작실시하고 있다.

② 동기

농협의 권유로 여러가지를 생각했지만 실현성이 없어서 스스로 1987년 시작.

③ 특색

운전수(오토바이족) 등 젊은이들이 들른다. 평균숙박일수는 3, 5박이지만 개중에는 1주 또는 3주체재객도 있다.

④ 과제

현재 자작식당을 건설중. 장래는 오두막집도 해보고 싶다. 시설정비를 위한 저리용자금도 받고 싶다. 지역만이 아니고 대규모 네트워크화가 필요.

(라) 俱知安町 초원공화국

① 경영개요

수도, 감자, 비트(무), 완두콩 등 10 ha, 이중 0.7 a 을 아스파라가스, 딸기, 토마토 등 체험농원으로 활용, 주변농가와 공화국을 만들고 국회의사당(숙박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숙박객을 받아들이고 수학여행을 농업체험 또는 공화국민(회원)에게 농산물을 직거래한다.

② 동기

회원제 직거래를 시작해 보니 유통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숙박과 체험농업을 받게되었다.

③ 특색

주변농가 외에 지역상점주인이 장관으로 참가 협력하고 있다. 스키객이 많다. 알코OK의 유스호스텔을 지향하고 있다.

④ 과제

숙박사업 규모가 어중간하고 농업과 숙박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할까 판단할 시기이다. 관광객유치에 대해서는 단체가 바람직하다. 유스호스텔 전국 네트워크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마) 帶廣市 목장숙소

① 경영개요

30 a 의 농지를 임대해서 인근 밭 1 ha 을 더 빌려서 1 구획 30 평으로 분할(전체 100 구획)한 임대농을 계획중, 건물은 약 100 평, 1 층은 불고기식당, 2 층은 4 인용 객실 4 실을 건축중 당나귀와 토끼가 많다.

② 동기

帶廣市內에서 T 샷스와 자연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자연에서의 생활을 동경해서 식당을 개업

③ 특색

현재는 식당전업이고 요리는 주인이 직접 담당, 진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메뉴의 양고기는 양념없이 소금구이로 먹는다. 우사를 개조한 건물은 거의 자가수리했지만 그 때 도료냄새를 맡아서 반년간 임원했었다. 개업은 1991 년으로 역사가 짧다.

(바) 足寄町 장기체재형 농촌휴양구상

足寄町에도 1992 년 5 월부터 町内の 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체재형휴양구상인 「농촌마을足寄」가 종합정리 되었다. 足寄町 농가민박 진흥대책실시안 등 체재정비가 진행되었다. 또 이러한 움직임외에 금후의 과제로써 주택과 축사등 건물의 외관통일과 숙박객을 받기 위해서 화장실의 간이수세식 시설정비가 과제가 되었다. 또 농번기의 인력확보가 금후의 과제이지만 협의가 진행중이다.

(2) 민박등록제도

농장여관(민박)은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일반농가에 숙박하면서 농작업을 돕기도하고 가까운 개울과 산에서 자연을 즐기는 독농가적인 숙박경영 형태이다.

최근은 고교생의 수학여행등도 농장여관에 들어오고 있다. 농장여관은 농가의 일부를 숙박객전용으로 개조해서 이용객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숙박시설 자체는 종래의 민박과 펜션(ppnsion : 여인숙, 여관)과 거의 같지만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과 말 등의 동물과 함께 놀 수 있으며 양모제품을 이용해서 뜨개질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제도적으로는 농장여관은 학교와 친교가 있는 단체 등 특정 다수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농장여관의 일반적인 이용객은 거의 불특정 다수의 숙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여관으로써 등록이 필요하다.

도시학생이 찾아오면 체재하는 어린이들은 전작농가에 머무르는 경우는

플베기와 농작물수확등을 체험하고 축산농가에 머무르는 경우는 유유짜기를 돕거나 실습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인기가 있어서 농장여관은 증가일로에 있고 때문에 등록제도 안내서를 작성해서 대상농가에 배포하고 있다.

1992년 3월 현재 등록 농가수는 136호이지만 수용요금(기본은 중학생 1인 3,000엔정도), 사고, 부상치료, 농작업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규칙설명 이외에 특별한 식사라든가 도시로 돌아갈 어린이들의 선물 등 과잉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 帶廣市을 중심으로 한 十勝平野의 농장여관은 일본 그린 투어리즘 전개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특징은 첫째, 건설주체가 어디까지나 농가라는 점이다. 결국 축산농가이거나 채소농가가 겸업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으로 되어있다. 용자지원신청도 상환도 본인이라고 하는 원칙이 명확하다. 이것은 후술하는 岡山縣의 움직임과는 다르다.

둘째로, 이미 다수농가는 농장여관을 수년전부터 경영을 해 왔고 대다수 농가가 많은 사람들로 부터 환영을 받아서 이용객도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유명해져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다.

셋째, 농장여관이라고 해도 개개의 진행 방법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예를들면 100명 이상이 파티를 열 수 있는 장소를 가진 식당부터 시작한 농장여관이 있는가 하면 4실 정도의 숙박시설로 시작한 사람, 건물 외관이 꼭 영국식 건물처럼 건축한 것 등 경영자의 취미에 따라서 획일적이지가 않다.

넷째, 농업과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전국조직의 우량식품 만들기 모임에 가입해서 농민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농촌에서의 관광사업연구등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시하는 자세이다.

다섯째, 단순히 숙박시설 정비에서 주변지역 전체를 포함한 경관보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경영자들이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은

시설하나만으로는 관광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인식해서 지역전체를 아름답게 꽃을 심고하는 사회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금후의 과제로서는 행정기관이 홍보와 상담등 세부사항외에 전반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이다. 그 다음 건축전문가, 주택공사, 변호사, 지역두뇌집단이 참가하는 지역발전 연구모임의 지역경관보전 및 농가주택 사용이 좋은점을 연구하면서 여러가지 자문을하는 지원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선행된 농장여관이 이미 농가의 자영겸업적인 숙박시설이 아니고 옛날 농촌에 있었던 팬션(여인숙)이라고 했던 전업의 숙박시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럽에서의 농가민박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부업으로 위치가 명확하지만 일본에서의 농장여관은 오로지 전문적인 숙박시설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당도 본격적으로 하고 단체객을 받아 드리는 것까지 농가경영이라고 하는 인상에 상처를 주고 있다.

다. 岡山縣에서의 교류

(1) 岡山縣의 전개방향

岡山縣에서는 1989년부터 초가지붕과 일본식 난로가 있는 농가가 띄엄 띄엄 남아 있는 농산촌에서 생활체험을 하며 산책과 과실따기를 통해서 지역의 자연, 지역주민과 교류를 심화시키는 농촌형 휴양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상 지역은 9 개소에서 점점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마을의 고향과 인연을 맺는 일일 것이다.

사업의 내용은 지정을 받은 시, 군, 읍, 면에 도로부터 50%의 보조금이 나간다. 보조대상 기관은 지정년도부터 3년간, 1지구당 사업총액은 1억엔(10억엔)정도이다. (50%은 도의 보조)

주요사업내용은 빈집이나 현집의 개축, 상징건물이나 롯찌(콘도식숙박시설)등 숙박시설의 정비, 임대농원, 농작업장, 캠프장, 테니스코트등 교육

시설의 정비, 초가지붕과 물레방아의 복원등 농촌풍경을 살린 자연환경의 정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업의 정비 등 이다. 다음은 그 지역들의 사례들이다.

(2) 美甘村의 경우

美甘村은 岡山縣의 서북부 鳥取縣 米子市로 가는 국도 181 호선 연도변에 있다. 그 실시 장소는 美甘村의 중심에서 약 2 km 더 들어간 계곡의 산촌이다. 무엇보다 좋은점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채초지로서 동계에는 스키장으로도 쓸수있게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는 “創造管谷”이라는 명칭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설정비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3〉 시설정비상황

(단위 : 천엔)

년 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보조구분	보조액
1987	스키로프, 리프트(1기)	6,565	-	-
1988~91	캠프장(지면, 방가로 3동) 숯불구이집, 고분정비, 초가지붕민가(1동), 샴위, 취사등, 산천어잡기연못, 등산로등	70,645	농촌형휴양 정비사업	35,000
1990	토목, 공예관(도예, 목공체험시설)	44,650	진흥사업	30,000
1991	도자기가마, 물레방아간	17,259	고령자복지 모델사업	10,000
1992~93	산림체험교육센터(집회소, 식당, 매점) 다목적광장, 방가로(8동), 야조의 숲	161,230	자원활용형 임업구조개선 사업	80,615
1993 이후	테니스코트	35,000	발전용시설 주변정비사업	미정

※ 수용가능인원 1993년까지 캠프장 158인 숙박시설 50인 합계 208인
1994년 이후 캠프장 158인 숙박시설 104인 합계 262인

이러한 시설중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일본식화로가 있는 초가집이다. 그래서 지붕을 그 지역에서 나오는 풀로 교차하고 건평은 38 평으로 넓으며 일본식방이 3 실이다. 개축에 있어서 자취시설과 욕실도 설치했다. 개축농가도 1 동 있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방가로, 캠프장, 벼집세공(새끼뜨기 등), 향토체험에도 도전할 수 있는 산촌체험시설과 도예, 목공 등 방문객의 취미도 살릴 수 있게 했다.

1991 년 이용객은 복원농가 숙박객이 연간 54 일(507 인), 이중 지역의 이용객이 77 인 이었다. 회의와 연수에도 사용되는 일이 많다. 그 이용객수는 238 인 인데 숙박객수를 상회하고 있다. 방가로 이용객은 전년도 634 인 이었지만 1991 년에는 760 인으로 증가했고 캠프장이용객은 729 인에서 3,404 인(회의연수참가자포함)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종합정리 하고 있다.

- (가) 이용객은 岡山市, 倉擊市の 거주자가 많다.
- (나) 캠프장 이용은 7, 8 월에 집중하고 있다. 방가로 이용은 4~11 월이다.
- (다) 일본식 난로가 있는 초가집은 거의 년간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연일 만원사례이고 기타 기간은 주말이 많다.
- (라) 이용형태는 가족동반이 60 %, 어린이단체 20 %, 기타 젊은이가 10 % 이다.
- (마) 인기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산천어잡기 연못과 토목공예관이 호평이 있고 1 일단체객 이용도 많다.
- (바) 이용객의 반응은 자연이 풍부한 곳에서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일과 요금이 싼것에 관심이 있다.
- (아) 지역과의 연관은 시설전체가 이벤트 회의장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3) 芳井町の 경우

芳井町은 廣島縣과 인접한 곳에 있다. 가까운 역은 JR 山陽本線 笠岡驛과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芳井町은 부락전체가 무농약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채소생산을 하고 있으며 약초차등의 농산가공품과 농촌형휴양정비가 일체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시설은 농가를 정비한 숙박시설과 산책로 등의 정비에 의해서 농촌에서의 체재와 산책이 쉽도록 한 곳이다.

※ 고원농촌형 휴양숙박시설의 개요

- 외관은 목조평옥건물로써 초가집
- 방수는 6 쪽 다다미 1 실, 8 쪽다다미 2 실
- 수용인원 10 인(1 일)
- 식사는 자취식
- 요금 숙박 대인 1 박 3,000 엔(30,000 원)
 소인 1 박 2,000 엔(20,000 원)
 휴식, 연수 2,000 엔/4 시간
 3,000 엔/4~12 시간

(가) 지역내체험내용

계절에 따라 채소 수확과 농사체험, 특산품만들기체험(약초차, 메주쭈기), 산채뚫기, 자연관찰(지질, 곤충, 식물), 산림욕, 게이트볼, 산악등산, 요리

이러한 시설이 도입됨에 따라서 지역의 개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이 지역종합협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②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농원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출입이 증가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고 시설의 관리운영주체가 되고 있다.

岡山縣의 농촌형휴양개발의 기본이념은 건설은 도청과 시군이, 관리운영은 지역주민이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芳井町에서도 운영면에 있어서 매월 시설관리의 기본요금 285,000 엔(2,850,000 원)과 사용료등을 협의회에 지불하고 있다.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10 인의 본부행정요원과 9 인의 부서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후 과제로서는 방문객이 직접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하는 일과 특산물로써 포도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개발하여 관광농원으로 정비하고 제공하는 것이다²⁵⁾.

5. 대만의 관광농업

가. 대만의 관광농업 지원시책

대만의 관광농업은 크게 휴한농업과 일반 관광농원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휴한농업은 우리나라의 휴양단지 개발사업과 비슷한 유형이고 일반 관광농원유형은 우리나라의 판매형 관광농원과 종합관광농원과 그 유형이 비슷하게 조성운영되고 있다.

(1) 휴한농업(레저농업·여가농업)

(가) 휴한농업 육성계획

대만성정부에서는 휴한농업을 1992 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448 ha 에 49 개 지구를 지정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다.

25) 山崎博의 2 인, 1994, 그린투어리즘 p. 158~172 요약. 가의 광협회.

(나) 휴한농업지구 지정조건

- ① 농가 20~40 호가 50 ha 이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을 것.
- ② 1 인이 50 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③ 농협, 농민단체등이 소유한 토지에 지정한다.
- ④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하며 통나무집운영, 과수원, 민박등이 가능하여 관광객 유치에 용이한지역.

(다) 휴한농업 지원

① 휴한농업지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에서 지구당 2,000 만 NT \$(한화 약 6 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진입도로 포장등 기반시설을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해주고 있다.

② 휴한농업지구로 지정되면 대학교의 농학과, 건축과, 조경학과, 관광과의 전공교수들에게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초기 단계부터 주변농민과의 관계자연환경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농협에서는 설계용역을 의뢰한 대학에 용역비를 지급해주고 있다.

(라) 휴한농업지구의 운영

① 휴한농업지구는 지구 중심지에 여관, 온천탕, 호텔, 수영장, 체육시설, 오락시설등의 위락시설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여 설치하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서 직영 또는 임대운영하고 있다.

② 참여농민은 휴한농업지구 주변에서 과수원, 목장, 자연학습장, 화원, 민박등을 조성하여 농산물 판매, 농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투자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휴한농업지구의 참여농민의 농장과의 거리는 인근에 가깝게 위치한 농원도 있지만 그중에는 4~5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원도 있어 대만의 휴한농업지구 조성은 우리나라의 읍면단위 정도인 행정단위규모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2) 일반관광농원 운영

㉑ 대만은 1981년부터 특정작목별 판매형 관광농원을 지정육성하여 현재까지 180여개의 관광농원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농민이 있는 한 계속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㉒ 대만의 판매형 관광농원은 대만사회가 점차 도시국가화 되어감에 따라 도시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판매하게 하므로써 국민의 관광수요도 충족시키고 생산농민의 농외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농산물유통의 차원에서 판매형 관광농원육성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㉓ 정부의 일반관광농원에 대한 지원은 기구당 약 30만 NT\$(한화 약 1천만원)를 국고보조로 지원하여 주고 진입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관련 은행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관광농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있고 특히 10대결출농민(우리나라의 영농후계자)에게는 신용으로도 1억원에 가까운 농민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㉔ 일반관광농원의 운영은 대부분이 판매형 관광농원으로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른 계절적 운영이 대부분이고 종합관광농원이나 어린이 자연학습농원형을 가미하여 연중 운영일수를 늘려 총수입을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관광농원도 상당수가 있다.

㉕ 특히 자연학습장 운영에 있어 각종 학교와 연계하여 입장료(500 NT\$, 한화 약 16,000원)을 받고 농원내에서 놀이터, 금붕어양식장, 화훼원, 음식물 판매장등을 운영하므로써 집에 갈 때는 금붕어 3마리, 꽃화분 1개, 꽃씨, 과일등을 무료로 주고 있고 그리고 입장료를 내지않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개별시설물 이용시 마다 이용료를 받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대만의 관광농원 개발사례

(1) 탁란관광 과수원

(가) 주요생산물 : 배, 포도, 양도

(나) 관광농원 유형 : 13 개 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판매형 관광농원

(다) 운영방법

①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고 농원에 입장하여 직접 과일을 따고 일정량 이상은 수량을 달아서 별도로 대금을 지불함.

② 과일수확철에는 지방향진공소에서 나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농장에 대하여만 판매형 관광농원으로 개방하도록 허가하여 주고있다.

③ 입장료는 시중포도등 과일가격을 감안하여 한화로 약 1,300 원 정도를 징수.

④ 포도의 경우 1년에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수확하여 300 평당 2,400 kg 정도를 생산하며 양도는 10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열려있고 배는 7월에 1회 수확한다.

⑤ 포도의 품종으로는 거봉포도가 주종을 이루고 수확시기를 조절하여 시장수요와 시기를 조절하여 판매하면 생산시기를 약 2개월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한다.

⑥ 입장객수는 수확시기에 도시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며 연중 2~3만명 정도 되고 있다.

(라) 관광과수원 홍보는 향진공소(우리나라의 읍면사무소에 해당)에서 TV, 신문, 잡지 등에 홍보를 하여주고 해당 농원에서는 팜플렛등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마) 정부의 지원으로는 과수원 각 ha 당 한화로 약 36만원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현지 농협에서는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표창, 현지농원방문지도등을 하고 있다.

(바) 관광농원의 허가는 자기토지를 소유하고 과수원만 있는 농가에서 신청만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여주고 있다.

(사) 탁란관광과수원 참여농가 운영사례

- ① 소유주 : 연선생(개별농가)
- ② 소유농지면적 : 2.4 ha
- ③ 연간소득액 : 한화로 약 5 천만원 정도
- ④ 관광농원 운영 경력 : 약 10 년

⑤ 운영방법 : 포도, 양도과수원에 닭·오리등을 방사하여 판매하고 있고 과일은 입장료를 받고 관광객이 직접 따서 먹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판매수익을 높이고 있다.

⑥ 관광농원 홍보는 수확철에 농원과 과일의 특수성을 인근지역 관광안내지도와 연계하여 팜프렛으로 작성 인쇄하여 각 여행사, 직장, 단체등에 직접 송부하여 홍보하고 있다.

⑦ 관광객이 입장하여 직접채취 판매하는 현장판매는 총 생산량의 약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중간상인을 통하여 시장출하를 하고있다. (시장출하가격은 600g 당 한화로 약 1,300 원 정도를 받으나 시장에서 소비자가격은 약 2,000 원 정도가 된다)

⑧ 연선생은 앞으로 즈차장시설 및 과일별 지역설정 등으로 체계적인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대중 관광농장

(가) 농원면적 : 20 ha

(나) 농원시설물 : 위락시설, 동물원, 캠프장, 식당, 방가로, 민박시설, 과수원, 인공폭포, 연못 등의 위락시설을 갖추고 민간 1인이 주된시설을 운영하고 주변농민은 판매형관광농원으로 참여하는 휴한농업형 관광농원이다.

(다) 동물원에는 30~40 여종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방가르는 총 22 개를 보유하고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5 월에서 8 월까지가 성수기이고 방값은 4 인 1 실기준으로 한화로 약 54,000 원정도를 받고 있다.

(라) 농원입장료는 어른 이 한화로 약 5,000 원정도 어린이가 3,500 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입장객수는 성수기에는 하루에 약 300~400 명 정도가 오고있으나 비수기에는 그보다 적어 연중 평균으로는 하루에 약 100 명 정도가 오고있다.

(매) 농원홍보는 대중농장 자체에서 신문이나 잡지등에 직접 홍보하고 있고 이곳 대중농장은 방가로나 여관을 이용한 농촌민박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원이다.

(3) 대촌향 포도관광과수원

(가) 주요생산물 : 포도(거봉포도)

(나) 면적 : 마을 전체의 포도재배 면적은 총 560 ha 이나 그중 93 개 농가가 경작하는 38 ha 규모의 포도원만 관광포도과수원으로 가입시켜 운영하고 있다.

(다) 농원운영

① 지방청인 향公所에서 관광농원 참여농가와 도시관광객을 상호 연결하는 중계역할과 홍보를 하여주고 있다.

② 포도 1 개 품목만 가지고 관광농원을 운영함에따라 계절적 운영이되어 일종의 포도 유통측면의 지원이 강조되고 있어 점차 명실상부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서 작목을 다양화하여 연중운영방법을 모색중에 있다.

(라) 관광농원으로서의 지정

① 관광농원으로서의 참여자격은 지방청에서 도로시설 및 관광여건을 조사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관광농원으로서 지정한다. 그 설정된 범위안에 소재한 농민 중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만 관광농원에 가입을 허가하고 있다.

② 아직까지 관광농원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가입농가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점차 가입농가를 늘려갈 예정이다.

(마) 관광농원에 대한 지원

①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방청인 향공소에서 도로포장, 화장실,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고 농가는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

② 공동으로 이용되는 기반시설외에 분수대 및 포도재배에 소요되는 그물망사, 포장지, 벤취 등은 개별농원에서 직접 사적으로 설치하며 소요액의 30%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③ 태풍 또는 호우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300평당 한화로 약 75,000원 정도의 보상을 하여주고 있다.

(4) 가의농장(휴한농업 지구)

(가) 주요생산품목 : 리즈(여지), 방과.

(나) 농원면적 : 총면적 776 ha 중 본부농장 66 ha 가 휴한농업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농원구성

가의농장은 해발 1,100 m 정도의 고원지대로서 주변에 중문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본부농장은 다양한 과수원과 숙박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잔디스키장, 야영장 및 취사장을 설치하고 주변에 약 10개 부락에서 13개 마을이 과수원, 난화원, 산림욕장등 개별프로그램을 개발·참여하여 읍면단위 협동관광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농원 운영

① 본부농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투자(한화로 약 36억원)하여 운영하고 본부 농장 주변의 13개 마을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마을당 약 5,000만원 정도를 국고로 보조하여 주고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마을별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개별시설물은 관광객 유치정도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중심으로 점차로 늘려 나가고 있다.

② 농원에 대한 홍보는 본부농장에서 본부 자치농장뿐 아니라 주

변의 소속 농장까지도 연결하여 일괄 홍보 안내하므로서 본부농장 자치운영뿐 아니라 참여농가의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③ 본부농장의 운영순수익은 90년도중 1억 8천만원으로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고 매년 9억원 정도를 신규로 투자하여 영내 도로개설, 수질보호, 폐수처리장시설 설치등 농원운영상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나아가고 있다.

④ 개별농가에서도 관광객이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민박시설을 설치하여 2인 1실 기준으로 한화로 약 26,000원 정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

⑤ 본부농장 이용객은 연간 10~13만명정도이며 본부농장 운영요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35명이 소속되어 있다.

(마) 가의농장의 특징

① 가의농장은 휴한농업지구로서 주요시설물은 정부에서 설치운영하고 농민은 그 주변에서 과수원, 화원, 민박등 마을별 개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하고 있다.

② 가의농장은 본부농장을 중심으로 1개 읍면단위 정도의 행정구역 전체를 관광농원으로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하고 있다.

③ 농원에서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진입도로, 위락시설, 여관등의 주요기반시설물 설치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고 주변에서 참여하는 농가는 특별한 시설투자없이 현재하고 있는 농사시설에 약간의 기초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④ 농원의 홍보는 본부농장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본부농장과 주변 소속농장을 연결하여 일괄홍보하므로서 개별농원에서는 별도의 홍보가 필요없고 개별농가에서는 마을단위로 집단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의거 판매형 관광농원을 운영하므로서 개별농가들은 적은 자본으로 관광농

원에 참여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⑤ 가의농장은 대만의 휴한농업지구로서 우리나라의 휴양단지 개발사업과 비슷한 유형으로 우리의 경우 휴양단지 개발시 주변농가와 연결보다는 위락시설 중심의 농원설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일반 관광단지와의 차별화가 되지 못하여 조성완료후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관광단지와의 심한 경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농민의 농가소득증대 효과도 우려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휴양단지 개발에 있어서 대만의 가의휴한농업지구는 우리가 참고할 바가 실로 크다고 하겠다.

(5) 옥금향 관광농원

(가) 총면적 : 3 ha

(나) 주요시설물 : 화훼원(1 ha), 딸기농장, 농산물판매장, 휴게소, 양어장, 야영장, 야외오락장, 어린이오락장, 위락시설, 재래식통돼지바베큐장 등

(다) 농원 유형 : 화훼판매형 관광농원에 어린이 자연학습형, 휴게소운영, 야영장, 양어장, 어린이 놀이터등을 가미한 종합형 관광농원이다.

(라) 농원구성

① 농장주인이 화훼농업을 하여오던 중 1989년 대만의 10대 걸출창업농민(농어민후계자)으로 선정되면서 관광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변농지 2 ha를 농업은행의 신용융자로 구입하여 총 3 ha를 확보하여 시작하였다.

② 10대걸출창업농민으로 선정되면서 정부와 농업은행에서 전액신용으로 융자를 받아 토지구매비 한화로 약 2억원, 시설물 설치비 약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종합형 관광농원으로 조성하였다.

(마) 관광농원 운영

① 옥금향 관광농원은 농산물 판매장을 간이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투자규모를 최소화 시키고 동 판매장시설의 판매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팝콘, 아이스크림, 꽃씨판매대,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잘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다.

② 또한 농원내에 금붕어 양식장을 설치하여 입장객들이 금붕어 양식장에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금붕어 먹이 자동판매기를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먹이판매에서 나오는 수입이 무려 연 3000 만원 정도라고 한다.

③ 금붕어 양식장과 관련하여 옆에는 50 cm 깊이의 양식장에 어항용 금붕어를 입식하여 놓고 어린이들이 약 3,000 원의 입장료를 내고 5 마리 범위내에서 직접 잡아서 어항에 넣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농원의 총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었다.

④ 옥향금 농원운영은 입장료를 받고 관광객을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와 입장료없이 입장하여 개별시설물 이용시마다 이용료를 지불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⑤ 입장료를 받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린이 단체입장객으로 고기먹이주기(한화 약 1,000 원), 금붕어 잡기(5 마리까지 3,000 원) 화분 만들기, 꽃씨 아이스크림 등을 무료로 주고 돌아갈 때는 화분 1개, 어항에 고기 5 마리, 꽃씨등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며 입장료는 1일 프로그램의 참가비가 한화로 약 1만원정도, 1박 2일 프로그램의 약 1만6천원 정도이다. 이 경우에도 놀이기구를 타거나 팝콘등은 개인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⑥ 입장료없이 입장하는 경우는 개별시설물 이용시마다 이용료를 징수하는데 물고기 먹이주기, 놀이기구타기, 화분,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입장객 1인이 하루에 한화로 약 1만원정도를 지불하고 간다고 한다.

⑦ 야영장운영은 넓은 잔디밭에 텐트를 빌려주고 1박에 1만 2천 원정도를 받고 있다.

⑧ 화훼재배를 위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학교의 실습장

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방학때나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10 명정도 고용하기도 한다.

④ 본 농원의 연간 총수익은 1억 6 천만원정도이고 그 중 순수익은 약 7 천만원 정도이다.

(바) 옥금향 농원의 특징

① 농원조성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화훼원과 딸기원의 판매형 농원을 기본으로 시작하여 관광객의 증가와 요구에 따라 점차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확대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장등 부속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하여 경영상 자금부족에서 오는 자금압박을 피했고

② 또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함에 있어 자본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립식,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농산물 판매장과 팝콘, 아이스크림, 꽃씨판매대 등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적은 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③ 농원운영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농산물 판매형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자연학습농원 프로그램과 놀이시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설치하였고 화훼원의 특징을 살려 특별한 조경시설을 하지않고 농사시설이나 야영장 놀이시설등을 배치하므로써 조경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원 고유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므로써 판매형 관광농원의 단점인 계절적 운영을 개선하여 연중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수입원도 다양하게 구성하므로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도 총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시키고 있다.

(6) 대계관광농원

(가) 총 면적 : 20 ha

(나) 주요생산물 : 피자두(6 월중), 연무, 감귤, 화훼(7 월부터 생산)

(다) 농원 유형 : 판매형 관광농원

(라) 주변여건

① 소재지(대계지)로 부터 약 10 km 정도 떨어진 해발 1,000 m 정도의 산간오지에 감귤, 피자두, 연무과원 및 화훼원을 조성하여 판매형 관광농원 중심으로 주변의 원시림 계곡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정부에서는 약 10 km 가량의 산간오지 진입로를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하여 건설하여 주었고 농원내의 소로길도 정부보조 2/3, 자부담 1/3로 건설하였다.

(마) 농원운영

① 농원은 과일 및 화훼판매형 관광농원으로 산간오지의 교통불편과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원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입장료 환화 약 1,200 원을 받고 과일을 직접 따먹을 수 있으며 놀다가 집에 들갈때 가지고 가는 과일에 대하여는 수량을 달아서 시중가격보다는 약간 싸게 대금을 징수한다.

② 나머지의 약 50% 정도는 시장출하하고 있으며 농원의 연간 순수익은 과일 판매수익과 화훼판매수익을 합하여 2,400 만원 정도이다.

(바) 대계관광농원의 특징

① 산간오지의 넓은 과수원은 인근 계곡의 원시림과 연결하여 관광농원으로 조성, 인건비를 절약하는 농업방식을 채택하였고 정부에서도 10 km 가까운 거리를 포장하여 주는 등 관광농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돋보였다.

② 농원대표도 단기적 안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농원을 조성하여 약 30년전부터 대계관광농원을 설계 설치하였다.

(7) 베이보우 관광농원

(가) 총 면적 : 16,000 평

(나) 주요생산품 : 동양탄, 난차, 분재, 기타화훼품.

(다) 농원조성

베이보우 관광농원은 대북시 외곽의 양명산 기슭에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대만에서 자생하는 동양난을 채취 또는 수집하여 상품으로 개발하여 주작목으로 하고 기타 화훼품을 같이 판매하는 판매형 관광농원으로 조성하였다.

(라) 농원의 운영

① 베이보우 관광농원은 관광객에게 입장료 1,000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농원에서 휴식도 취하고 동양난등 화훼류를 감상하고 분재나 동양난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농원의 총수입은 연간 1 억원 정도이며 현재는 주된 농장의 동양난등 화훼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인근 다른 농원과의 경쟁에서도 뒤져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어서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없이 화훼판매를 중심으로 관광농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③ 오히려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화훼류 판매만하는 인근 농원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무리한 시설투자는 경영을 악화시켜 농원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했다.²⁶⁾

26) 농협중앙회, 1992. 농어촌관광농원관련자 해외연수보고. p 16~26요약. 농협중앙회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제 1 절 서 론

1. 과업의 목적과 의의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는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대한 제이론 및 개발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기반으로 중산간지역에 적용시켜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2. 계획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군 산북면 하품 2 리의 행정경계로 보았으며, 설문조사 등 대상지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 1월로, 그리고 공간계획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1년을 기준으로 삼아 4계절에 적합한 시설 및 운영계획을 세웠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공간의 계획과 투자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 시간적 범위

목표년도 : 2001년

계획년도 : 1995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 2리 행정경계—약 800 만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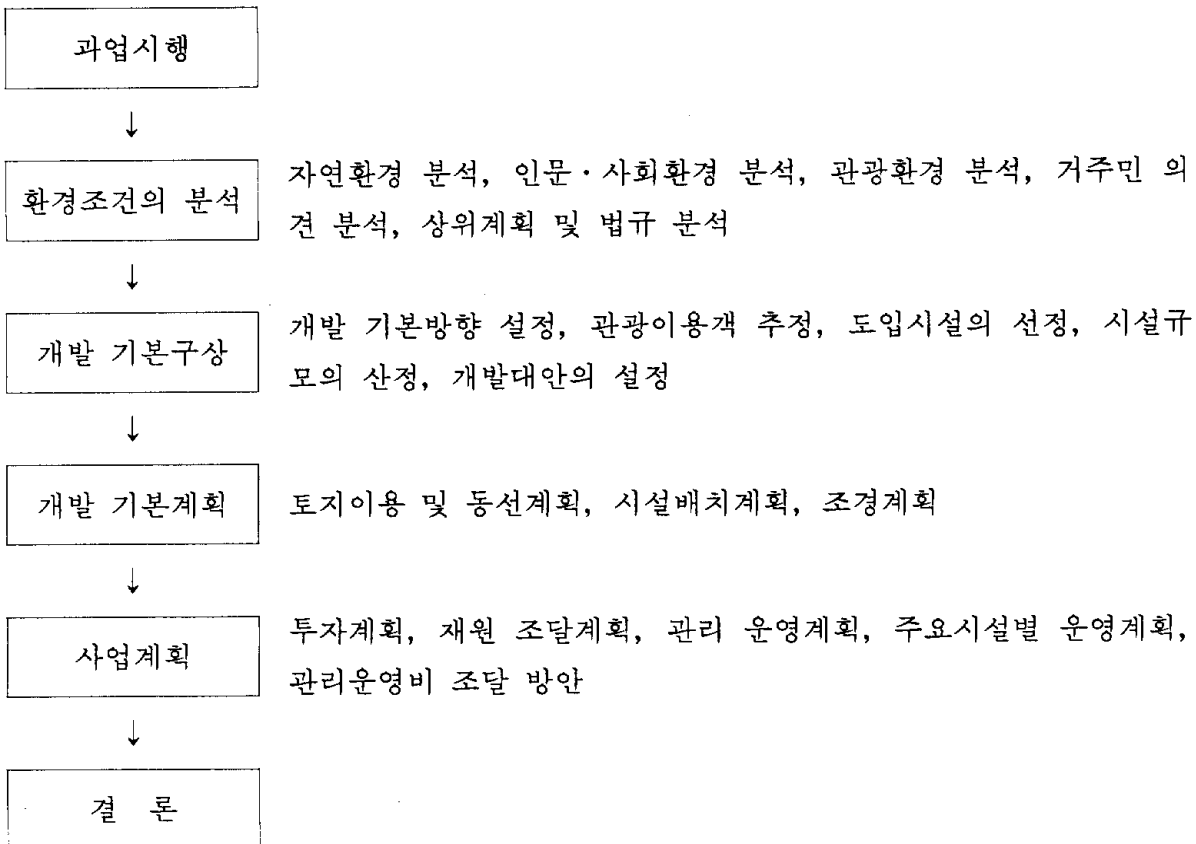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현황분석 및 공간의 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의 제시

3. 계획의 수행체계 및 과정

계획의 수행을 위한 단계는 4 단계로 크게 구분된다. 우선 환경조건을 분석하고, 개발기본 구상을 하며,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사업계획을 세움으로써 결론을 제시한다. 각 수행체계 및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3-1 이다.

〈표 3-1〉 계획의 수행체계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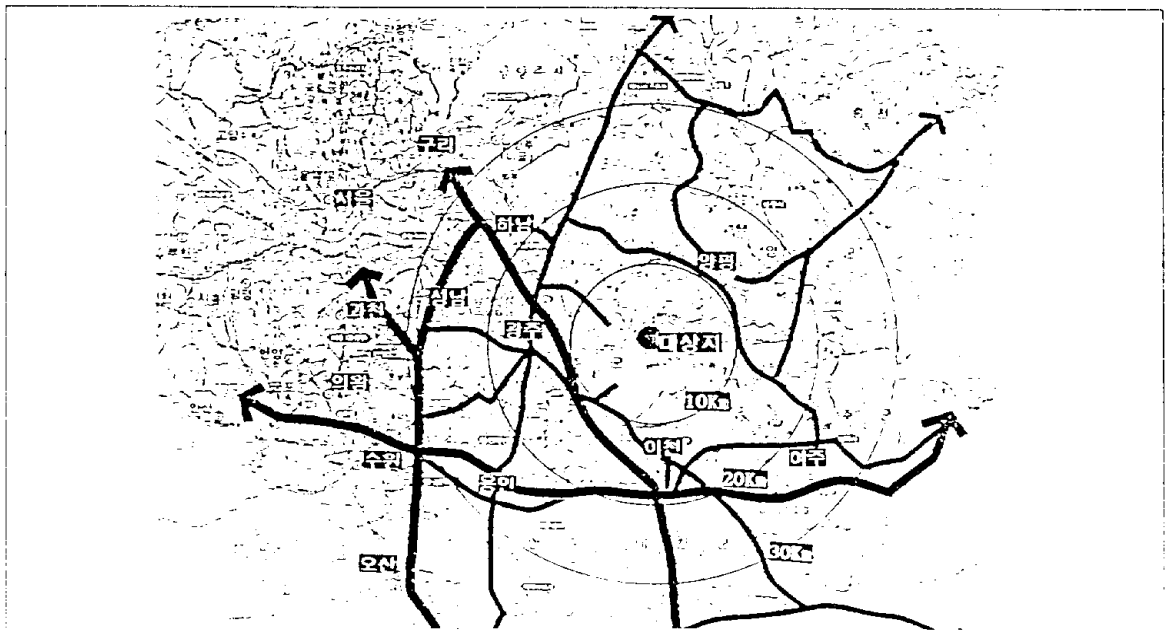


제 2 절 환경조건

1. 입지 및 접근성

가. 지리적 위치

본 연구의 계획대상지는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 일대로써 이 지역은 양자산(해발 709.5 m)과 앵자봉(해발 666.8 m)이 연이어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 지역 중앙의 용담천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경작지가 지형의 경사에 따라 계단상으로 있고 대부분 임야로써 전형적인 산림지역이다. 여주군 서북부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며, 산림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여 아름다운 산수경관을 이루고 있다. 전국 5대 관광권 중 북부관광권에 속하고 23 개 개발소권 중 서울 근교권에 속하며, 수도권내에서의 접근이 편리하므로, 이상의 모든 지리적 위치속성으로 보아 수도권 1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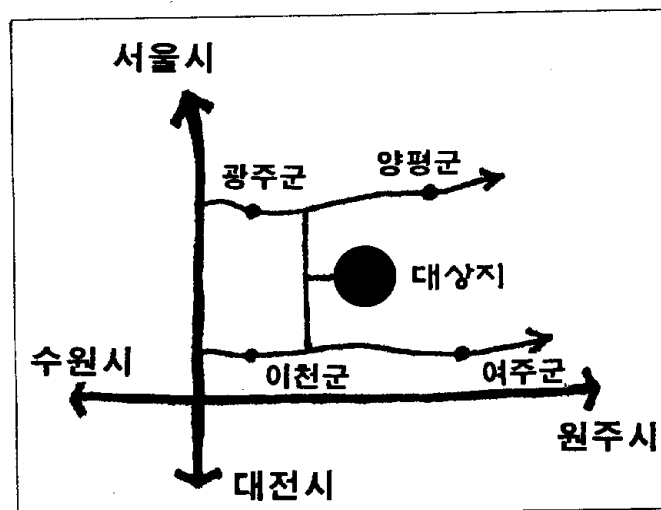
일 휴양지로서의 매우 높은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나. 접근성

대상지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52.3 km(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 지점에 위치하고, 주변도시로는 서쪽에 성남, 용인, 광주가 북쪽으로는 하남, 양평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주와 이천이 배후지역으로 위치하며, 군청소재지로부터 33.5 km 떨어져 있어, 군내 면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먼 지역이다.

자동차로의 접근은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에서 약 13 km 지점으로, 3번국도를 2.4 km 정도 달리면 양평-광주의 329번 지방도로와 여주·이천-상품과 연계되는 지방도 365번에서 진입된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로 곤지암까지 50분, 곤지암에서 상품리까지 20분이 소요되며, 상품리에서 하품리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소요되어 총 1시간 30분 이내의 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3-2 대상지로의 접근도)



<그림 3-2> 대상지로의 접근도

2. 자연환경 분석

가. 지형 및 지세

계획부지는 양자산울 중심으로 서남쪽의 앵자봉, 천덕봉(634 m), 월적봉(563.5 m)으로 이루어진 주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동향만이 트인 전형적인 산촌이다. 주봉과 능선의 골짜기에서 형성된 크고작은 계곡은 해발 150 m 지점에서 합류되어 큰 물줄기를 이루면서 상품리로 흐른다. 2 줄기인 주어천은 각각 약 700 m, 1700 m 흐르다가 합류되어 2,200 m 정도로 매우 멀리 연결되며, 용담천으로 유입되었다가 남한강으로 흐른다. 다양한 모양과 깊이를 가지며 년중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용수와 경작용수로 이용된다.

남사면에 비해 북사면의 고도는 비교적 높으며 주어천을 중심으로 차츰 고도가 낮아지는데, 부지내 지형은 전반적으로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으로 흐르듯이 낮아지는 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림 3-3 고도분석도 : 그림 3-4 지형단면도(a-a', b-b', c-c'))

나. 경사 및 방향

계획대상지는 계곡을 중심으로 마을주변과 일부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한 편이다. 마을의 북향은 남향에 비해 더 급경사인 편이며, 마을 진입부분에서 아랫마을까지의 농경지만이 완경사여서, 윗마을의 경작지는 계단식 전답이거나 대부분 경작되지 않는 유희지로 버려져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시설가능지역을 경사 20%로 볼때, 그 면적은 다소 협소하다. 그러나 경사지를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레크레이션 시설을 도입하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림 3-5 경사분석도)

대상지의 대부분 방향은 남향과 서향, 북향의 산비탈이고 동향만이 평탄지이다. 따라서 경작물 또는 식물재배에 있어 일조조건이 불리한 편이며,

표고 분석도





범 레



100M이하



100M-200M



200M-300M



300M-400M



400M-500M



500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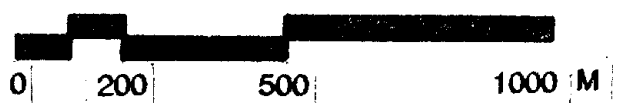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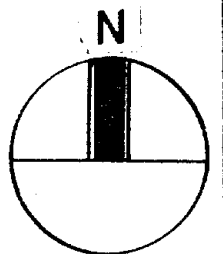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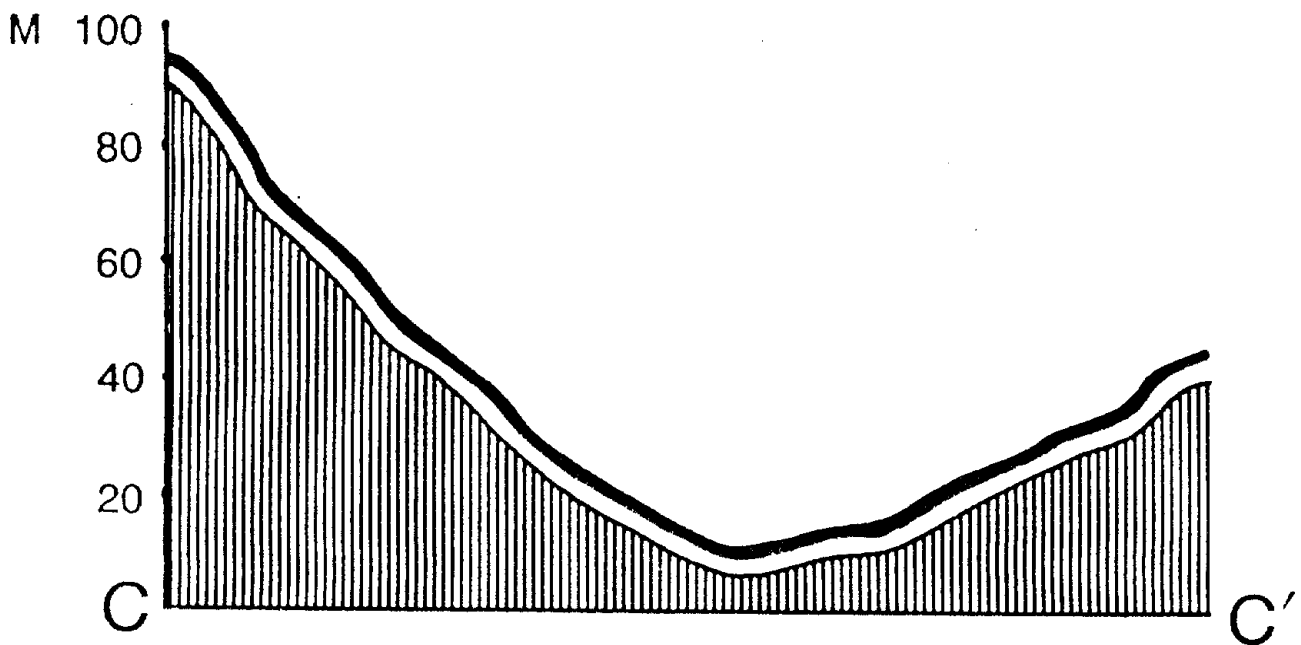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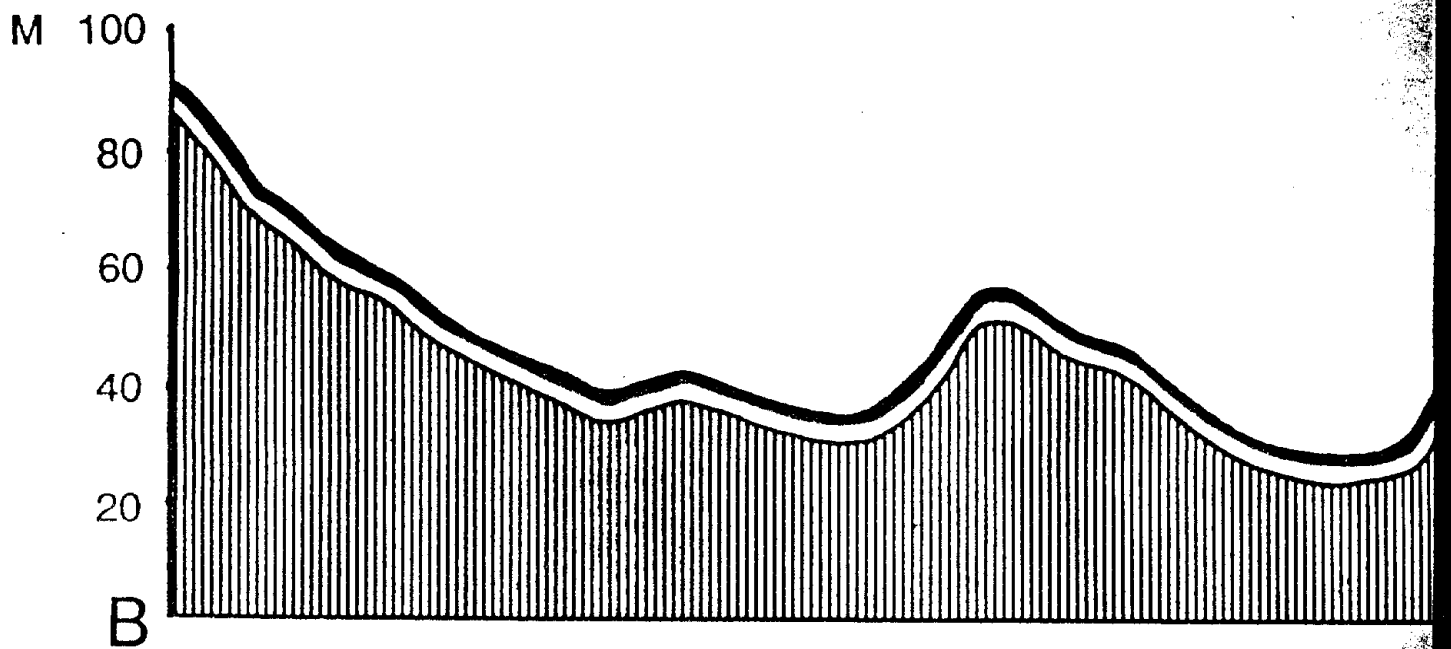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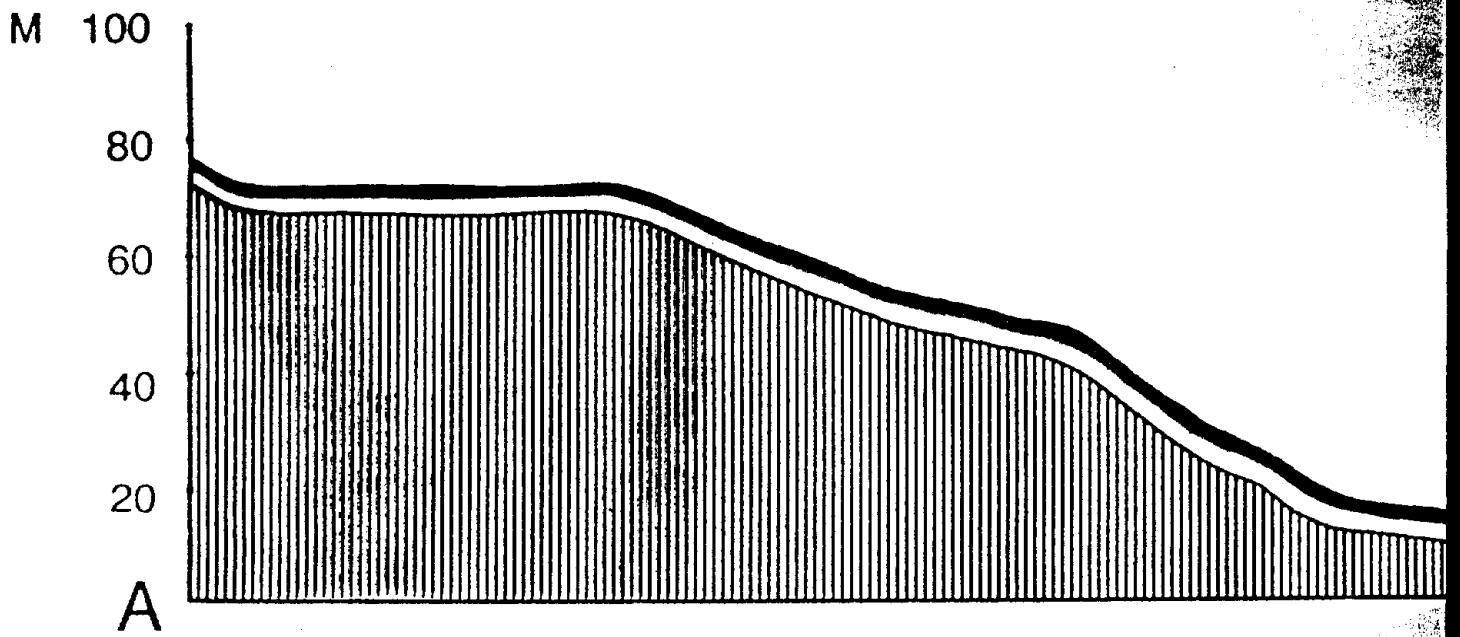


그림 3-3. 고도분석도



지형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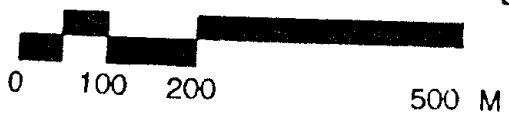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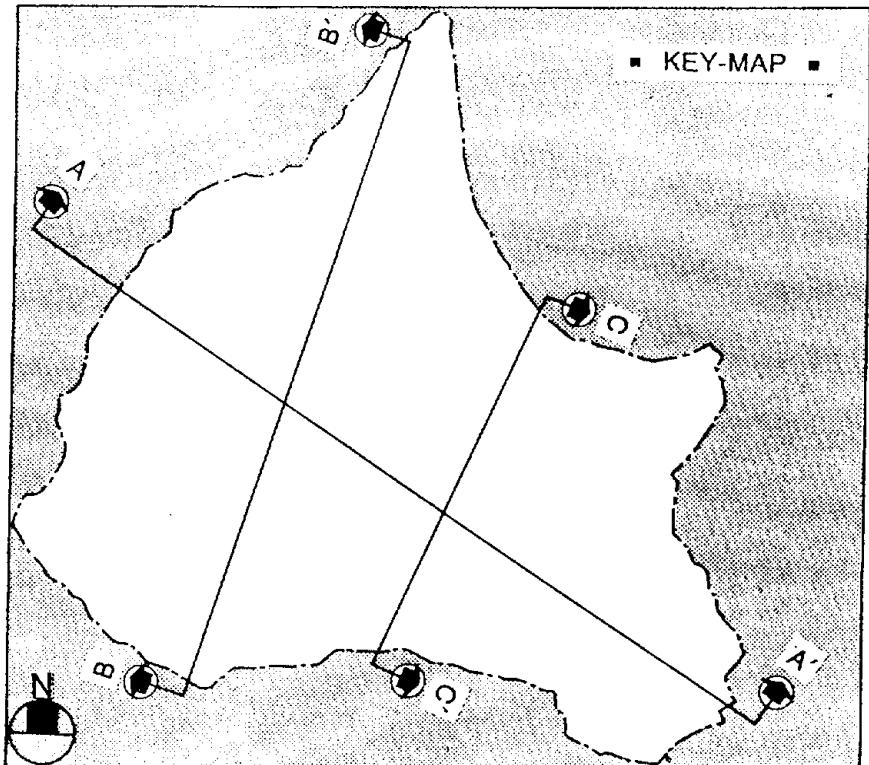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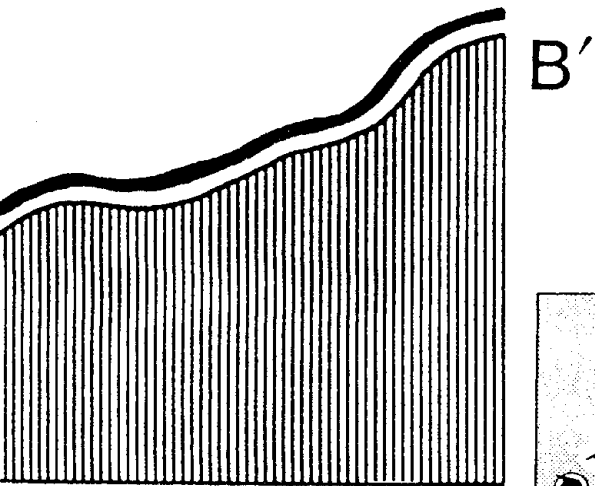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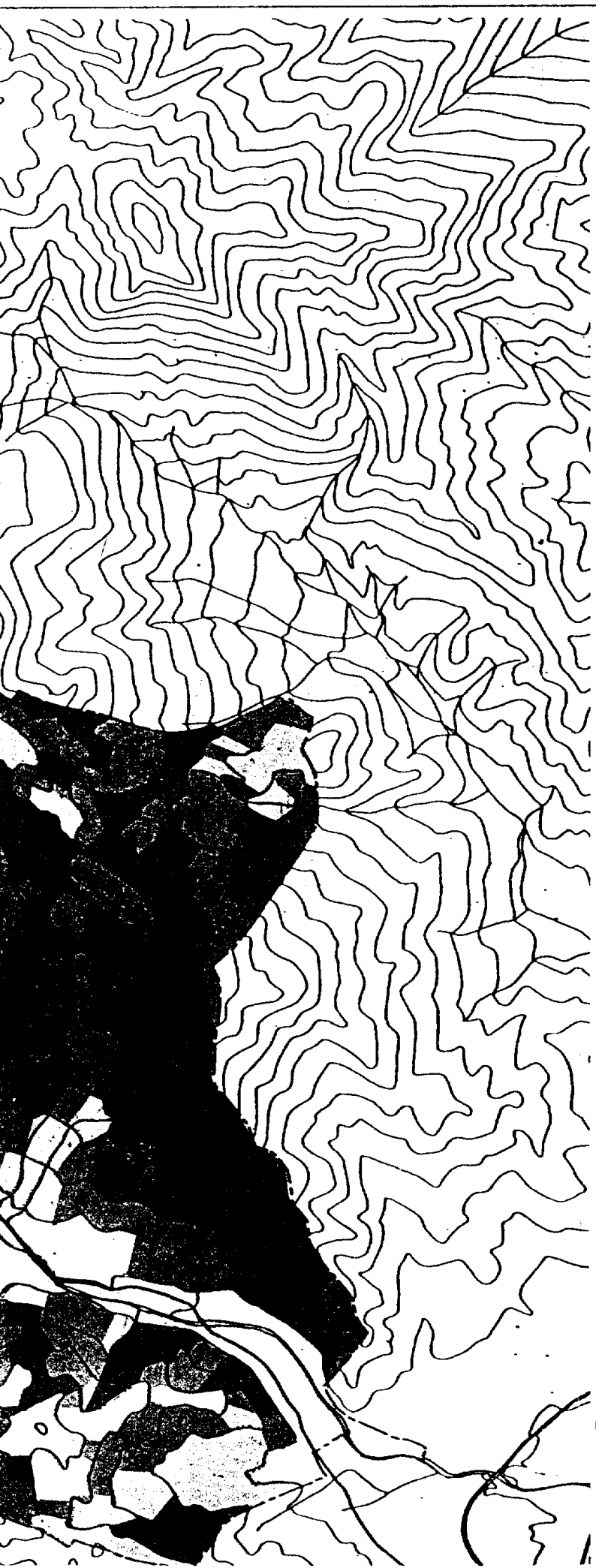


그림 3-4. 지형단면도

경사 분석도





범 레



0-10%



10-25%



25-40%



4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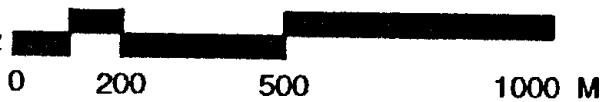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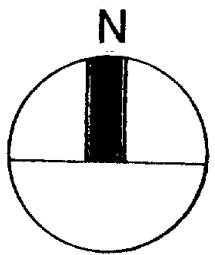


그림 3-5. 경사분석도

특히 동절기의 일조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시설원예의 시설물 배치 등에 주의가 요망된다.

다. 기후 및 기상

계획부지는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심하며, 일교차가 뚜렷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평균기온이 강원도와 유사하여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낮으며, 특히 겨울철은 차고 건조한 날씨가 오래도록 계속된다.

과거 10년간(1982~1991) 산북면은 강수량의 경우 10년평균 1,363.1 mm

〈표 3-2〉 최근 10여년의 기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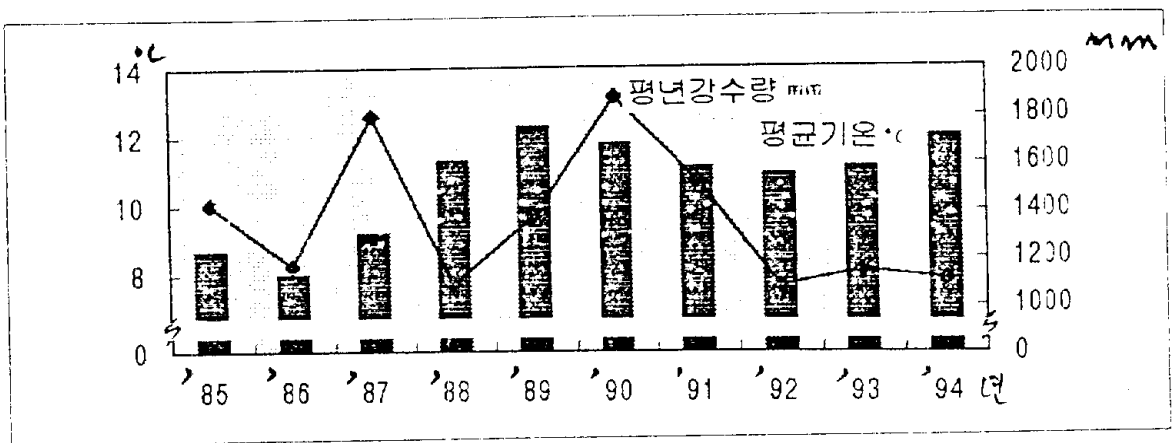
구분 연도	평균 기온 (°C)	평균 최고기온 (°C)	평균 최저기온 (°C)	평년 강수량 (mm)	평년 일조시수 (hr/month)	평균 풍속 (m/sec)	최대 풍속 (m/sec)	강수일 (日)	서리 (日)
1985	8.7	16.9	6.4	1,433.4	1,845.5	—	—	—	—
1986	8.0	16.4	6.5	1,176.2	1,916.7	—	—	—	—
1987	9.2	17.8	6.6	1,800.7	1,874.6	—	—	—	—
1988	11.3	18.3	6.3	1,094.2	2,060.7	0.9	6.5	84	149
1989	12.3	19.1	6.9	1,375.7	1,526.0	0.6	6.0	105	112
1990	11.8	18.1	7.7	1,877.8	1,413.5	0.6	6.5	131	92
1991	11.1	17.8	5.8	1,530.7	1,880.8	0.8	7.0	104	112
1992	10.9	18.1	4.0	1,082.1	1,590.0	1.0	6.3	105	104
1993	11.1	17.8	6.2	1,149.9	1,750.4	1.1	6.6	98	80
1994	12.0	18.0	7.4	1,109.8	2,306.9	—	—	—	—
10년평균	10.6	17.8	6.4	1,363.1	1,816.5	0.8	6.5	105	108

(이하자료 : 여주군 농촌지도소 자료&여주군 산북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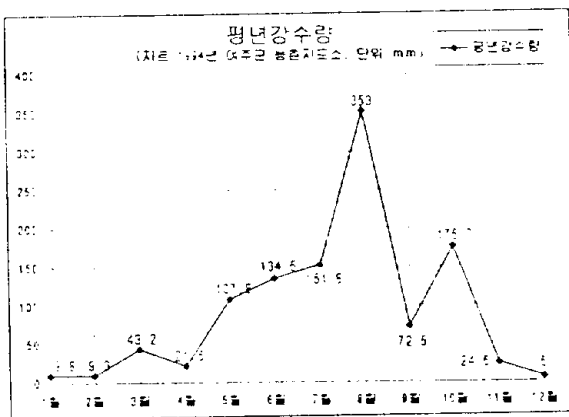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로 전국 평균 연 강수량 1,274 mm 에 비해 약간 높은편이나 대부분 홍수기에 하천으로 유출된다. 또한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매우 심하여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홍수기(6-9 월)에 집중되어 있어 수자원 관리가 불리하다. (표 3-2. 최근 10 여년의 기후의 변화 : 그림 3-6 기온과 강수량의 지난 10 여년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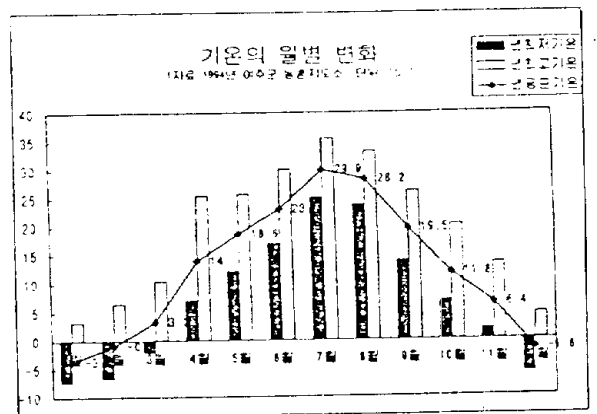
1994 년의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월별로 비교해 보면, 3·4·5 월과 10·11 월의 춘/추계절의 일교차가 크고, 8 월에 집중적인 강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기온과 강수량의 지난 10 여년간의 변화



<그림 3-7> 기온 월별변화(1994, 단위 °C)



<그림 3-8> 평년 강수량(1994, 단위 mm)

대상지는 양자산과 앵자봉의 자락에 의하여 삼면이 감싸여 있고, 남동향으로 개방되어 있어 이곳을 통하여 바람이 흐르는 통로를 형성하고 있다. 계곡을 타고 내려온 바람은 저온다습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풍속도 심한 편이므로 시설의 도입시 바람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라. 수문

구역내의 유수는 남.북.서향에 둘러싸인 주능선이 1차 분수령이 되어 각 계곡을 따라 흘러 계획부지 중앙을 흐르는 주어천으로 집수되어 자연유하된다.

유역이 넓고 계곡이 길며 경사도가 비교적 급하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을 때 유량이 많고 유속이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년중 마르지 않고 흐르며 수질도 양호하여, 지역 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될 뿐 아니라 많은 도시인이 찾아오는 요인이 되고있다.

마. 식생

대상지에서 발견되는 목본 및 초본 현황은 다음의 표 3-3 과 같다.

산등성이나 경사면에는 신갈나무, 벃나무, 리기다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 동쪽경사면에는 굴참나무가 많이 분포하며, 계곡주변부에서 발견되는 수종은 산속보다 더욱 다양한 수종으로 되어있다. 대상지에서 발견되는 초본으로 대도시 주변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미나리냉이, 말채나물 등 깊은 산속이나 오염이 적은 곳에서 발견되는 식생이 생육하고 있어, 대상지가 공해에 덜 오염되어 깨끗한 자연을 유지하고 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상록수보다 활엽수의 분포가 더욱 많아 봄·가을의 순록과 낙엽이 아름다우며, 자연수목에서 수확되는 산나물, 도토리, 밤, 자연버섯 등의 임산물도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채취하러 찾아오고 있다.

〈표 3-3〉 목본 및 초본현황

목본	갈매나무, 갈참나무, 개살구, 갯버들, 거재수, 고광나무, 국수나무, 굴참나무, 나무딸기, 낙엽송, 노린재나무, 노박덩굴, 누리장나무, 다래나무, 두릅나무, 들메나무, 딱총나무, 리기다소나무, 마가목, 말채나무, 보리수, 밤나무, 붉나무, 붉은 병꽃나무, 산벗나무, 산뽕나무, 산초나무, 산팽나무, 새모래덩굴, 생강나무, 신갈나무, 신나무, 야광나무, 오갈피나무, 왕느릅나무, 작살나무, 진달래, 젓나무, 조팝나무, 쪽동백나무, 짚레나무, 참개암나무, 참죽나무, 철쭉, 층층나무, 팔배나무, 회나무
초본	가는장대, 갈대, 강아지풀, 개별꽃, 고비, 고사리, 고추나물, 광대수염, 까치수염, 꼭두선이, 꽃따지, 꿩외다리아재비, 꿩외다리, 꿩외밥, 나비나물, 노루오줌, 단풍마, 달맞이꽃, 대사초, 땡땡이덩굴, 더덕, 등글레, 등갈퀴덩굴, 땅나리, 미나리냉이, 미나리아재비, 밀나물, 바위떡풀, 방동사니, 붓꽃, 비비추, 비수리, 산딸기, 산독사, 쇠뜨기풀, 쇠무릅, 싱아, 씀바귀, 앓은부채, 애기똥풀, 양치꽃, 엉겅퀴, 여뀌, 웅긋나물, 원추리, 으름, 으아리, 이질풀, 인동덩굴, 자주쓴풀, 제비꽃, 줄방제비꽃, 쥐방울덩굴, 쥐치, 질경이, 쪽도리풀, 참나물, 참취, 천남성, 철쭉, 청미래, 칩, 큰골무꽃, 톱풀, 할미꽃, 할머니밀빵, 현호색, 호랑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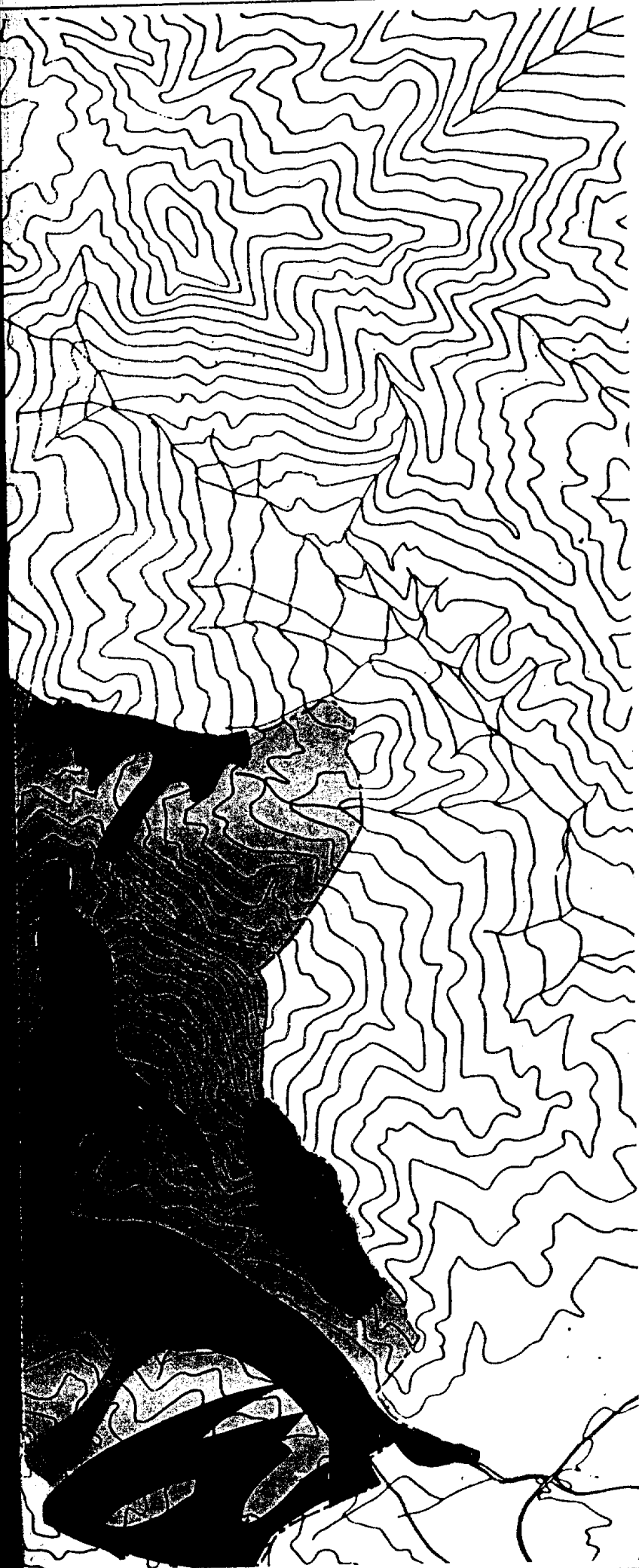
바. 경관

대상지는 계곡을 따라 조성되어있는 도로가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갈 때는 마을의 입구부분만 보이다가 서서히 펼쳐진다. 도로에 따라 시각통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윗마을 입구부에 있는 군보호 정자목이 대상지의 중심에서 랜드마크(Landmark)를 형성하여 시각변환점이 된다.

마을의 전설을 이루고 있는 신랑바위가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형상으로 있어 또 다른 랜드마크(Landmark)로써의 역할을 하며, 반면에 각시바위 주변에는 상록수림이 겨울철에도 우거져있어 수림대에 의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토양 분석도





범례



바위가 있는 사양토



자갈이 있는 사양토



자갈이 있는 양토



양토



사양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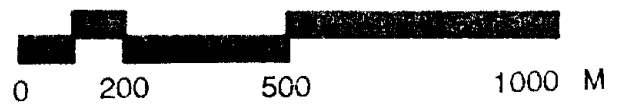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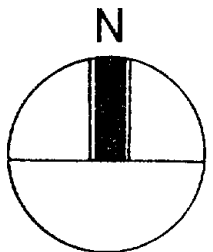


그림 3-9. 토양분석도

호)이다. 이들 중 전업농은 산북면 농가인구의 25.4 % 인 369 명(98 호)이고, 1종겸업농은 40.5 % 인 588 명(133 호), 2종겸업농은 34.1 % 인 494 명(98 호)이다. 산북면 인구 중 타산업 종사인구는 26.9 % 인 535 명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농림수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업농보다 겸업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3-6> 여주군 산북면의 인구 및 산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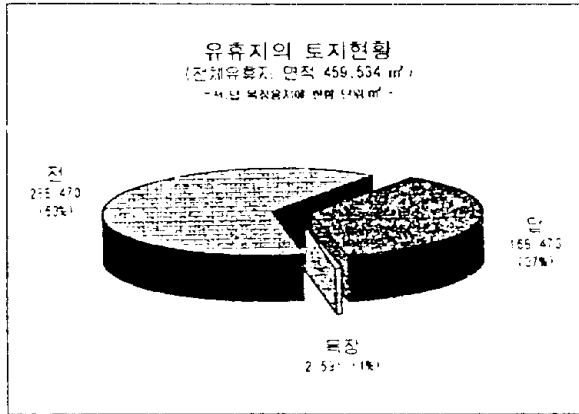
여주군 95,994 명	산북면 1,986 명 (2.1 %)	농가인구 (73.1 %)	전업농 98 호(369 명)	25.4 %
			1종 겸업농 133 호(588 명)	40.5 %
			2종 겸업농 96 호(494 명)	34.1 %
			소 계 : 327 호(1,451 명)	100.0 %
		비농가인구(26.9 %) : 535 명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의 개발방향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기본으로 관광을 도입한 “관광농촌형”으로 개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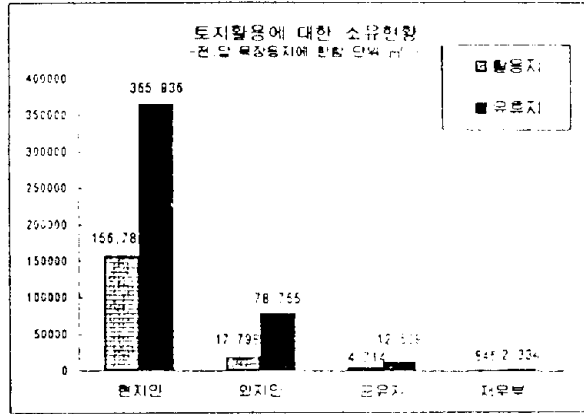
농가소득은 1인당 GNP 가 800 U.S.\$ 이던 1976년 872,933 원이었던 것이 1인당 GNP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되어, 10년 후인 1986년에는 1인당 GNP 2,505 U.S.\$ 일때 5,995,009 원으로, 그리고, 1993년에는 1976년의 약 19 배이고, 1986년의 약 2.8 배인 16,928,000 원으로 증가했다. 농림수산부가 전국 3천 1백 4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94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94년도 농가소득이 2천 31만 6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보다 10만원이 적은 9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별 농가소득을 볼때 경기도의 농가소득이 2천 6백 31만 5천원으로 가장 높았다.²⁹⁾ 농업소득과

29) 한겨레신문, 1995년 5월 16일자



(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994)

<그림 3-13> 유휴지의 토지현황



(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994)

<그림 3-14> 토지활용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토지활용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경지면적에 한함) 그림 3-16과 같다. 대체적으로 토지소유와는 관계없이 활용지보다 유휴지가 많은 상황이며, 전체 대상지가 현지인보다 외지인의 소유가 많은데 비해 경지면적은 현지인의 소유가 많았고, 현지인 소유의 경지중 42.8%가 활용지인데 비해, 외지인 소유의 경지면적은 22.6%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인구 및 산업구조

(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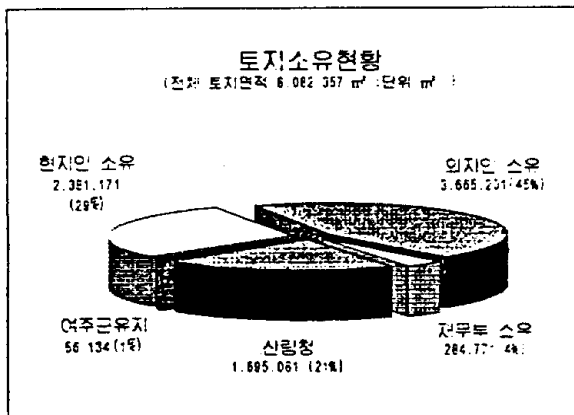
여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면은 모두 10개면으로, 산북면은 인구수로 보아 매우 작은 면에 속한다. 전체 여주군 인구 95,994명 중 2.1%인 1,986명이 산북면 인구이며, 남녀의 비율은 50.1% : 49.9%로 유사하다.²⁷⁾ 하품 2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1995년 5월 현재, 59세대(205명 : 남 106명, 여 99명)이며, 실거주인구는 이보다 적은 53세대이다.²⁸⁾

산북면의 농림수산업 인구는 전체 산북면 인구의 73.1%인 1,451명(327

27) 여주군, 1994, 여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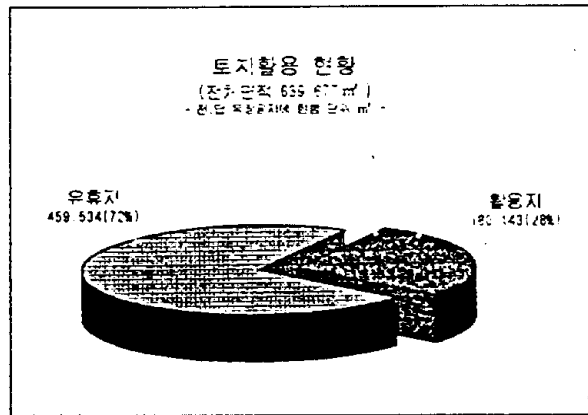
28) 1995, 산북면사무소 내부자료.

농촌인구의 도시유입과 함께, 도시화의 팽창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소(땅투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 수십년동안 서울근교의 농어촌은 현지인 소유보다는 외지인 소유가 증가해져 왔다. 이런 양상을 볼때,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외부인의 적극적인 도입이나 국가의 협조 없이는 지역의 발전은 곤란할 것이다.



(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994)

<그림 3-11> 토지소유현황도



(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994)

<그림 3-12> 토지활용현황

(3) 토지활용 현황

전체 대상지의 지목 중 총 639,677 m² 인 경지면적(전, 답, 목장용지)에 한하여 토지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림 3-13 과 같이 나타났다. 관광농원으로 개발될 대상지는 활용지의 면적율이 28 % 인데 반하여 유휴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72 % 를 점하고 있어 유휴지의 활용화가 요구된다. 대상지는 산등성이와 계류를 중심으로 마을이 입지해 있어 전체 토지중 하천을 중심으로 다소 경지가 입지해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천수답(계단식 논)이 많고 유휴경작지도 많은 실정이다.

전체 유휴지 면적 459,534 m² 중 휴경논은 63 % 인 288,470 m² 이고, 휴경밭은 37 % 인 168,473 m² 로 많은 면적의 경작지가 활용가능성을 상실당하고 있는 실정이며(그림 3-13 : 그림 3-17), 활용지의 토지현황은 전이 40 % 로 71,747 m² 이고 답이 60 % 인 108,396 m² 로 나타났다.

경지조건에서도 대부분 경지가 하천변이나 계곡에 소규모로 산재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하며 필지당 면적에서도 산북면 평균 350 평 정도로 나타나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계획 대상지는 상위계획에서 토지이용상 준농림지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적 토지이용을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지목별 면적에서도 임야가 88.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토지이용형태하에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태이다.

(2) 토지소유현황

토지는 45%가 외지인 소유로 되어있으며, 산림청이나 재무부, 공유지 등 국가소유분인 26%를 제외한다면 현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 그림 3-11 : 그림 3-12 : 그림 3-16)

〈표 3-5〉 토지소유대비 지목현황

(단위 : m²)

지목	소유					
	외지인	현지인	공유지	재무부	산림청	합 계
전	66,493	278,875	11,669	3,180	-	360,217
답	30,060	241,255	5,554	-	-	276,869
대	8,171	20,591	423	-	-	29,185
임야	3,549,351	1,826,208	31,339	-	1,695,080	7,101,978
하천	-	5,725	7,149	199,510	-	212,384
구거	-	-	-	45,501	-	45,501
공장용지	9,517	5,926	-	-	-	15,443
도로	1,609	-	-	36,580	-	38,189
목장용지	-	2,591	-	-	-	2,591
합 계	3,665,201	2,381,171	56,134	284,771	1,695,080	8,082,357

(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994)

3. 인문사회 환경

가. 토지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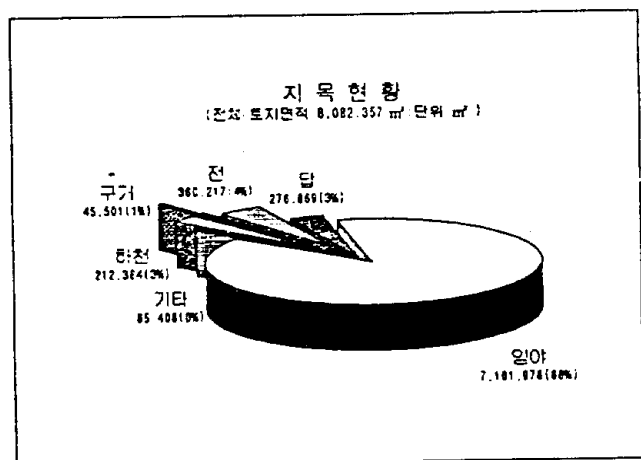
(1) 지목현황

대상지인 산북면 하품 2 리의 전체 토지 면적은 8,082,357 m²로 전체 지목 중 임야율이 가장 높으며 임야를 제외한 면적순위를 보면, 전 > 답 > 하천 > 구거 > 도로 > 대 > 공장용지 > 목장용지의 면적율을 나타내고 있다. 임야율이 다른 지목에 비해 매우 높는데, 하품 2 리의 경우 임야율은 88.0%로, 산북면 임야율 66.7%와 여주군 평균 임야율 55.1% 보다 훨씬 높으며, 전국 평균 66.1% 보다도 높다. 전(田)과 답(畓)으로 구성되는 경지율은 하품 2 리의 경우 7%에 불과하여, 산북면의 25.9%, 여주군 평균 29.5%에 비하면 극히 낮은 편이고, 도로·대·공장용지·목장용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에 비해볼때 극히 미소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표 3-4 : 그림 3-10 : 그림 3-15)

<표 3-4> 지목현황

현 황	지적(m ²)
전	360,217
답	276,869
임야	7,101,978
대	29,185
도로	38,189
하천	212,384
목장용지	2,591
구거	45,501
공장용지	15,443
총 계	8,082,357

(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994)



(자료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1994)

<그림 3-10> 지목현황

마을은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을은 전원적인 농가밀집지로 대체로 아랫마을보다 윗마을이 더 깨끗이 정비되어 있고, 마을을 지나 산 속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외지인의 별장건물들이 마을과 동떨어진 인공적인 건축물로 자연속에 어우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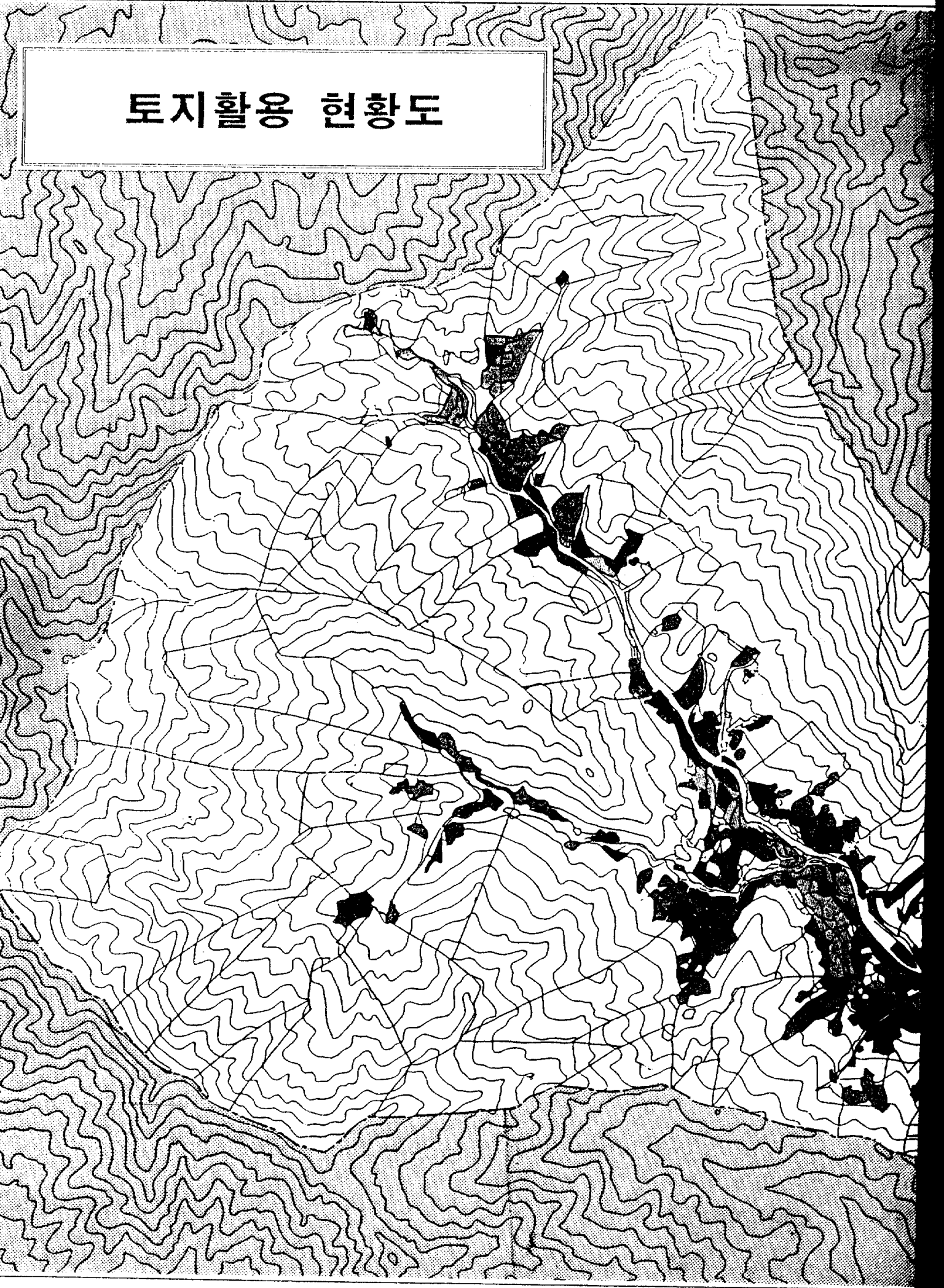
마을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량경관요소로는 마을의 특산품인 버섯재배 시설로 거적 통나무들이 무계획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계획적인 버섯재배 단지의 조성이나 버섯재배장의 시설개선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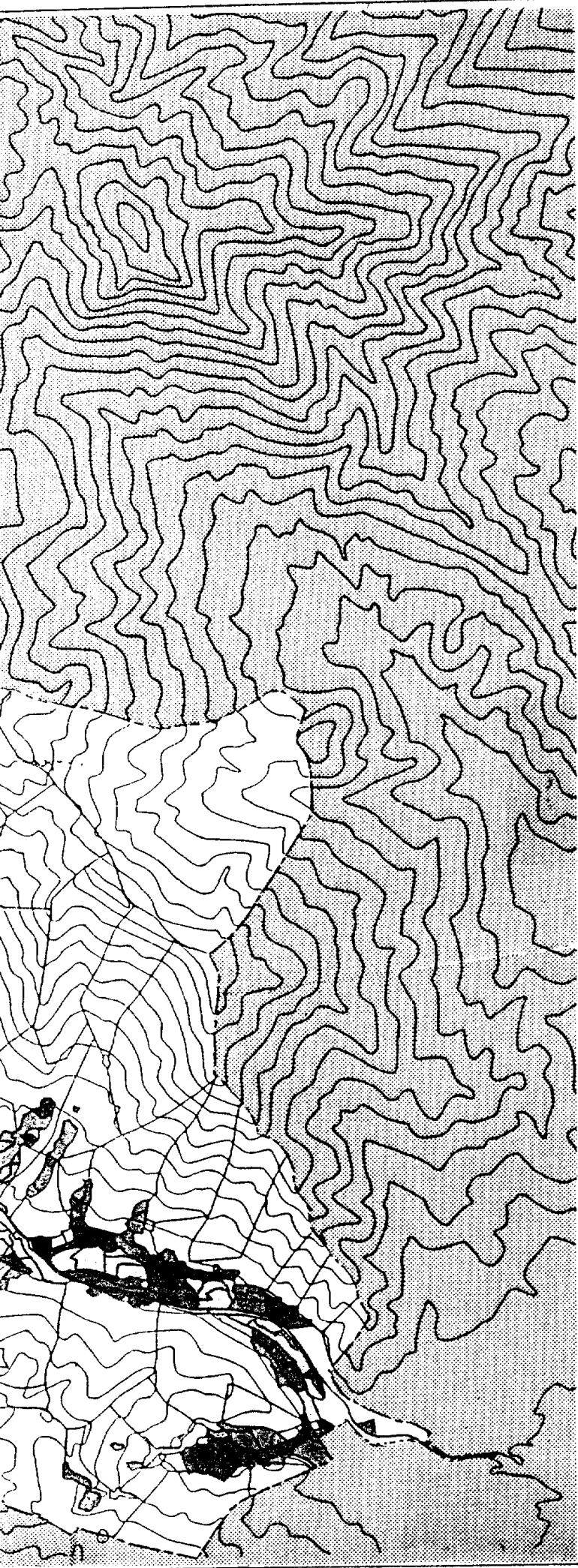
또한 경작지의 상당부분이 유희지로 버려지고 있어 그로 인한 불량한 경관들이 산재되어 있어 문제시된다. 유희경작지의 활용화 방안을 강구하여 경관의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 본 계획대상지의 공간구성은 마을 및 경작지권역, 계곡 주변 관광권역 그리고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밀성관광농원 시설지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품 2 리는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계곡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토양은 자갈이 있는 사양토가 많은 편이다. 계곡 주변은 대부분 사양토이고, 자갈이 있는 양토나 바위가 있는 사양토도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식물생육이 가능한 양토의 면적은 전체면적에 비해 상당히 협소하고, 식물 생육에 꽤 좋은 식토의 분포는 없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토지 의존적인 경작보다는 다른 산업을 마을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하나, 하품 2 리의 입구부분과 기존 밀성관광농원의 과수원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 그리고 윗마을의 좌 우 부분이 대체로 양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경작을 위해서라면 가급적 이들 여러군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3-9 토양분석도)

토지활용 현황도





범 레

- 
활용지-목장
 2,591 m² (0.4%)
- 
활용지-답
 108,396 m² (16.9%)
- 
활용지-전
 71,747 m² (11.2%)
- 
유휴지-답
 288,470 m² (45.1%)
- 
유휴지-전
 168,473 m²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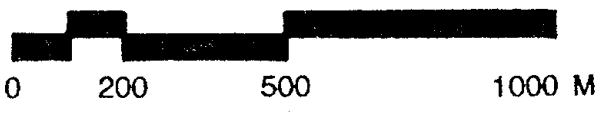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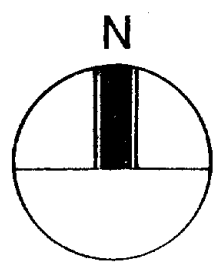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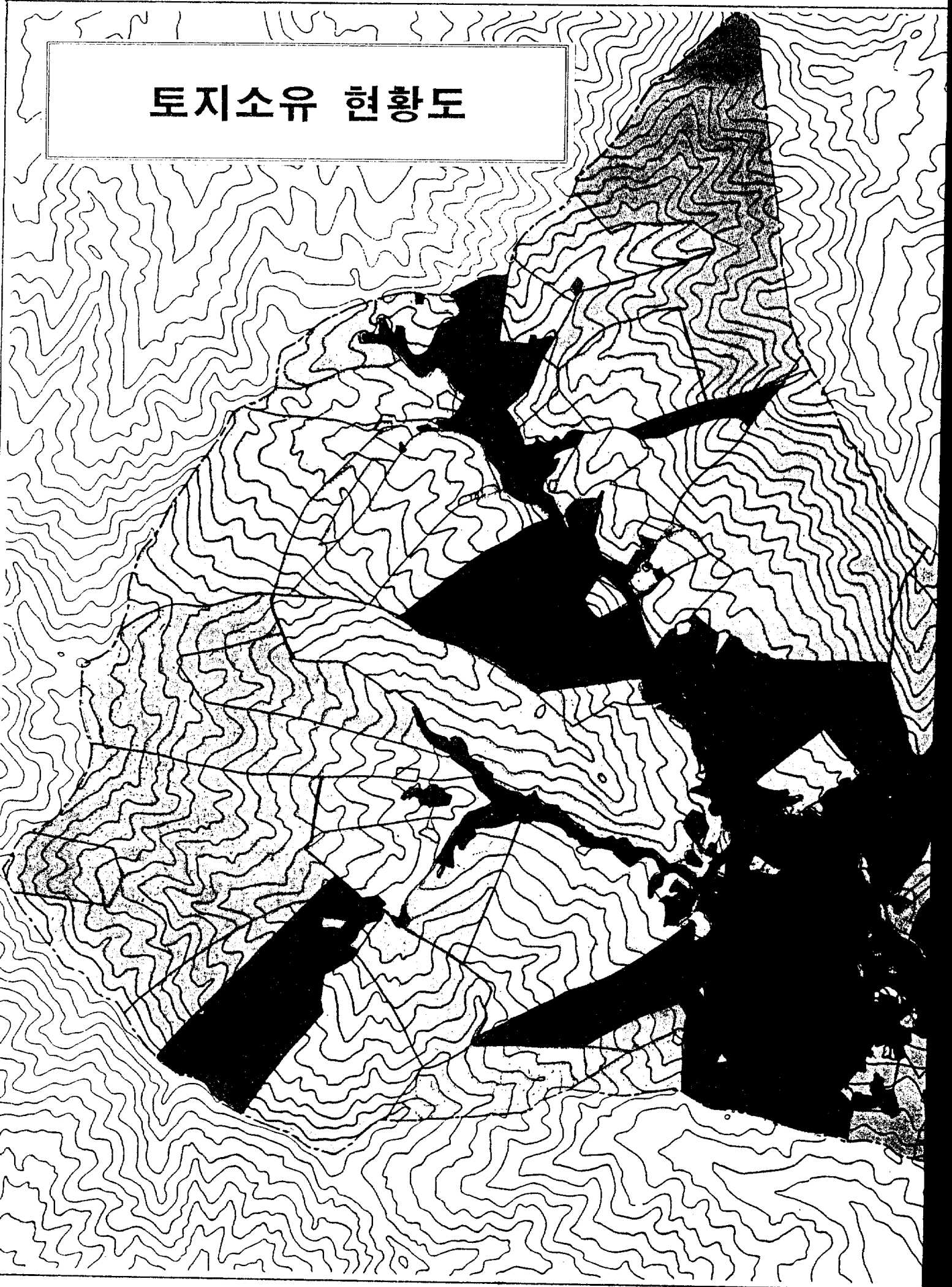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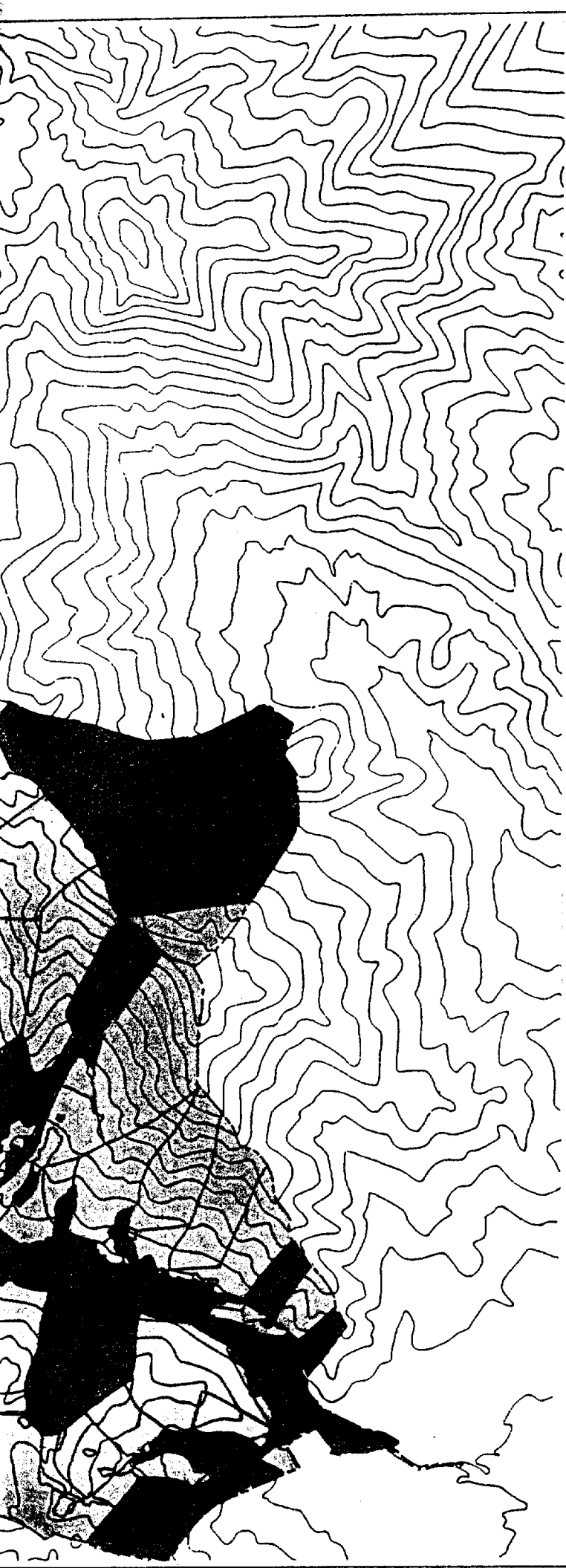







그림 3-17. 토지활용현황

토지소유 현황도





범 레

- 
군 유 지
 56,134m² (1%)
- 
외 지 인
 3,665,201m² (45%)
- 
산 림 청
 1,695,081m² (21%)
- 
현 지 인
 2,381,171m² (29%)
- 
재 무 부
 284,771m²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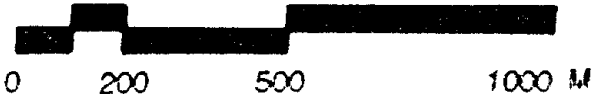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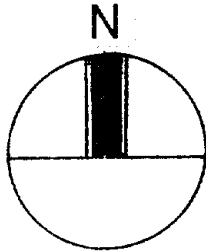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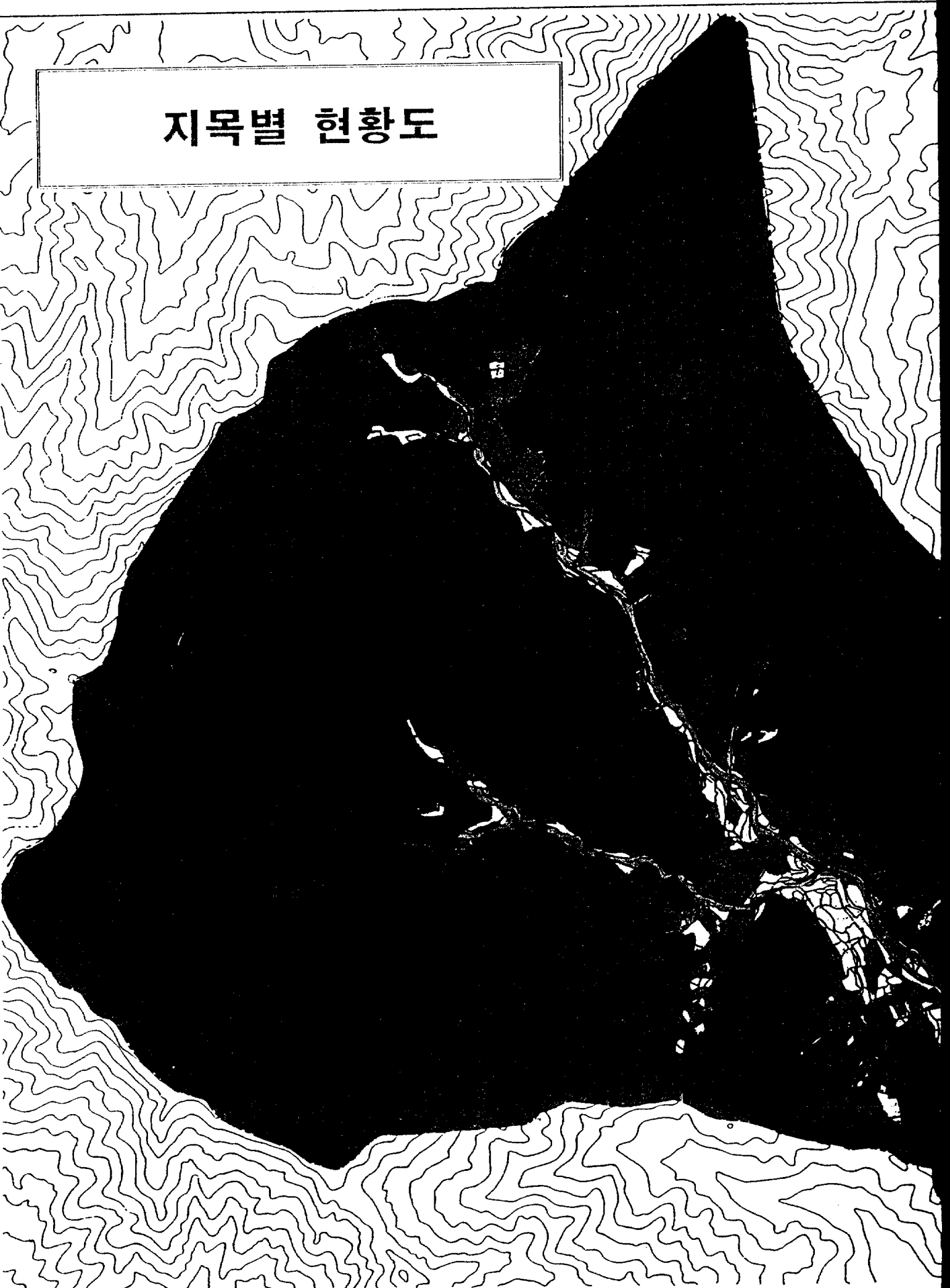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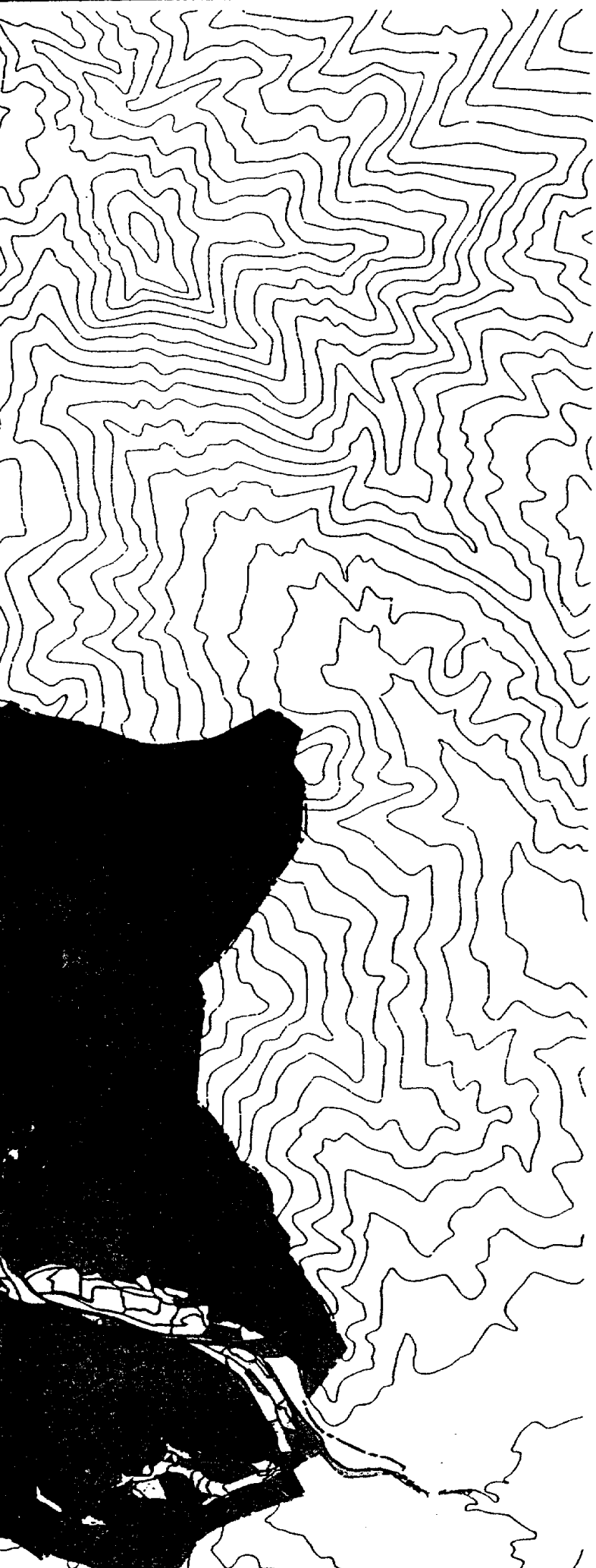


그림 3-16. 토지소유현황

지목별 현황도





범 레

임 야
7,101,978m² (88%)

답
276,869m² (3%)

전
360,217m² (4%)

하 천
212,384m²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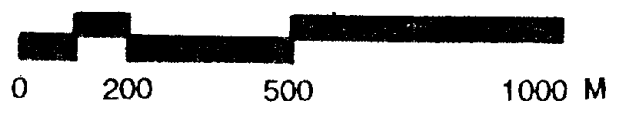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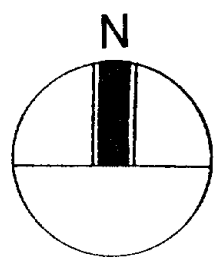


그림 3-15. 지목현황

농외소득을 비교할때, 과거에는 농업소득에 의존해오다가 '90 년대에 접어들면서 차츰 농외소득도 농업소득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품 2 리의 소득은 주로 농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고와 느타리 버섯농가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벼농사가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소득원이 되고, 이외에 양봉, 젖소 및 한우축산, 채소류 재배로 소득이 일어난다.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의 결과를 보면, 연평균 농업소득은 425 만원이고, 연평균 농외소득은 648 만원으로 평균 1,073 만원의 농가소득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3-7〉 대상지의 농업현황

유형	농가수	비 고
표고버섯 재배	12 호	호당 30 여평 규모
느타리버섯 재배	10 호	현재 35 평 7 동, 5 동은 진행중
젖소 및 한우축산	4 호	
양봉	1 호	양봉 및 토종꿀 생산
벼농사		
채소류 재배	7~8 호	

다. 도로 및 교통환경

대상지는 경기도 동부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서울 대도시 세력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광역생활권에 속하고, 지역생활권으로는 행정 구역상 여주지역 정주생활권이지만, 실생활권은 양평생활권 및 이천생활권이다.

대상지는 중부 고속도로 곤지암 IC 으로부터 약 13 km 지점으로, 곤지암 IC 에서 3 번 국도와 연결되고 양평에서 광주로 가는 329 번 지방도로로 이어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표 3-8〉 연도별 농가소득

(자료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995, 농협조사원보 3 원호)

년도	1인당 GNP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소득 계
	U.S. \$	원	원	원	원
1976	800	921,193	-	-	1,156,254
1977	1,028	1,036,136	-	-	1,432,809
1978	1,406	1,355,668	-	-	1,884,194
1979	1,662	1,531,275	-	-	2,227,483
1980	1,589	1,754,816	-	-	2,693,110
1981	1,719	2,476,463	-	-	3,687,856
1982	1,824	3,031,358	-	-	4,465,175
1983	2,002	3,330,961	912,612	884,671	5,128,244
1984	2,158	3,699,318	954,581	895,233	5,549,132
1985	2,194	3,698,936	1,059,987	99,323	5,736,246
1986	2,505	3,677,277	1,208,563	1,109,169	5,995,009
1987	3,218	4,016,013	1,313,861	1,205,440	6,535,314
1988	4,295	4,911,820	1,812,450	1,405,338	8,129,615
1989	5,210	5,616,147	2,152,125	1,668,397	9,436,669
1990	5,883	6,263,889	2,840,797	1,921,095	11,025,781
1991	6,757	7,034,788	3,662,084	2,408,174	13,105,046
1992	7,007	7,356,220	4,423,581	2,725,653	14,505,454
1993	7,466	8,427,000	5,041,000	3,461,000	16,928,000

지며, 개발중에 있는 365 번 지방도로가 상품리에서 이천군, 여주군청 소재지를 연결함으로써 외부와의 경제교류와 물류유통 등은 편리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로 지역경제를 내부로 흡수하지 못하고, 인근 도시 세력권으로 유출됨으로써 농촌 중심도시기능은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면소재지인 상품리에서 대상지로의 진입은 폭 3.5~4 m의 1차선 시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며, 마을까지 이어진 후 마을을 지나 임야가 펼쳐지면서부터는 비포장도로로 되어있다.

라. 시설물 현황

〈표 3-9〉 비지정 관광지 지정으로 설치한 시설

시 설	단위	갯수	비 고
화장실	개소	5	간이화장실
취사장	개소	3	개소당 약10평
입간판	개소	4	
매표소	개소	1	
주차장	평	820	1994설치, 승용차130대 수용
쓰레기소각장	개소	2	

〈표 3-10〉 밀성관광농원 부대시설

시설명	면적(평)
과수원	2,226
양어장	268
주차장	152
여 관	300
식 당	348
편의시설	1,890
총 합	5,184

대상지는 1980 년도부터 외지인의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1990 년에 ‘문바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대상지 입구부에는 1992 년 5 월 관광농원으로 인가를 받은 ‘밀성관광농원’이 조성되어 있다.

비지정 관광지로의 지정으로 화장실, 주차장 등(표 3-9)이 설치되었으며,

기존의 관광농원인 밀성관광농원에 소속되어있는 과수원과 편익시설 등(표 3-10)이 있다.

이상의 시설물 이외에 마을의 뒷쪽에 기도원과 천주교 성지가 있고, 통신·상/하수도 시설 및 전기(고압선 22,000V)가 들어오고 있다.

마. 전설

(1) 신랑바위 각시바위

여주군 금사면 하품 2리는 농가 40 여호의 산간마을로 마을 좌측에는 앵자봉이 있고 우측에는 양자산이 있다. 양자산의 한 줄기인 마을 우측의 한산봉우리에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말로, ‘신랑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의 형상이 신랑이 예복을 입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가마형상의 가마바위가 있고 또 신랑바위 주변에 병풍을 친 듯한 병풍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와 직선거리로 약 3킬로미터쯤 떨어진 맞은편 산봉우리는 ‘각시바위’라고 하는데 신랑바위와 마주보고 서있다.

마을 주민들이 나들이 할 때나 집에서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바위가 눈에 띄면 이 바위를 보는 사람이 바람이 난다하여, 주민들은 이 바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가리기 위해 이 바위 주변의 나무에는 절대로 손을 대는 일이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금기시 하여 낙엽의 채취도 삼가하고 있다.

때문에 주변과 비교하여 이 바위 주변은 항상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위가 밑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신랑바위와 각시바위에 얽혀 전해내려오는 또다른 전설은 더욱 재미있다.

마을에서는 신랑바위를 총각바위, 각시바위를 처녀바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총각바위를 흔들어대면 동네의 총각들이 바람이 나고, 처녀바위를

흔들어 대면 동네의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하여 마을에서는 바위를 건들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한다.

또 이산의 주봉인 양자산에서 광주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기업바위가 있다. 옛날에 하품리에 터를 잡은 한씨 장수가 전쟁에 패하여 도망쳐 올 때 이 바위를 기어서 넘었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마을 바로 앞에는 길이 2미터 정도의 비석 형상의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아들바위라고 하며 여기에도 아들을 못 보는 사람이 이 바위를 일으켜 세우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처녀바위와 총각바위 그리고 아들바위의 삼각관계와 기어서 넘었다는 기업바위 등 해학적 해석의 전설은 관광농촌마을 조성시 이미지 부각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마을이름에 얽힌 전설

여주군 금사면 하품리의 주민들은 하품리라는 이름 대신에 ‘주예’라고 부른다. 주예는 ‘주어리(走魚里)’의 줄인말로,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물고기가 달아나는 마을’로 해석된다.

한강을 따라 잉어, 메기, 뱀장어 등이 올라오다가 마을 위쪽에 있는 문바위 폭포를 넘어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둥트러지를 쳐서 그렇게 붙었다는데, 오늘날에는 팔당댐 공사로 뱀장어 등은 보이지 않으나, 오염되지 않아 맑은 개울에는 메기, 돌메기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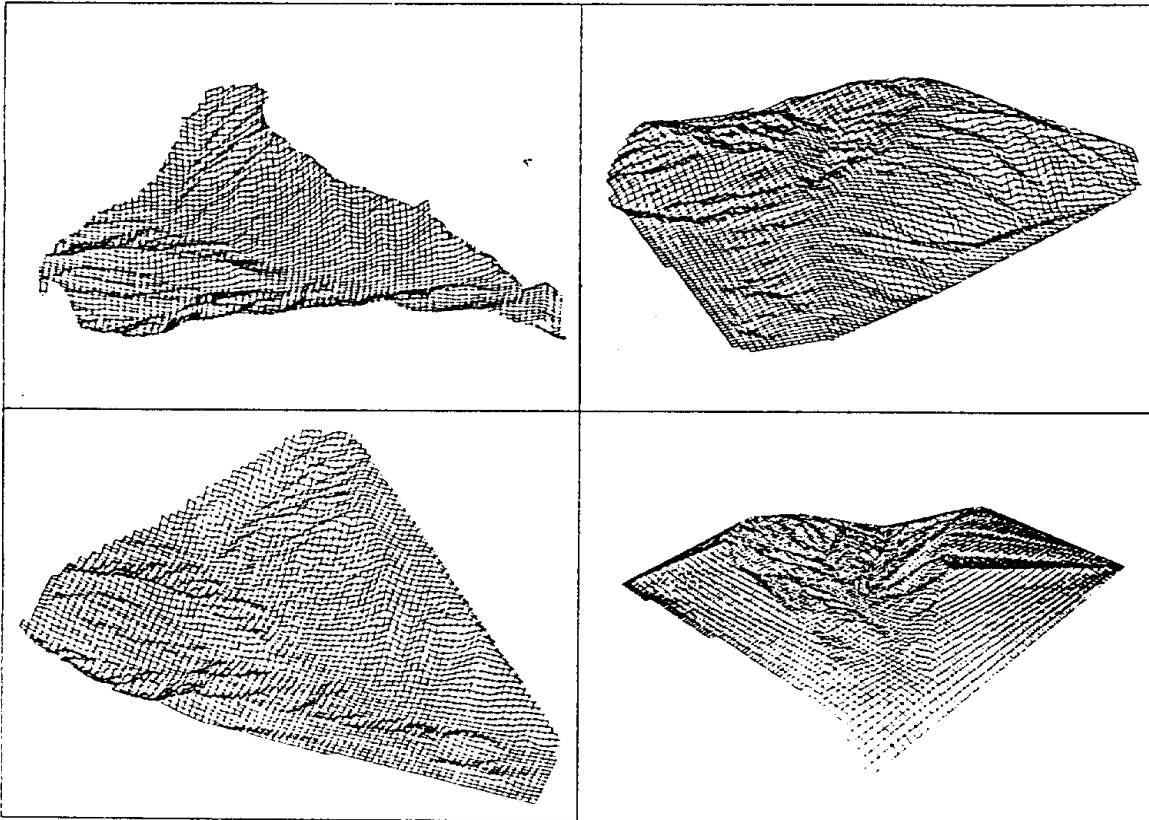
또한 마을의 뒤쪽 양자산의 한 꼬트머리에는 ‘주어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강을 따라 올라온 잉어가 어느날 보이지 않고 범당 한 가운데에 빈대가 겹겹이 쌓인 기둥이 생기자 이를 두려워한 중이 절을 떠나고 주어사는 폐사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사지의 기와장·구들장을 들치면 죽은 빈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바. 종합분석

<표 3-11> 종합분석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개발방향	
자연환경 분석	1. 경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의 대부분이 급경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 이용하는 레크레이션 시설 도입 가능
	2. 기후·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불량으로 경작에 지장 • 기온이 동위도 다지역에 비해 낮고, 오래동안 저온건조기후가 유지됨 • 주·야간의 온도차가 큼 • 강수량이 많고, 여름철에 집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 요구작물의 생육이 용이하므로, 저온재배작물의 특산물화 가능 • 계곡물을 이용한 관광산업유치
	3. 식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록보다 활엽수림이 우점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 및 신록의 아름다움을 이용한 관광산업 유치 • 열매 따기, 열매 가공하기(식품) 등 타산업으로의 전환 → 보급 가능
	4.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재배의 부대시설이 경관해침 • 유휴지가 많이 분포, 경관불량 • 위요된 산림경관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재배단지의 집약화 및 시설개선도입 요망 • 유휴경작지의 활용방안 강구 • 산림경관의 적극 활용
	5. 토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에 양호한 식토·양토에 비해 자갈/바위 섞인 사양토가 많아 경작에 불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존적인 농업보다 다른 산업의 도입이 제안됨 • 시설재배 방법의 도입 필요
인문·사회 환경분석	6.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가 88%로 경작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외지인의 소유지가 현지인 소유지보다 많으며, 활용지보다 유휴지가 더욱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 소유지 중 유휴지의 활용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경작지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 농업과 관광이 접목된 시설유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7. 도로 및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도시에서의 거리는 가까우나 접근이 까다로움(대중교통의 직접연결이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도로건설 계획과 연속한 교통체계 도입 및 자체의 관광적 유치 교통편 마련 도모



<그림 3-18> 3 차원 모델링

4. 관광환경

가. 국민의 여가성향 및 국민관광

(1) 국민의 여가

교통부(1990)의 자료에 의하면 '84년과 '88년의 조사결과 여가활동을 계획할 때 여러 조건들 중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여가활동 계획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여행>부업>전문을 넓히거나 연구>종교활동의 순으로 나타났

다. - 여가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마음의 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마음의 여유 > 비용 > 예상되는 만족감 > 시설·장소에 대한 매력도 > 걸리는 시간 > 동반자 > 교통 > 거리이었다.³⁰⁾

(2) 국민관광

국민생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한국관광공사, 1990), 지난 10여년동안 인구대비 1인당 GNP의 급신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었고, 근로시간의 감소는 곧 국민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관광활동의 참여기회의 증대를 낳았고,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관광활동도 변화되는데, 관광지에서 현재 활동하는 성향은 자연경관 감상이 21.1%, 역사문화유적방문이 16.0%로 소극적 활동인 '보는 관광'의 비율이 적극적 활동인 '레저·스포츠 활동'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 앞으로 즐기고 싶은 관광은 수변위락활동, 등산, 야영 등 '참여형 관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전망이다.³¹⁾

또한 전국의 관광객 이용현황을 기지정된 자연공원, 관광지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인 수요는 기지정된 관광지의 이용객 비율이 전국 비중으로 볼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비교적 자원가치가 낮은 도시공원·유원지·기타 관광지 등의 수요가 월등히 그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관광성향이 미지의 것에 대한 새롭고 참신한 것의 선호를 보이고, 또한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의 회귀를 희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³²⁾

전국의 관광종합개발 현황을 살펴보면(교통부, 1990), 국내의 관광자원

30) 교통부, 한국관광공사, 1990, 1990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1) 한국관광공사, 1989, 전국 관광장기종합 개발계획

32) 전계서

종합분석도

거울 주풍향

두세시간 코스의 완경사 등산로
→ 자연학습코스 및 산책로 개발

외지인 소유지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의

화합의 장소

휴경기

외지인 소유지
개발 곤란

LANDMARK

휴경기 밀집지역

A : B 기존마을로서 거주지, 대부분이 마을 주민 소유지

인근



- 계곡이 년중 흐르고 주변의 경관이 양호하며, 전원적인 농촌 경관을 유지
- 도토리, 밤, 버섯 등의 임산부 산물의 수확이 양호함
- 토지의 대부분이 급경사를 이루므로 경사지를 이용하는 레크레이션 시설의 도입에 유리
- 유휴경작지가 많아 활용화 방안이 요구됨
- 경작에 불리한 토질이므로 토지 의존적인 농업보다는 다른 산업의 도입이 제안됨
- 토지 소유자가 외지인이 많으므로 토지활용계획시 제한됨
- 타도시에서의 접근이 불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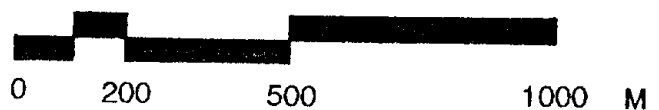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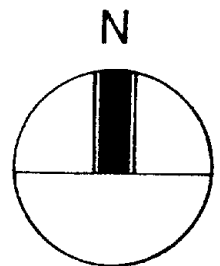


그림 3-18. 종합분석도

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관광지, 유원지로 구분·지정하고 있는데, '90년 6월 현재 관광자원은 모두 281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토의 7.9%인 7,794 km²가 지정되었고, 이는 국민 1인당 184 m²로 일본의 국토점유율 14%, 국민 1인당 443.4 m²의 1/2 수준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주요 관광자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2와 같다.³³⁾³⁴⁾

〈표 3-12〉 주요 관광자원 지정현황 (자료: 교통부, 199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구분	단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지정수	개소	281	20	20	24	119	98
면적	km ²	7,794.08	6,440.45	732.48	239.90	306.93	74.32
국토비율	%	7.9	6.5	0.7	0.2	0.3	0.1
국민1인당 면적	m ² /인	184	153	17	6	7	2

단, 관광지·유원지·군립공원 등 중복지정은 제외됨.

관리주체는 대부분의 자연발생 유원지의 경우 마을회 등이 자체 운영하며, 국민관광지와 군립공원·도립공원·도시공원 유원지는 군이나 시가 관리한다.

산북면 하품 2리는 1990년 문바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외에도 여주군에는 가마섬과 강천 1리 자연발생유원지와 신록사 국민관광지가 있다.

나. 근린 배후지역의 관광자원

대상지를 중심으로 20 km 반경이내인 광주군과 양평군·이천군, 30 km 반경이내인 용인군을 잠재적 관광권으로 규정할 때, 각 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변관광지의 현황 및 그 특징적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정

33) 한국관광공사, 1989,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서)

34) 일본의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국정공원, 都道府縣立自然公園으로 나뉜다.

리하였다.

대상지 주변의 잠재적 관광권의 행정군 관광수입 및 연간 관광객수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3-13 이고, 주변군 및 여주군의 관광지 현황은 표 3-14, 그림 3-19 와 같다.

용인군은 용인자연농원과 한국 민속촌 등 대난위 관광자원이 확보되어있고, 이천군은 이천온천과 실봉산 등 자연이 마린해 준 천연의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어서, 양평군이나 여주군에 비해 관광객 유치나 관광수입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주군은 양평군에 비해 관광객 수는 많은 편이지만 관광수입은 낮은편이고, 여주군에 발생하는 관광객은 대부분 영통과 신평사에 의해 유치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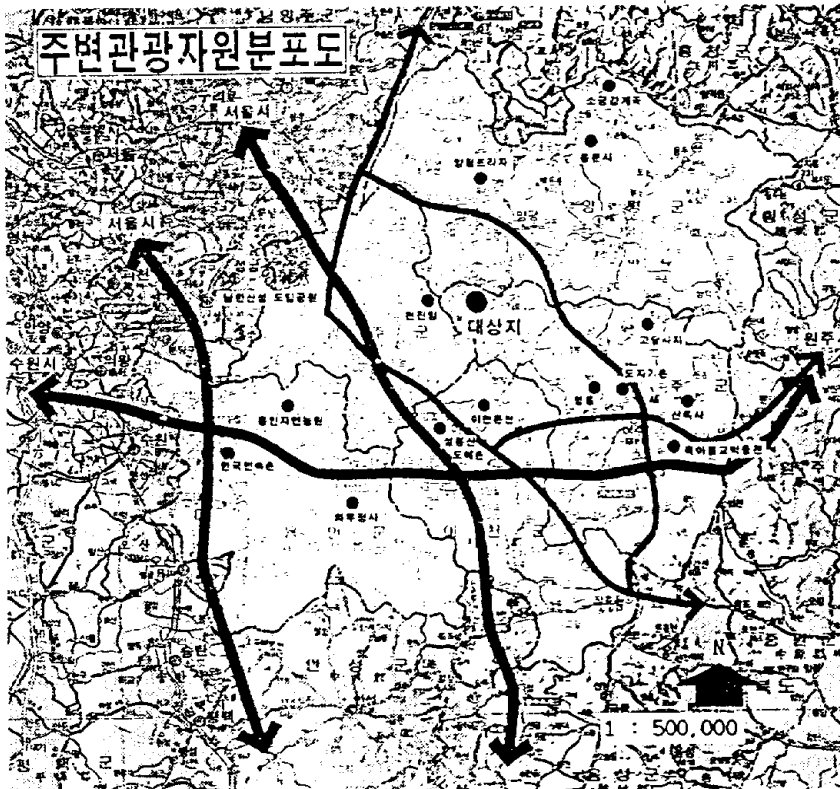
〈표 3 13〉 여주군 및 주변군의 관광객수, 관광수입

(단위 : 명, 천원)

년도	여주군		양평군		용인군		이천군	
	관광객수	관광수입	관광객수	관광수입	관광객수	관광수입	관광객수	관광수입
1987	-	-	238,000	51,757	-	-	-	-
1988	-	-	303,000	64,389	5,608,083	24,170,000	-	-
1989	747,567	-	346,000	79,265	5,833,582	27,810,000	-	-
1990	830,630	-	343,000	87,109	5,279,651	46,913,000	-	-
1991	922,997	87,000	273,000	125,177	6,182,153	13,114,000	-	-
1992	969,148	81,000	473,000	210,389	6,365,091	21,969,000	-	-
1993	824,907	107,000	427,000	215,554	7,155,510	60,001,000	2,329,572	16,147,208
1994	-	-	484,000	246,477	-	-	2,109,767	18,676,871

(자료 : 1994, 각 군청 통계년보)

경기도내의 기존에 조성·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을 김순경(1994)³⁵⁾에 따라 정리한 결과 전국 137 개소 중 10 개소로, 각각에 대한 현황은 표 3-15 와 같았다. 교통부(1992)³⁶⁾에 따르면, 1992년 현재 전국 163 개소의 관광농원 중 경기도에 있는 것은 13 개소로 정부의 자금지원(전국 20,921 백만원) 중 1,776 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20〉 주변 관광자원 현황도

35) 김순경, 1994,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국의 관광농원 137 선, 도서출판 강천

36) 교통부, 1992, '92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3-14〉 주변관광자원 현황

(자료 : 여주군, 1994, 여주군지)

관 광 지	특징적 관광자원	
여주군	고달사지	강변에 위치한 사찰 보물 제 226 호인 벽탑이 유명('벽절' 혹은 '戰搭') 입구의 맞붙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 전하는 전설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孝宗과 仁宣王后의 영릉	세종대왕 영릉을 '구릉', 효종과 인선왕후의 영릉 을 '새릉'이라고 부름
	명성왕후 생가	
	서희장군묘	
영월루(寧越樓)	누각 아래의 경치가 마암(馬巖)의 절벽으로 유명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에 얽힌 전설	
설봉산(雪峰山)	병풍형의 산, 등산로와 약수있음 기암괴석과 계곡을 흐르는 청유(清流)가 아름다움 의 상조사가 창건한 영월암(映月庵)의 면모	
이천군	이천온천(利川溫泉)	안흥리(安興理) 소재 약 80 년전 약수온천으로 개방됨(25 만갈톤/日)
	이천 도예촌	해강(海剛)도자미술관 세계유일 청자(淸磁) 박물관 도예촌 전시장과 도자기 축제가 유명함
용인군	용인자연농원	각종 유희시설 및 동식물원
	한국민속촌	한국의 옛모습을 재현
양평군	와우정사	
	양평프라자	콘도미니움, 인공레크레이션 시설
	용문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둘레 12m)
광주군	소금강 계곡	물이 맑음
	천진암	천주교 발생지
그외	미리내성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숲이 우거짐

〈표 3-15〉 경기도 관광농원 현황 및 특징

(자료 : 김순경(1994) 및 교통부(1992))

관광농원 명칭	농원인가	주요 ITEM
청암 관광농원	1985	나무숲, 양어장, 목장
에덴 관광농원	1988	산장형 가족 휴양, 주말농장, 전통혼례장
풍천 관광농원	1990	산장형 가족휴양
황새울 관광농원	1992	평 사육 및 요리, 대규모 야외수영장, 양지리조트와 병행
밀성 관광농원	1992	계곡의 물놀이
부림 관광농원	1992	음식점위주,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가능
여주 관광농원	1992	유료 낚시터, 작목밭
청룡 관광농원	1992	대형운동장과 야외물놀이장, 캠프장, 학습장
삼성 관광농원	1993	쉽터 역할
은성 관광농원	-	송림이 우거진 자연경관, 사슴사육장, 야생초 단지
서운동산	-	양어장, 원두막, 과수원, 단체가족의 야외행사 적합

다. 관광객 추이

한국관광공사(1989)의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역의 관광객 추이의 연평균 증가율은 14.4%로 전국의 17.0%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1988년의 관광객수는 전국 평균의 관광객 수보다 향상했으며, 전국의 시도별 우선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높은 율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경기지역의 관광수요 증가가 전국을 놓고볼때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여주군의 관광객수는 주변의 용인군이나 이천군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는 특별한 관광요소를 여주군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

존의 여주군의 관광객수의 추이를 근거로 평균증가율에 의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2001년까지의 관광객수를 추정해 보면, 표 3-16 과 같다.

표 3-16 에서 여주군의 관광객수의 평균증가율은 9.88 % 로 경기도의 14.4 % 와 전국의 17.0 % 에 비해 상당히 낮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주군이 자연자원이나 문화재 유적 및 다른 기타의 관광자원 및 적극적인 레크레이션 시설(예를 들면, 골프장, 워터시설 등)의 도입이 미비하고, 인접하는 다른 군들에 비해 매력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6> 평균증가율에 의한 여주군 관광객수요예측 단위:명

시점(t)	실제수요(Dt)	여주 Dt	
1989	747,567		
1990	830,630		
1991	922,997		$Pt = \frac{Dt - (Dt-1) \cdot P}{Dt-1} \times 100$
1992	969,148		$\sum Pt$
1993	824,907		$P = \frac{\sum Pt}{n}$
1994	-	856,233	$Pt = \frac{Dt-1 \cdot (1+P)}{Dt-1}$ 의 증가율
1995	-	876,333	$Dt = Dt-1$ 을 구하고자 할 때
1996	-	903,236	가장자리치(t)의 수요
1997	-	930,965	$Dt = Dt-1$ 기의 수요
1998	-	959,545	n : 가장자리치의 수
1999	-	989,003	P : 평균 증가율
2000	-	1,019,365	
2001	-	1,050,659	

(자료: 여주군, 1994, 여주군 통계연보/교통개발연구원, 1988, 장기관광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5. 지역거주민 의견조사

가. 조사분석 목적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의 하나인 관광농촌마을의 도입에 있어서, 농촌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가의 입장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사례연구 대상지인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 2 리에서, 1995년 2월 21일 마을공동회의에 참여한 거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면접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25부 배포하여 2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율 100%)

피조사자들은 대부분이 남성의 노령층이어서 다소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있으나, 각각의 피조사자들이 가구를 대표한다는 성격을 띠고, 또한 20~30대의 젊은이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런 현황을 기초로하고, 주민이 참여한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표 3-17)

〈표 3-17〉 피조사자의 구성(단위 : 명(%))

구 분		피조사자
성별	남	18(72)
	여	7(28)
연령	30대 미만	-
	30~40대	2(8)
	40~50대	4(16)
	50대 이상	19(76)
계		25(100)

〈표 3-18〉 관광마을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피조사자
적극 찬성	15(60)
찬성	3(12)
그저그렇다	6(24)
반대	1(4)
적극 반대	0(0)
계	25(100)

나. 지역거주민의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의견 분석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관광농촌마을을 도입하는데 있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72%), 이들중 '적극 찬성'하는 사람은 60%나 달해 주민들의 관광농촌마을에 대한 호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광농촌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기대도는 100점 만점으로 보아 74점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도도 상당히 높은편이었다. (표 3-18)

주민들이 현재 살고있는 마을이 관광농촌마을로 개발된다고 할때,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향은 간단한 레저 및 스포츠 시설의 도입에 의한 종합관광마을로의 개발을 상당히 선호하며, 이외로는 농촌체험·농산물 판매위주의 관광농촌마을로의 개발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민속마을형으로의 개발도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선호하고 있다. 이는 대상지의 자연경관이 산과 계곡을 찾는 여름철 휴양객이 주민들의 개발형 선호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농촌고유의 전통과 농업이 기반한 생활환경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상지가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부유층의 별장이 마을외곽에 다수 위치해 있어서 이들과 마을주민들간에 발생하는 이질감에 의해 '별장 및 콘도미니움 조성지역으로의 개발' 등은 선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9)

마을이 농촌체험 위주형으로 개발된다고 할때 주민들이 가장 수익을 기대하는 재배작물에 대한 조사에서, 버섯, 약초 등 임산부산물의 생산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고, 다음으로는 채소류를 선호하였으며, 화훼류에 대한 선호는 없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대상지 주민의 주요 소득원인 재배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기후와 지형상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0)

〈표 3-19〉

개발형태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피조사자
농촌체험형	3(12)
민속마을형	3(12)
별장형	1(4)
레포츠 도입형	16(64)
자연학습형	1(4)
무응답	1(4)
계	25(100)

〈표 3-20〉

재배작물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피조사자
곡류	2(8)
채소류	3(12)
과수류	2(8)
화훼류	0(0)
임산부산물	17(68)
무응답	1(4)
계	25(100)

〈표 3-21〉

개발운영주체 의견

(단위 : 명(%))

구 분	피조사자
지역민	3(12)
외부자본가	0(0)
지방자치단체	2(8)
지역민+외부자본	6(24)
지역민+자치단체	2(8)
3자 협동개발	10(40)
3자가 따로운영	1(4)
무응답	1(4)
계	25(100)

관광농촌마을로 개발·운영하게 될때의 주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민과 외부자본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개발운영하게 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민과 외부자본가의 협력에 의한 개발운영이 상당히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개발·운영에 있어서 제 3자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외부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농민이 모든 사업을 직접 도맡아 개발·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소 있었으나, 외부자본가에게 모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에는 극히 부정적이였다. (표 3-21)

마을이 관광농촌마을로 조성된다고 할때, 발생가능한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질문에서, 우선 가장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잇점으로는, '주민소득에 대한 기대'였고, 노령자의 고용기회 증진 > 농

업의 활성화>젊은 사람의 농촌정착화에 기여>고용기회의 증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주민들의 소득이 전국이나 경기도의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소득이 불안정하며, 또한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노령이어서 관광농촌마을의 조성이라는 새로운 경영형태의 도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관광마을로의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으로 우려하는 것은 '자연경관의 파괴'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교육환경의 악화>생활환경의 악화>미풍양속의 침해>순수농업에 대한 열의 감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관광농촌마을 참여'에 대한 의사를 질문한 결과,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데, 이들 중 32%는 적극참여를, 그리고 48%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 (표 3-22)

<표 3-22> 주민의 참여의사

(단위: 명(%))

구 분	회조사자
적극 참여	8(32)
능력에 따른 참여	12(48)
참여의사없음	4(16)
무응답	1(4)
계	25(100)

다. 결론

사례연구 대상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광농촌마을의 개발도입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그들의 참여의사도 높은편이었다. 관광농촌마을에 대한 기대의 방향은 그들의 현상황이 바탕이 된 약진적인 방향으로의 개발이며, 개발에 따른 잇점과 불리한 점을 어느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

관광농촌마을의 도입은 1차산업위주의 농촌에 3차산업을 접목시킨 것으로, 결국 변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농촌도 적응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6.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가. 관련계획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 일대를 관광농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은 제3차 국토계획의 기초하에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한 계획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가) 개요

제3차 국토계획은 제1,2차 국토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토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1990년대에 예상되는 국토개발의 제약적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적 요인을 최대한 이용하여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소하며 새로운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개발의 균형성, 국토이용의 효율성, 국민생활의 쾌적성, 그리고 남북국토의 통합성의 향상을 조화있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기초를 둔다. 따라서 관광농촌마을의 조성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민여가공간의 조성

- ① 여가활동의 욕구급증 및 질적 다양화추세
- ② 여가시설의 양적 부족, 다양화미흡 및 지역적 편재 지속
- ③ 여가활동의 계절적 편중으로 수요집중시 혼잡도 극심
- ④ 여가공간 관련정책 미흡

따라서 여가활동량 증가, 활동범위 광역화, 레포츠, 취미활동 등을 염두에 두고 가족단위, 승용차 이용, 숙박관광행태 등을 감안, 참여행태 다양화 및 활동영역 광역화를 유도하며, 또한 산업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자연환경의 보전성이 뛰어나고 관광위락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자연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국민여가지대를 계획적, 집중적으로 조성, 국민의 여가수요의 충족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한다. 개발계획의 합리적 수립 및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관광수요, 부존자원, 행정구역 등을 감안, 각 권역을 대상으로 부존자원과 이용특성, 주변 환경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표 3-23〉 서울근교권의 국토종합개발계획

권역	중심 도시 및 자원	주기능	개발방향
서울 근교권	북한산, 남한산성, 소요산, 산정호수	대도시권의 1일 휴식	스포츠 시설, 휴양시설, 주재공원, 수상활동시설 확충

(자료 : 제 3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p.332)

대상지는 관광권역상 서울 근교권에 해당하고, 개발권역상 수도권에 해당하며 권역내 개발방향으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외곽지역에 해당한다. 수도권내의 지역간 균형개발의 촉진과 지역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무공해산업의 제한적, 계획적 입지를 허용한다. 이 지역에는 중소규모의 공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을 배치하여 한강, 한탄강, 임진강 인근에 입지한 공해업체를 정비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화훼, 채소 등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근교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고 관광·위락시설도 확충한다. 특히 수도권 남부의 개발유도권역에는 서울 근교지역에 입지한 산업을 분산 수용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분산을 추진한다.

(2) 여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가) 개요

자연조건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중산간지역은 노인휴양촌, 휴양단지, 스키, 눈썰매장, 체험농장(관광농원)을 유치하고 구릉지형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준보전임지등 농촌산업지역, 준도시지역에는 농업과 관련된 주말농장, 민박촌 등을 유치

(나) 발전방향

수도권 관광, 휴양, 근교 환경보전형 농업기능의 중심지

- 수도권 개발압력의 흡수, 수용기능
- 수도권 여가수요에 대응한 대표적 관광휴양지
- 수도권 대도시에 근접한 무공해 근교 환경보전형 농업지역

(다) 개발전략

- 계획상 대상지는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민박촌등으로 개발
- 기개발 관광지역은 가능한 자원의 연계성을 높여 관광루트화 하고 여주의 관광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광여주의 상징(한강)을 설정·강화
- 대부분의 시설은 민자유치법을 활용하되, 투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무상임대하고, 호텔·식당 등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군행정차원에서 적극 허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휴양단지, 관광농원에 대한 정부정책지원계획을 최대한 활용
- 농업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 소득승수가 높은 관광농원, 주말체험농장, 임대농원등을 대대적으로 권장, 도입하여 농외소득원으로 정착
- 이를 위해서 1개소 정도의 군직영 시범 휴양단지를 신청 개발(농

나. 관련법규

본계획 대상지를 관광농촌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제관련법규로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상지에 관련된 상위법규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 그리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전용과 관련),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이 본 연구와 관련있는 법규이며, 대상지는 현재 토지거래상 규제구역이다.

(1)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가) 국토이용관리법

〈표 3-24〉 국토이용관리법

구 분	주 요 내 용
제 6 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구분 - 준농림지역 : 농업진흥 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 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제 7 조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 -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야 함
제 8 조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 법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됨,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음.
제 13 조의 2	-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기본이 됨
제 13 조의 3 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 준농림지역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7 조 및 동법 제 7 조의 그의 규정에 의한 개발 촉진지역 및 소규모 개발대상지 - 낙농진흥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 초지법 제 6 조 및 동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p>시행령 제 14 준농림지역안에서 의 행위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행위, 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 제외)와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기존 도로구역이나 점도구역안에서의 도로확장의 경우 등 준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함 ① 사도법 제 4 조의 구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② 기존 도로구역안 또는 점도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확장 ③ 기존도로구역 안 또는 하천구역안에서의 가스, 전기, 열, 상수도의 공급시설, 충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④ 기존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p>제 15 조 용도지역안에서 의 행위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지역 : 농축산업에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의 행위제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적용 -관광휴양지역 : 관광진흥법의 규정준용 -준농림지역 :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한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
<p>제 21 조의 3 토지거래계약 허가</p>	<p>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고나한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p>
<p>제 21 조의 4 허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의 경우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②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자의 복지 또는 위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④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p>⑥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p> <p>⑦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p>
<p>제 21조의 11 유휴지의 개발등</p>	<p>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할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가 유휴지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가 유휴지임을 통지하여야 함.</p> <p>제 21조의 10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 25조 허가구역안에서 의 토지거래 계약의 신고면적</p>	<p>도시계획 구역 밖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 임야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함</p>
<p>시행규칙 제 2조의 6 준농림 지역의 입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 개발 대상지로 지정 관리 지역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로 지정 관리 지역 -초지법에 의한 초지구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전임지가 아닌 임야등으로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p>시행규칙 제 5조 경미한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기존 도로구역안 또는 접도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확장 -기존의 도로구역안 또는 하천구역안에서의 가스, 전기, 열, 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 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존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 공사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 3-25>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주 요 내 용
제 4조 제 4항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다만, 농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으며, 상대농지의 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감면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해년도 농지병, 단위당 금액은 농수산부장관이 결정고시
법 제 5조 공용, 공공용 목적의 전용	--공용 또는 공공용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농지를 전용할 때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며 그 외의 용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 국가기관에 있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득함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함
시행령 제 3조 전용허가의 제한	--농지전용허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 --중요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용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설용지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용지
제 7조 농가주택의 범위	--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의 주거시설의 용지와 그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위한 용지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영농에 직접 필요한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단 제 1항 각호별로 시설용지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고정식 비닐하우스 및 망실은 3300제곱미터 이하)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8조 조성비의 납입절차 및 감면	법 제 4조 제 4항 단서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비 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 11조의 2 농지전용신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 -사업계획개요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용승낙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당해 토지의 지적도 및 지형도, 다만 당해 토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지형도 생략
------	--

(다) 농어촌 정비법(제 7 장 농어촌 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 농지 등의 정비)

①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표 3-26>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구 분	주 요 내 용
제 67 조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군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 단지 또는 주말 농원을 지정, 개발하거나 농림어업 인의 단체, 농어촌 진흥 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함. 2.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농어촌휴양지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수립. 3. 농림어업단체 등이 농어촌 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함. 4. 농림어업인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시장 군수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 또는 승인을 한 때 또는 농어촌 휴양지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함. 6. 시장·구청장은 농어촌 휴양지 중 주말 농원을 도시 지역에 직접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개발케 함.

② 농어촌 휴양 사업의 육성

〈표 3-27〉 농어촌 휴양 사업의 육성

구 분	주 요 내 용
제 66 조 농어촌 휴양 사업의 육성	<p>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휴양 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 휴양 사업을 지도, 육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 농원 사업 : 농어민이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 수산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농림 수산물 판매, 영농 체험, 운동, 휴양, 숙박 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 2. 농어촌 휴양 단지 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 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 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 체육 휴양 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시설,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 3. 주말 농원 사업 : 농어촌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영농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춘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 4. 농어촌 민박 사업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 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

③ 금지 행위 및 개선명령

〈표 3-28〉 금지 행위 및 개선명령

구 분	주 요 내 용
제 74 조 금지 행위 및 개선명령	<p>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휴양지 시설을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 -농어촌휴양지 이용객에게 이용료 및 시설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받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2.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는 사업장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3.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은 농어촌 휴양사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민박농어가의 지정육성

〈표 3-29〉 민박농어가의 지정육성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 30조 제 7항	-시장, 군수는 인근에 관광자원이 있는 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의 농어가로 주택의 이용시설이 양호하며, 여유있는 방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어가를 지정
시행령 제 5조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는 민박농어가로 지정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민박운영 및 환경정비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 34조의 2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 설정
시행규칙 제 31조 농어촌휴양지 지정대상지역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유물, 유적,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희귀식물, 토산품, 민예품 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기타 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 21조 농외소득 증계획의 수립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 30조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① 휴게소 등 편익시설 ② 양어장 등 농수산물 생산시설 ③ 판매장 등 판매시설 ④ 야영장 등 숙박시설 ⑤ 진입로 등 기반시설 ⑥ 기타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 32조 농어촌 휴양지의 지정절차	시장 군수는 법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
시행규칙 제 32조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 제 33조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법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농어촌 휴양지를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개발함. 1. 시장, 군수가 직접 개발하거나 법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단체등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사업 2. 농어민으로 하여금 직접개발하도록 하거나 농어민 단체와 농어민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관광농업개발사업 3. 기타 농어촌관광자원을 이용, 개발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p>제 34 조의 2 민박 농어가의 지정 육성</p>	<p>시장, 군수는 인근에 관광자원이 있는 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의 농어가로서 주택의 이용시설이 양호하며 여유있는 방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일정요건 갖춘 농어가를 민박농어가로 지정 지원, 육성</p> <p>-민박농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별지 제6호의 4 서식에 의한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p> <p>-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는 민박 농어가로 지정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민박운영 및 환경정비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민박농어가의 지지기준, 지정취소, 운영 관리 및 지원 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 설정</p>
------------------------------------	--

※ 시행규칙 제 33 조 농어촌 휴양지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라) 환경영향 평가법

<표 3-30> 환경영향 평가법

구 분	주 요 내 용
<p>제 4 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관광단지의 개발</p> <p>-체육시설의 설치</p> <p>-산지의 개발</p> <p>-특정지역의 개발</p> <p>-폐기물 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의 설치</p> <p>-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대상사업의 범위</p>	<p>-관광단지의 개발</p> <p>① 관광진흥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종 공용지 면적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p> <p>② 관광진흥법 제 2 조의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p>

(다) 환경보전법

<표 3-3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구 분	주 요 내 용
<p>규제대상</p>	<p>-건축연면적 800㎡ 이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창고 및 비오수배출 시설은 제외)</p> <p>-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 조리시설업</p>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권역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않음(다만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건물이거나,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공공 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 30ppm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 허용) - 건축 연면적 400m²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여 숙박업 및 식품접객, 조리판매업을 하는 자는 간이오수처리조를 설치하여야 함(환경처장관은 간이오수처리조의 구조·규모 등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 - 생화환경 조성사업 - 소득원 개발사업

(바) 건축법

〈표 3-32〉 건축법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 8 조 1 항 건축허가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과 개발촉진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시 시장, 구수의 허가를 득해야함
법 제 47 조 1 항 제 6 호(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은 용적율 400% 이하로 함

(사) 관광진흥법

〈표 3-33〉 관광진흥법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규칙 제 8 조 제 1 항 관련 별표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면적 :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② 시설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관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개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휴양시설 -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 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 화귀동물 등이 있을 것 -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

제 3 절 기본구상

1. 개발기본 방향설정

- 가. 획일화되고 변화없는 도시생활에서 벗어난 도시민의 참신하고 새로운 농촌체험형 관광욕구를 수용
- 나. 고령화, 이농화현상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며, 농촌환경보존을 원칙으로 한 개성을 가진 관광농촌마을의 조성
- 다. 개발이익이 지역민 전체의 생업과 연관된 지역개발사업으로의 개발
- 라.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2. 관광이용객 수용력 추정

가. 이용자 수요추정

- 1) 하품2 리지역은 제곡이 수려하여 1980년 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고는 있으나 조사통계가 없으므로 이장과 관광농원경영자의 경험담을 참고하였고, 여주군 관광증가율을 기초로 했음.
- 2) 현재의 숙박시설용량과 이용객들의 민박요구가 많아서 앞으로 표적시장의 잠재수요개척에 의한 적정경영규모를 참작하였음.
- 3) 일반적으로 관광농원의 내방이용시기는 봄 19%, 여름 45%, 가을 23%, 겨울 13%의 분포를 참고하였음.³⁷⁾
- 4) 현재 이용객수를 근거로 목표연도의 자연증가 이용객총수에다 개발로 인한 흡인증가력을 3.5 배로 추정하였음(지역여건과 개발내용에 따라

37) 류선무 1992. 한국관광농업의 운영실태분석과 소득증대 방안, 한국관광학회 제 16 호 p. 100.

차이는 있을 수 있음.)

5) 1994년 하품 2리 내방현황은 다음 표 3-34와 같다.

〈표 3-34〉 하품 2리 내방현황

명/1일

이 장	관광농원경영자 의견	조사자 의견	비고(영업일수)
여름 최대일	1000명	400명	40일
평 일	500명	100명	40일
봄, 가을 휴 일	300명	160명	20일
평 일	100명	60명	80일
겨울 평일, 휴일	50명	20명	120일
합 계	80,000명	30,400명	300일

현지인(이장, 관광농원경영자)은 과장된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면이 있어서 영업일을 300일로 계산해서 1994년 총내방자 수를 30,000명으로 추정 계산했다.

6) 여주군관광객 증가율은 10%(9.88%)로 계산하였다.

나. 내방자 추정객수

〈표 3-35〉 내방자 추정객수

구 분	인원(명)	산출방법	비 고
연간이용객수	150,000명		$30,000(1+5 \times 0.1) = 45,000$ 명
연간숙박객수	37,500명	연간이용객수 × 숙박이용율	$45,000$ 명 × 3.5 배 = 157,500명 숙박이용률 25%
최대일이용객수	2,500명	연간이용객수 × 최대일율	3계절형 1/60
최대시이용객수	1,600명	최대일이용객수 × 회전율	회전율 1.5회전

3. 도입활동 및 시설의 구상

가. 기본방향

본 연구는 농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개발계획의 하나인 관광농촌마을 계획으로서 일차적으로 농민의 거주공간이자 생산공간인 마을내에 농업 이외의 산업활동을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동시에 날로 다양해져가는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수용하고자 한다.

도시민 이용객의 점차적인 증가로 인하여 이미 비지정관광지인 대상지에는 무분별하게 건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고 있어 이에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대상지에 입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계곡과 산림 등을 이용하여 도시민에게 레크레이션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고 개발에 의한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배치하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한다.

또한 도입된 시설들은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시설의 도입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 향상 뿐 아니라 방문객의 레크레이션 활동에서의 흥미와 다양성을 더한다.

본 계획의 기초는 시설의 배치로 인하여 본 대상지의 고유한 성격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를 지키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레크레이션 기능을 도입하여 대상지 내에서 관광레크레이션 행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그러나 마을에 도입되는 새로운 시설의 배치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진행되고, 마을의 자연 생태적인 특성과 이용자의 관광 레크레이션 행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획한다. 대상지내의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마을에서의 토지이용과 기본구상의 공간배분에 준하며,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시설 상호간의 이용체계와 기능상 효율성을 기한다. 이는 기존 마을에서의 공간이용을 고려한 시설도입으로 도입시설 및 공간과 기존의 시설 및 공간과의 대립과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또한 도입되는 시설에서 파생되는 오염원의 배출 및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사후정비체계를 도입한다.

나.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

(1) 기반시설

기반 시설은 도로, 하수처리장이 주요시설로써 도로는 기존의 마을도로와 임도를 이용하고, 진입시에는 기존의 지방도 329번 도로등을 이용한다. 현재 마을의 진입로는 폭 4m 정도의 협소한 비포장 도로이므로, 진입에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폭원을 5.5m 정도로 넓히고, 포장하여 편리를 도모한다. 기타 산책로나 등산로, 자연학습로 등의 도로는 새롭게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임도 등을 이용하고 정비하여, 자연에 순응할 수 있도록 용지를 확보한다.

또한 하수처리장은 현재 산북면 정주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생활하수보다는 우수배제 시설이 미비하여 우선 개발되어야 할 사업임을 알 수 있다.

(2) 공공편익 시설

공공편익 시설은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이며 진입도로변과 각 시설지 주변에 확보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며, 주차장 시설지는 장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한다.

공공편익 시설지 외에 숙박시설지 등의 차량수요가 예측되는 시설설치시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차량 배치를 분산한다. 또한 대상지 내에 특히 가족 중심의 피크닉장 주변에는 공중변소등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한다.

<표 3-36> 관광농촌마을 환경보전방안

구 분	보 전 방 향	
자연자원	동식물 보호	보전지역에는 최소한의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
	수자원보호	하천 주변에 입지한 부락의 오염 유입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며, 단지내 발생오수는 1차처리후 하수 중발처리장으로 집합처리 폐기물은 분류 수거하여 재활용폐기물은 재활용업체에 보내고 폐기시킬 것 중 가연성인 것은 소각후 소각된 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함께 수거하여 배후도시 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분장으로 운반
	대기자원보호	자동차의 집중방지 산불예방을 위한 지도, 시뮬레이션
인문자원	지역사회자원의 보호	개발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문화자원보호	기문화재로 지정된 보호수의 적극적 보전과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관리운영상	관광자원 및 관리시설	적정 수용능력을 파악하여 이용객의 집중 현상 방지 및 보전지역의 이용제한 등 검토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공공비용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른 관리,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함
이용상	관광객의 이용규제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광객수의 제한, 차량통행 제한 등을 통한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
	관광환경윤리확립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계몽과 규제 및 처벌에 관한 기준 설정

자료 : 장내수, 해안경관특성이 근거한 관광단지 개발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1990)

(3) 영농시설

이는 대상지의 주제시설지로 중심부의 평탄지와 휴경지에 주말농장과 버

섯재배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변의 휴양 및 숙박시설지와의 연계를 유도 하되 주민의 거주지와 가까이 설치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한다. 대상지의 특산물인 버섯을 재배하는 재배단지 는 기존 마을 곳곳에 배치하되, 자가소유 토지에 버섯재배사가 배치되도록 고려하여 버섯의 생산을 집중육성하고, 버섯을 통해 마을 전체를 이미지 메이킹한다. 또한 버섯 재배사를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그 자체가 관광요소가 되도록 계획한다.

(4) 숙박시설

전망이 양호한 기존 관광농원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되, 주변 환경을 감상하도록 경관을 조성하며, 단체숙박객의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다목적 운동장을 배치하여 동적활동을 수용한다.

또한 악천후에 대비한 집회소를 설치하여 단체급식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단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가족단위숙박객은 지역주민의 빈 방을 개·보수하여 민박시설로 활용한다.

(5) 레크레이션 시설

레크레이션 시설지는 가족동반 이용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집단적으로 배치한 곳으로서 눈썰매장이나 소동물원, 미니골프장, 트림파크 등 기타 유희시설등을 배치하도록 하며, 집중적인 이용으로 인한 자연 환경파괴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완충지역을 조성한다.

(6) 전시 판매 교육 시설

농산물을 저장하고 직판할 수 있는 직판장을 동선계획과 병행하여 계획 하고 이용객의 구매를 유도한다.

버섯교육 및 실험·연구·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버섯박물관을 대상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시켜 상징성을 부여하며, 자연학습로는 기존의 임도

를 따라 조성하되 동식물의 생태적인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식물의 선택과 노선을 계획한다.

<표 3-37> 총 합

총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의 목표에 부합되고 지역계획과 조화된 기능을 부여한다. -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확산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되, 지역발전의 근거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의 최소화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 농업생산공간과 동식물의 서식지는 계속 보존토록 한다. - 농촌형 관광지로서 지역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한다. - 자연자원을 보존한 자연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한다. - 각 공간 상호간의 연계성 강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 단계별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간별, 시설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농촌마을 관광지로서의 버섯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다. -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특화된 관광지 분위기를 연출한다. - 자연환경의 특성을 최대화하고 조화있는 관광지로 조성한다. - 개발 과정, 관리운영 이용상의 관광환경보전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농촌 체험학습 및 도농교류 촉진의 장소가 되도록 개발한다. 	

다. 각 시설별 기본 구상

(1) 기반시설

가) 도로

① 개요 —— 도로시설은 대상지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간구조로서 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로의 기능은 이용권 내의 배후 도시와 대상지의 관광농촌마을의 시설을 연결시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상지내에서의 이용과 관리를 원활하게 한다.

보통 농촌마을에서의 도로체계는 그 기능과 위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 진입도로—기존 지역간 간선도로의 진입부로부터 대상지역의 주차장 까지를 연결하는 도로
- ㉡ 순환도로—대상지역내에 설치된 주차장으로부터 주요 각 시설의 입구를 순환연결하는 도로
- ㉢ 연결로—대상지의 주차장으로부터 시설지역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으로 자연관찰로, 탐승보도, 등산로 등
- ㉣ 특수도로—특수한 레크레이션 활동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전거로, 승마도 등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본 대상지에는 현재 도로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포장면은 현재 주거동이 입지하는 부분까지 처리되어 있다. 본 계획상 이러한 도로의 포장과 폭원의 확대의 부분은 그 투자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토지 소유상의 미묘한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과 형평성의 양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확폭의 경우 그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m정도 마다 자그마한 공간(bay)을 설치하여 두대의 차량이 마주쳤을 경우에 무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래의 표 3-38에서 대상지는 3종 4급으로 분류되므로 진입도로의 차선폭은 기존의 5m를 5.5m로 확폭하기로 한다.

〈표 3-38〉 진입도로의 도로 구조령 3조

구 분	설계속도 (km/h)	차선수	1 차선의 폭 (m)	비 고
3종 4급	50-30	2 차선	2.75	대규모 또는 도시근교 휴양림에 적용
3종 5급	40-20	1 차선	4.0	소규모 오지의 휴양림에 적용

(나) 보 도

① 개 요 —— 보도는 대상지의 주차장으로부터 시설지역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에 적용된다. 마을내에 설치되는 보도는 방문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여 영감을 느낀다든지 경관을 구성하는 수목, 암석, 물 등을 직접 접촉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어 자연과 친밀해지는 기회를 주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도는 위치, 설치목적, 기능에 의하여 자연관찰로, 탐승 보도 및 등산로 등으로 구분된다. 장거리 자연보도는 탐승보도가 연속된 보도로서 분류된다.

<표 3-39> 보도의 기준

종별	연장	폭원	중단구배	횡단구배	노 면
자연관찰로 탐승보도	최소 4km	1.5-2.0m 1.5-2.0m	원칙적으로 현 지형에 맞춘, 단, 구배 15% 이상인 구간에서는 경사로와 계단을 조합하여 설치	아스콘 보도면적 2%, 기타 3-5%	원칙적으로 미포장 구간이나 유지관리상 포장하는 곳이 좋은 곳에는 부분적 포장
등산로	무제한	1.0-1.5m	구배 15% 이상시 계단 설치	원칙적으로 현 지형대로 하되, 로 함	현 지형대로 설치 하되, 필요하다면 정지등을 실시함

② 시설의 도입구상 —— 폭원 1.2 m 정도로서 각 시설에 차량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공공편익 시설

(가) 주차장

주차장은 대상지내 3군데로 나누어 배치하는데, 마을의 입구부분과

유희시설지 부근 그리고 피크닉장의 입구로 정한다. 주차시설의 규모는 당일객을 대상으로 하여, 숙박객은 숙박시설 부지내에 주차함(승용차 주차의 1/2 수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수단별 분담율은 대상지가 가족휴양을 목적으로 조성되므로 단체수송보다는 승용차 분담비율을 높여 적용하였다. 피크닉의 10-15%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도보로 접근, 25%는 전세버스, 60%는 승용차로 분담율을 적용했다. 대당 승차인원은 버스는 40인, 승용차는 3인을 기준으로 삼았다.

□ 주차면적=최대일 이용객×시설이용율×회전율÷대당 승차인원×단위 규모

승용차(조경녹지 포함)= $2,500 \times 0.6 \times 1/1.5 \div 3 \times 30 \approx 10,000 \text{ m}^2$

버스(조경녹지 포함)= $2,500 \times 0.25 \times 1/1.5 \div 40 \times 100 \approx 1,000 \text{ m}^2$

(나) 공중화장실

화장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주차장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피크닉장 주변에도 배치한다.

(다) 광장 및 안내소

① 개요 — 광장은 이용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되, 주변에 문화시설, 공원 등 큰 범위를 갖는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형태 : 광장의 외주부는 어느정도 지형으로 둘러싸인 느낌을 갖도록 하여 가급적 광장내부의 지면은 완경사로 형성한다. 한편 계획부지의 고저차가 심한 경우는 침상형 광장을 두며, 규모가 클 경우 둘 또는 셋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다.

㉡ 동선 : 외부로부터의 동선은 접근시의 흥미와 목표감을 주도록 설정하며 간선도로에 면한 광장은 도로로부터 직접적인 방해받지 않도록 보

행 동선을 설치한다. 광장 내부의 동선은 보행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가급적 막힌 곳이 없게 개방적으로 처리한다.

㉔ 공간구성 : 광장은 원칙적으로 시각의 종점(Terminal Vista)을 건물로 막아주어 적절한 폐쇄감과 위요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진입 공간—전이공간—주공간이 구분되도록 한다.

이때 주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며 다양한 모장으로 처리하거나 중심부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분수, 야외소각 등의 시각적 시설물을 배치하여 구심력을 높이도록 한다.

㉕ 식재 : 한정된 지상 및 지하부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종류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로 화목류와 녹음수를 종점적으로 식재한다.

수목은 수형이 곧고 아름다운 것, 조화류를 밝고 원색적인 색채의 꽃이 바람직 하며 화기가 오래가는 것을 식재한다.

㉖ 포장 : 광장의 포장은 단순히 평평한 것보다 어느정도 요철이 있는 것이 이용자에게 쾌적하나, 심한 요철은 보행을 방해하므로 특히 어린이나 신체장애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포장의 재료와 색채 및 문양을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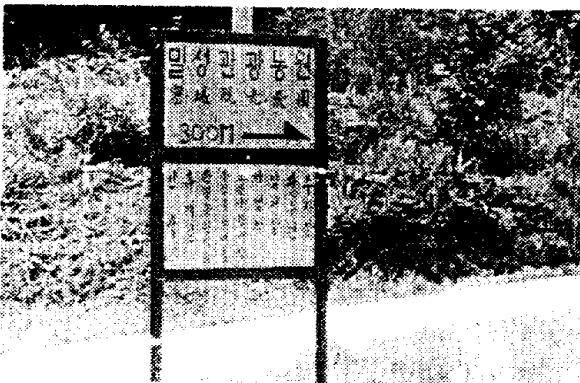
㉗ 기타 : 휴식 및 편의시설은 광장의 외주부에 주 동행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주위 건물이나 포장 등과 색채, 질감등이 일체화되거나 조화를 이루게 하여 플랫폼을 벤치로 겸용하는 방법등을 상구한다. 생기있고 활동적이며 축제분위기를 갖는 광장을 조성하려면 장식조명, 깃대, 불라드 등의 수직적 요소를 적극 도입한다.

㉘ 잔디광장 : 잔디광장은 자유원지이며 맨손체조, 무용, 게임, 기타 가벼운 스포츠와 휴식 등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가벼운 운동을 위한 용구와 게임을 위한 놀이기구 등의 대여로 편리를 꾀하며 급배수를 위한 설비

와 야간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간단한 조명설비와 방충설비를 설치한다. 청소년 이용자 1인당 광장 점유율은 1.5 m²가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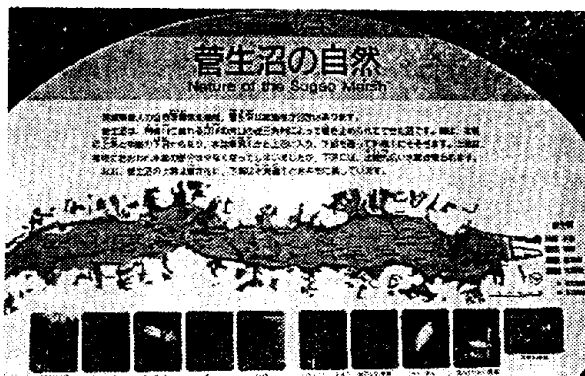
② 시설의 도입구상 — 진입광장, 중심광장, 자유광장 등 용도에 따라 3군데 정도 분산해서 배치하며, 중심광장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광장에는 박물관·음식점·기념품판매소·매점·안내소 등의 시설을 도입하고, 진입광장과 자유광장은 광장의 기능과 더불어 주차장을 연계하여 집합기능을 살리도록 한다.

(라) 안내판/안내서



■ 사진 3-1 안내판(대상지 현황)

■ 사진 3-2 안내판(내장산 국립공원 사례)



■ 사진 3-3 안내판(외국 사례)

■ 사진 3-4 안내판(외국 사례)

안내판은 공간의 특성에 맞게 연결되어야 하며, 문외한에게도 이해될 수

있게 간단명료해야 한다. 해설문을 붙인 안내판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안내서의 경우에 준하여 간략한 해설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100 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한 학습코스내에 20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안내서 작성에는 가능한 그림과 설명을 함께 적는 것이 좋으나 이것 역시 필요이상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 도리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기며, 비용도 문제가 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10 매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에 의하여 상세하고도 간략한 해설문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휴게소

① 개요

관찰보도가 끝나는 지점 등에는 휴게소나 전망대가 설치되는 것도 좋은 일이며 여기에서는 물도 마실 수 있으며, 간단한 정원이나 연못 같은 것이 가까이 자리잡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된다. 또한 단체관찰의 경우에는 인원점검을 위하여 집합장소로도 쓸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

(3) 영농시설

(가) 벼싹재배장

① 개요 — 대상지에서 주된 특산물로 선택된 것이 벼싹이다. 여주군은 경기도 내 표고버섯의 주산지로서 이종의 일부분이 산북면 일대에서 출하되고 있다. 이장 면담 결과 본 대상지에서 중점적인 육성이 가능한 산물로 표고버섯이 선정되었고, 본 대상지는 현재 활용지 180,143 m² 대 유휴지 459,534 m² 로 대상지의 경지 면적중 28 % 가량만이 활용지로 남겨진 상태이다. 이러한 유휴지의 활용대책으로 가장 타당한 작목으로 표고버섯이 선정되었다. 이는 대상지의 지형조건상 남쪽에 표고가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어 과수를 재배하기에는 그 일조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대상지에는

이미 2차 천이가 시작되어 수종의 대부분이 참나무여서 이러한 참나무 임목에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버섯재배사는 기존에 검은 비닐 등을 덮어 썩은 형상을 나타내어 경관상 상당히 불량하지만 대상지내에 집단적으로 버섯재배사를 미적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조성하여 본 대상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저온성 버섯은, 시설재배용 품종으로는 산련 2호를 생산하며 그 생산기간은 기온이 15℃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11월 까지 수확기간이 길다. 또한 고온성 버섯으로써 노지재배용 품종으로는 산련 1호를 생산하며 그 생산기간은 주로 여름에 한정되어 7월에서 9월 까지를 그 수확기간으로 삼는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현재 대상지에서 버섯 재배현황은 표고농가가 12호로서 버섯재배량은 80,000본 정도이다. 대상지에서는 2년 전부터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주된 작목으로 표고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 농가에서 표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규모는 각 농가별로 투자가능한 범위로 잡고, 전체 재배사의 면적을 30,000평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버섯재배사는 주민의 거주지 주변에 배치하되 이는 각 농민의 주요 소유대지가 농가 주변에 한정되기 때문이며, 관리상의 용이성에 두고 있다.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버섯재배사의 향을 서북향으로 하여 최대한 음지가 많은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버섯재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전시·판매의 범위내에서 농가주위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집단적 재배지역은 농가로부터 어느정도 차폐되어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그 곳에서 버섯따기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나) 주말농장

① 개요 — 주말농장은 농산물 생산과 수확의 기회를 도시민에게 부여하여 도시민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파종,

정식, 수확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농민은 작업지도를 하고 농기구, 종자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도시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비쁜 일이 있어 작업을 못할 경우에는 일정 인금을 받고 그 작업을 대행하기도 한다. 작업지도는 파종 또는 정식, 시비 등을 할 때의 간격과 깊이, 시비량, 시비방법 등에 대해 도시민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종자준비의 경우 미리 준비된 작부체계에 따라 필요한 종자와 보종 등을 준비하여 도시민이 생산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여야 하며 호미 등의 소농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도시민과 협력하여 생산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말농장에서의 단위 내어 경지규모는 10-30 평 정도이다. 경지의 분할은 기존의 농지경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나누되, 그 경계는 별도의 시설없이 고랑을 파는 정도로 분할하고 말뚝에 이름을 표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관광농원을 도시민이 경작하고 농민이 경작을 지도하는 경우에도 기본시설은 필요하다.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취사장, 식당, 공중전화, 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농기구 및 종자, 농약, 비료 등의 보관창고, 농장 사무실, 수퍼마켓 등이 있다.

이상적인 방법은 면적을 50 평 정도 지상권만 분양하여 집(5-10 평 정도의 규모)도 짓고, 정원(잔디밭, 꽃)도 꾸미어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는 별장 기능을 살리면 더욱 좋다. 이때 집의 모양이나 크기는 기본모델이 2-3 종류가 개발되어 있으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대체적으로 주민의 거주지에 근접한 유희농지에 대규모 주말농장을 분산배치하되 그 면적은 10,000 평 정도로 계획한다.

(다) 양어장

① 개요 — 양어장은 계곡류나 하천수와 같은 유수나 자연적인 또는

인공적인 연못, 호스 등의 물을 이용하여 증식을 목적으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에는 기존의 관광농원 조성시 계획된 양어장 시설이 있으며, 현재 관광농원의 다른 시설들은 완공이 된 상태이나 양어장의 시공은 진행중에 있다.

㉔ 입지선정 기준 : 양어장의 입지 선정기준으로는 우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즉 물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어떤 성질의 물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물이 지장 없이 배수될 수 있는 지형여건도 중요하다. 양어장 적지선정기준은 크게 용수와 용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양어장에 이용할 수 있는 수원으로는 지하수와 하천수를 들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얻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양어장 적지 선정시 우선 그 지역의 강우량과 집수구역 내의 샘, 수계, 산림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해 이용가능한 수원 및 수량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필요하다.

수량은 적지선정시 중요한 요소이다. 취수가능한 수량에 따라 못의 크기 및 양식가능한 고기의 양이 결정된다. 수량의 조사시기는 1년 중 가장 수량이 적은 시기인 갈수기에 조사하여 그 수량에 적합한 연못 면적, 양식하는 고기의 수 등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수량이 증가하므로 한정된 수량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온과 수량의 변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수질로서는 온도와 물속에 함유하고 있는 용존산소량, 탄산가스나 암모니아성 질소의 양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흐린 물은 용존산소량이 적어 생육에 적합치 않다. 호탁성인 잉어조차도 협소한 물에서 양식할 때에는 여름철 소낙비가 내려서 물이 흐려지면 코올림을 하는 등 호흡에 지장을 받는다.

용지는 수량에 적합한 양어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양어장 시설로서는 양어지외에 수로, 도로, 건물, 기타시설 등이 있으므로

적어도 양어지면적의 1.5—2 배의 크기가 필요하게 된다. 지형의 경사나 주위의 자연환경은 양어지를 만드는데 있어 연못의 크기나 모양, 배치, 급배수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적당한 경사지여서 배수에 문제가 없는 것이 좋다.

㉠ 양어장의 시설기준 : 양식업이란 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 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일정한 시설기준과 부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 7 조 및 동시행령 제 40 조 시행규칙에 명시된 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못의 종류와 크기 : 사육지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치어지, 양성지, 친어지 등으로 나뉘지지만 각각 상호간에 융통해가며 사용할 수 있다. 못의 크기는 사용목적, 주수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가 필요하며, 1 면당의 크기는 대체로 치어지 10—30 m² 양성지 60—150 m² 친어지 150—500 m² 정도가 적당한 크기이다.

㉢ 못의 배치 : 못의 배치는 수량과 지형, 물의 이용방법, 관리의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정하지만 각 못에 새로운 물이 유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원의 가까운 상류쪽에 치어지를, 하류쪽에 양성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 각 못은 수로에 의하여 연결하고 고기의 포획, 이동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못을 관광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하류에 비교적 큰 못을 만들어 낚시터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 못의 수 : 못의 수는 2면 이상 필요한데 보통은 3—5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무리의 어체의 크기를 가급적 동일하게 맞추어 사육하고 어체 크기가 고르지 못한 데서 생기는 생존률의 저하나 수용밀도의 증가에 따른 사료 효율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표 3-40〉 양어지 시설의 세부시설 기준

면허의 종류	양어지의 규모	시설명칭	시설규모 또는 장치의 내용
양만장	2,300 m ²	사육지	원지분양지로 구분, 12 개의 사육지 이상으로 수면적 2,110 m ² 이상
		가요지	165 m ² 이상으로 보일러 또는 2 중 비닐하우스
		실내축양장	33 m ² 이상으로 샤워시설
		용수시설	지하수 또는 미오염수 1 일 500 톤 이상
		동력시설	10 kw 이상 전동기 1 대(예비발전기 10 kw/m)
		폭기시설	1 개 사육지당 수차 산소공급기 1 대
		기타	투이대, 관리사
		사료기기	전동식 분쇄기 및 혼합기 각 1 대
일반양어장	3,300 m ² 이상	산란지, 부화지	각 3 개 이상으로 구획, 780 m ² 이상
		치어사육지	3 개지 이상으로 구획, 1,980 m ² 이상
		친어지	2 개지 이상으로 구획, 540 m ² 이상
		용수시설	1 일 300 톤 이상
		사료기기	분쇄기 및 혼합기
		기타	투이대, 관리지

〈표 3-41〉 양식장의 못

못의 면적	못의 수	전수량	추정생산량
165 m ² (50 평)	2-3 곳	15- 20 ℓ/초	2- 4 t
330 m ² (100 평)	3-5 곳	25- 35 ℓ/초	5-10 t
660 m ² (200 평)	7-9 곳	60- 80 ℓ/초	10-25 t
990 m ² (300 평)	10-15 곳	90-120 ℓ/초	30-40 t

② 시설의 도입구상 —— 현재 대상지에 조성중인 양어장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 위치는 마을의 진입부의 우측에 있으며 계획면적은 1,572 m² 이다. 양어장 관리사는 297 m² 이며 현재 양어장에서 사육 예정인 어종은 향어 5,000 미, 메기 10,000 미이다.

현재 양어장의 수원으로는 대상지에 흐르는 계곡의 물과 지하에서 뽑아올린 지하수 등을 사용하게 된다.

대상지 내의 양어장에서 낚시 대회등을 유치하여 내방객의 유치를 도모하는 등의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이다. 그리고 인접 논이나 인공방사지를 부대설치하여 비꾸라지나 비단잉어, 금붕어 잡기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4) 숙박시설

(가) 단체숙박의 도입구상

단체숙박 및 개인민박을 위한 시설은 계획대상지의 진입부분, 대규모 주차장에 인접하여 조성함으로써 단체이용객들이 마을을 거처서 지나지 않도록 유도하며, 옥내집회소·간이 운동장·단체객을 위한 주말농장·양어장 등과 함께 조성시킨다. 단체숙박시설은 1실당 10평으로 1주택 6실을 기준으로, 대상지에 적용되는 법규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기위해 고밀도 단위층 건물보다 저밀도의 다수동의 건물을 계획한다.

(나) 옥내집회소

① 개요 — 실내집회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주로 집단적 실내수련 거리를 행하는 장소로서 강당,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실내 집회장은 형태에 따라 대규모 극장식 불박이 의자형,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마루형, 체육관 겸용형으로 구분된다.

- ㉠ 불박이 의자형(극장형) : 대규모 강당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좌석이 고정되어 수용인원과 시설규모가 비교적 정확하고, 주요활동은 공식적인 행사, 교육, 집회 등이다.
- ㉡ 마루형 : 집회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접의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마루를 이용하여 간단한 실내운동도 할 수 있다.
- ㉢ 체육관 겸용형 : 실내체육관 겸용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체육관 한쪽에 무대장치가 있으며, 접의자와 관람석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강당, 회의실 등으로 실내집회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실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조립식 칸막이를 두어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간주한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단체이용객이 대상지에 방문하여 행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나, 만약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옥내 집회소는 평상시에는 단체객들의 식당 등으로 활용하여 이용되며, 악천후 시에는 단체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1,000 m²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민박의 도입구상

대상지내에 53 호의 가옥중 외지인 거주 13 호를 제외한 가구 중 가옥

상태가 양호하고 민박유치의 의사가 있는 가옥을 50%로 보고, 이들 20여호의 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민박을 유치한다. 각 농가에 유치하는 민박은 농촌이 가진 고유한 전원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 필수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수준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레크리에이션 시설

(가) 계곡경관보존 및 피크닉장

① 개요 — 피크닉장은 도시권을 벗어나 도시생활에서의 긴장을 풀고 휴식, 놀이 및 모임의 기능을 갖춘 자연속의 공간시설이다. 피크닉장의 유형은 단순히 잔디광장과 같이 단위시설로 설치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피크닉, 놀이 및 편익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종합적인 공간시설로서 설치되기도 한다.

피크닉장의 이상적인 입지는 하부식생이 초지를 바탕으로 교목의 수림피도가 20% 내외인 산개림형으로 구성된 산림지역이다. 이같은 지역은 녹음과 정숙함, 상쾌함을 주며 벤치, 야외테이블, 음수전, 휴지통, 취사장, 위생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설치에 용이하여 일정집단의 이용행태에 가장 민감한 곳이다. 피크닉장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동체의 사회성을 배양시켜주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피크닉장은 이용자들이 주로 낮동안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당일이용형으로 구분되어 숙박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입지선정시 피크닉장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며, 자유로이 휴식, 산책, 식사, 유희 등 자연과의 접촉을 피하여 긴장을 푸는 장소로서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시설이 설치된 피크닉장은 일정면적의 평탄지가 있는 산악, 구릉, 하천, 호소, 삼림 초원 등의 자연의 분위기를 살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크닉장의 이용밀도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수용능력내에서 통제할 필

요가 있다. 피크닉 이외의 휴식, 산책, 가벼운 운동, 풍경감상 등 다양한 이용을 행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본 계획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족단위 휴양”의 기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계곡의 수량(水量)이 많은편이고 주변경관도 아름다워 이미 계곡을 중심으로 한 레크레이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본 계획에서도 이 기능을 적극 수용키로 한다.

주변환경은 획일적이면서 많은 유지보수 노력을 요구하는 식물이 아니라, 대상지의 여러 환경조건에 부합하고 가급적 자생하고 있는 야생초화류를 도입하며, 계곡을 따라 선형으로 조성키로 한다. 피크닉장은 개방되게 조성하며, 피크닉장에 이어 산책과 자연학습, 가벼운 등산을 위한 도로를 연결시키기로 한다.

전체 이용자 1,600명 중 50%는 주말농장 등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한다고 보고, 나머지 50%가 피크닉을 한다고 할때 피크닉인구는 800명으로 추정된다. 피크닉 인구를 회전율 2.5-3으로 볼 때 1인당 필요면적은 50m²³⁸⁾로 전체 피크닉장 면적 필요량은 40,000m²가 된다.

(나) 눈썰매장

① 개요 — 눈썰매장은 스키장과는 달리 비교적 소규모의 부지로 완만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이도 손쉽게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적 눈놀이 시설로서 수련시설에는 특히 규모가 큰 수련원 또는 자연권 수련시설이나 특화된 주제시설로써 설치를 권장할

38) 피크닉장은 크게 가족단위 피크닉장(3.5-8인으로 구성)과 그룹단위 피크닉장(최소 15인의 그룹단위로 구성)으로 나뉜다. 이중 가족단위 피크닉장은 1ha 당 20단위, 1단위에 1가구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1가구 5인가족=50m² 기준으로 보면된다. 밀도는 대상지의 수용능력이 허용한다면 ha 당 100단위까지 계획할 수 있으나 적정밀도는 15~30단위이다.

만 하다. 봄, 여름, 가을에는 다양한 문화캠프나 이벤트 장소로 또는 잔디스키, 잔디썰매 또는 피크닉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썰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인의 신체조건에 맞으며 안전하고 디자인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㉓ 코스 설계기준 :

- 지형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의 지형변경으로 사면을 조성한다.
- 코스개발은 단순함을 피하고 전망이 양호하도록 개발한다.
- 코스는 구배에 완급을 주고 아동용, 청소년 용으로 구분한다.

㉔ 썰매장 구성시설 : 눈썰매장을 구성하는 주요시설은 썰매장, 눈놀이광장, 눈놀이집, 전망휴게소, 리프트, 보관창고 등이다.

- 썰매장 : 썰매장에는 이용청소년 들의 다양한 연령층에 적당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설치하여 흥미를 주어야 한다.
- 눈놀이광장 : 썰매를 타기 위한 준비와 리프트 탑승대기공간으로 썰매 외에도 즐길 수 있는 눈놀이와 이벤트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둔다. 눈놀이광장의 1인당 점유면적은 15 m² 가 적당하다.
- 눈놀이집 : 휴식과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눈놀이집의 필요시설은 방송실, 화장실, 매점, 지도자실, 대기실, 정비실 등이다.
- 전망휴게소 :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썰매를 타기전 준비와 대기, 잠시 쉬수 있는 공간으로서 썰매타는 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전망이 좋아야 한다. 1인당 점유면적은 1.7 m² 정도가 적당하다.
- 리프트 : 썰매를 타기 위해서 슬로프 꼭대기(전망대)까지 이용자들을 운반해 주는 시설이며 전망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눈썰매장은 겨울철 비수기에 대비하여 도입하는 시설로서 그 규모가 커질 수록 투자액이 커져 적정한 규모의 개발이 불

가피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의 피해도 상당하다. 눈썰매장의 최소 경사각은 10° 이며 그 사면길이는 최소 20 m 이다.

본 대상지에 도입되는 눈썰매장의 규격은 폭 30 m 에 길이 50 m 로 눈썰매장 이용객의 혼잡을 덜고 투자비용의 회수 기간이 가능한 짧도록 하였다.

(다) 트림파크(TRIM PARK)

① 개요 — 체력단련장은 신체활동을 위한 장과 학습과 휴식의 장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 설계기준 : 입지는 산악 또는 구릉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계획 대상지의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적절한 코스를 설정한다. 시설은 연쇄적으로 이용되도록 배치하며, 규모에 따라 10-20 개의 단위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시설 간격은 20-30 M 의 간격이 적당하다. 난이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쉬운것에서 어려운 것 순으로 배치하고 종점부분에는 쉬운것을 설치하여 마무리한다. 시작부분과 종점 부분에는 광장을 설치하여 출발,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시설주변의 포장은 모래로서 처리하고, 주변에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연결하는 공간에도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안내설명판은 시설이용안내 및 성취도에 따라 점수표시로 흥미를 유도한다.

<표 3-42> 트림파크의 설계기준

구 분	길이 KM	설비종류	설비간격 M	소요시간(분)
초급자 코스	0.5	8-10 종	50	40- 50
중급자 코스	1.0	10-12 종	80	70- 80
고급자 코스	1.5	13-15 종	100	100-110

대상지역 내에 설치되는 트림파크는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갖춘 숲길을 말한다. 운동로는 신체활동을 통해 심신의 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운동의 템포와 횟수를 조절하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이용객과의 교제가 가능 하여 사회성을 지닌 휴양지 시설이다. 트림파크는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적 조건과 운동시설(안내판 포함)을 이용하는 것이며, 운동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휴식 시설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㉔ 입지조건 : 트림파크는 운동과 내용에 따라 스포츠크스, 땀흘리기 코스, 자유운동광장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산림운동로는 계획에 앞서 대상지의 자연적 조건(식생, 지형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 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림파크의 입지조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형은 복잡하여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한다. 코스의 난이도에 따라 급경사가 필요하나 지나친 급경사 지역은 피하고 활동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환경사지가 많은 지역이 바람직하다.
- 이용자가 삼림적 분위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식생조건이 풍부해야 한다.
- 운동 중의 휴식을 위하여 양호한 전망지역이 필요하다.
- 운동로의 배수가 잘되는 토양구조여야 하고, 운동로를 따라 개천, 호수 등이 있는 지역은 더욱 바람직하다.

㉕ 계획 및 설치기준 : 대상지와 자연적 특성을 파악한 후 운동로의 코스설정, 운동시설 및 관련시설의 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최대한의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동노선의 설정이다.

트림파크의 설치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운동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운동시설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 조용하며, 때로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것
- 휴식을 위하여 휴게시설(벤치, 파골라 등)을 설치할 것
- 코스는 출발점과 종점을 연결하고 이곳에 코스안내도와 매점을 설치할 것
- 여기서는 운동시설의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하며 휴게 및 관련시설은 각 설계기준을 고려한다.

㉔ 운동로의 설치 : 운동로는 수림을 해치지 않고 또 커다란 절토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지형을 따라 코스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운동로의 폭은 2-2.5 m 가 적당하며 노면은 흙다짐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간단한 포장을 한다. 운동로의 안정을 위해서 배수구가 필요하며 돌붙임축구 등의 자연적 재료를 이용한다. 종단구배는 원칙적으로 현 지형 그대로 하고 횡단구배는 약간의 경사만 둔다. 이때 절토와 성토가 불가피한 곳은 녹화공, 돌쌓기 공사 등으로 안전을 꾀한다. 어느것이든 재료는 현지산과 같은 종류의 것을 설치한다.

㉕ 시설의 구성 : 산림운동로는 신체활동을 위한 장과 휴식과 대화를 위한 장의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운동코스, 땀흘리기 코스, 자유운동광장, 다목적 코트 등이 신체활동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고, 휴식의 공간에서는 휴식 및 대화, 지도 및 관리, 위생, 식사 등의 활동이 가능 한 곳이다.

㉖ 운동코스 : 운동코스는 50 m 간격으로 안내표가 있는 주행코스로서 조깅, 경보, 산책 등에 따른 인터발 트레이닝(interval training)을 하기 쉽도록 시설을 설치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 보행에 무리가 없는 포장을 하며, 경기용 코스와는 달리 기복과 굴곡 등으로 즐거움을 연출하고, 출발 및 종착지점에는

반드시 큰 시계를 설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㉔ 체력단련코스 설계상의 요점 : 운동코스의 설계방식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스테이션 방식 : 각종 운동 스테이션(station)을 1개소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방식

포인트 방식 : 각 운동 스테이션(station)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는 방식

스테이션(station) 방식은 인접한 곳에 육상용 트랙과 산은 달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하다. 반면 포인트 방식은 조깅코스, 원로, 기존 가로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체력단련코스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2.4 km 정도가 에어로빅 운동의 원리에 적합한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1.2 km 를 왕복시키도록 설계할 수 있다. 체력단련코스의 바닥은 조깅코스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포장재는 피하고, 낙엽이 10 cm 정도 쌓이면서 밟혀서 단단해진 정도의 폭신함을 주도록 한다.

체력단련 설계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동 스테이션(station)은 가급적 그늘에 배치시킨다.

통로 주변 바로 옆에 설치하지 말고 식재로 둘러싸이게 한다.

운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위해 우회로상에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달리기 출발지점은 접근하기 쉬운 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

목적지 지점은 출발지점 근방에 설치하여 목적지 도달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

코스는 전체가 바퀴형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행코스는 경관이 다양한 지역으로 배치시켜 이용자가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한다.

- 코스가 다른길과 교차되는 것을 피한다.
- 운동 스테이션은 달리기 코스와는 별도로 공간을 확보한다.
- 운동공간의 주위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운동공간의 지면은 잔디밭이 좋으며, 안전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탄력성을 갖도록 한다.

㉠ 주요구성요소 코스 길이가 2.4-3.2 km 인 경우 : 도입 표지판 1 개, 운동표지판 20 개, 화살표 표시 10 개, 거리표시 6 개, 운동기구 15 개, 발걸음 측정대 1 개

㉡ 운동스테이션의 간격 :

- 준비, 정리 운동 스테이션간 15-30 m
- 강화, 유연운동 스테이션간 180-230 m

운동표지판 및 기구는 달리기 코스 옆에 운동공간을 조성할 때 설치한다. 초심자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간지점에서 지름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코스를 만들 수도 있다. 운동스테이션은 초심자에게 무리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단련의 강도를 높여서 설치한다.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요 근육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다리, 무릎, 등, 복근을 이완하도록 하는 준비운동, 이보다 좀더 강도를 높인 강화, 유연운동,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정리운동이 있다.

각 단계별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및 표지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스 : 통나무 등으로 가능한 놀이기구 같은 트레이닝(training) 장치와 놀이의 요소를 포함한 트레이닝(training) 과제의 포인트를 유보도와 광장 등에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즐기면서 서킷 트레이닝(training)이 가능하도록 한 코스이다.

포인트의 배치는 지형과 식재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즐거움을 추구함과 동시에 무리없는 운동량과 균형잡힌 체력단련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며, 운동표지판을 각 포인트에 설치하고 다이어그램(diagram)으로 이용법과 이용자에 맞는 운동량을 표시한다.

입목을 포인트의 일부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고려하여 포인트를 가능한한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물건을 활용한다든지, 기존의 지형, 입목, 놀이기구 등을 활용한다.

□ 자유광장 : 자유광장은 잔디의 자유원지이며 맨손체조, 무용, 게임, 기타 스포츠와 휴식 등에 다양하게 이용한다. 이곳에서는 경운동용구와 게임을 위한 놀이기구 등의 대여로 편리를 꾀하며 스포팅볼러, 뱅암거 등을 설치하여 잔디의 생장과 배수를 도모한다. 또한 약간의 이용을 위한 간편한 조명과 무용 등을 위한 방송설비를 설치한다.

□ 다목적 코스 : 이 시설은 코트를 필요로 하는 가벼운 스포츠와 게임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트이다. 다목적 코트의 네트, 골포스트 등은 모두 이동이 가능하게 하며, 생울타리식재와 지형의 변화를 활용하여 공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다. 비오는 날이 많은 곳에는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체육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 프로그램 서비스와 안내 : 산림운동로의 구체적인 목표의 하나는 각자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단련과 체력에 따라 어떤 특정 근육과 운동능력을 특수하게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건강과 인간성을 지향한, 그들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신체활동에의 권유가 아니면 안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는 그 기초로 스포츠 과학, 보건의학 등의 건강단련과 사회교육 레크레이션 등의 인간성 회복을 꾀하고, 전문적인 배려와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이 신체활

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과 신체활동을 계속 추진한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것이 되도록 알기 쉽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산림운동로에서는 시설의 이용방법과 운동량 등 이용자의 체력에 맞추어 신체활동에 즐겁도록 팜프렛과 카드 그리고 안내 표지판 등으로 홍보 서비스나 지도원의 게임과 스포츠 지도를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 팜프렛에는 게임, 가벼운 운동, 무용 등의 참여호소와 카드에는 기록표와 같은 지속적인 이용을 촉구하는 배려를 베풀도록 한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트림파크는 유희시설지의 외곽 경계부에 배치되어 마을과 유희시설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본 대상지의 이용객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전체 연장 길이를 4km로 설정하여 총 이용시간을 3시간 정도로 설정하였으나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이용을 고려하였다.

(라) 가족 골프 시설

① 개요 — 본 대상지의 주요 방문객은 가족 동반형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놀이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골프놀이시설은 생활 주변에 친근한 관광놀이 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한 국민정서의 함양을 위하여 개발된 놀이시설로서 일본, 미국 등 외국의 대중적 놀이인 미니어쳐 골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관광지 등에 퍼져있는 향락적인 관광 행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가족 관광레포츠 및 건전한 대중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가족골프놀이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고, 대지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규모와 홀의 모형 개발이 가능하며, 기존의 지형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색있게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설치규

모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200 평에서 1000 평 정도의 규모가 적당하다. 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향토수종이나 우수 조경수목으로 식재하며, 홀 내외곽의 분위기 및 풍치와 경관을 고려하여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경수목의 식재와 자연석, 화초 등의 식재 등은 예술성을 가미하여 조성되어야 하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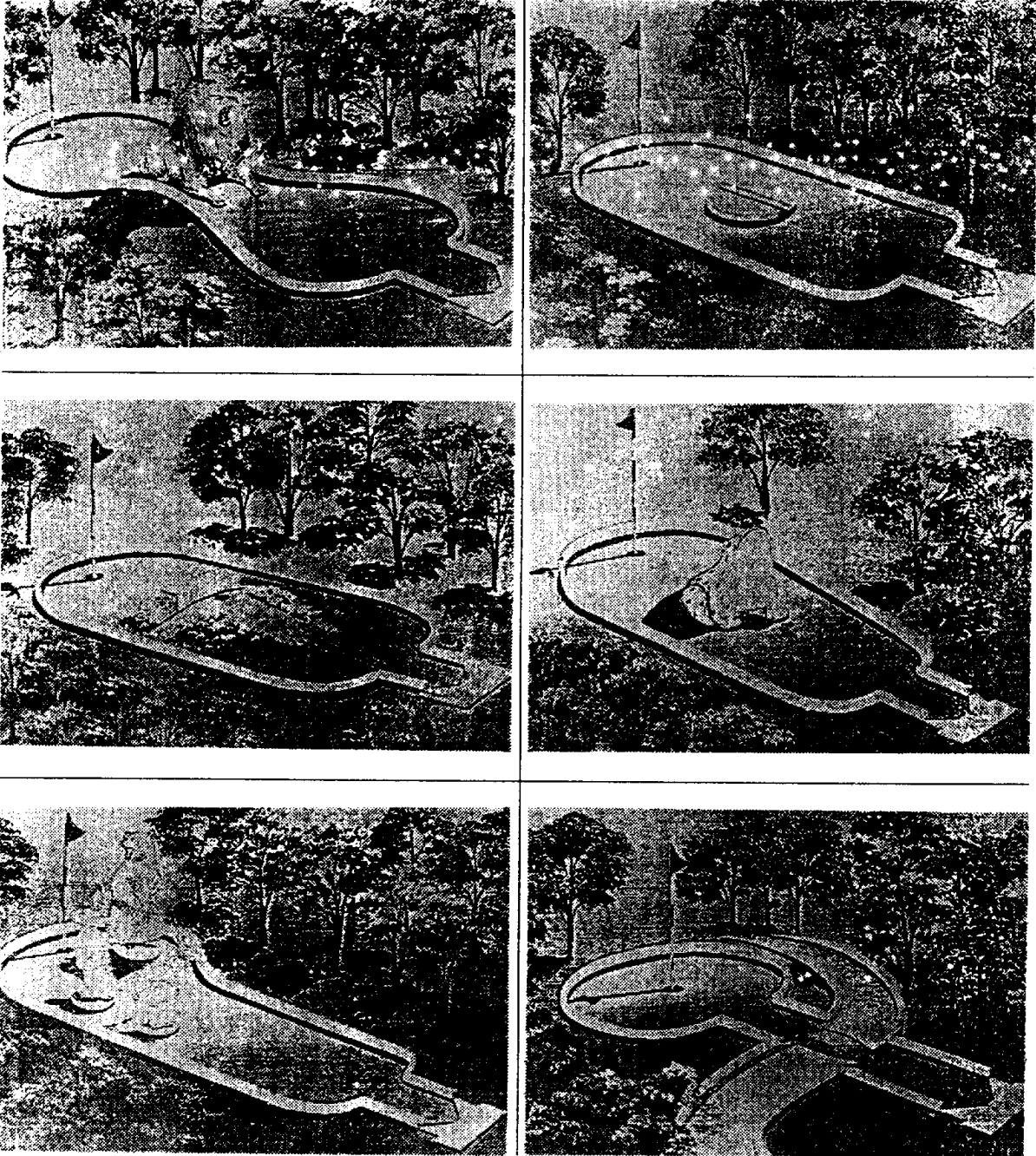
홀 구조물 재료로는 기반조성을 위해 모래, 마사토, 황토다짐 등과 시멘트 콘크리트 혹은 아스콘 포장 등이 이용되고, 표면설치 재료로는 인조잔디, 자연잔디, P.V.C., 시트 등이 이용되며, 경계재료로는 화강암, 콘크리트, 목재, 철재, P.V.C. 등이 이용된다. 이 시설의 특징은 홀내에 관광지 주변의 역사적, 문화적 유적이나 인물등을 모사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휴게시설을 주변에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본 대상지에서는 유희시설 등을 한군데에 집중시켜 개발에 따른 자연의 파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유희시설군 등은 휴경지 등이 위치시켰다. 따라서 가족골프장이장 역시 이러한 휴경지의 밀집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이 코스는 9 홀 36 PAR , 규모는 900 m² 로 산정하였다.

(마) 어린이 놀이시설

① 개요 —— 대상지내에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일상생활권의 어린이들의 놀이활동이 지닌 문제를 극복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모험적이고 자유분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발상과 활동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한 창조적인 시설이어야 한다.

시설 입지선정의 기본방향은 대상지의 지형, 지질, 식생 등 자연적 조건



<그림 3-21> 가족골프 놀이시설의 예

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연령별 놀이행태, 놀이시설의 내용 등에 따라 입지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우선 지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복잡하게 드러난 다양한 지형, 급경사지가 아닌 다양한 경사지역의 대상지가 적당하다. 대상지 가운데 높은 곳이나 작은 개울이 있는 지역은 더욱 매력적이다.

햇볕이 잘드는 양지지역이나 반쯤 그늘진 곳, 바람이 불지 않는 곳, 가능한한 확보된 전망이 있는 지역이 적합하다.

매연,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이 없는 지역, 저온 다습한 골짜기나 북사면의 음지, 가파른 지역은 피해야 하며 피크닉장 등 가족활동 지역에 인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㉞ 계획 및 설계기준 :

일반적 사항

계획대상지의 독특한 자연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규모가 달라지며 또한 필요한 시설내용도 자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지의 식생, 지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친숙해 지기 쉬운 놀이환경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대면 안되는 화단보다는 잡초가 무성한 언덕이, 아름다운 숲보다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꺾을 수 있는 유목림이 어린이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놀이기구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다양하여 개성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 좋다. 고정적인 사용방법을 가진 놀이기구는 피하고 창조적 사용이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인공적인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움을 갖도록 유의해서 설계해야 한다.

□ 설계기준

□ 놀이시설의 의의

〈표 3-43〉 놀이시설의 의의

가 치	의 의
생리적 가치	자체 지배력의 향상, 신체의 적응동작의 발달, 운동기능의 진화, 수직력, 악력, 각근력 등의 근육 및 골격 근군의 발달, 평형감각의 발달 정신계통능력의 발달, 운동신경의 발달 내장제기관의 능력의 발달
지능적 가치	드릴감, 리듬감, 우월감, 호기심, 정복욕 등의 각종 체험 각종 지식의 체득, 사고력의 양성 창조력의 양성, 조형에 대한 이해 감각능력(안전, 위협)의 발달
정서적 가치	정신의 긴장과 이완에 의한 정신적 능력의 향상 강화 양보, 동정, 경쟁의욕과 그것에 이겨내는 힘, 정서적 안정 결단력의 양성, 인내력의 양성
사회적 가치	집단동화와 협동정신의 양성, 페어플레이 정신의 체득 문제해결에 대한 사고력, 판단력, 창안하는 힘의 양성, 독립심의 양성,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의무 등의 체득 차레에 대한 규율 (사회규칙의 체득과 존중)

□ 시설배치기능

- 대상지의 지형, 경관, 식생, 기타 대상지가 지닌 고유의 자연조건이 배치계획을 결정적으로 지배한다.
- 자연을 보존하고 강조하도록 배치계획을 한다. 보는 자연이 아니고 사용하는 자연, 함께 있는 자연을 연출한다.
- 배치계획에는 곡선을 활용한다. 곡선은 자연의 것, 지표물이 잇는 선,

지형상의 곡선, 기존수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동선계획을 잘 고려하여 배치한다.

-운영,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다. 시설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손이 미치지 못한 다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는지, 감독이 골고루 안되어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배치계획이 나쁜데 그 원인이 있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대상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가족형이라 했을 때에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도입은 필요하다. 어린이의 야외활동을 위하여 텀블링 시설을 도입하였으며, 조합놀이대 그리고 모래밭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B) 소동물원

① 개요 —— 관광농촌마을에서는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말농장 등에서 식물과 생장과 방육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동물원을 설치하여 작은 동물들의 생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소동물원의 도입은 어린이의 흥미유발을 위해서 필요하며, 어린이들의 적소에 맞는 토끼, 원숭이, 앵무새, 염소 등의 소동물을 사육하여 농촌을 직접 만지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이해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동물원의 전반적인 건물 형태를 광각형으로 하여 배치하고, 주변의 놀이시설 및 정원과 조화되도록 설치,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관광농원에서도 이러한 소동물원이 조성되어 있어 토끼나 염소 등의 소동물이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약 100 m² 정도로 조성한다.

(6) 전시·판매·교육시설

(가) 버섯박물관

① 개요 — 버섯박물관은 대상지를 휴양적 목적으로 찾는 방문객에게 버섯의 중요성과 흥미성을 인식시키고 현재 마을의 특산물등을 선전할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및 자연, 산업, 생활 문화등의 향토 문화와 지역임업의 현황 등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의의를 갖게한다.

이러한 박물관은 지역에 대한 일반관광객의 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향토애를 높이고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긍지를 갖게한다.

박물관이란 일반적으로 자연물, 생산품, 역사자료, 예술품 및 학술적 자료를 널리 수집, 진열하여 보이는 곳을 말하는데, 버섯박물관이 갖는 특징은 주로 산림자원으로서 버섯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관련된 대상물을 전시하는데 있다.

박물관은 안내소의 기능과 박물관의 기능이 결합되는데 이러한 특수시설은 그에 적합한 전문관리요원이 배치될 수 있는 적당한 조건과 상황을 가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입지조건은 주요 접근로에 가까운 곳이나 대상지 입구에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 버섯박물관의 기능 :

- 홍보 및 자원 해설의 기능
- 교육 및 연구기능
- 사무관리 및 자료관리기능

㉡ 시설계획의 기준 : 버섯박물관은 그 지역의 산림자원, 자연산업, 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자료를 조사하고 그들을 전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고건축이 있다면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폐쇄된 분교의 건물이나 공장건물, 고민가, 관공서건물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시장은 자료의 조사, 관리 연구의 성과가 모아져 나타내는 장이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의 전시내용을 통해 거의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전시장은 박물관내의 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전시 활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한번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 이외에 특별기획전시, 보관전시, 옥외전시등을 병행한다.

㉔ 전시의 종류 : 특별기획전시는 1년에 1-5회의 진열바꾸기를 하고 그때마다 테마를 설정하여 전시에 변화를 갖도록 한다. 이때는 상설전시에서는 하지 못한 것을 보충적으로 첨가하는 것도 좋다.

보관전시는 연구를 깊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분류, 보관하는 방법과 상설전시장에 전시와 보관을 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옥외 전시는 실내에서 전시하기에 적합치 않은 자료 또는 대형의 자료전시에 이용된다.

㉕ 계획기준 : 전시장에는 크게 보아 입구와 홀, 표본실, 역사자료실, 전시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삼림과 자연, 문화등과 관련된 다종의 전시물이 전시되는데, 현물, 표본, 박제, 모형, 사진판넬, 그림 등의 형식으로 표현 전시된다.

전시실 규모의 최소한계는 100 m² 정도로 하고 전시물의 보호상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㉖ 관리 및 서비스 시설물 : 관리시설은 크게 자료관리시설과 사무관리시설로 나뉠 수 있다. 자료관리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로는 반입창고, 검사실, 소독실, 감관실, 수장실 등이 있다.

㉞ 연구 및 교육시설물 : 산림사료, 임업관련 연구기능과 방문객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시설물로는 시청각실, 영사실, 교재창고, 도서, 문헌자료실, 사진촬영실, 암실, 제도실 등이 있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중심광장에 안내센터, 버섯박물관, 음식점 등을 함께 위치하게 함으로서 대상지를 찾는 이용객들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유도한다. 버섯박물관은 전시, 연구, 실험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박물관은 건축면적 600 m^2 , 대지면적은 $3,000\text{ m}^2$ 로 계획하되 그 규모나 구성이 주변환경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게 한다.

(나) 음식점

① 개요 — 본 대상지의 주제로서 부각되는 것으로서 하품리의 주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선정한다고 할 때 버섯은 이미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건강식으로서의 버섯을 주제로 한 음식점에는 버섯을 재료로하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풍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깔스러운 음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건물면적 300 m^2 로 결정하였으며, 식당은 농·축·임·수산물 판매 부대시설과 인접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보행도로에서 관람, 구매, 식사 등의 제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 기념품 판매소 및 안내소

① 개요 — 관광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지내의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념품의 종류와 가격 규모등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대상지의 특산물은 표고버섯으로서 이러한 부산물은 투자의 회임기간이 비교적 짧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산재 농가의 소득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임업생산 가액은 국민 총생산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부 유용한 종자류와 버섯류의 총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품목들은 산촌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산물은 생산이 부업적이고 소규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유통조직이나 제도가 미흡, 유통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자가 그들의 생산물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센터, 임산물 직매장 등이 일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임산물 판매장은 이러한 임산물 유통센터나 임산물 직매장의 설치배경과 흡사하나 단위시설로서의 규모가 상기의 시설보다 작고 판매의 주요 대상이 피크닉을 목적으로한 가족단위 이용객 혹은 단체숙박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판매수익을 남기기 위한 수익시설의 의미와 함께 대상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산림부산물의 산지직판으로 단기 회임성 수입을 늘리고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농림가의 소득을 제고한다. 즉, 장기저장이 곤란한 버섯류나 밤등의 종산은 수확 즉시에 출하되어야 하므로 생산자에게 출하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되는데, 임산물 판매장을 통하여 산지에서 판매할 경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산림자원의 활용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판매장에서는 임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을 선별하고 포장이나 간단한 가공의 과정을 거쳐 휴양림 방문객에게 전시, 판매 함으로써 산림이 갖는 풍부한 생산기능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판매수익을 높인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는 임산물을 수집, 알선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 입지선정의 기준 : 판매장의 입지는 대상지의 중심지구 시설지구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에 주차장, 식당, 휴게소 등의 시설이 함께 있어 이용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 적당하다.

또한 지형상 경사지 보다는 평지로서 이용객들이 많이 몰릴 경우를 예상하여 혼잡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심광장 근처에 입지시키는 것이 좋다.

판매장의 향은 동남향이 좋으나 여름에는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을 택하여 임산물의 전시나 저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대상지안에 과수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과수의 판매기능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과수원 내부의 판매시설과 인접하여 입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대상지에는 과수원 뿐 아니라 표고재배사 등 기타 많은 기능이 포함되므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임산물을 모아 공판할 수 있도록 임산물 판매장 등은 중심지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판매장은 대상지에서 나오는 버섯의 생산량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임산물 판매장에 도입할 수 있는 예상시설로는 전시장, 판매장, 간이휴게소, 저온저장고, 창고, 가공실, 등이 있다.

입지적 조건에 따라 단위시설물이 선별적으로 도입 배치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판매점과 저온저장고는 필요하다.

판매시설은 이용자들의 눈에 가장 잘 떨어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하거나 통행로나 판매장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판매점은 판매시설의 주요시설물이므로 외장 디자인이 버섯모양으로 독특하여 돋보이도록 하되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판매점은 크게 판매를 위한 공간과 이용자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협소한 지역에서는 판매공간만을 확보한다. 판매공간은 진열대와 선반, 판매원의 활동공간, 기타 냉장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진열대는 정면보다는 정면과 측면을 모두 이용할 수 있

도록 7 자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측을 모두 진열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출입구가 양측으로 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들의 출입과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절하여 준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begin{aligned} \text{건축연면적}^{39)} &= \frac{\text{연간관광객수} \times \text{시설이용률} \times \text{회전률}}{365 \times \text{경제적이용률}} \times \text{단위면적} \\ &= \frac{150,000 \times 0.8 \times 0.25}{365 \times 0.5} \times 2 \\ &= 328 \text{ m}^2 \end{aligned}$$

(라) 자연관찰로

① 개요 — 자연관찰로는 미국의 Nature Trail 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자연학습로, 자연탐승로, 자연연구로 등과 같이 쓰이고 있다. 자연 관찰로는 생물생태학적인 지식 및 그 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유산도 함께 연결시켜 계획함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탐방객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탐방활동의 질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

자연관찰로는 이용이 빈번한 이용거점에 설치하고, 자연학습장 등 다른 자연교육시설과 상호 보완되어 자연사물을 생생하고 흥미깊게 교육함으로써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연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한 학습로를 말한다.

㉠ 설계기준 :

코스의 설정

노선의 형태는 순환식으로 하고, 길이는 청소년들이 천천히 자연을 관찰

39) 장대수, 해안경관특성에 준거한 관광단지개발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p. 101.

하면서 한 시간 정도에 걸을 수 있는 2km 정도, 관찰로의 너비는 두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폭 1.5m의 폭을 표준으로 하며, 노면을 걸음걸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연관찰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환상형

복수의 관찰보도의 경우에는 한쪽 환상로는 필요에 따라 개방하는 반면 다른 한 쪽 환상로는 영의학습과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개방하여 학구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할 수도 있다.

□ 일반형

다양한 코스를 여러개 조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작은 세부 학습 목적을 각각의 관찰로에 마련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취향과 목적을 달리한 요구조건에 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㉞ 관찰로 개설 :

□ 개설

비포장을 우선 원칙으로 하지만 강우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 부분적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다.

길옆에는 호박돌 또는 콘크리트로 측구를 만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축석 등이 필요할 때도 있으나 주변의 미관과는 언제나 조화되도록 함이 중요하다.

또한 보통 15°(30%) 미만의 경사도의 경우에는 비포장도가 바람직 하지만 이이상 경사지에 조성해야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자연석이나 통나무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계단식 관찰보도가 좋다.

□ 위치선정상의 유의점

순서적으로 위치의 선정을 할 때에는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특히 등산로 등과 연결한 영의관찰로의 경우 인공을 덜 가하고도 최고의 학습자료로 관찰할 수 있는 코스개척의 문제가 있다.

제 3 장 모델개발의 공간계획

1—2 km 의 거리안에서 식물의 군락이나 교재 식물등을 관찰할 수 있는 동시에 물과 생물, 흙과 생물같은 학습도 함께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㉔ 내용의 선정 : 자연관찰로의 설치목적은 자연관찰을 통한 자연학습 및 이를 통하여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며, 자연애호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대상의 선정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학교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야외에서 직접 자연에 접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고루고루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역시 생태학이나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관찰과 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지형에 따른 식생의 비교, 배수상태 및 수문학적 배경, 기후 즉 미기후의 변화상태, 식물상 및 동물상의 비교 등에 중점을 두어 관찰대상으로 한다.

또한 역사적이거나 고고학적인 학습자료가 되는 것도 함께 관찰보도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육내용의 선정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관찰로로서 일관된 해설 테마를 설정하고 이용객이 흥미를 가질 자연사물을 그 테마로 연결지어 해설한다.
- 이용객을 유치할 수있는 매력적인 제목을 설정한다.
- 해설문은 어려운 표현을 피하고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 평상시 그곳에 없는것의 해설은 피하고, 꼭 해설을 필요로 할 경우는 그림 등을 곁들여 그 이해를 돕는다.

㉕ 입지조건 : 자연관찰로에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움, 다양성, 관찰로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의 연계성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시켜야 한다.

또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전하는데 있어 식물과 동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곳이 바람직하다.

자연적인 조건을 통해서 변화무쌍한 자연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적당하며 확트인 경치, 하천, 지질학적인 특성이 있는곳, 역사적 문화유적지를 볼 수 있는 곳은 더욱 적합하다. 자연관찰로는 주차장과 산책로망, 산림운동로 등과 연계되어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또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자연상태를 보존하면서 활용하되 경관의 대조가 잘 되는 곳을 택하며 생태학적 변화가 구별된 구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코스를 경승이 뛰어난 곳이 많은 곳을 택하기 보다 오히려 대조적으로 농촌풍경이나 농업의 방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구역이 포함되는 것도 좋다.

㉔ 관찰로 설계상의 유의사항 :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로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등산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를 활용하되 관찰대상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찰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휴게소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체관찰의 경우에는 인원점검을 위하여 집합장소로도 쓸 수 있는 곳이 감안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또한 지역의 노선이나 통로가 들어있는 간단한 길 안내도가 필요하게 된다.

㉕ 계획 및 설계기준 : 자연관찰로는 이용이 빈번한 이용거점에 설치하고, 비지터 센터(visitor center) 등 다른 자연 교육시설과 상호보완되어 자연사물을 생생하고 흥미깊게 교육하므로써 이용객의 자연이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자연관찰로의 성패여부는 이용객에게 흥미깊은 대상을 어떻게 적절히, 알기쉽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자연교육의 내용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찰로로 하기 위해서는 관찰로를 통하여 일관된 교육 테마를 설정하는 등 사업주체에게 그 지역의 사전조사에서 얻어진 풍부한

지식과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㉞ 관찰로 설계시 기본적 사항 : 노선선정에 있어서 이용객에게 흥미깊은 자연사물이 존재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욱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객이 같은 코스를 되돌아오지 않는 순환형으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기 종점을 일치시킨다. 광범한 층의 이용객이 안심하고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연장은 2 km 정도가 적당하고 노폭은 두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1.5 m 를 표준으로 고려하며, 노면은 걸음걸이에 신경을 쓰지않고 탐승을 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도구조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현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자연해설은 관찰로의 생명이다.

㉟ 해설의 방법 :

<표 3-44> 해설의 방법

명 칭	개 요	특 징
해설관에 의한 해설	각각의 대상마다 노변의 해설관에 의해 해설	경제적 추가, 폐기, 변경이 용이
안내서에 의한 해설	관찰로 입구에서 안내서를 배포하고, 노변의 번호표식과 안내서의 해설문 과를 대조하여 이용	미세한 해설이 가능 동시에 많은 사람의 이용이 가능 사전, 사후에 읽는 것이 가능

㊱ 노선의 선정 및 설계 :

관찰로를 계획 설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어 자연경관, 특징적 관찰대상, 인문 경관등 이용자에 있어서의 흥미대상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의 기초위에서 자연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보여주어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검토하고 노선을 선정한다.

- 평지 : 지형 조건이 평지는 거의 없으나 5% 경사 미만의 부분을 평지로 보고 직선은 되도록 피하고 곡선으로 처리하여 전망과 학습에 흥미가 유발되도록 한다.
- 경사지 : 경사지의 처리를 계단식으로 처리하여 노면의 손상이나 경사지의 등정기피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급경사지 : 학습과정상 필요한 관찰대상이 급경사지인 경우나 모험언덕(adventure hill)의 경우 사다리나 보조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을 유도한다.

㉞ 설계기준 :

특성 및 유형

- 체육활동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단체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실내형과 야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현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체육활동장 설치기준을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거나 종목별 경기장 공인규정 등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라켓볼장, 눈썰매장, 족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다양한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체육시설로서 설치할 허용하고 있다.

② 시설의 도입구상 —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양자산과 앵자봉으로 향하는 임도를 자연관찰로로 개발하여 방문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상지에는 목본류로 굴참나무, 나무딸기, 노박덩굴, 누리장나무, 다래나무, 두릅나무, 보리수, 밤나무, 산벗나무, 산뽕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쫄레 등이 광범위하게 생육하고 있고, 초본류로는 강아지풀, 고비, 고사리, 달맞이꽃, 더덕, 등굴레, 미나리냉이, 산딸기, 인동덩굴, 칩, 할미꽃, 할미밀빵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

여 나무와 풀의 이름과 생육조건, 특성 등에 관하여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연관찰로는 기존의 임도를 따라 산책로와 겸하여 1 km 정도의 길이에 표식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도입시설의 종합

〈표 3-45〉 도입시설 면적 산정

구 분	시설명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비 고
영농시설	버섯재배장		100,000m ²	각 가구별로 분리 유치
	저온저장고, 버섯가공시설	300m ²	1,000m ²	공가 등 기존 가옥의 활용
	주말농장		30,000m ²	단위대여, 경지규모는 평균 50m ²
	양어장	300m ²	2,000m ²	양어관리시설 포함(기존 관광농원내 포함되어 있음)
전시·판매 시설	버섯박물관	600m ²	3,000m ²	중심광장이 수용 (건축면적×5)=대지면적
	음식점	300m ²	1,500m ²	
	기념품판매소	300m ²	1,500m ²	
숙박시설	단체숙박·개인민박	1,000m ²	5,000m ²	4 동 : 단체숙박, 1 동 : 개인민박
	옥내집회소	1,000m ²	5,000m ²	단체활동 수용 및 다용도 이용
	민 박			기존 마을에서 수용
	계곡경관보존 및 피크닉장		40,000m ²	길이 2 km 이상 계곡따라 linear 하게 배치, 화장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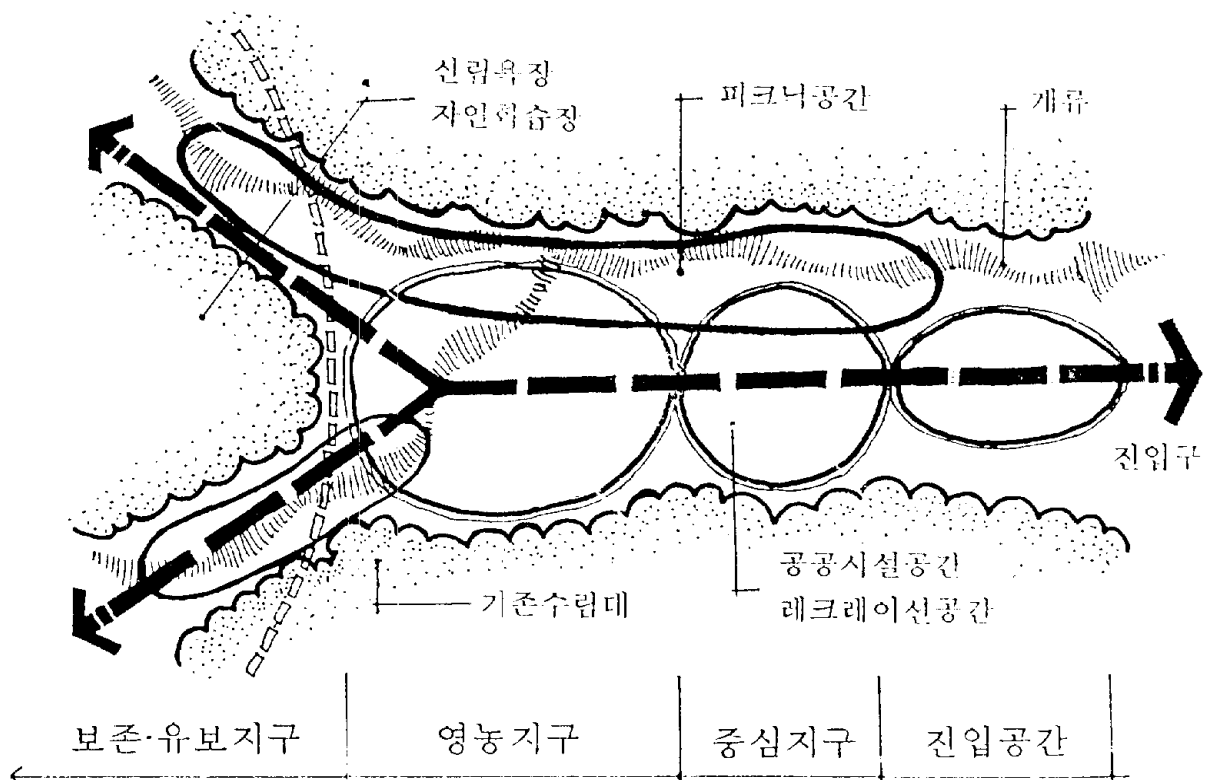
레크리에이션 시설	눈썰매장		1,500m ²	폭 30m×길이 50m=1,500(m ²)
	가족골프 놀이시설		900m ²	9 홀 36 par 의 소규모
	트림파크		4km	보존녹지속에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		900m ²	덤블링 등 트림파크와 함께 조성
	소동물원		100m ²	토끼, 염소 등 소동물 사육
	물놀이공간			물놀이공간은 계곡가에 조성
	자연관찰로	1-2km		
	미꾸라지 잡기원		100m ²	양어장과 근접하게 조성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 시설	주차장(공동이용)		11,000m ²	승용차 10,000m ² +버스 1,000m ²
	주차장(분산배치)			기존 마을, 숙박지 등에서 수용
	도로			폭원 5.5m, 200m간격으로 bay
	보도			폭원 1.2m, 자연관찰로/등산로
	광장		6,000m ²	진입/자유/중심광장으로 위치, 기능에 따라 3분함
공중화장실	100 ²	500m ²	주차장, 유희시설 군 등에 배치 피크닉장 주변에 간이화장실	
면적계		3,900m ²	210,000m ²	

제 4 절 기 본 계 획

1. 토지이용/교통 및 동선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 기존의 자연 환경과 농촌 환경 및 풍치를 보존하며 환경 질서에 따른 토지 이용
- 부지의 잠재력과 공간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
- 각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기능성 있는 토지 이용
- 장차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토지 이용



나. 동선계획의 기본방향

- 마을내에 분포하고 있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
- 주진입은 329 번 지방도로에서 진입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0 m 마다 교차할 수 있는 정차 공간(bay)을 형성
- 산책로, 자연 관찰로, 등산로 등은 지형에 따라 조성하되 편리성 제고
- 주차장은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간별 집단화를 유도하여 효율성 제고

2. 시설물배치 계획

가. 기본 방향

- 환경 체계와 질서를 존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하는 계획
-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 하는 계획
- 시설 상호간의 관련성과 기능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계획
- 안전성과 쾌적성 그리고 편리성을 고려한 계획

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1) 영농 시설 지구

- 기존의 재배 및 경작지에 배치
- 생산성, 관리 운영을 고려한 배치
- 시각성을 고려한 집단 배치

(2) 중심지구

- 중심 활동 지구로 전시, 판매, 숙박시설의 배치
- 비교적 고밀도 배치가 요구되나 충분한 open space 확보
- 성격과 기능이 같은 시설물의 조합 배치

(3) 레크레이션 시설 지구

-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
-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고 마을 환경에 맞는 소규모 시설
- 안전성과 흥미성, 편리성 고려
- 가족단위의 휴식, 놀이 공간 구성

3. 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 주변의 자연 풍치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경관 구성
- 향토 식물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와 통일된 경관 구성
- 각 공간이 갖는 성격과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관 구성
- 옥외 시설물(장치물)은 단순 형태로 디자인 하되 시각성과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

나. 주요 공간별 식재 계획

<표 3-46> 주요공간별 식재계획

주요공간	식재계획	식재방법	주요 식재 식물
○ 진입로 주변	○ 시각성 있는 수종 ○ 지하고가 높고 수형, 질감 등이 양호한 수종	○ 유도식재 ○ 경관식재	○ 미가목, 야광나무, 벗나무, 층층나무, 팔배나무, 느티나무
○ 중심지구(전시, 판매, 숙박 지구)	○ 각 공간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수종 ○ 계절감이 있고 경관성이 높은 수종 ○ 환경압에 강한 수종	○ 녹음식재 ○ 지표식재 ○ 경관식재 ○ 차폐, 완충식재	○ 느티나무, 말채나무, 들메나무, 산벚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떡갈나무, 작살나무, 철쭉류, 노린재나무

산책로 및 자연학습로

경관보전권역

주말농장

버섯재배장

주차장 및 휴게광장

피크닉장

피크닉장

주말농장

기존마을권역

레크레이션 공간

소동물원

/ 가족골프 놀이시설

/ 눈썰매장 / 트림파크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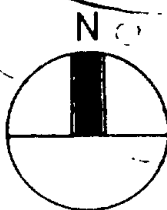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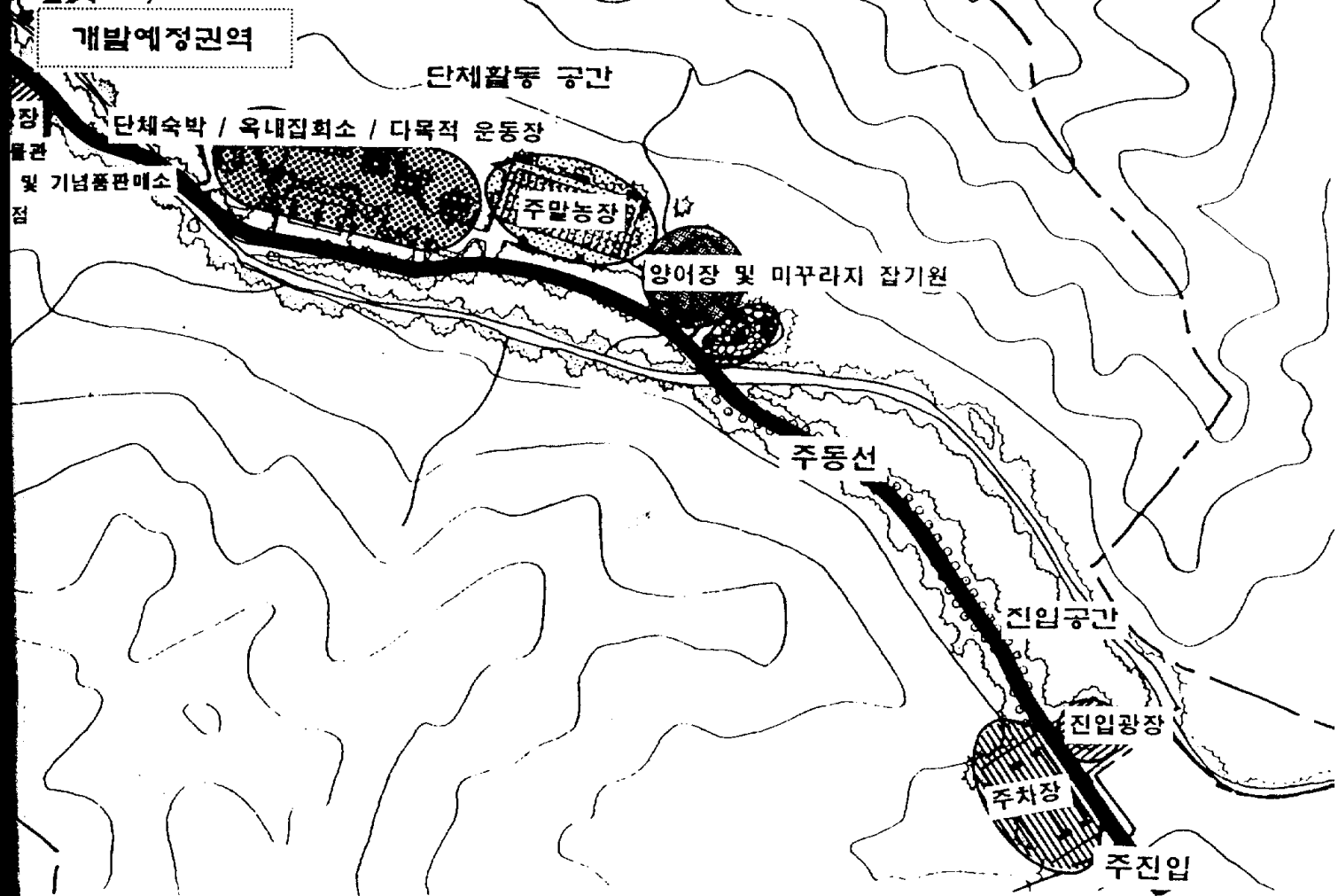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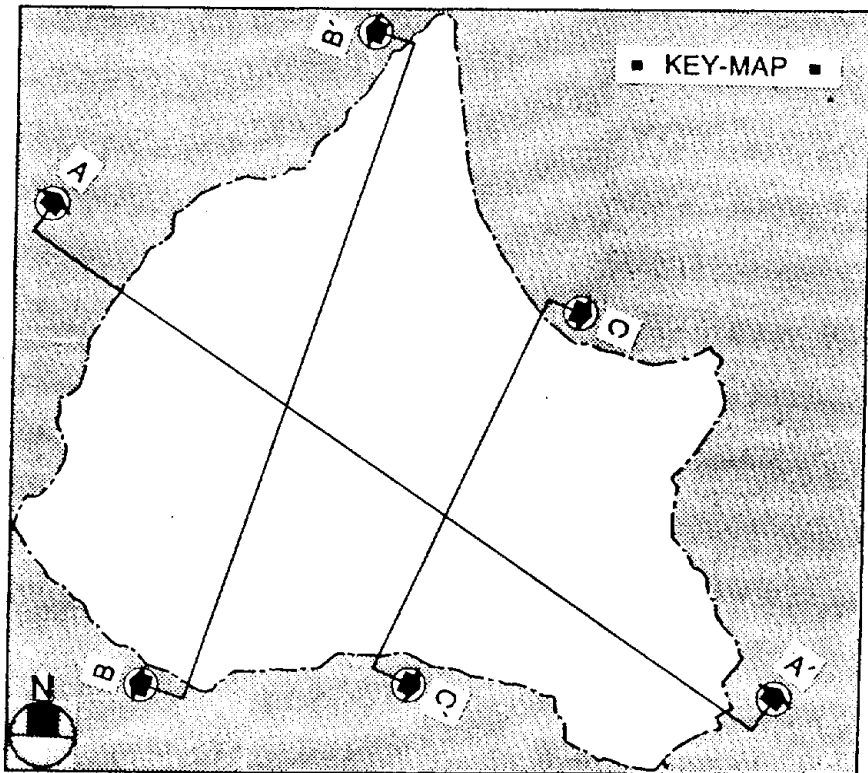


그림 3-22. 토지이용/교통 및 동선 계획

관광농촌마을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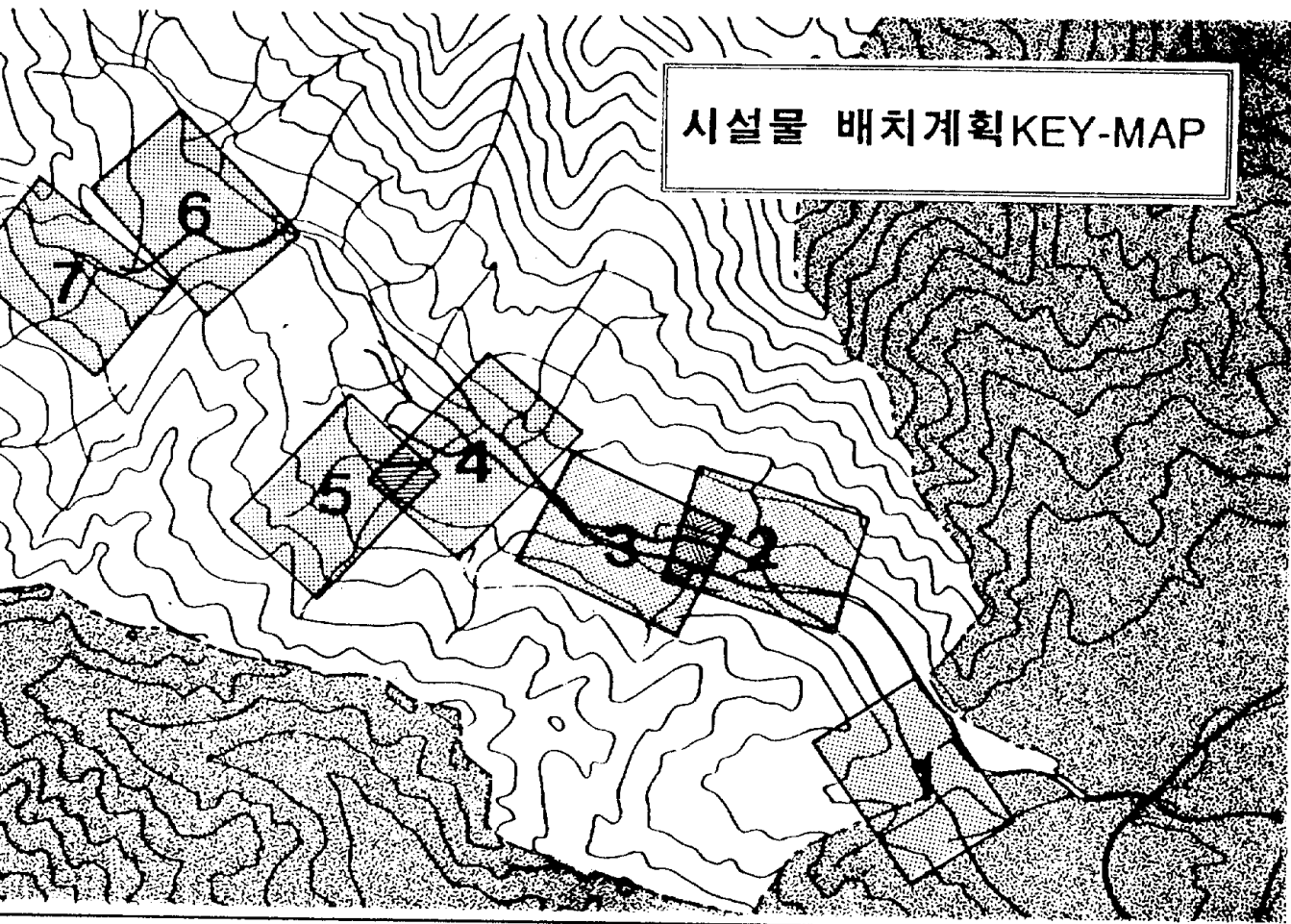
토지이용 / 교통 및 동선계획도





1. 진
2. 단
3. 단
4. 리
5. 리
6. 기
7. 기

시설물 배치계획KEY-MAP



공간 평면도

활동 공간A (양어장 및 주말농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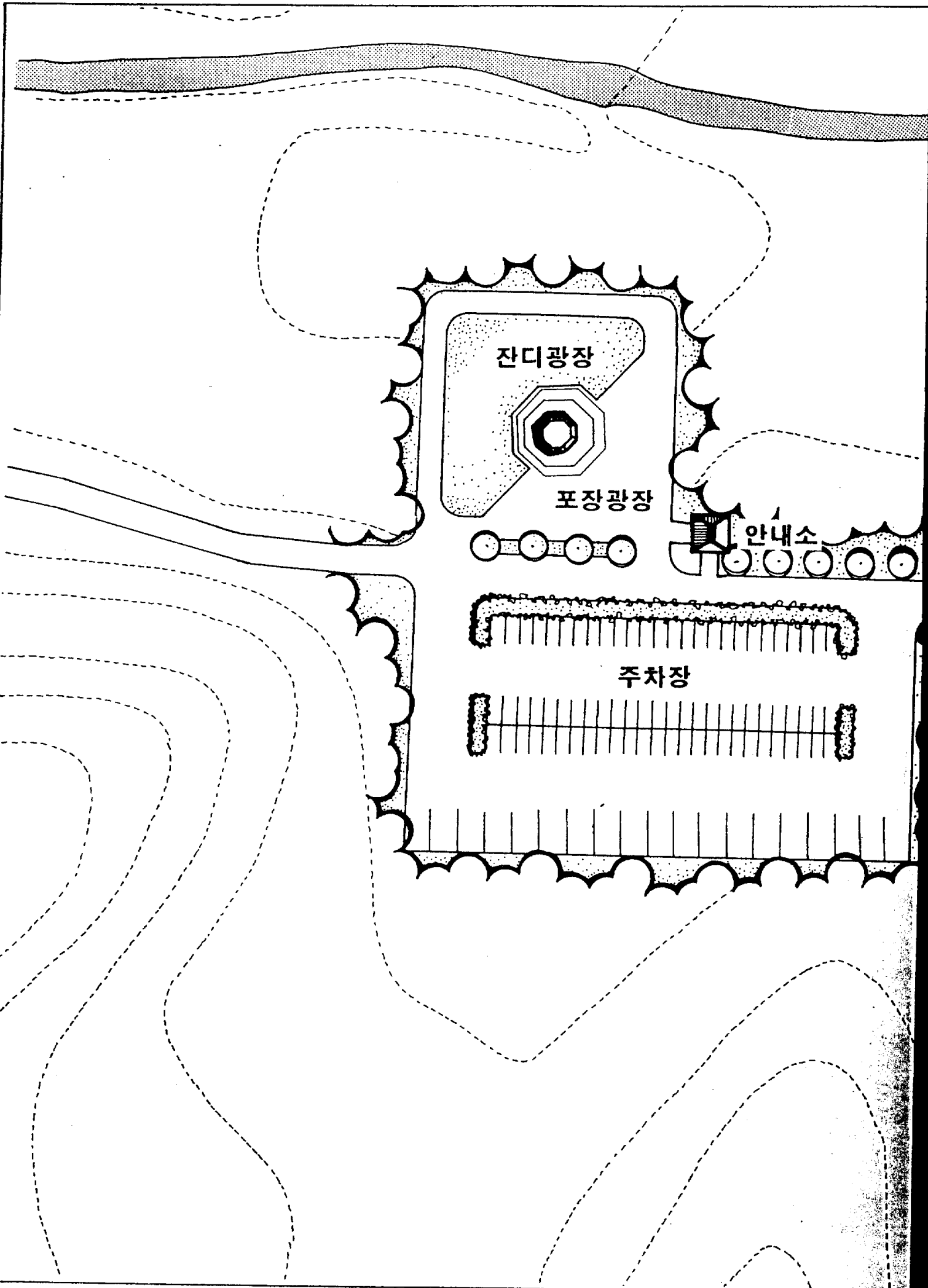
활동 공간B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평면도)

레이션 공간A (중심광장 및 주차장 평면도)

레이션 공간B (유희시설 평면도)

마을 및 경관보존 공간A (주말농장/버섯재배장 및 휴게광장 평면도)

마을 및 경관보존 공간B (피크닉장 평면도)



시설물 배치계획

진입공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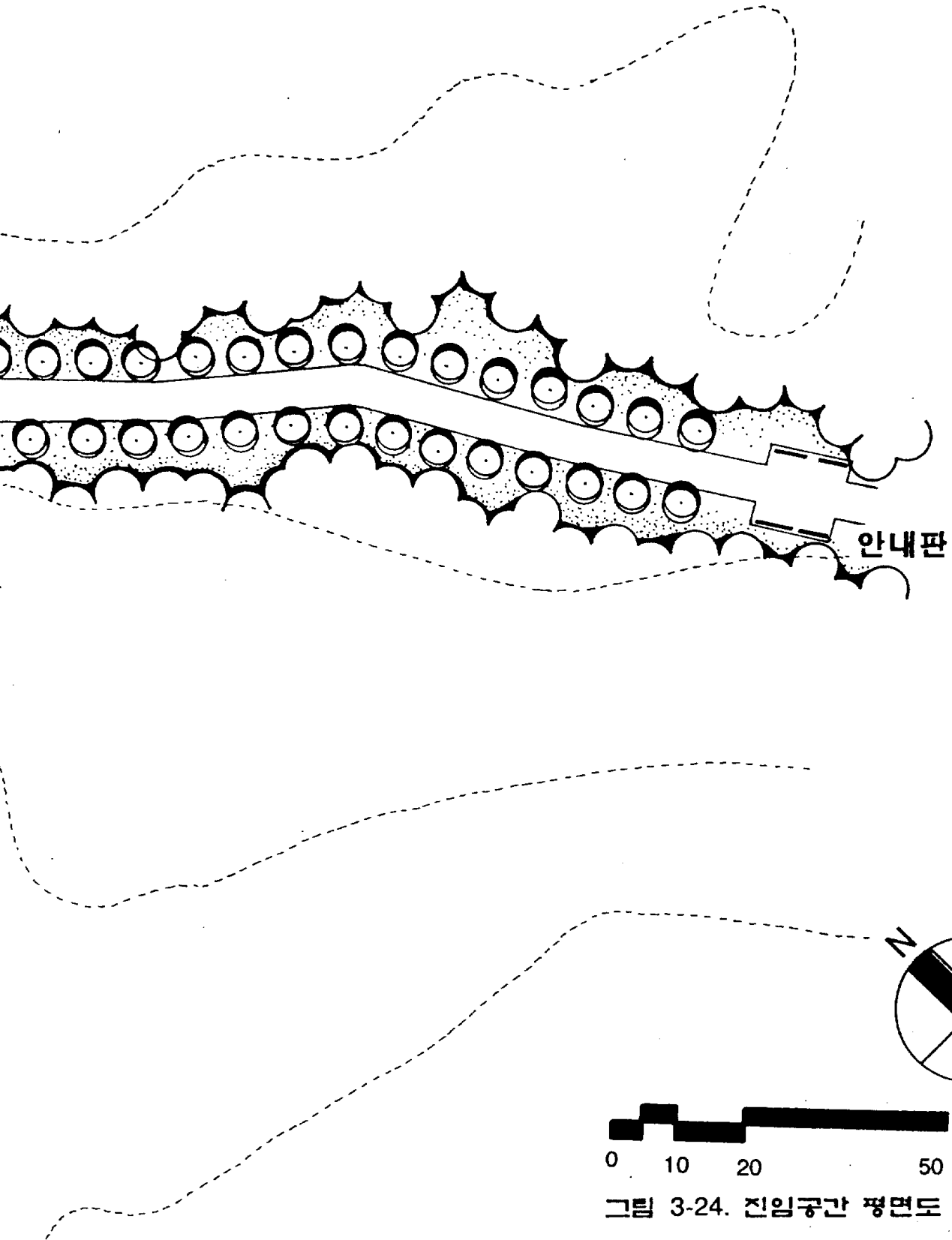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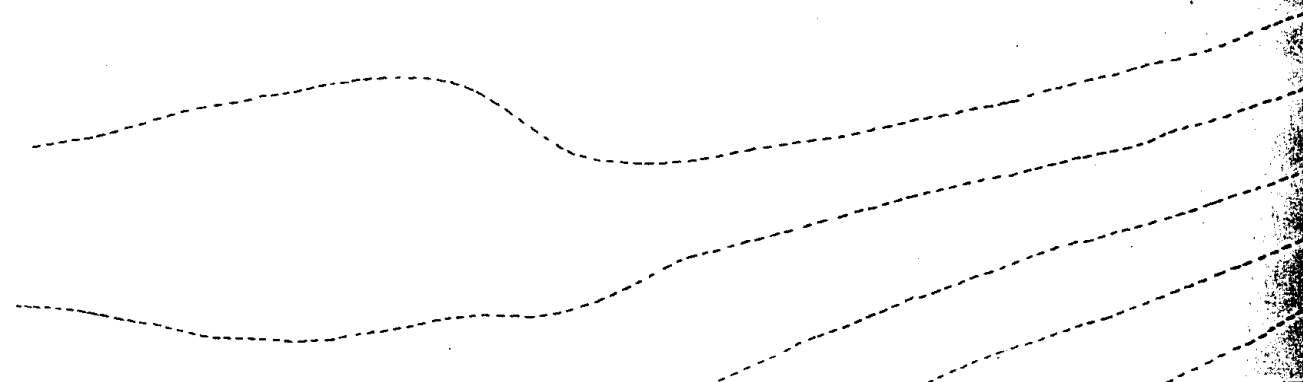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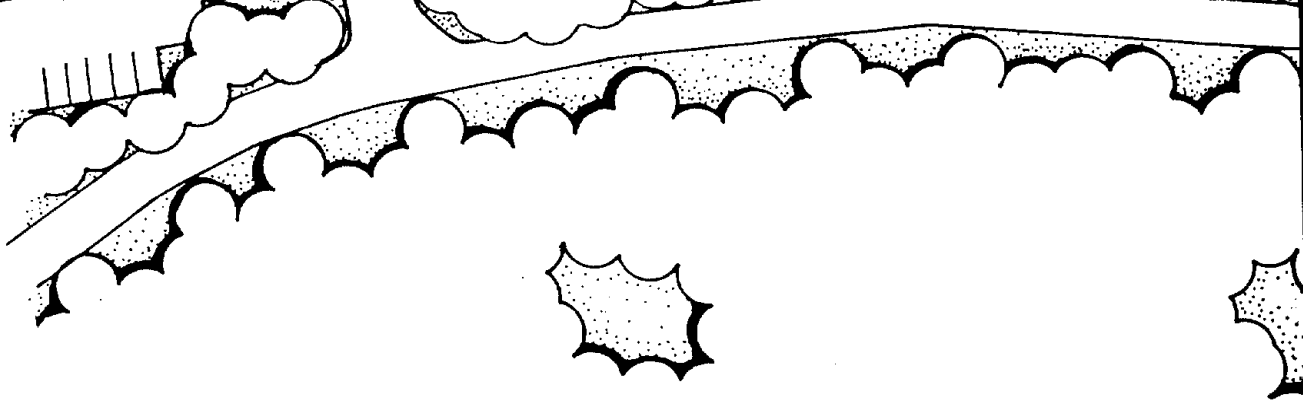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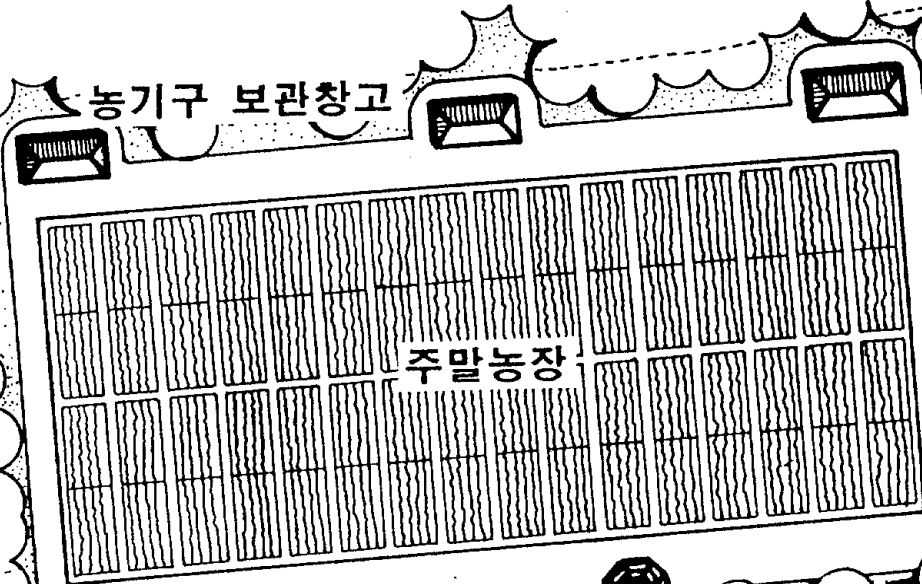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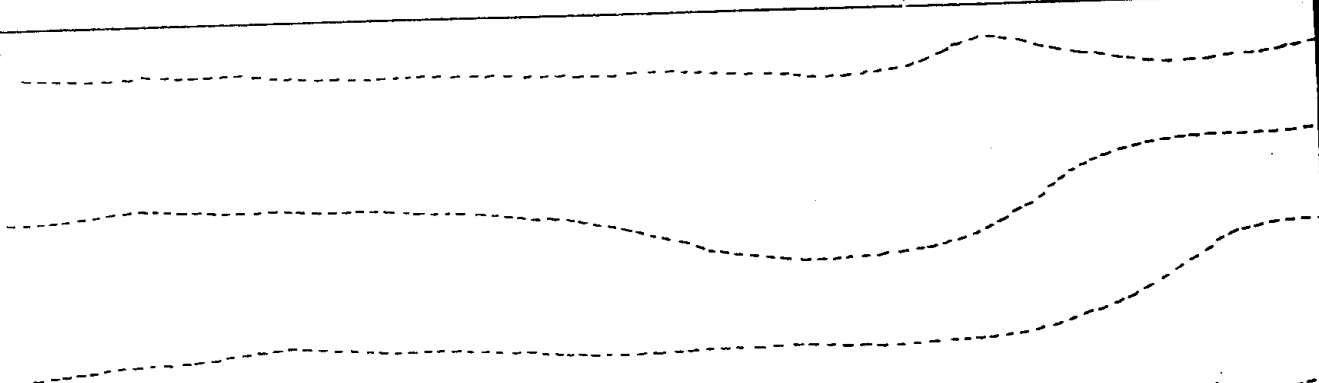


그림 3-24. 진입공간 평면도



시설물 배치계획

단체활동공간A

(양어장 및 주말농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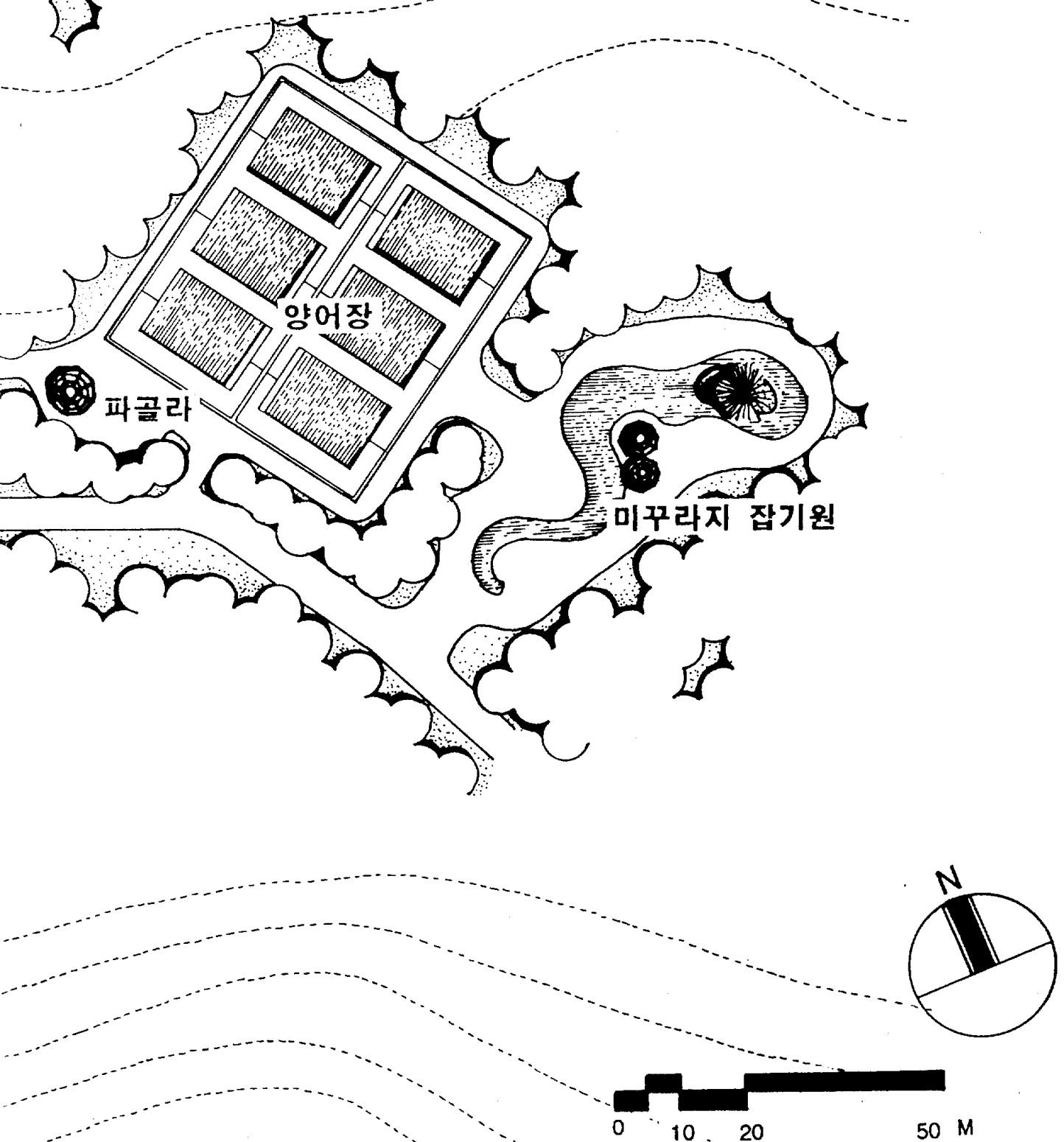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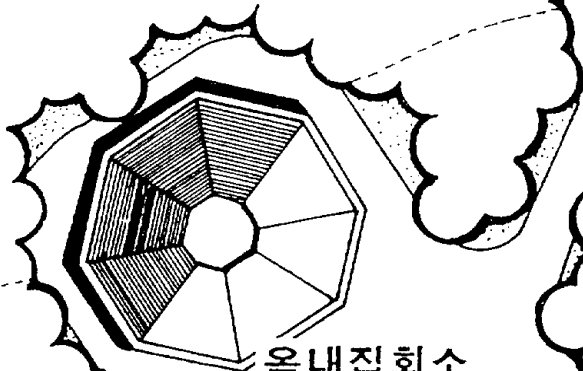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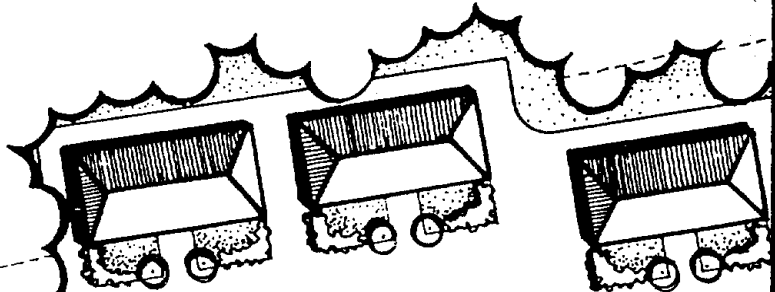


그림 3-25. 단체활동 공간A(양어장 및 주말농장 평면도)



옥내집회소



단체숙박시설



다목적 운동장

시설물 배치계획

단체활동공간B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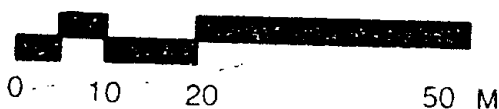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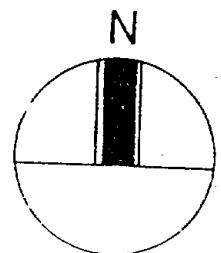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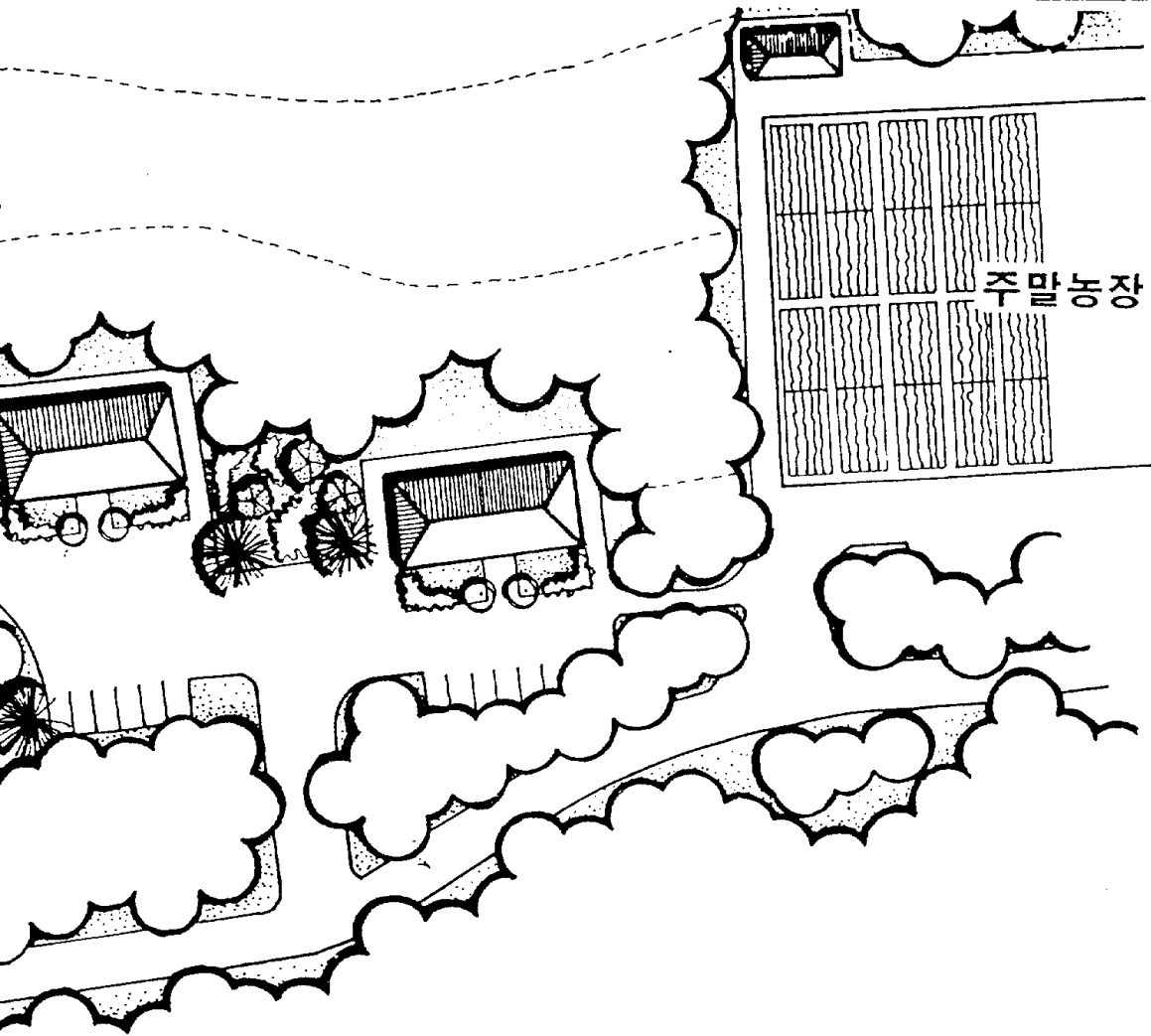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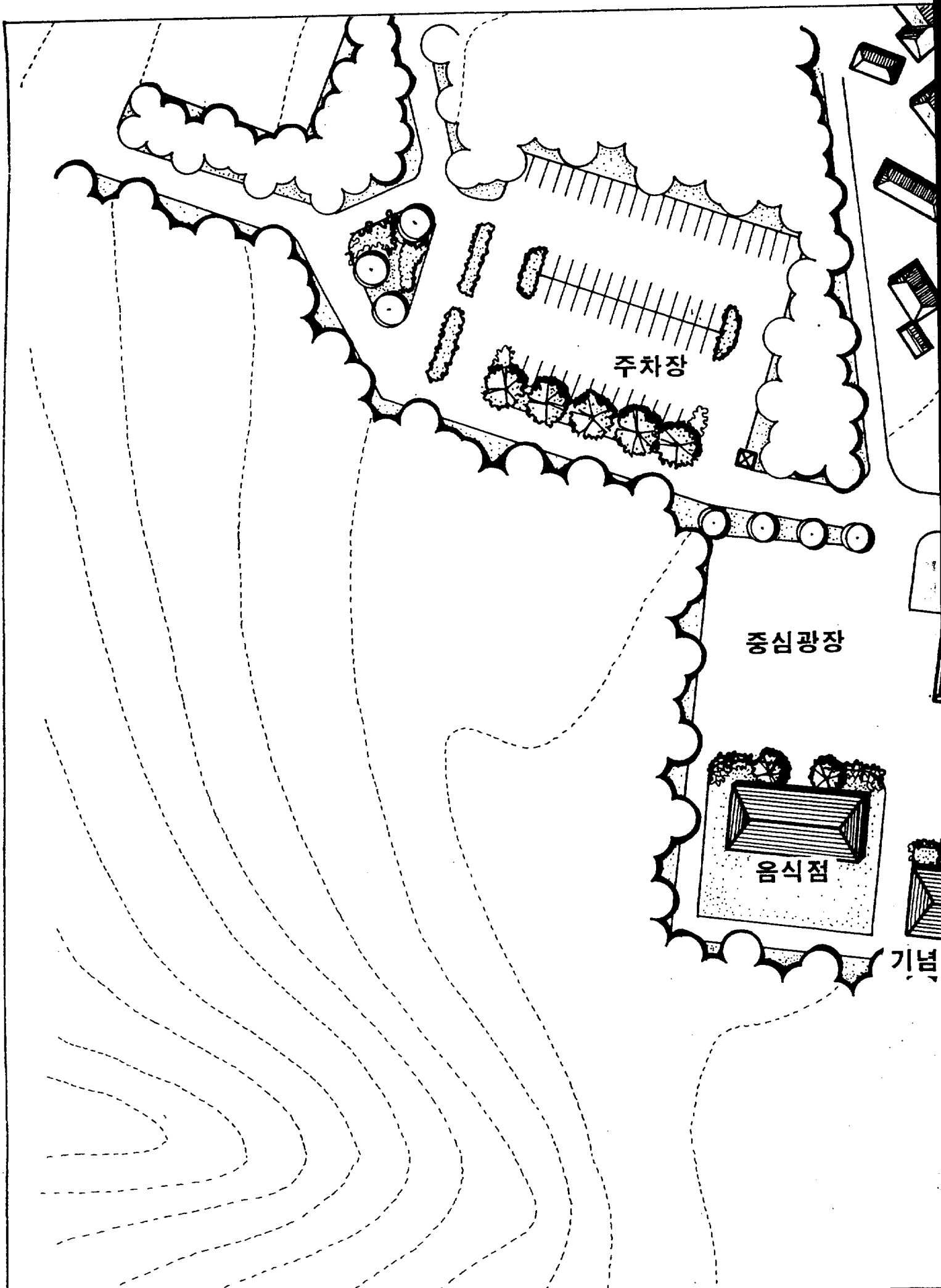


그림 3-26. 단체활동 공간B(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평면도)



주차장

중심광장

음식점

기널

시설물 배치계획

레크레이션 공간A

(중심광장 및 주차장 평면도)

기존 마을

버섯박물관

관매소 및 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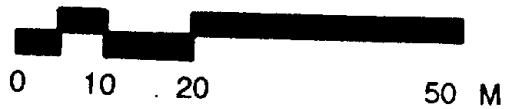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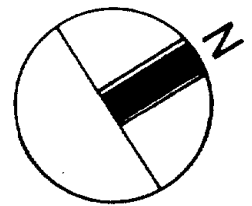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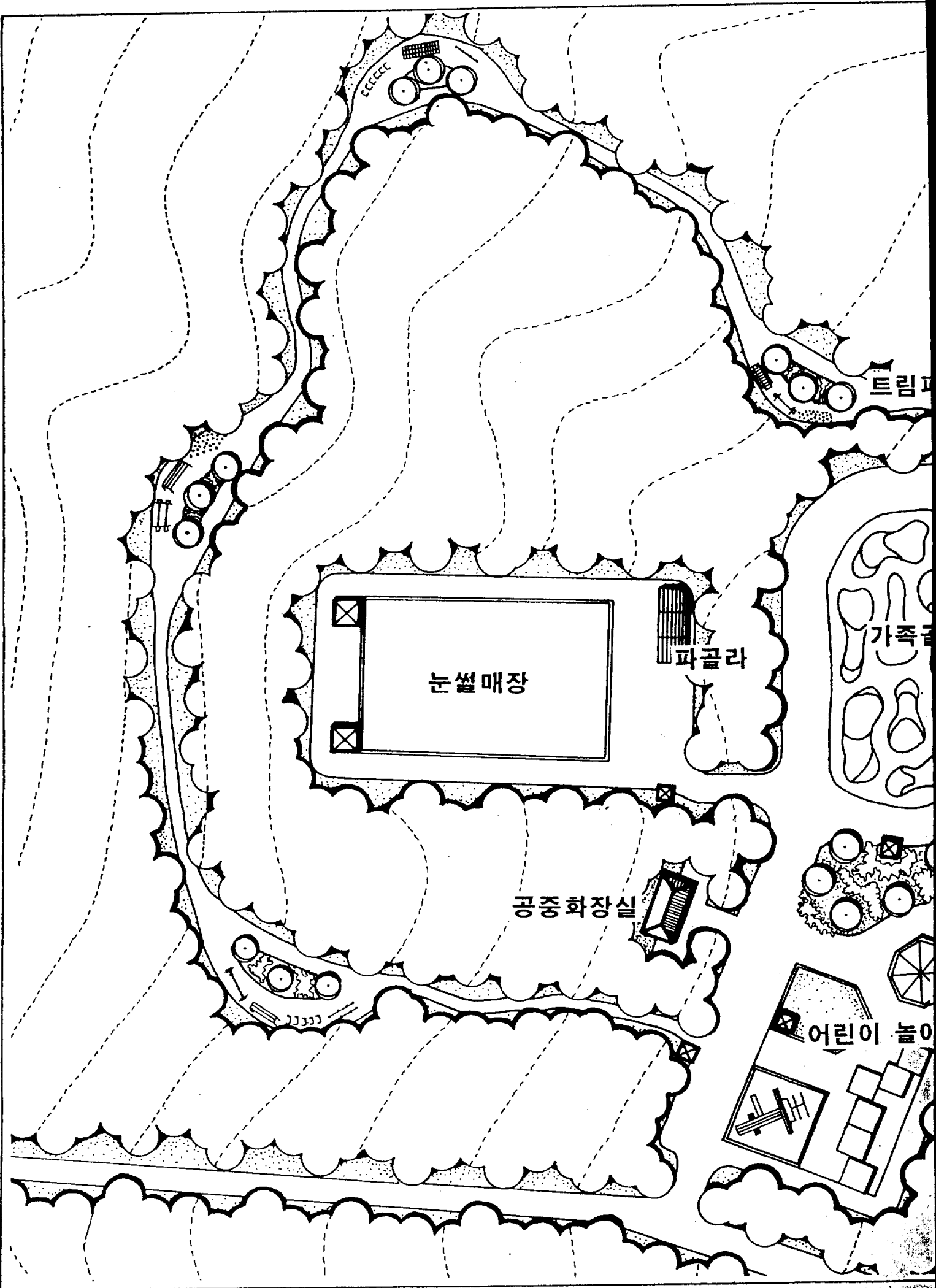


그림 3-27. 레크레이션 공간A(중심광장 및 주차장 평면도)



눈썰매장

파골라

공중 화장실

어린이 놀이

가족

트림

시설물 배치계획

레크레이션 공간B

(유희시설 평면도)



놀이시설

물원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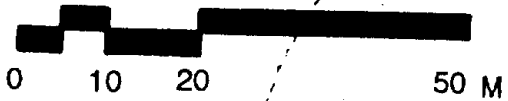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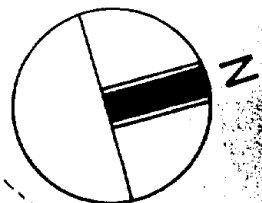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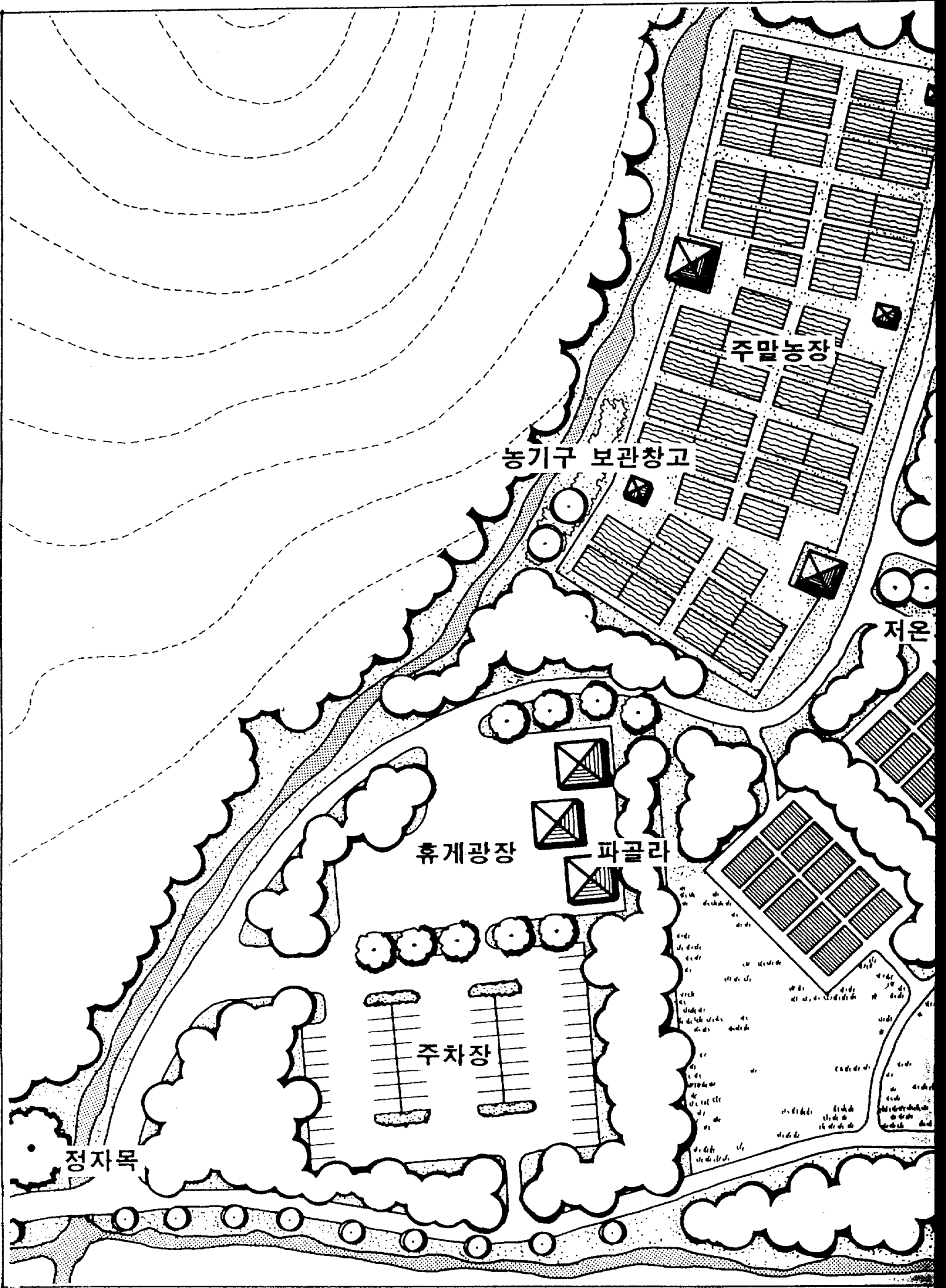


그림 3-28. 레크레이션 공간B(유희시설 평면도)



주말농장

농기구 보관창고

저은

휴게광장

파골라

주차장

정자목

시설물 배치계획

기존마을 및 경관보존공간A (주말농장/버섯재배장 및 휴게광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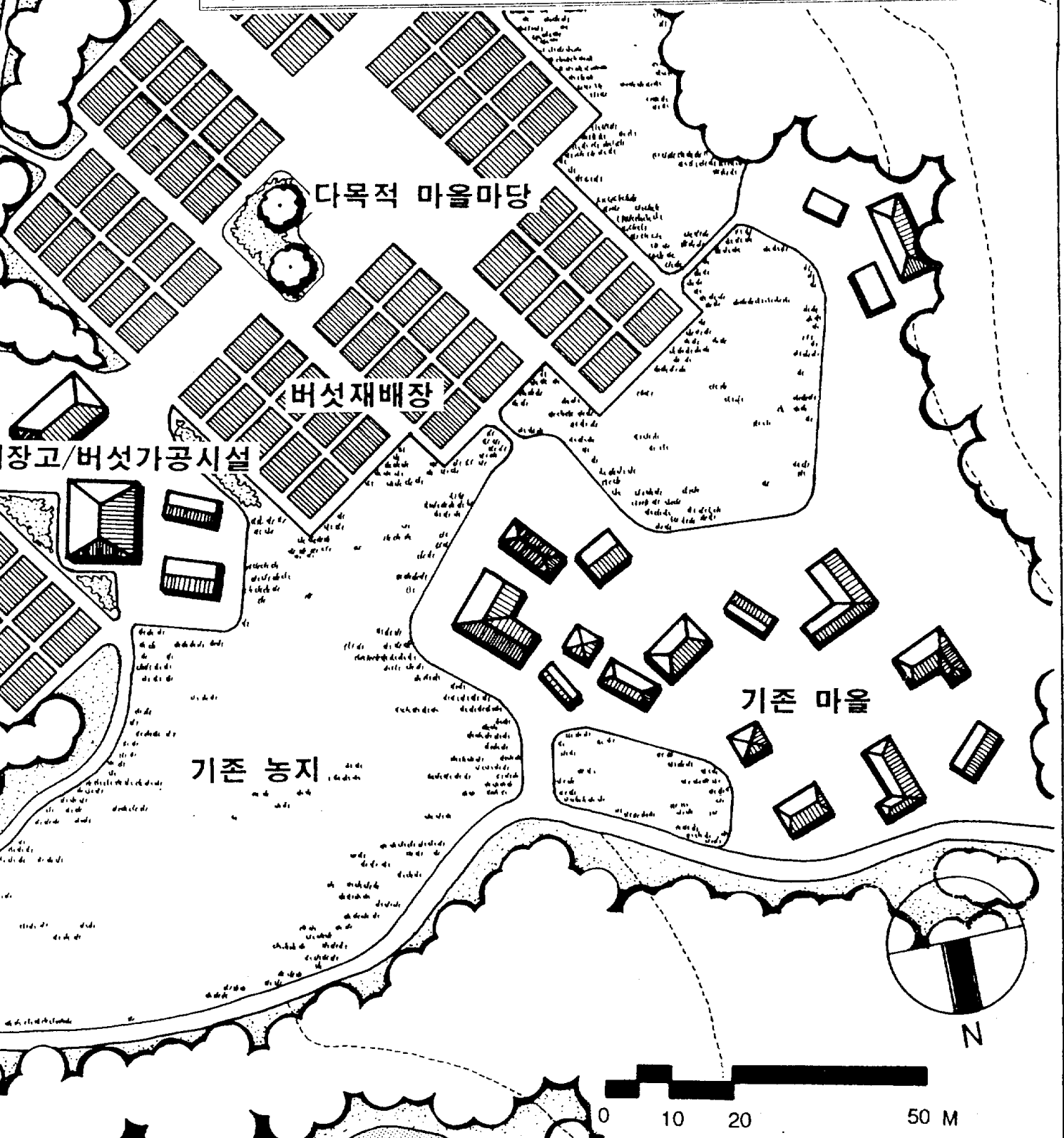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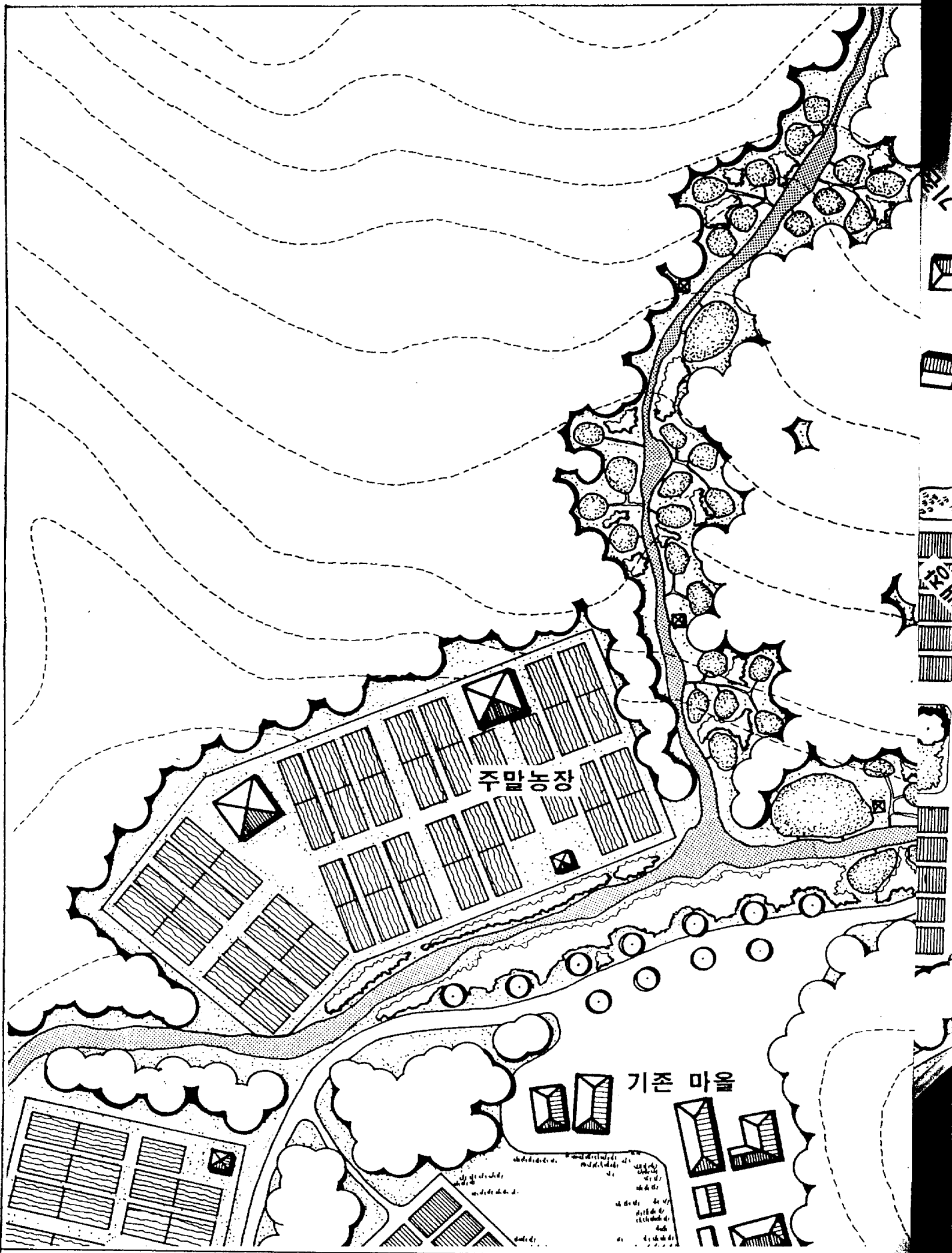


그림 3-29. 기존 마을 및 경관보존 공간A(주말농장/버섯재배장 및 휴게광장 평면도)



주말농장

기존 마을

시설물 배치계획

기존마을 및 경관보존공간B
(피크닉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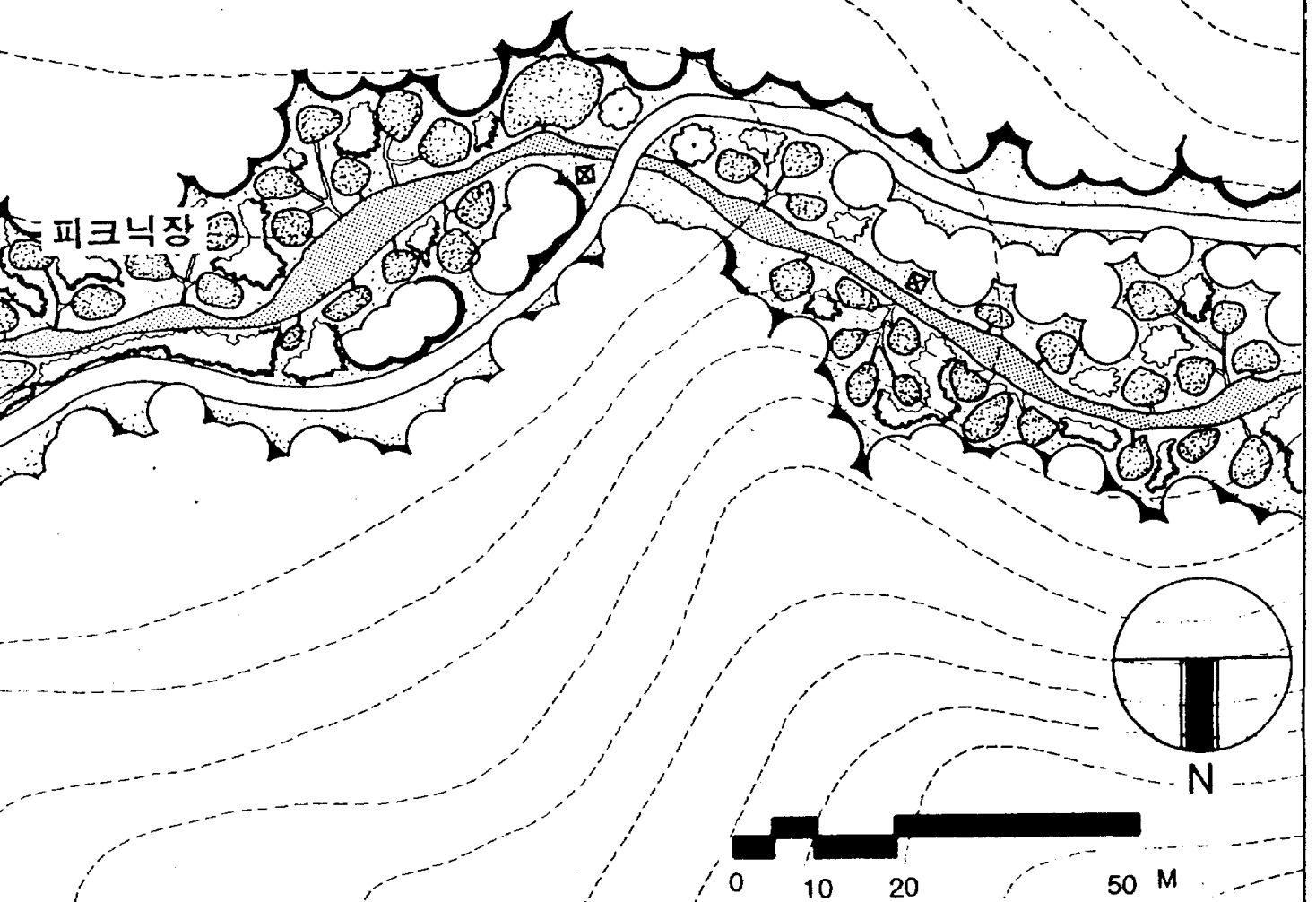


그림 3-30. 기존 마을 및 경관보존 공간B(피크닉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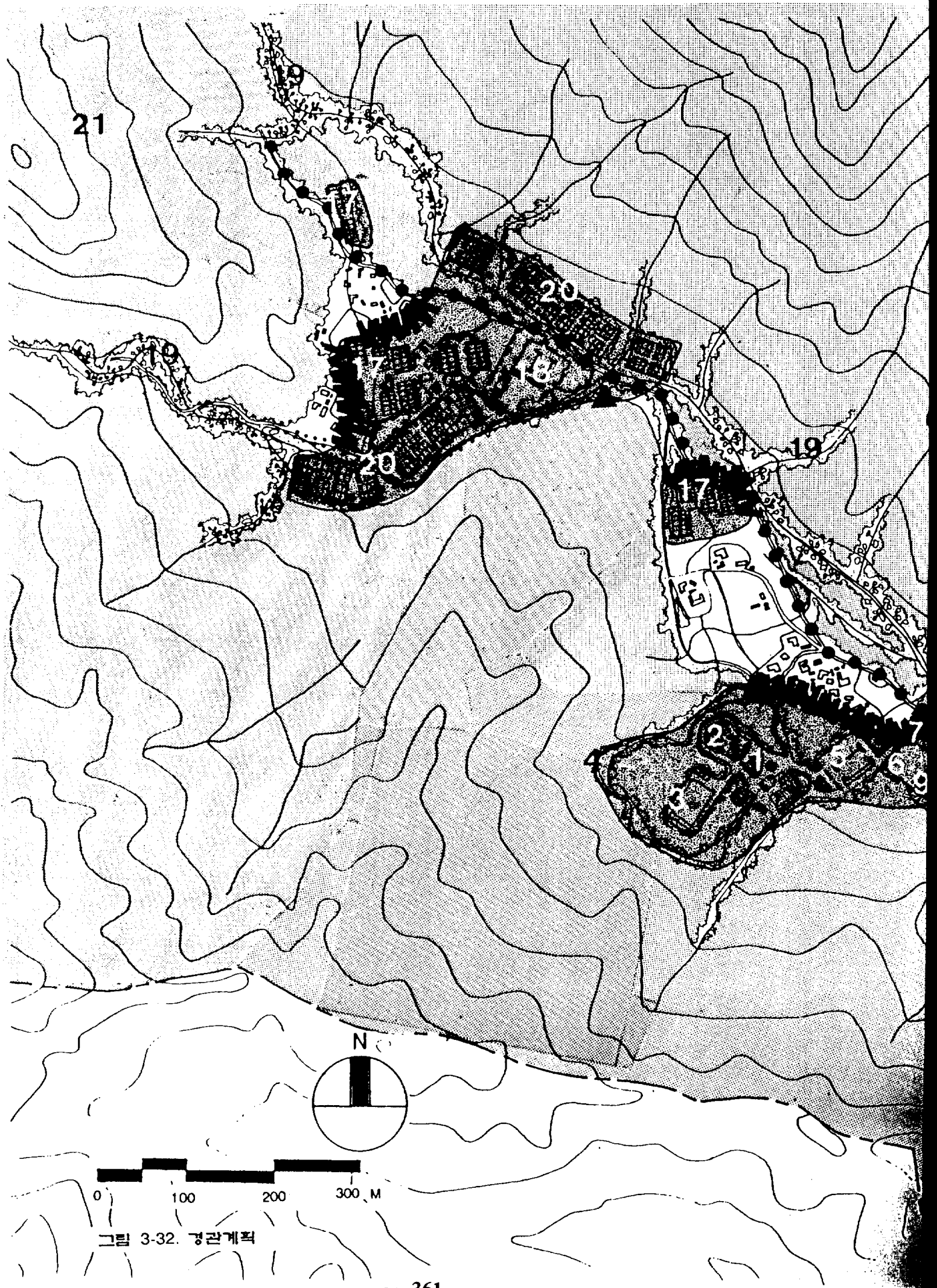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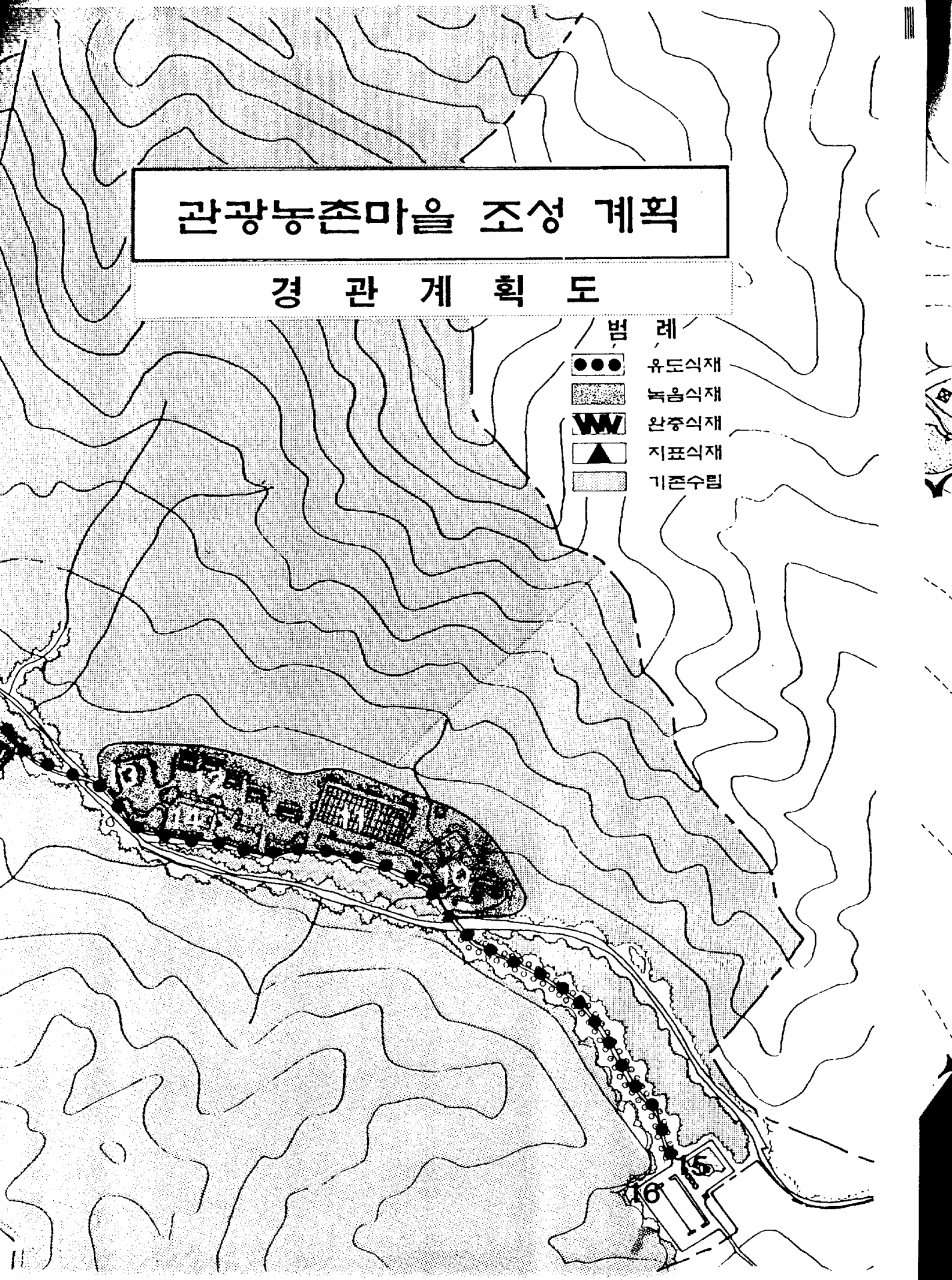


그림 3-32. 영간계곡

관광농촌마을 조성 계획

경관 계획도

- 범례
- 유도식재
 - 녹음식재
 - 완중식재
 - 지표식재
 - 기존수림



○ 레크레이션지구	○ 녹음을 제공하는 수종 ○ 경관성이 높은 수종 ○ 경사면을 보호할 수 있는 수종	○ 녹음식재 ○ 경관식재 ○ 경사면 보호 식재	○ 느티나무, 은행나무, 층층나무, 마가목, 자귀나무, 쪽동백, 신나무, 고광나무, 병꽃나무, 국수나무, 보리수
○ 주차장지구	○ 지하고가 높고 녹음을 제공하는 수종 ○ 배기 가스에 강한 수종	○ 유도식재 ○ 녹음식재	○ 느티나무, 은행나무, 층층나무, 병꽃나무, 철쭉류
○ 영농시설지구	○ 계절감 있는 수종 ○ 기상재해 예방할 수 있는 수종 ○ 녹음 제공 수종	○ 경관식재 ○ 녹음식재 ○ 방풍식재	○ 소나무, 느티나무, 층층나무, 잣나무, 고광나무, 병꽃나무
○ 산책로 및 자연관찰로	○ 산책로 주변 주요 수종 보호 ○ 다양한 향토 수종 점적 군식 ○ 설명 표찰 설치	○ 유도식재 ○ 녹음식재 ○ 군식	○ 기존교목 보존 ○ 약용식물, 식용식물군락 ○ 야생화훼류, 방향식물군락

4. 기반시설계획

가. 환경문제 및 대책

1. 개발과정에서의 환경문제 및 대책

(가) 수질오염과 대책

① 수질오염 발생 — 본 관광농원 총면적 8,082,357 m² 중 88.0% 인 7,101,978 m² 가 유보지인 자연임야로 남아 있게 되며, 영농시설을 비롯한 전시·판매시설, 숙박시설, 레크레이션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등이 배치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2.6% 인 210,300 m² 이다. 이러한 시설물 배치지역이 공사시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토사발생량을

골프장 설계기준에 의해⁴⁰⁾ 구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물 배치지역 면적 : 210, 300 m²(21. 03 ha)
- 토사유출량 : 200—400 m³/ha · 년(300 m³/ha · 년 적용)
- 토사의 밀도 : 2. 65 ton/m³

위에서 산출된 토사유출량은 45. 81 ton/일이며 지형여건상 남한강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곳이므로 탁도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사업의 성격상 수질보전이 절대적인 사항으로 공사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다.

② 수질오염 방지대책 —— 본 관광농원 조성공사시 토공사로 인하여 나지상태의 절성토 지역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강우 또는 집중호우시 강우 유출수에 의해 토사가 유출되어 주변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버수로 및 물막이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강우시 유출수에 섞여 유출되는 토사는 침강성이 좋아 침사지(물막이공)를 설치하여 유속을 감소시키면 대부분의 토사를 침강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시 절성토가 진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설배수로를 절토법면 하단, 성토부 하단 및 부지조성 중앙부에 시설하고 각 지선 하류지점에 침사지를 두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폭우시 과도한 성토법면지역은 폴리에틸렌 비닐을 이용 법면붕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본 지역은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우기에는 절성토공사를 가능한 억제하고 나지상태의 사면은 최우선적으로 사방공사를 실시하여 호우로 인한 사면의 붕괴 및 인근하천의 오염방지에 대처하도록 한다.

40) 日本 Golf 事業年鑑.

(나) 대기오염과 대책

① 대기오염 발생 —— 관광농촌마을 건설공사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먼지가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밖의 항목으로 SOX, NOX, CO 등의 오염물질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공사시 먼지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나 차량운행과 토사운반으로 인한 먼지의 발생으로 차도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호흡기 계통의 장애, 안질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② 대기오염 방지대책 —— 토사운반차량은 흙더미 덮개를 씌워 운반하며 공사장에 적치한 토사가 인근 차도와 인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비산분진 저감을 위해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운반도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법칙 49조)에서 정한 대로 공사장 진입도로와 진입보조도로에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며, 도로 및 공사장에서는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10-20km/hr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구역 진입도로를 우선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비포장 보다 약 85% 정도의 비산분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다) 폐기물의 발생과 대책

공사장 사용장비의 폐부품(예, 페타이어)과 공사장 인부들이 사용후 폐기하는 장갑등의 용품이 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양은 크지 않으므로 공사장 일정한 장소에 분류 보관하였다가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설물 사용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함께 소각등의 처리를 하면 된다.

(라) 소음진동공해와 대책

① 소음진동 공해발생 —— 본 관광농촌마을 개발조성시 투입되는 장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엔진소음, 마찰음, 충격음등으로 예상

되며 투입되는 장비는 공사규모가 비슷한 건설사업에 투입된 장비를 기준으로 장비별 소음도는 표 3-47 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⁴¹⁾. 한편, 개발과정에서 진동은 아주 미미하게 발생하므로 여기서는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표 3-47〉 공사시 장비투입 대수 및 소음도

구 분	대 수	소음도 <dB(A)>	비 고
불 도 저	2	87	소음도는 장비로부터 50 ft (약 15 m) 떨어진 지점에서의 측정소음도
페 이 로 더	2	88	
덤 프 트럭	6	88	
스 크 레 이 퍼	2	88	
백 호 우	2	85	
그 레 이 더	1	88	
매 캐 덤 로 더	1	80	
탠 덤 로 러	1	88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는 작업조건(대수, 가동시간, 작업장소등)과 작업 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지구와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100 m, 200 m, 300 m, 500 m, 1,000 m 거리별로 소음의 거리감쇠공식을 이용하여 공정별로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준비공 및 토공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이격거리 100 m 에서 82.1 dB(A), 1,000 m 에서 62.1 dB(A)로 나타나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의 범위중 주거지역의 공사장 소음치<조석 65 dB(A), 주간 70 dB(A), 심야 55 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민가가 있는 지역은 개발지역이 포함되며 주위가 대부분 200 m 이상의 산지로 둘러 쌓여있어 산지의 차단효과로 공사시 소음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건설소음은 일시적이며 건설장비가 한 곳에 집중되

41) P.F. Cunniff, 1977, Environmental Noise Pollution, Wiley.

지 않고 넓게 분포할 것이므로 영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② **소음진동 방지대책** — 소음공해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그러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실시한다.

- 저소음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 장비 및 차량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소음을 줄인다
- 공사장비의 기관소음은 消音器를 부착한다
- 가능한한 작업시간은 줄이고 야간(18:00-06:00)시간의 작업을 억제한다
- 도로의 노면을 평탄케하고 주진입도로를 우선 포장하며 노면마찰소음을 최소화한다
- 공정별로 효율적인 장비투입이 되도록 계획적인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공사차량의 주행속도를 20 km/h 이내로 제한하며 경적사용을 금한다
- 기도원등과 같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건설장비에 의한 영향을 저감한다.

(마) 토양오염과 대책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은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생태계순환을 통하여 생물학적 농축을 유발하며, 일단 오염된 토양은 자연적 제거가 불가능하며 계속적으로 오염이 가중되는 축적성 오염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전 오염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대상지가 관광지 개발사업이므로 지역내에 토양오염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오염원은 없다. 다만, 공사장비의 운전 및 관리 소홀로 기름등이 누출되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나 사용장비의 운전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성사업후 이용과정에서의 환경문제 및 대책

(가) 수질오염과 대책

① 오염실태 —— 본 관광농촌마을의 1일 최대이용객수 2,500명 중 약 25%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오수배출량 산정을 위해 숙박시설의 최대수용인원을 625인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배출되는 오수량의 산정은 환경청고시의⁴²⁾ 오수정화시설의 건축용도별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기준으로 숙박시설별 최대숙박인원에 숙박객당 원단위를 적용하였으며, 기타 오수배출 가능한 시설은 바닥면적을 기초로 오수배출량을 산정하였다.

BOD 농도도 오수량 산정에 적용된 환경청고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SS 농도는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사업 수질부문보고서의⁴³⁾ BOD : COD : SS=1 : 0.7 : 0.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T-N 및 T-P 농도는 양산하수처리장, 화도하수처리장, 온양시하수처리장, 영농하수처리장등 4개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기본계획보고서상의 가정하수의 수질조사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수질이 정화조를 거쳐 1차처리되어 나오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균값의 2배를 배출농도로 적용하였다.

각 시설별 배출량의 합은 $377 \text{ m}^3/\text{일}$ 이며, 오수배출농도는 BOD $195 \text{ mg}/\ell$, SS $137 \text{ mg}/\ell$, T-N $38 \text{ mg}/\ell$, T-P $8 \text{ mg}/\ell$ 이며, BOD 부하량은 $73.5 \text{ kg}/\text{일}$, SS 부하량은 $51.7 \text{ kg}/\text{일}$ 이다.

이러한 오수가 처리없이 그대로 방류된다면 인근 하천 및 남한강 수질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전체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방류수역인 남한강의 수질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저감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42) 환경청고시 제 87-12 호, 1987,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43) 환경청, 1986,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사업 수질부문보고서.

강하고 유지관리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회전원판접촉방법(RBC)을 설치하고, 생물학적 처리후 고도처리시설을 추가하여 방류수기준 BOD 5 mg/ℓ, SS 5 mg/ℓ, T-N 5 mg/ℓ, T-P 1 mg/ℓ 이하로 완벽히 처리하여 중수도가 설치된 숙박시설 및 기타 시설의 화장실 등에는 필요수량을 양수하여 재사용한다.

㉔ 중수도(오수의 처리후 재사용)의 도입

본 관광농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오수량은 377m³/일로 예상되며, 방류가 결국 수도권 상수원으로 유입됨을 감안할때 방류수역의 오염도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방안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방류되는 오수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음용수와 같은 정도의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수(예, 화장실용수 등)에 대하여 종전 처럼 매우 청정한 상수를 공급하지 말고, 오수를 적합한 필요수질로 처리하여 재사용하게 됨으로 방류되는 오수량을 줄일 뿐 아니라, 상수처리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 관광농촌마을의 경우에는 오수배출량이 많고 오수처리시설과 중수도의 사용처가 근접한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등에 대하여 오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다.

중수도설치에 따른 잡용수량의 산정을 위하여 雑用水道(中水道)基準調査研究中間報告書⁴⁴⁾ 일반가정 용도별 물사용 구성비를 준용하여 수세식 화장실용수 20%, 청소용수 6%, 살수용수 4%로 적용하여 전체잡용수 비율을 30%로 적용하여 구하였다. 본 관광농촌마을의 급수량 추정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부곡하수처리장 건설기본계획보고서에서⁴⁵⁾ 상주인에 사용하였던 급수량 원단위 370ℓ/인·일을 적용하였으며, 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수량기준으로 40ℓ/m²·일을 적용해 산정하였다. 그 결과

44) 日本水道協會, 1979, 雑用水道(中水質)基準調査研究中間報告書.

45) 건설부, 1991, 부곡하수처리장 건설기본계획보고서.

급수량은 총 $483 \text{ m}^3/\text{일}$ 이며, 이중 오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하게 되는 잡용수량은 $145 \text{ m}^3/\text{일}$ 이다. 그러므로 전체오수량 $377 \text{ m}^3/\text{일}$ 중 중수도로 재사용하는 오수량은 $145 \text{ m}^3/\text{일}$ 로 전체 오수방류량의 38%가 저감되게 된다.

㉔ 방류수 저류조(연못) 설치

방류수를 바로 인근 하천에 보내지 않고 수심 약 2m 내외의 저류조 즉, 연못을 설치하여 방류수를 2일 정도 체류시킨 후에 방류시킨다. 이곳에 갈대등의 대형 수초를 키워, 이들이 질소와 인을 흡수하여 자라게 한다. 이때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도 제거가 된다. 이들 대형 수초는 생체중식량이 가장 큰 봄과 여름에 각 1회 씩 걷어내어 영양염류를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이 저류조의 크기는 방류수량과 2일간의 체류시간에서 구할 수 있다. 즉, 실제 배출되는 오수량 $232 \text{ m}^3/\text{일}$ 이므로 저류조의 용적은 464 m^3 이 요구되며, 수심이 약 2m 정도이므로 232 m^2 의 면적이면 된다.

연못을 설치하는 것은 방류수 수질개선 효과도 있지만, 주변에 수초가 우거져 있으므로 멋있는 호수공원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본 개발구역의 관광자원 가치를 더욱 높게 만들 것이다.

㉕ 방류수의 이용

오수처리후 중수도에 이용되는 물을 제외하고는 방류하여 저류조를 거쳐서 나온 물은 거의 완벽하게 처리된 상태이므로 유해물질은 거의 없으며, 극미량의 어류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물고기는 중류수처럼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다. 따라서 저류조를 거쳐서 나온 물을 양어장 및 미꾸라지 잡기원에 이용하여 용수절약으로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이용객들에게 보여주므로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장기적으로 광고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㉔ 비료 및 농약성분의 유출방지

본 관광농촌마을에는 넓은 경작지와 가족 골프놀이 시설이 있다. 농경지는 자체에서 여러 폐기물을 퇴비화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를 주로 사용하며, 농약사용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여 천적관계로 병충해를 방지하는 유기농법에 의하여 경작하면, 비료와 농약성분으로 인한 피해는 관광농촌마을로 개발되기 이전보다 더 문제되지 않는다. 개발전보다 경작지의 감소와 유기농법에 의한 경작으로 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감소하여 환경문제는 오히려 더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 골프놀이 시설의 설치로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골프놀이 시설에서는 제초제 및 농약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여 잡초제거 작업을 하며, 자연생태계의 천적관계를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 대기오염과 대책

① 대기오염 —— 본 관광농촌마을 투숙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온방시스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난방시설에 의한 열이용에 있어서 열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난방시설에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표 3-48 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상지역이 관광농촌마을이므로 관광지에 준하여 특별히 청결을 요한다. 정부에서는 경유나 가스 같은 청정 연료를 난방에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관광농촌마을에서는 이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대기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경유를 사용할 계획이다.

〈표 3-48〉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3년 12월 31일 까지	1994년 1월 1일~ 1998년 12월 31일	1999년 1월 1일 이후
일산화탄소		600 ppm 이하	600 ppm 이하	600 ppm 이하
염화수소		80 ppm 이하	60 ppm 이하	50 ppm 이하
염소		80 ppm 이하	60 ppm 이하	60 ppm 이하
황산화물		300 ppm 이하	300 ppm 이하	300 ppm 이하
분진	배출가스량이 40,000m ³ /h 이상	100 mg/m ³ 이하	80 mg/m ³ 이하	80 mg/m ³ 이하
	배출가스량이 40,000m ³ /h 이상	200 mg/m ³ 이하	100 mg/m ³ 이하	100 mg/m ³ 이하

② 방지 대책 — 본 관광농촌마을의 숙박시설은 중앙열공급시설물에 의하여 열이 공급되며, 사용되는 연료는 경유이므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법적 규제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대기오염 방지장치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열공급시설 운전 미숙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이 시설이 잘 운전되어 연료가 완전연소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연소를 위한 주요 인자는 노내의 온도상승, 충분한 연소시간, 충분한 산소공급, 적당한 공기혼합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항들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효율 높은 보일러가 구비되면 대기오염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폐기물 발생과 대책

① 폐기물 발생 —— 본 관광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 생활 폐기물로, 주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관광지 이용객에 의하여 배출되는 음식물류, 알루미늄캔류, 지류, 비닐류, 빈병류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본 관광농촌마을 이용시 발생하는 폐기물량의 산정을 위한 북포년도 일최대이용객은 2,500 인을 기준으로 그중 숙박객은 약 25% 인 625 인으로 하며, 나머지 1,875 인을 당일객으로 하였다.

〈표 3-49〉 국립공원 폐기물배출량 및 조성비

구 분		북한산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평균
1인 1일 배출량(kg)		0.38	0.43	0.48	0.50	0.45
가연성분(%)	음식채소류	40	40	20	20	30.0
	종이류	21	26	25	25	24.3
	플라스틱류	16	6	38	38	24.5
	목재류	2	5	5	5	4.3
소 계		79	77	88	88	83.0
불연성분(%)	금속류	7	7	7	7	7.0
	초자류	9	11	3	3	6.5
	기타	5	5	2	2	3.5
	소 계	21	23	12	12	17.0
총 계		100	100	100	100	100.0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는 표 3-49 처럼 북한산,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의 4개 국립공원의 1인당 1일 배출량 평균값인 0.45 kg/인·일을 적용하였으며, 숙박객에 의한 배출량은 이값에 1.5 배를 적용하였다⁴⁶⁾. 또한 폐기

46) 삼화기술단, 1985, 국립공원 환경상태 조사연구, 삼화건설기술보.

물의 조성은 4 개국립공원 폐기물조성비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음식채소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목재류는 가연성분으로, 금속류, 초자류 및 기타는 불연성분으로 보았다.

<표 3-49>의 이용객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본 관광농촌마을의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면 표 3-50 처럼 총 1,269 kg/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가연성분은 1,054 kg/일, 불연성분은 215 kg/일이다.

<표 3-50> 본 관광농촌마을의 폐기물 발생량

구 분	인 분(인)	배출원단위 (kg/인·일)	폐기물발생량(kg/일)		
			계	가연성	불연성
숙박객	625	0.68	425	353	72
당일객	1,875	0.45	844	701	143
계	2,500	—	1,269	1,054	215

본 지역은 관광단지로 종이, 음료수병 및 캔, 플라스틱수지류와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은 표 3-51 과 같다.

<표 3-51> 품목별 재활용 현황

품 목	공병	폐지	고철	폐수지	농약 빈병	폐유	페타 이어	광재	유기성 오니
재활용률 (%)	92.0	42.5	34.2	35.0	77.8	58.0	45.0	63.7	25.3

<표 3-51>의 품목별 재활용현황과 배출되는 폐기물의 조성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표 3-52>와 같이 재활용 회수율을 가정하여 회수량을

제 4 절 기본계획

산정한 결과 가연성분이 278 kg/일이고, 불연성분이 112 kg/일로 총 390 kg/일이 회수된다. 또한 최종 처리되어야 하는 양은 가연성분 776 kg/일, 불연성분 103 kg/일로 총 879 kg/일이다. 그런데 <표 3-49>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음식채소류는 발생한 총 폐기물량중에 30% 이므로 약 381 kg/일이 되며 이것은 회수가 전혀 되지 않는 가연성분이지만 수분함량이 많아 소각처리 보다는 오히려 퇴비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종처분 되어야 하는 가연성분중 381 kg/일은 퇴비화하지만, 395 kg/일은 소각처리 대상이다.

<표 3-52> 재활용 회수를 및 회수량

구 분	전 체	가연성분					불연성분			
		음식채소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소 계	금속류	초차류	기타	소 계
회수율(%)	30.7	0	50	40	0	26.4	40	92	0	51.7
회수량(kg/일)	390			278					112	
잔존량(kg/일)	879			776					103	

② 저감방안 — 본 관광농촌마을 이용시 총 폐기물 발생량은 1,269 kg/일로 예상되는바 이 폐기물을 단지내 및 인근에 매립할 경우 악취 및 해충서식과 같은 주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으로 매립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관광농촌마을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가연성분중 음식채소류는 퇴비화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등은 소각처리하여 소각재는 불연성 폐기물과 함께 매립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계획하에서 진행한다.

㉑ 수집 및 수거

관광농촌마을내 발생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발생원부터 분리수거가 수행되어야 한다. 시설물이 숙박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놀이공간등으로 폐기물 투입구를 각 시설별로 특성에 알맞게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성으로 나누어 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운반도중에 섞이는 일이 없도록 1일 1회 이상 쓰레기를 운반하며, 장기저장으로 인한 해충의 번식, 악취등 위생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수거계획을 늘려 수시로 수거하도록 한다.

㉒ 소각처리

쓰레기 발생량의 규모에 적합한 소각로를 적소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제외한 가연성물질은 소각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감량하며, 불연성물질 및 소각재는 최종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본 관광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 재활용량을 제외하고 최종처분되어야하는 양은 가연성분 776 kg/일, 불연성분 103 kg/일로 총 879 kg/일이다. 가연성분중 음식채소류를 제외한 실제 소각처리해야 할 것은 395 kg/일이다.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경우 감량을 90%로 가정하면 소각재는 39.5 kg/일이 발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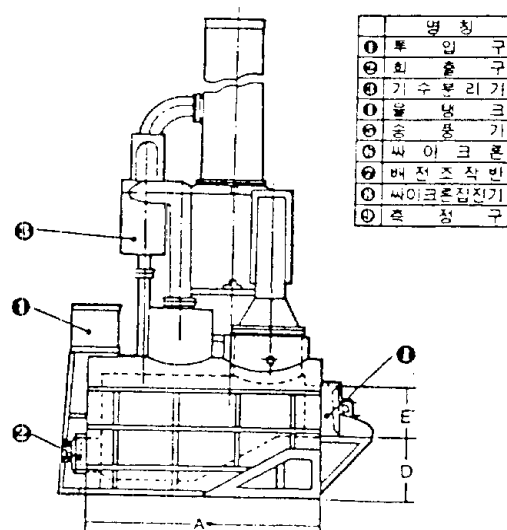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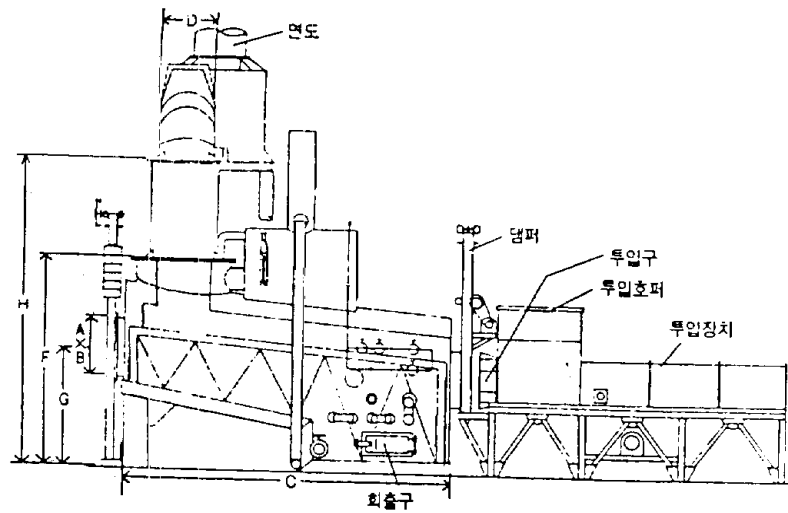
소각로는 폐기물 처리량, 폐기물 발생성분,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 소각열 이용 등을 고려하여 그림 3-33 과 같은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 처리시스템은 회분(Batch)연속방식으로 수냉에 의하여 노내 온도상승을 조절하며, 이때 냉각수로 이용되었던 물을 난방보조 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소각처리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배기가스가 발생되며 대기오염과 같은 차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먼지외에도 SOX, NOX, CO 와 소각성분에 따라서는 중금속 성분이 함유될 수도 있다. 따라

제 4 절 기본계획

서 난방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보다 대기오염물질이 매우 많으므로 처리에 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운전조건 즉, 소각로의 작동온도, 유입공기, 체류시간, 노의 종류 등 제반요건에 따라 변하므로



<그림 3-33> 소각로 형태

<표 3-48>에 제시된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소각로 및 제진장치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정할 수 있다.

<표 3-53>은 각종 제진장치의 실용성을 비교한 것이며, 이 성능과 본 관광농촌마을의 경제성, 환경성 및 기타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각시설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방지장치는 원심력을 이용한 Cyclone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 시설로 처리할 계획이다.

<표 3-53> 각종 제진장치의 실용성능

원 리	명 칭	처리입경 (μm)	압력손실 (mm H ₂ O)	집진율 (%)	설치비	운전비
중 력	침강실	1,000-50	10-15	40-60	소	소
원 심 력	Cyclone	100-3	50-150	85-95	중	중
세 정	Ventury Scrubber	100-0.1	300-380	80-95	중	대
여 과	Bag Filter	20-0.1	100-200	90-99	중	중 이상
전기집진	Cottrell	20-0.05	10-20	80-99.9	대	소-중

㊸ 퇴비화

본 관광농촌마을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중 30%인 381 kg/일은 음식채소류로, 최종 매립처분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간처리 과정에서 수분함량이 많으므로 소각처리 보다는 퇴비화시켜 유기질 비료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퇴비화 장치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판되고 있는 퇴비화플랜트(발효건조기)를 이용하면, 비교적 높은 효율에,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운전할 수 있어 권장할 만하다. 한편, 이 플랜트는 본 관광농촌마을의 레크레이션시설중 소동물원에서 발생한 동물 분뇨까지 함께 처리가능하므로 쾌적한 레크레이션시설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㊹ 재활용품 활용방안

폐기물이 배출되면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것이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피

해를 줄임은 물론, 유한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관광지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대부분이 빈병, 캔, 플라스틱류 등이며 이들은 자체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주로 필요자에게 매각 처리하여 자분화를 꾀해야 한다.

㉓ 운반 및 최종처분

본 관광농촌마을에서 최종매립되어야 하는 양은 불연성분 103 kg/일과 소각재 39.5 kg/일로 총 142.5 kg/일이다. 이것을 주 1회 소형트럭으로 배후지 최종처분장에 운반하여 처분한다.

(라) 소음진동공해와 대책

① 소음발생 — 본 사업의 완료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은 도로개설로 인해 이용되는 차량들이다. 주차장 면적산정에 활용되었던 식중에서 1대당 소요면적, 즉 단위규모를 곱하지 않은 값을 본 지역 진입 1일 교통량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값에 0.15를 곱하여 피크시간 최대교통량으로 산정하였다⁴⁷⁾. 즉,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승용차 피크시 시간최대교통량} = 2,500 \times 0.6 \times 1/1.5 \div 3 \times 0.15 = 50(\text{대/h})$$

$$\text{버스 피크시 시간최대교통량} = 2,500 \times 0.25 \times 1/1.5 \div 40 \times 0.15 = 1(\text{대/h})$$

예측한 결과 피크시 시간최대교통량은 소형차 50대/h, 대형차 1대/h로 총 51대/h이며,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소음 예측공식으로 <표 3-54>처럼 소음값을 예측하였다.

<적용공식>

$$\text{소형차} : L_a = 45 + 10 \log(N/r) + 30 \log(V/50)$$

$$\text{대형차} : L_b = 53 + 10 \log(N/r) + 30 \log(V/50)$$

$$\text{합성음} : L = 10 \log(10^{L_a/10} + 10^{L_b/10})$$

$$\text{등가소음도} : L_{eq} = L \times 1.1 - 6.3$$

47) 화천군, 1992, 화천군 관광단지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여기서, N : 교통량(대/h)

r : 편도차선의 중앙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m)

V : 차속(km/h)

〈표 3-54〉 도로교통소음도 예측

〈단위 : dB(A)〉

소음도 구분	이 격 거 리(m)				비 고
	5	10	15	20	
L_a	55	42	40	39	도로폭 : 10 m 소형차속 : 50 km/h 대형차속 : 40 km/h
L_b	43	40	38	37	
L	55	44	42	41	
L_{eq}	54	42	40	39	

도로교통소음 예측결과 이격거리 5 m 에서의 소음도 54 dB(A)로 환경기준 도로변 “가” 및 “나” 지역의 소음도 65 dB(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예측이 피크시 최대통행량을 기준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관광농촌마을내의 2 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내의 이동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보행에 의한 이동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소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지역은 현재 진동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진동원은 없으므로 진동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② 저감방안 —— 본 관광농촌마을 이용시 차량의 통과로 인한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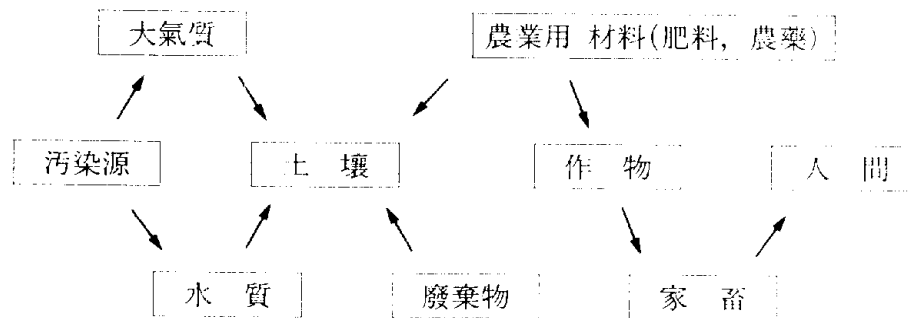
- 차량주행속도의 제한(주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 경적사용의 금지

제 4 절 기본계획

- 단지내 및 주진입 도로변에 樹列이 연속되도록 선형에 따라 교목, 관목을 배열식재
- 단지내 시설물 건축시 방음설계 및 이중창 설치
- 도로표지판 설치

(마) 토양오염과 대책

① 토양오염과 오염물질 이동경로 —— 본 지역을 개발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폐기물과 침출수를 매체로 하거나, 혹시 가족 골프놀이 시설에 살포되는 농약, 비료 등의 약제가 주종을 이룰 것이며, 그 오염경로는 <그림 3-34>와 같다.



<그림 3-34> 토양오염 경로

② 저감방안 ——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과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은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폐기물처리를 철저히 함으로 함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약이나 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방안도 강우시 유출수 등의 오염방지 방안처럼 유기질 비료의 사용과 자연생태계의 복원으로 천적관계가 잘 이어지게 하여 자연적인 해충 방제를 시도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환경관련 시설면적 및 소요비용

본 관광농촌마을 개발과정 및 시설 이용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한 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면적 및 소요비용은 <표 3-55>와 같다.

<표 3-55> 환경관련 시설면적 및 소요비용 산출

시 설 명		건축면적 (m ²)	대지면적 (m ²)	소요비용 (만원)	비 고
개발 과정 정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550	1,500	침사지 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400	400	500	세차, 세륜, 살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	—	—
	소음진동방지시설	—	—	—	—
	토양오염방지시설	—	—	—	—
	소 계	400	950	2,000	—
이용 과정 정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200	432	22,000	수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직경 300mm 차집관 1,000m 매설
	대기오염방지시설	—	—	—	경유사용 난방시설은 방지시설 불필요
	폐기물처리시설	400	400	3,500	소각로 및 집진장치, 퇴비화장치
	소음진동방지시설	—	—	—	—
	토양오염방지시설	—	—	—	—
	소 계	600	832	25,500	—
총 계		1,000	1,782	27,500	—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제 1 절 하품 2 리의 진흥방향

1. 지역의 특징

가. 하품 2 리 지역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강원도 산골의 성격을 띤 산골마을로 농업으로써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정도로 농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다.

나. 그러나 교통이 편리하고(서울에서 1.5 시간) 자연환경은 풍부하며 개울물이 깨끗하고 풍부하여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비지정 관광지로써 육성되고 있다.

다. 산간지역이라 일조시간이 짧고 기온의 격차가 심하여 하품 2 리 지역을 비롯한 이웃마을, 면전체가 버섯 주산단지화 되어있다.

라. 토지소유현황은 전체토지의 45%가 외지인소유이고 현지인소유는 29% 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경지면적(전, 답, 목장용지) 중 72%가 유휴농지이어서 토지의 전용활용대책이 필요하다.

마. 하품 2 리 총가구수는 59 가구이고 실제가구수는 53 가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실제로 이곳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15 호이고 그외에는 겸업 또는 타산업종사자이다. 그리고 10 호는 외지인이 토지취득을 위

하여 주민등록상 등록만하고 미술활동을 위하여 전원생활을 하고 있으나 지역민과의 융화는 적은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여느 자연부락처럼 박씨, 한씨의 집성촌이다.

바. 신랑바위와 각시바위의 전설이 있으며 마을뒷산에는 주어사라는 절터가 있는데 천주교발생지인 천진암과 관련을 갖고 있다.

2. 진흥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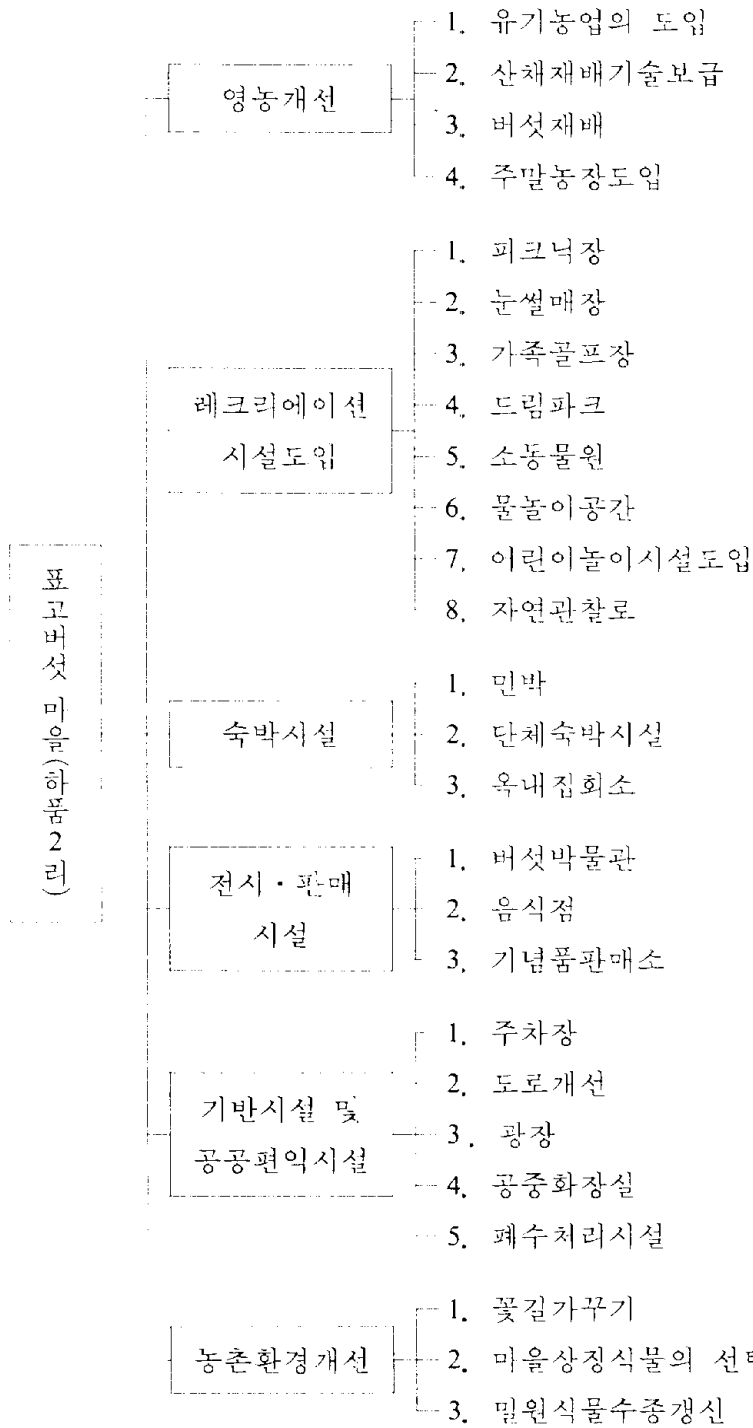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을 진흥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한두가지 일만을 조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유기적 역할을 담당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아 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따라서 장기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불안하고 신뢰성이 없지만 불확실성시대의 농촌진흥목표란 현재의 주변여건을 잘 파악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가지고있는 농촌자원을 지역의 형편(능력)에 맞게 이끌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사의 입지조건이 나쁘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지역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도시인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상대로한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이나 2·3 차산업을 접목시킨 관광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품2리 지역과 같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며 이들지역과 차이가 있는 특색있는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주변환경은 같더라도 이지역은 우선 대도시(서울)와 가까운거리(1.5 시간)에 있어서 고객유치가 쉽고 건강식으로 인기가 있는 표고버섯 주산단지이며 신랑바위와 각시바위의 전설은 다른지역에서 만들어 낼 수 없는 문화자원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참나무가 많아서 집집이 도토리묵을 만드는 기계를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그림 4-1> 하품 2 리 지역의 필요정비계획

보유하고 있으며 봄에는 산나물캐기, 여름에는 계곡의 물놀이, 가을에는 산밤과 도토리줍기의 도시인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농촌휴양지의 형성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하품2리 지역은 생계수단인 농업보다는 2·3차산업의 도입으로 관광농촌부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버섯마을로의 이미지(Image)조성이 필요하다.

즉 요즈음 암공포증에 있는 현대인에게 항암효과가 있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무공해 채소인 표고버섯요리를 맛있게 먹고 싸게 사갈수 있다는 것은 유인력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버섯박물관에서 버섯의 생태를 배우고 여러가지 자연학습을 할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단체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다.

따라서 하품2리 지역은 앞의 <그림 4-1>과 같은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업이 1차적으로 완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옛 주어사지역과 천주교성지쪽의 개발예정후보지에 자력 또는 외부자본을 도입하여 현대적 감각에 알맞은 완전무결한 체험 및 연수시설들을 도입해야 한다.

3. 진흥방법

가. 버섯마을의 이미지(Image)화 제고

1) 버섯의 이미지화를 위하여 버섯박물관을 비롯한 단체숙박시설이나 마을의 신축건물들을 버섯상징양식의 건물로 유도하여 신축한다.

2) 현재는 버섯생산이 표고와 느타리뿐이고 생산시기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이나 새로운 기술도입과 시설도입으로 다품종 주년재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항상 어느때이고 신선한 버섯을 생산한다.

3) 버섯요리를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과와 협동개발하여 맛있게 즐길수 있도록 한다.

4) 버섯생산의 성수기에는 버섯요리 뿐만아니고 버섯따기상품도 개발하여 직접요리 및 선물용으로 사가게 한다.

이때의 가격정책은 채취노력이 절약되므로 시장가격보다는 싸게, 출하가격보다는 약간 비싸게 한다.

5) 버섯가공공장(건조시설)이나 저온저장고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출하나 상품의 품질 또는 품질의 저하를 방지한다.

6) 관광성수기 또는 비수기를 택하여 버섯아가씨선발대회 또는 버섯요리대회를 이벤트행사로 개최하여 버섯마을의 홍보효과를 제고시킨다.

7) 버섯자목 또는 버섯모(툰밥에 종균을 번식시킨 것)를 생산하여 버섯가공품과 더불어 상품으로 개발하고 도시가정에서도 정원에서 버섯을 키워서 딸수 있게하여 그 버섯을 먹을 때는 항상 버섯마을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웃, 친지에게 구전에 의한 홍보효과를 도모한다.

나. 3 계절형 관광농촌마을의 조성

1) 일반적으로 관광발생시기는 여름>봄>가을>겨울의 순이고 하품 2 리 부락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본부락 관광객유치목표(년 12 만~15 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년판매가 가능한 상품(향토음식)과 계절별 판매 가능한 상품(이벤트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2) 대개 주중(월~금)에는 관광발생이 적고 주말(토, 일요일)이나 연휴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므로 객층의 선택을 주중에는 초중고생들의 농촌체험상품,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말에는 가족단위, 젊은객층의 피크닉 관광객유치전략을 수립한다.

3) 시설물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수기(겨울)에 알맞는 상품을 개발한다. (산토끼잡기, 눈조각대회 등)

4) 지역개발의 부가가치증대를 위해서는 이용객이 다소 적더라도 체재시간 연장에 의한 소비액이 높아야 하므로 체재시간 증대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시설과 숙박시설 등 이용객의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들을 추가도입한다.

5) 관광농촌마을의 매력성과 유인성은 어디까지나 농업적 요소가 발휘되어야 하므로 관광농업 도입에 의한 주년재배 작물의 선택과 시설재배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6) 버섯마을을 상징하는 향토수종(예: 자귀나무)이나 계절의 변화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예: 봄에는 진달래, 철쭉, 여름: 자귀, 가을: 단풍, 겨울: 낙상홍)을 심고 논둑이나 집울타리에는 유실수와 숙근초 그리고 유희농지에는 꽃이 아름다운 산채(예: 도라지)나 정원수목 등을 심어서 마을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한다.

또 뒷산 등에는 수종갱신에 의한 밀원식물, 야생절화수종을 조립하여 환경조성과 산림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한다.

7) 하품2리 관광농촌마을은 풍부한 자연환경이 생명이고 그중에서 맑은 개울물이 관광개발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정부지원사업에 의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개울물과 가정오폐수를 분리처리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하여 소각, 재활용함으로써 항상 깨끗한 분위기를 창출한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에는 정화된 물에 물고기를 키워서 양어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역할과 맑은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다. 관광농업의 도입

1) 하품2리 마을 전체 농지중 72%가 유희농지임에 비추어 토지이용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인바 불량토지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버섯재배를 적극 확대하여 버섯마을의 특산품으로 개발육성한다.

2) 버섯품종의 다양화, 주년재배기술의 도입으로 년중생산체제를 확립하고 버섯요리 뿐만이 아니라 버섯산을 조성하여 자연산버섯과 인공재배버섯

따기 상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터섯연구소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기술지도를 받도록 한다.

3) 유기농법의 도입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 판매한다. 이기술의 도입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팔당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유기농법보급사업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4) 현재 재배하는 경제작물로는 버섯을 비롯하여 오이, 가지, 고추 등 약간의 자급용 채소가 경작(2ha)되고 있으나 관광농촌마을이 조성되면 상추, 쪽갯의 엽채류와 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의 과채류, 감자, 고구마의 괴근류 그리고 옥수수 등의 채소작물로 작목선택이 바뀌어야 하며 기후가 서늘한 지역이라 품종(조, 중만 생종), 재배방법(조숙, 노지, 축성, 억제, 불시재배) 등을 강구하여 연중생산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일반농가의 재배포장에도 작물명의 표말을 붙이고 약간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각 농가의 농사작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수용체재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농사체험 관광농업상품을 개발한다.

6) 농업적 요소(자연환경 포함)는 어디까지나 유인요소이지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각 농가에 있는 도토리묵 만드는 기계를 활용하여 농산가공실습인 묵만들기, 두부만들기 같은 부형의 관광농업상품을 개발하고 체재시간연장에 의한 숙박비, 음식비 등의 부가가치증대 체험상품을 개발한다.

7) 주말농장은 지상권만 분양하여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유희농지 활용대책이 될수 있고 경작지라하여도 평당 10,000 이상 받을수 있으며 사후서비스(중경, 시비 등)에 따라서 2~30,000 원까지 받을수 있으므로 생산비, 인건비 등이 절약될 수 있어 자가경작시보다 수익성이 높다. 더욱 발전적 방법은 50 평단위로 분할분양하여 집(5~10 평)을 짓게하고 지상권 분양에 의한 수입은 농가의 다른사업에 대한 자금동원방법이 될 수 있다.

라.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도입

1) 관광농촌마을의 매력과 유인성은 농업적 요소이지만 실제로 와서 버섯요리를 먹고 마을을 한바퀴 돌고나면 할일이 없고 아이들은 동적인 놀이시설을 좋아하므로 객층선택에 알맞은 레크리에이션 시설도입이 필수적이며 그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시설도입이 필요하다.

2) 하품 2 리 마을은 피크닉성격의 관광농촌조성이 필요하므로 개울을 중심으로 유희농지를 비롯하여 경작지라도 입지조건이 좋으면 잔디밭을 조성하고 원두막이나 바베큐시설을 간단하게 설치하여 버섯과 고기, 채소를 셋트화해서 판매하므로 토지의 효율적이용이 작물재배시보다 장소이용료수입이 높게한다. 또한 초기에 집단적으로 주말농장조성이 어려우면 잔디밭을 중심으로 희망농가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면 점차 확대하게되며 자연스럽게 단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관광개발에 있어서 항상 자연의 보호와 개발은 조화있는 균형개발을 식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하품 2 리의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있어서 도입시설들도 관광객욕구에 맞고 지형지물을 가능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공간(개울), 자연관찰로(임도 이용), 피크닉장(유희농지), 눈썰매(경사지), 가족골프(유희농지)와 농업의 요소를 그대로 살릴수 있는 소동물원(염소, 토끼), 미꾸라지잡기원(논을 그대로 사용)을 도입함이 필요하며 약간의 훼손을 요구하는 드림파크설치 정도가 좋다. 만약 추가 도입시설이 필요하다면 비수기 대책이 될수 있는 버섯폐목을 활용한 한증막 시설도입이 좋다. 이때 나오는 폐온수는 버섯의 겨울재배나 기타 비닐하우스 축성재배에 난방열로 재활용 될수 있다.

4) 도입시설의 배치는 입지조건이 적당한 지역이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어려움거나(임대 또는 무료사용) 기능상 배치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시설개발희망자의 소유토지로 배치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다.

제 2 절 관광농업상품의 개발 및 운영방법

1. 관광농업상품의 개발

가. 무형상품의 개발

모든 상품의 개발은 우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어야 하고 상품개발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아무리 욕구충족을 시킬수 있어도 소비자의 소득수준과 맞아야 소비가 되고 시대성이 있어야 대량소비가 가능하다.

근대 우리사회의 관광행태는 장거리 여행에서 겪으는 교통체증 때문에 1일생활권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욕구해소방법으로 과거에는 사찰이나 유명한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농산어촌지역에서 농사재배, 수확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일반회사에서는 농지를 임대하여 회사원들에게 분양해서 운영하는 주말농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회사원의 스트레스 해소뿐만이 아니라 직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을 동반하게 되므로 회사를 가정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 여기는 노사화합에도 큰역활을 하고 있다. 또 자녀들의 자연체험, 부모들의 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때 하품 2 리 지역에서도 사회적 변화현상을 지역활성화 방법에 끌어들여서 토지의 농업적 이용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사방법의 개량과 농업경영의 개선으로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적 요소는 어디까지나 유인요소이지 부가가치 증대에는 한계

성이 있으므로 유형의 관광농업상품보다는 무형의 관광농업상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형의 관광농업상품은 생산과 소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저장성이 없으므로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도입되어야 하고 주변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하며 영농방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하품 2 리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할수 있는 대상별 유망활동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하품 2 리 체험활동 예시

내용 대상	농사체험	농산가공체험	자연체험	오락활동	문화체험
초중고학생	모심기, 벼베기,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도마도, 참외, 수박따기, 버섯따기, 고추따기	도토리묵만들기, 두부만들기, 버섯요리강습	곤충채집, 식물채집, 자연학습코스, 버섯박물관관찰, 폐수처리장환경교육	물놀이, 피크닉, 소동물원에서 놀기, 눈썰매타기, 드림파크, 템버링, 미꾸라지잡기	신랑바위, 각시바위, 신록사탐방, 세종대왕능탐방, 예절배우기(제사지내는법, 족보보는법, 촌수따지는법 등), 민박
가족단위	도토리따기, 산밤따기, 산나물씻기, 주말농장가꾸기, 버섯따기	도토리묵만들기, 두부만들기, 버섯요리강습	산림욕, 버섯박물관관찰	낚시, 피크닉	신랑바위방문, 각시바위방문, 신록사탐방, 세종대왕능탐방, 민박

나. 유형상품의 개발

버섯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식품으로 비교적 단백질과 무기질함량이 많으며 특히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어 건

강식품으로서의 보급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버섯은 독특한 향기와 맛을 갖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용되는 식품이다. 특히 비타민 B₂ 와 비타민 D 의 모체인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 풍부하여 버섯의 독특한 감칠맛과 성분으로는 구아닐산이 들어 있다.

구아닐산은 혈액내 콜레스테롤(Cholesterol)을 적게해주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며 버섯중에는 표고버섯에 가장 많이 들어 있다.

버섯의 영양가는 대부분(80~90%)이 수분이고 단백질중에는 구루타민산(Glutamin Acid)과 레우신(Leucin)이 풍미성분으로 작용하여 무기염류중에는 K(칼륨), Cu(구리), Fe(철) 등이 많고 항암작용으로의 성질도 있어 건강식품으로 더욱 기대되는 식품이다.⁴⁸⁾

따라서 포천군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한 버섯요리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8) 포천군 농촌지도소, 1993, 겨울농민교육부교재 7호 p. 1, 3

포천군 농촌지도소개발

버섯요리 개발사례

(1) 버섯전골	399
(2) 버섯샐러드	399
(3) 버섯갈비탕	400
(4) 버섯수육	400
(5) 느타리버섯회	401
(6) 느타리버섯 삼계탕	401
(7) 느타리버섯 산적	402
(8) 버섯볶음	402
(9) 팽이버섯조림	403
(10) 버섯잡채	403
(11) 버섯모듬전골	404
(12) 표고버섯밥	404
(13) 표고꼬치구이	405
(14) 돼지갈비표고찜	405
(15) 표고죽	406
(16) 표고탕수	406

(1) 버섯 전 골



<재 료>

쇠고기	300 g
느타리버섯	300 g
팽이버섯	200 g
양송이버섯	200 g
표고버섯	200 g
마늘	1 통
파	1 뿌리
붉은고추	3 개
국간장, 후추, 조미료, 후추		

<만드는 법>

- ① 쇠고기는 얇게 저며 간장, 후추, 다진마늘, 파, 조미료,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 놓는다.
- ②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데쳐내어 길이로 찢어 놓는다.
- ③ 양송이버섯은 4 등분하고 파는 어슷하게 썬다. 붉은고추도 같은 방법으로 썰어 씨를 털어낸다.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대를 자르고 갓만 큼직하게 썰어놓고, 팽이버섯은 그대로 사용한다.
- ④ 진골냄비에 준비된 재료를 보기좋게 담고 육수를 붓고 국간장, 후추, 조미료를 넣어 양념해 끓여낸다.

(2) 버섯 샐러드



<재 료>

느타리버섯	150 g
양상치	100 g
양배추	약간
오이	2 개
토마토	1/2 개
양파	1/4 개
마요네즈	약간

<만드는 법>

- ① 느타리는 물에 불려 세로 찢고 물기를 꼭짜서 뺀다.
- ② 오이는 어슷썰기로 해서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뺀다.
- ③ 토마토는 저며놓고, 양파는 채썰기한다.
- ④ 큰 그릇에 느타리, 오이, 양파,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린다.
- ⑤ 움푹한 그릇 밑에 양상치를 깔고 버무린 샐러드를 담은 다음 토마토로 장식한다.

(3) 버섯 갈비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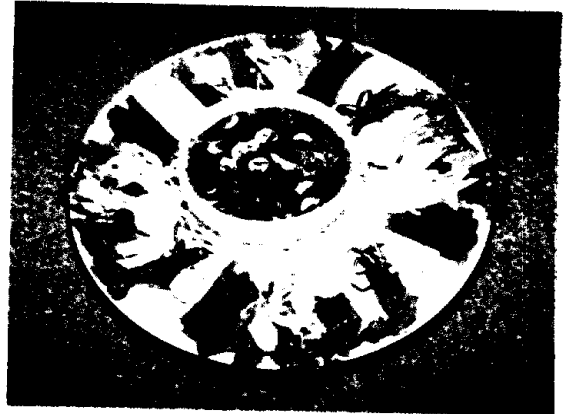
<재 료>

- 느타리버섯 300 g
- 팽이버섯 200 g
- 양송이버섯 200 g
- 쇠갈비 600 g
- 파 1 뿌리
- 마늘 1 통
- 후추, 조미료

<만드는 법>

- ① 느타리는 끓는 물에 넣어 데쳐낸 다음 찢어 놓는다. 갈비는 칼집을 넣고 양송이 버섯은 길이로 썰어 놓는다.
- ② 마늘은 곱게 다지고 파는 어슷하게 썰어 놓는다.
- ③ 갈비는 물을 붓고 끓으면 준비된 버섯을 넣고 붉은고추를 넣어 끓인다음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후추, 조미료를 넣는다.

(4) 버섯 수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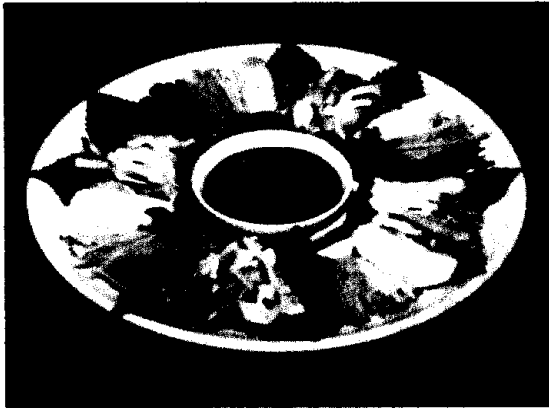
<재 료>

- 쇠고기 (저민것으로) 400 g
- 두부 1/4 모
- 계란 2 개
- 느타리버섯 200 g
- 미나리대 150 g
- 붉은고추 2 개
- 오징어 1/2 마리
- 대추, 밤 약간
- 김 1 장
- 간장, 식초, 파, 깨소금

<만드는 법>

- ① 쇠고기는 물에 찌서 익혀둔다.
- ② 느타리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내어 물기를 빼고 6 cm 길이로 찢어 놓는다.
- ③ 미나리는 대만 골라 6 cm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 ④ 두부는 도톰하게 저며놓고, 고추는 어슷썰기, 계란은(1 개) 삶아서 1/4로 잘라 놓고, 다른 1 개는 지단을 부쳐 채썰어 놓는다.
- ⑤ 오징어는 살짝 데쳐 6 cm 길이로 썬다.
- ⑥ 밤은 껍질을 벗기고, 김은 세로 길이로 잘라 놓는다.
- ⑦ 모든 재료를 접시위에 그림처럼 담아 놓는다.
- ⑧ 간장, 식초, 파, 깨소금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5) 느타리버섯 회



<재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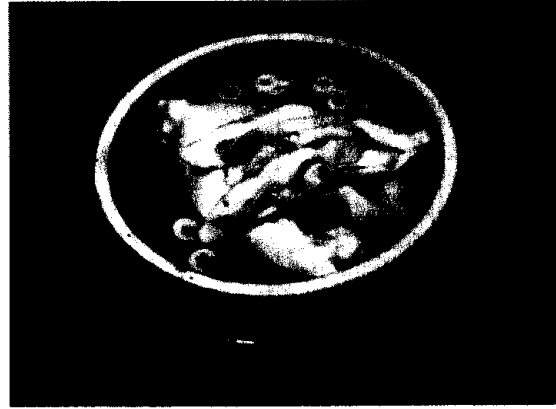
느타리버섯	150 g
달걀	3 개
깻잎	8 장
토마토	1/2 개
오이	1 개
오징어	1 마리
당근	1 개

고추장, 식초, 설탕, 파

<만드는 법>

- ① 느타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어 물기를 뺀 다음 1×6 cm 의 크기로 찢어 놓는다.
- ② 계란은 지단을 부쳐 느타리 크기로 썰어 놓는다.
- ③ 오이와 당근도 같은 길이로 썰어 놓는다.
- ④ 깻잎을 펼쳐놓고 그위에 느타리버섯, 지단, 오이, 당근을 놓는다.
- ⑤ 오징어는 칼집을 내어 1/4 썩 잘라서 끓는 물에 데쳐서 깻잎 사이사이에 놓는다.
- ⑥ 고추장 2 큰술, 식초 1 큰술, 설탕 2 작은술로써 초고추장을 만든다.
- ⑦ 토마토를 얇게 저며 장식용으로 놓는다.

(6) 느타리버섯 삼계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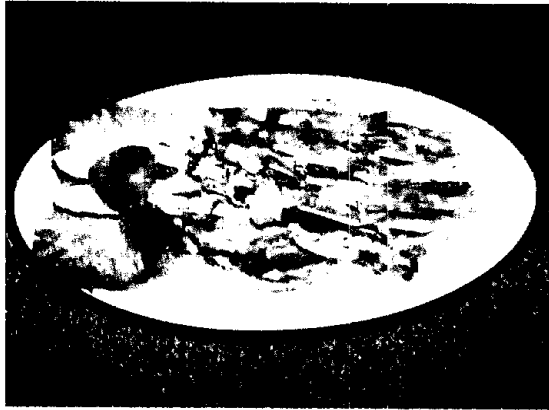
<재 료>

닭(작은것)	1 마리
느타리버섯	150 g
참쌀	50 g
인삼(작은것)	1 뿌리
대추	약간
밤	약간
파	약간

<만드는 법>

- ① 닭의 내장을 모두 꺼낸뒤 깨끗히 씻는다.
- ② 느타리는 물에 불려 놓고, 인삼은 흠을 털어 씻는다.
- ③ 참쌀은 미리 물에 충분히 불린다.
- ④ 밤은 껍질을 벗겨 놓는다.
- ⑤ 닭의 배속에 참쌀, 인삼, 밤, 대추를 넣고 실로 배살을 꿰맨다.
- ⑥ 냄비에 물을 붓고 닭을 넣은뒤 팔팔 끓이되, 어느정도 익으면 버섯을 넣어 풍미를 돋군다.
- ⑦ 그릇에 낼때는 파를 썰어 얹는다.

(7) 느타리버섯 산적



<재 료>

- 쇠고기 300 g
- 느타리버섯 400 g
- 실파 300 g
- 당근 1 개
- 마늘 2 t.s(다진것)
- 계란 2 개
- 밀가루 약간
- 설탕, 통깨, 간장, 후추, 조미료, 참기름, 식용유

<만드는 법>

- ① 쇠고기는 7cm 길이로 얇게 썰어 설탕, 간장, 마늘, 통깨, 후추, 조미료, 참기름을 넣고 조미해 놓는다.
- ②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데쳐내어 잘게 찢어 놓는다.
- ③ 실파는 6cm 길이로 썰어 참기름에 버무려 놓는다.
- ④ 당근은 나무젓가락 굵기로 썰어 데쳐낸다.
- ⑤ 준비된 재료를 꼬챙이에 보기 좋게 끼워 밀가루와 계란을 섞우고, 프라이팬에서 지져낸다.

(8) 버섯 볶음



<재 료>

- 느타리버섯 150 g
- 표고버섯 100 g
- 붉은고추 3 개
- 양파 1/2 개
- 풋고추 3 개
- 양배추 1/4 개
- 간장, 후추, 조미료, 식용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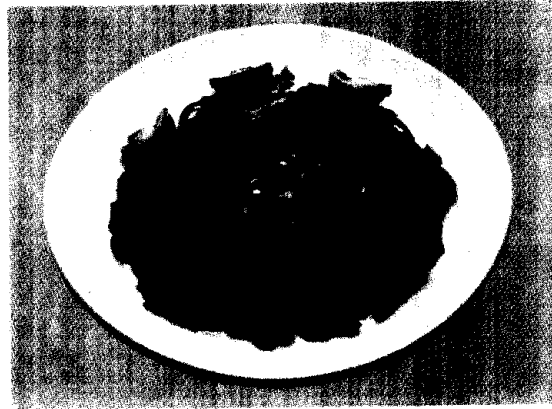
<만드는 법>

- ① 표고는 물에 불려 대를 자르고 갓만 길이로 썬다. 느타리는 손으로 찢어 놓는다. 두버섯의 물기를 손으로 꼭 짠다.
- ② 붉은고추와 풋고추는 큼직하게 어슷 썰기로 해서 씨를 털어낸다.
- ③ 양파는 채썰기로 준비하고, 장식용으로 쓰일 양배추도 채썰어 둔다.
- ④ 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섯과 양파를 볶은뒤 고추를 넣는다. 불에서 내려 놓기 직전에 소금, 간장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 ⑤ 접시위에 양배추를 깔고 버섯볶음을 담는다.

(9) 팽이버섯조림



(10) 버섯잡채



<재 료>

- 팽이버섯 400 g
- 느타리버섯 200 g
- 다시물 1/2 컵
- 간장 3 큰술
- 설탕, 후추, 참기름

<만드는 법>

- ① 싱싱한 팽이버섯을 골라 뿌리 부분을 다듬어 가볍게 물에 씻어 건져 놓는다.
- ②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살짝 데친다음 물기가 빠지면 적당한 크기로 찢어 준비한다.
- ③ 우묵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된 버섯을 살짝 볶다가 다시물, 간장, 설탕을 넣어 국물이 없을 때까지 조리후 후추, 참기름을 쳐서 그릇에 담아낸다.

<재 료>

- 쇠고기 200 g
- 표고버섯 5 개
- 느타리버섯 150 g
- 팽이버섯 150 g
- 양송이버섯 150 g
- 마늘 1 통
- 오이 2 개
- 볶은고추 3 개
- 간장, 후추, 조미료, 참기름, 통깨, 파

<만드는 법>

- ① 쇠고기는 채로 썰어놓고, 표고버섯은 대를 자르고 나머지는 채로 썰어 양념해 놓는다.
- ②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데쳐내어 적당한 크기로 찢어 놓는다. 양송이버섯은 길이로 썰어 놓는다.
- ③ 파, 마늘은 곱게 다지고 볶은고추는 씨를 털고 채로 썰어 놓는다.
- ④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쇠고기를 볶다가 준비된 버섯과 갖은 양념을 넣고 볶은후 넣고 접시에 담아낸다.

(11) 버섯모듬전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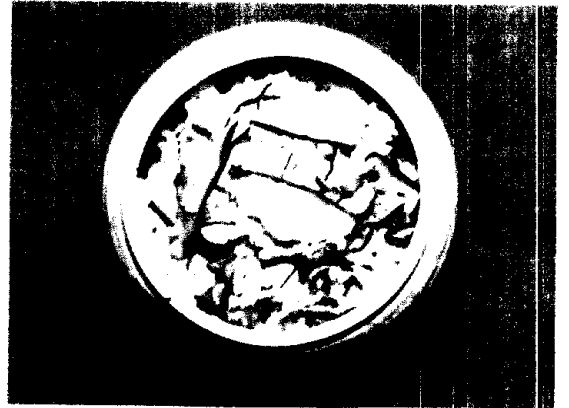
<재 료>

- 쇠고기 300 g
- 대파 2 뿌리
- 팽이버섯 100 g
- 은행 15 개
- 양송이버섯 100 g
- 표고버섯 100 g
- 붉은고추 3 개
- 마늘 1 통
- 간장, 후추, 조미료

<만드는 법>

- ① 쇠고기는 얇게 썰어 양념(간장, 후추, 조미료, 마늘)을 넣고 버무려 놓는다.
- ② 대파는 어슷하게 썰고, 은행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낸후 꼬챙이에 장식한다.
- ③ 양송이 버섯은 길이로 등분하고 표고버섯은 물에 담구어 불린 다음 딱딱한 줄기를 떼어내고 2 등분해 놓는다.
- ④ 붉은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씨를 털고 마늘은 곱게 다져 놓는다.
- ⑤ 직경남비에 준비된 재료를 보기좋게 담고 육수를 붓고 간을 맞추어 끓여 낸다.

(12) 표고버섯밥



<재 료>

- 쌀 3 컵
- 밥물
- 물 3 컵
- 청주 3 큰술
- 간장 1 큰술
- 소금 1/4 작은술
- 표고버섯 10 개
- 닭고기(살고기) 200g
- 양념
- 간장 2 작은술
- 청주 2 작은술

<만드는 법>

- ① 쌀은 미리 씻어 건져 놓고, 표고는 불려서 줄기를 떼고, 길이로 썰어둔다.
 - ② 닭고기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고, 준비된 표고와 닭고기에 간장, 청주를 2 작은술씩 넣어 양념한후 10분 정도 재워둔다.
 - ③ 쌀을 솥에 담고 표고와 닭고기도 담고 정량의 물, 청주, 간장, 소금을 넣어 밥을 짓는다.
- * 표고버섯밥은 고슬고슬 해야 맛이 좋으므로, 밥물을 적게 넣는 것이 좋다.
 - * 국으로는 삶은 새우나 시금치를 띄운 맑은 장국이 세격이다.
 - * 야채로는 당근, 오이를 식초와 소금에 절였다가 담아 내놓는다.

(13) 표고꼬치구이



<재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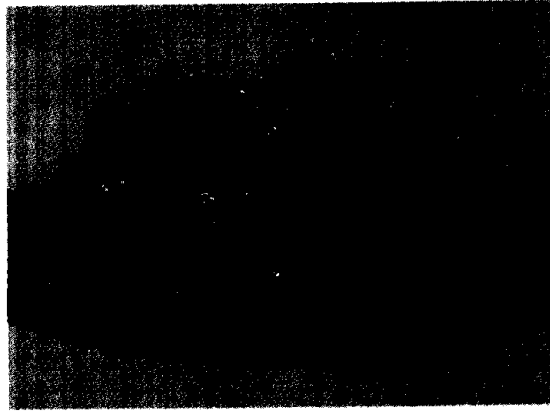
- 표고버섯 20 개(小)
- 짜리고추 20 개
- 쇠고기 200 g
- 고기양념

간장, 다진마늘, 다진파, 깨소금, 참기름, 후추, 조미료
 꼬지, 참기름, 식용유, 맛소금, 후추, 밀가루

<만드는 법>

- ① 작은 표고버섯을 준비하여 물에 불려 줄기를 떼고 마른 행주위에 놓아 물기를 제거한다.
- ② 쇠고기는 곱게 다져 고기양념을 해 놓는다.
- ③ 짜리고추는 3cm 길이로 잘라 씨를 털어 놓는다.
- ④ 표고에 맛소금, 후추, 참기름을 넣고 양념을 하고 안쪽에 밀가루를 묻히고, ②의 양념한 고기를 넣어 푹푹 눌러 붙이고 팬에 식용유를 넣고 뜨거워지면 놓아 지지 고기를 익게 한다.
- ⑤ 꼬지에 ④의 표고를 끼우고 짜리고추를 끼워 팬에 지지 굽는다.

(14) 돼지갈비 표고찜



<재 료>

- 돼지갈비 400 g
- 무우 1/22 개
- 당근 1 개
- 표고 15 장
- 풋고추, 은행 각 3 개
- 양념장

간장 6 큰술
 청주 2 큰술
 물엿 6 큰술
 생강 1 큰술
 파(다진것) 3 큰술
 마늘(다진것) 1 큰술
 깨소금, 참기름, 후추

<만드는 법>

- ① 돼지갈비는 5cm 길이로 토막을 내어서 끓는 물에 파잎, 생강을 저며 넣고 끓이다가 갈비를 넣어 데쳐 건진다.
- ② 무우, 당근을 밤톨 크기로 썰어놓고, 표고는 줄기를 떼고, 풋고추는 씨를 털고 큼직하게 썰어 놓는다.
- ③ 양념장은 재료를 섞어 만든다.
- ④ 돼지갈비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린후 식용유를 두르고 갈비를 지진다.
- ⑤ 반정도 갈비가 익으면 표고, 무우, 당근을 넣어 푹 무르게 찜을 하고 풋고추를 섞어 함께 살짝 익힌후 그릇에 담는다.

(15) 표고죽



<재 료>

쌀(물린것)	1	컵
표고버섯	8	장
쇠고기	100	g
물	6	컵
참기름	1	큰술
간장, 마늘다진것, 후추, 조미료			

<만드는 법>

- ① 쌀은 씻어서 불려 놓는다.
- ②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서 줄기를 떼고 채를 썰어 놓는다.
- ③ 쇠고기는 곱게 다져 놓는다.
- ④ 표고와 쇠고기에 간장, 마늘, 후추, 조미료를 넣어 양념을 맛있게 해놓는다.
- ⑤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뜨거워지면
- ④를 넣고 볶다가 쌀을 넣고 물을 부어 끓으면 불을 줄여 은근히 죽을 끓여 조금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는다.

(16) 표고탕수



<재 료>

표고버섯	400	g
녹말가루	1	컵
계란	1	개
복이버섯	10	개
황도	4	쪽
피망	1	개
당근	약간	
죽순	30	g
탕수(육수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2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식용유, 맛소금, 후추			

<만드는 법>

- ① 표고버섯은 불려서 대를 자르고, 반으로 썰고 복이버섯도 물에 불려, 알맞게 썰어 물기를 빼후 맛소금과 후추로 간한다.
- ② 녹말+물+계란을 넣고 반죽을 만든다.
- ③ 표고버섯은 반죽옷을 묻힌후 170°의 기름에서 튀기낸다.
- ④ 황도는 썰어놓고, 당근(얇게 어슷썰기)과 양파(황도모양)도 알맞게 썰어 놓는다. 피망은 잘라서 씨를 털고 큰직하게 썰고, 죽순은 모양을 살려서 잘 썰어 놓는다.
- ⑤ 야채를 프라이팬에 볶다가 물을 부어 익힌뒤 녹말을 육수에 풀어내고 카 맛춘탕수를 부어 걸쭉하게 만든다.
- ⑥ 튀긴버섯을 그릇에 담고, 탕수를 끼얹는다.

2. 관광농업상품의 운영방법

관광농업상품의 운영방법은 실천가능한 체험활동들을 조직화해서 월별 또는 1일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운영요원들은 체험시킬 내용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설명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체험활동만을 위탁받아 실행하는 단체도 많아서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 증대에 손상이 오고 시설이나 지역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양이면 수득증대를 목적으로 관광농촌마을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처음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사의 생존개념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유형, 무형의 관광농업상품의 부가가치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유형 상품(음식물·농산물)판매나 1일방문 관광객의 유치보다는 학생이나 가족 동반의 관광객들이라도 가능하면 체재시간을 늘려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무형관광농업 상품을 많이 판매해야한다. 만약 수용인원이 많을 때에는 조별편성을 해서 활동별로 분할하고 시간차를 두어서 오전, 오후 회전시키면서 시설활용을 높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이나 입지조건만이 아니고 이웃의 문화적 요소나 산업적 요소(공장시설)를 응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 무형의 상품들은 객층을 선택하여 적극적 마케팅(Marketing)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광농업은 근래에 농업생산기술보다는 유통구조개선이 더 중요하듯이 농업경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농업경영 보다는 관광경영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표 4-2> 하품 2 리 년중체험상품 판매계획표

		(월)												판매 대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중·고·학생	가족단위
농사체험	모심기				↔									○	
	벼베기										↔			○	
	감자캐기				↔									○	
	고구마캐기										↔			○	
	과일파기 (참외, 수박, 토마토)				↔	↔								○	○
	벼섯따기				↔	↔	↔	↔	↔	↔	↔	↔	↔	○	○
	도토리따기											↔		○	○
	산뱀따기										↔			○	○
	산나물뜯기(고사리, 두릅)			↔										○	○
	주말농장가꾸기		↔	↔	↔	↔	↔	↔	↔	↔	↔	↔	↔	○	○
농가공체산험	도토리묵만들기	↔	↔	↔	↔	↔	↔	↔	↔	↔	↔	↔	○	○	
	두부만들기	↔	↔	↔	↔	↔	↔	↔	↔	↔	↔	↔	○	○	
	벼섯요리강습	↔	↔	↔	↔	↔	↔	↔	↔	↔	↔	↔	○	○	
자연체험	곤충채집		↔	↔	↔	↔	↔	↔	↔	↔	↔	↔	○		
	식물채집		↔	↔	↔	↔	↔	↔	↔	↔	↔	↔	○		
	자연학습코스		↔	↔	↔	↔	↔	↔	↔	↔	↔	↔	○		
	벼섯박물관		↔	↔	↔	↔	↔	↔	↔	↔	↔	↔	○	○	
	폐수처리환경교육 산림욕		↔	↔	↔	↔	↔	↔	↔	↔	↔	↔	○	○	
오락활동	물놀이				↔								○		
	피크닉	↔	↔	↔	↔	↔	↔	↔	↔	↔	↔	↔	○	○	
	소동물과놀이	↔	↔	↔	↔	↔	↔	↔	↔	↔	↔	↔	○		
	눈썰매타기	→										←	○		
	트림파크	↔	↔	↔	↔	↔	↔	↔	↔	↔	↔	↔	○		
	템버링	↔	↔	↔	↔	↔	↔	↔	↔	↔	↔	↔	○		
	미꾸라지잡기 낚시		↔	↔	↔	↔	↔	↔	↔	↔	↔	↔	○	○	
문화체험	신랑각시바위탐방	↔	↔	↔	↔	↔	↔	↔	↔	↔	↔	↔	○		
	신록사, 세종대왕능탐방	↔	↔	↔	↔	↔	↔	↔	↔	↔	↔	↔	○		
	예절배우기	↔	↔	↔	↔	↔	↔	↔	↔	↔	↔	↔	○		
	민박	↔	↔	↔	↔	↔	↔	↔	↔	↔	↔	↔	○	○	
농산물매	벼섯가공품	↔	↔	↔	↔	↔	↔	↔	↔	↔	↔	↔	○	○	
	벼섯요리	↔	↔	↔	↔	↔	↔	↔	↔	↔	↔	↔	○	○	
	도토리술판매	↔	↔	↔	↔	↔	↔	↔	↔	↔	↔	↔	○	○	
	도토리국수판매	↔	↔	↔	↔	↔	↔	↔	↔	↔	↔	↔	○	○	

〈표 4-3〉 초·중·고 학생 1박 2일상품개발사례

시 간	1 일			2 일
06 : 00				기상(덩덩궁체조)
07 : 00				
08 : 00				아침식사
09 : 00	서울출발			
10 : 00	도 착			환경교육
11 : 00				(폐수처리장활용)
12 : 00	버섯박물관 관람			신특사, 세종대왕능택일
13 : 00	중식(버섯요리)			중식(도시락)
14 : 00	가공체험반	자연학습반	피크닉반	출 발
15 : 00	(묵, 두부만들기)	(동식물채집)	(야외활동)	
16 : 00				
17 : 00				
18 : 00	저녁식사			
19 : 00	전통예절교육			
20 : 00	캠프화이어			
21 : 00				
22 : 00	취 침 (민박 또는 단체숙박시설)			

※ 프로그램일정은 참가자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또는 계절, 우선시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음.

3. 관광농업 상품의 판매전략

가. 관광객유치 표적시장의 선정

우리가 결혼식을 맞이하여 많은 축하객이 찾아 주기를 바라지만 축하금은 고사하고 차린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으면 보통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관광농촌마을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 보려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러가지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구름이 물이 닦치듯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기를 기대하지만 오지 않으면 관광객이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관광농업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판매대상이 단체객위주로 해야 판매 단가가 낮더라도 다량 판매에 의한 총수입이 증대하지 가족단위는 몸만 바쁘고 수익이 적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단체객이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판매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주 5일 근무제도가 확산되는 형편에 발맞추어 금년부터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주 5일제 수업인 “책가방 없는날” 학교수업이 시범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증후들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실시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의 의견조사에서 90% 이상 찬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확대 실천가능성이 높으며 프로그램은 견학, 수련, 실습, 관찰을 내용으로 월 1회 학급, 학년, 학교단위로 실시하게 되어있다. ⁴⁹⁾⁵⁰⁾

49) 문교부, 1995. 주 5일제 수업(책가방없는날)운영방안 지침서

50) 서울 중원국민학교, 1995. 2 책가방없는날 시범학교운영계획서

〈표 4-4〉

책가방 없는 날의 필요성

	아 동	학 부 모	교 사
1. 실시하는 것이 좋다	87.8	92.8	92.1
2. 그저 그렇다	11.9	4.9	7.9
3.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0.3	2.3	0

자료 : 서울 중원국민학교 1995.2. 책가방없는 날 시범학교 운영계획서 p. 4~8

〈표 4-5〉

표적 시장의 잠재수요인원 현황

(서울시 강남지역 초·중·고 학생 현황, 서울시교육청 1994년 현황)

국민학교 현황

구 분	학교수 School (A)	학급수 Classes (B)	학생수 Students(C)		학교당 학급수 Number of class per Schools(B/A)	학급당 학생수 Number of students per class(C/B)	학생구성비		
			계	여자			남 자	여 자	
합계	242	10,541	453,646	214,956	29.69	45.22	52.03	47.96	
국립	1	24	1,040	508	24	43.3	51.2	48.8	
공립	239	10,475	450,530	213,443	44.07	42.87	52.65	7.35	
사립	2	42	2,076	1,005	21	49.5	52.25	74.75	
영등포	공립	19	815	33,444	15,824	42.9	41.0	52.7	47.3
구로	공립	34	1,501	62,795	29,891	44.1	41.8	52.4	47.6
강동	공립	24	1,189	52,337	24,472	49.5	44.0	53.2	46.8
송파	공립	31	1,412	62,382	29,668	45.5	44.2	52.4	47.6
강서	공립	24	1,001	45,425	21,688	41.7	45.4	52.3	47.7
	사립	1	12	595	274	12.0	49.6	53.9	46.1
양천	공립	23	1,062	46,527	22,043	46.2	43.8	52.6	47.4
강남	공립	29	1,106	47,651	22,347	38.1	43.1	53.1	46.9
서초	국립	1	24	1,040	508	24.0	43.3	51.2	48.8
	공립	18	658	26,985	12,584	36.6	41.0	53.4	46.6
관악	공립	20	989	41,367	19,746	49.5	41.8	52.3	47.7
동작	공립	17	742	31,617	15,160	46.6	42.6	52.1	47.9
	사립	1	30	1,481	731	30.0	49.4	50.6	49.4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표 4-6〉 중학교 현황

구 분	학교수 School (A)	학 급 수 Class (B)					학 생 수 Students (C)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계 Total	1학년 Grade1	2학년 Grade2	3학년 Grade3	특수학급 Grade	계 Total	1학년 Grade1	2학년 Grade2	3학년 Grade3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합계	175	6,066	1,927	1,978	2,065	96	316,050	103,238	104,423	108,389	20.58	35.10	35.10	35.28	35.20	
국립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립	133	5,016	1,577	1,629	1,714	96	259,680	84,355	85,687	89,638	37.47	51.66	53.23	52.62	52.34	
사립	42	1,050	350	349	351	0	56,370	18,883	18,736	18,751	24.27	53.66	54.05	53.22	53.28	
영양포	공립	11	418	126	133	143	16	20,889	6,665	6,914	7,310	38.0	50.0	52.9	52.0	51.1
	사립	1	18	6	6	6	0	975	324	327	324	18.0	54.2	54.0	54.5	54.0
구로	공립	18	710	223	232	243	12	36,045	11,875	11,872	12,298	39.4	50.8	53.3	51.2	50.6
	사립	3	66	22	22	22	0	3,479	1,179	1,147	1,153	22.0	52.7	53.6	52.1	52.4
강동	공립	10	44	159	148	133	8	23,87	8,427	8,162	7,222	44.8	53.1	53.0	55.1	54.3
	사립	6	156	50	53	53	0	8,574	2,663	2,979	2,930	26.0	55.0	53.3	52.4	55.3
송파	공립	18	718	222	231	248	17	36,994	11,855	12,002	13,137	39.9	51.5	53.4	52.0	53.0
	사립	6	174	58	58	58	0	9,193	3,099	3,027	3,067	29.0	52.8	53.4	52.2	52.9
강서	공립	9	285	102	86	93	4	14,604	5,099	4,469	5,036	31.7	51.2	49.9	52.0	54.2
	사립	6	130	46	42	42	-	7,199	2,596	2,311	2,292	21.7	55.4	56.4	55.0	54.6
양천	공립	15	671	209	231	221	10	36,184	11,882	12,464	11,838	44.7	53.9	56.9	54.0	53.6
	사립	3	56	18	18	20	-	3,076	1,026	973	1,077	18.7	55.0	57.0	54.1	53.9
강남	공립	17	571	174	186	206	5	30,135	9,335	9,833	10,967	33.6	52.8	53.6	52.9	53.2
	사립	6	162	54	54	54	-	8,762	2,910	2,918	2,934	27.0	54.1	53.9	54.0	54.3
서초	공립	12	425	124	139	156	6	21,620	6,550	7,167	7,903	35.4	50.9	52.8	51.6	50.7
	사립	3	99	33	33	33	-	5,166	1,706	1,740	1,720	33.0	52.2	51.7	52.7	52.1
관악	공립	11	396	120	127	140	9	20,377	6,378	6,729	7,270	36.0	51.5	53.2	53.0	51.9
	사립	4	96	32	32	32	-	5,032	1,706	1,688	1,658	24.0	52.4	53.3	52.1	51.8
동작	공립	12	374	118	116	131	9	19,021	6,289	6,075	6,657	31.2	50.9	53.3	52.4	50.8
	사립	4	93	31	31	31	-	4,914	1,672	1,646	1,596	23.3	52.8	53.9	53.1	51.5

〈표 4-7〉 고등학교 현황

구 분	학교수	학 급 수 Class(B)				학 생 수 Students(C)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129	5,273	1,782	1,758	1,733	260,262	88,950	86,526	84,786	30.12	46.28	46.95	45.93	45.93	
국립	1	9	3	3	3	361	123	119	119	9.0	40.10	41.00	39.70	39.70	
공립	42	1,562	541	515	506	76,775	26,922	25,141	24,712	37.34	49.22	49.83	48.89	48.82	
사립	86	3,702	1,238	1,240	1,224	183,126	61,905	61,266	59,955	44.04	49.54	50.02	49.48	49.27	
영 양 포	공립	6	216	72	72	72	10,468	3,511	3,478	3,479	36.00	48.50	48.80	48.30	48.3
	사립	2	110	36	39	35	5,730	1,860	2,033	1,837	55.0	52.10	51.70	52.10	52.50
구 로	공립	4	144	48	48	48	7,021	2,357	2,337	2,327	36.0	48.8	49.1	48.7	48.5
	사립	10	465	150	160	155	23,346	7,659	8,030	7,657	46.5	50.2	51.1	50.2	49.4
강 동	공립	1	45	15	15	15	2,186	734	723	729	45.0	48.6	48.9	48.2	48.6
	사립	10	479	159	162	158	23,495	8,018	7,911	7,566	47.9	49.1	50.4	48.8	47.9
송 파	공립	7	251	82	87	82	12,391	4,106	4,265	4,020	35.9	49.4	50.1	49.0	49.0
	사립	8	412	138	137	137	20,280	6,836	6,728	6,716	51.5	49.2	49.5	49.1	49.0
강 서	공립	2	46	22	12	12	2,315	1,129	595	591	23.0	50.3	51.3	49.6	49.3
	사립	16	708	239	236	233	34,991	12,001	11,679	11,311	44.3	49.4	50.2	49.5	48.5
양 천	공립	3	109	37	36	36	5,387	1,860	1,785	1,742	36.3	49.4	50.3	49.6	48.4
	사립	9	351	115	118	118	17,335	5,702	5,862	5,771	39.0	49.4	49.6	49.7	48.9
강 남	국립	1	9	3	3	3	361	123	119	119	9.0	40.1	41.0	39.7	39.7
	공립	6	232	84	74	74	11,431	4,198	3,590	3,643	38.7	49.3	50.0	48.5	49.2
	사립	12	441	155	143	143	21,667	7,583	7,015	7,069	36.8	49.1	58.9	49.1	49.4
서 초	공립	6	228	82	74	72	11,236	4,066	3,601	3,569	38.0	49.3	49.6	48.7	49.6
	사립	5	244	82	81	81	12,012	4,064	3,969	3,979	48.8	49.2	49.6	49.0	49.1
관 악	공립	4	150	50	50	50	7,235	2,461	2,420	2,354	37.5	48.2	49.2	48.4	47.1
	사립	10	351	117	117	117	17,431	5,877	5,798	5,756	35.1	49.7	50.2	49.6	49.2
동 작	공립	3	141	49	47	45	7,105	2,500	2,347	2,258	47.0	50.4	51.0	49.9	50.2
	사립	4	141	47	47	47	6,839	2,305	2,241	2,293	35.3	48.5	49.0	47.7	48.8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자연학습활동, 2학년 때에는 수학 여행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수학여행도 꼭 먼 지역에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희망에 따라 근교 지역에서 자연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명한 관광지 주변의 관광농촌마을에서 수학여행온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한강이남의 초·중·고등학교를 유치권으로 설정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유치전략

1) 관광농촌마을 조성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므로 뉴스의 초점이 되도록 각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사보 등에 보도 및 기사자료를 발송하고 섭외활동을 전개한다.

2) 한강이남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학년주임선생님을 상대로 섭외활동을 전개하여 자연학습의 장소가 되도록 한다.

3) 각종 여성단체(YMCA 어머니회, 소비자단체, 농촌을 생각하는 여성모임)이나 종친회, 기업체(특히 도농교류 희망업체), 행정기관, 서울소재 농협및 각종 은행을 상대로 교류협정 또는 회원제를 모집한다.

4) 버섯요리강습회 또는 산채뜻기, 버섯아가씨 선발대회등 이벤트행사를 계절별로 개최한다.

5)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농산물임을 강력히 홍보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지역특산물을 선전비의 범위내에서 선물한다.

6) 서울에 자매결연업체(기업체, 농협)등의 건물일부에 직매센타를 개설하여 처음에는 선전기간(1년)으로 설정하여 산지출하격으로 판매하고 특산물의 쇼핑센타가 도도록하며 이곳에서 관광객유치업부와 택배등의 역할이 이루어지게 한다.

7) 이용단체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책임자를 선정해서 각종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이용실적이 있을 때는 매출액의 10%는 사례비조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하여 친지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것은 다음 기회의 재방문과 구전에 의한 효과가 크다.

8) 제 2의 고향회원을 모집한다.

이상과 같은 활동들은 “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또 생사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일념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지는 원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제 3 절 사업추진 계획

1. 운영주체의 선정과 추진체계

관광개발에 있어서 운영주체를 대별하여 보면 첫째 개인기업에 의한 단독개발 둘째, 지역민에 의한 협동개발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영개발 그리고 요즈음 일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 3섹타에 의한 민관개발방식이 있으나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관광농촌개발사업을 개발에 관한 지식은 차지하더라도 누가 뜻심있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길 닦는데 땀흘리기 보다는 행차하며 실속을 챙기려하는 마당에 최고 경영자로 나서서 희생을 각오할 사람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최고경영자란 첫째, 관광농업에 대한 개발지식이 풍부하고 둘째, 칭찬은 없어도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 쏟아지는 비판과 비웃음을 참고 견디며 인화에 힘쓸줄 알아야하고 셋째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서 개발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품 2 리에는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대동계가 있고 농민단체로 마을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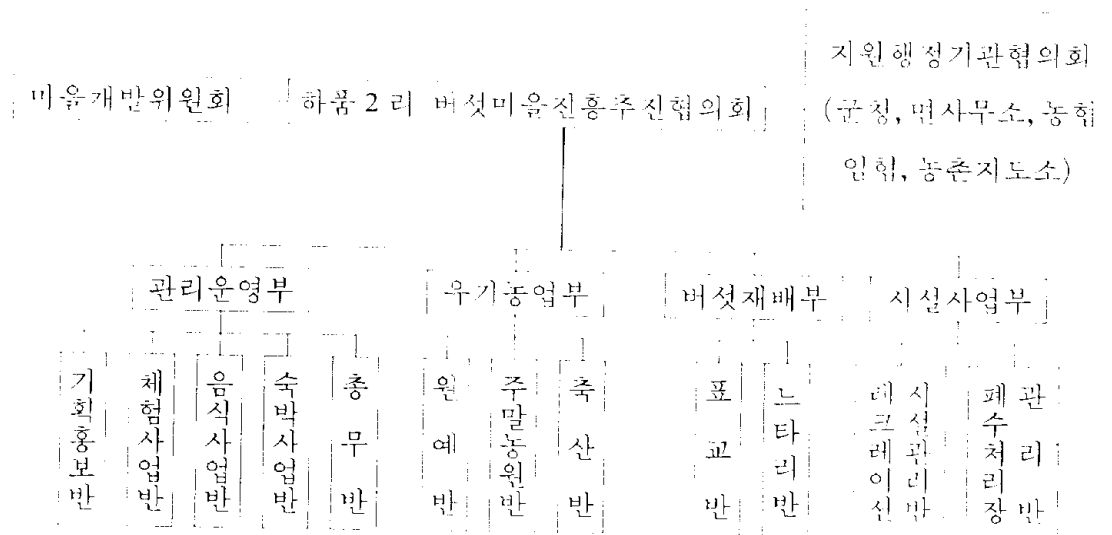
제 4 장 관 리 및 운 영 제 회

위원회(10명), 표고, 느타리 작목반(15농가), 부녀회(35명), 영농후계자 1명(32세)이 있다. 그리고 현지에 토지를 소유(1만평이상 2명, 1000평~5000평 3명)하고 관광개발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6명 정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관광개발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현지주소 외지인 구름(미술가 10호)도 있다. 그밖에도 관광개발지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외지에 거주하며 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40인이나 된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인(현지주민, 토지소유외지인, 관계행정기관등)을 총 망라한 공청회를 통하여 추진협의체구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추진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하품 2 리 버섯마을추진협의회(가칭) 조직표



따라서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의조정
- 각종이벤트의 기획, 개최

- 홍보, 판매의 일체적 실시
- 영농기술, 경영연수, 인재육성
- 지역특산물의 개발
- 각종시설의 관리운영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의견조정
- 개발사업에 대한 선정 및 규제의 규칙제정
- 마을의 장단기 발전계획

그리고 각종 기구의 구성 및 참여인원수는 이해관계인이 능력과 희망에 따라 참여하여 구성인원수가 기구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고 중복가입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운영의 주체는 표고버섯작목반 사람들이 영농에 기반을 가지고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주체가 될 것이고 U 턴인구도 발생하여 능력, 희망에 따라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소농이거나 비농가는 새로운 일거리로 소득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토지소유 외지인들도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개발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나 대대손손 마을을 지켜온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융화에 힘을 써야하며 또한 지역주민도 배타심을 버리고 그들의 일을 도와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렇게하여 의욕있는 외지인의 힘을 마을발전에 응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또 간접적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예를들면 버섯재배에 관한 기술 및 자금지원은 산림조합과 광주 버섯연구소(진흥원산하),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및 지원은 농촌지도소와 농협, 정책자금의 지원이나 기반조성은 행정기관(군, 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분명히할 추진체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농업 또는 관광농촌마을의 조성이란 것이 희망적이기는 하나 아직 생소한 점이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잘 모르는

형편이기 때문에 영농후계자를 비롯한 각자의 업무를 위해서 전문가의 초청강연, 국내, 해외의 연수 그리고 경영, 세무처리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

2. 제 3 섹타의 도입과 추진방법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개발의욕은 높지만 경영개념과 개발지식은 부족하다. 그러나 상기에서 거론한바와 같이 현지의토지를 소유한 외지인이 많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불가분한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들 구성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제 1 섹타(국가, 지방자치단체)

- 1) 국가보조융자사업에 의한 기획, 인허가 절차가 용이하다.
- 2) 용지취득의 설득력이 강하다.
- 3) 환경보전관리가 쉽다.
- 4) 반면 계획변경에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린다.
- 5) 시설정비후 사후관리 책임이 약하다.
- 6) 관광사업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많이한다.

-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버섯박물관)
- 지역주민등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사업(저온저장고, 위탁판매소)
- 개발실험적 성격의 사업(시범사업)
- 지역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사업(폐수처리시설등)
- 법령등에 의한 지역의 유지보전상 필요한 사업(열린농정사업)

나. 제 2 섹타(주민, 기업(외지인))

- 1) 지역주민의 사업참가가 용이하다.

- 2) 농업에 대한 일상활동, 체험을 통해서 세심한 계획의 수립
- 3) 반면 종합적인 기획력, 자금력의 부족
- 4) 지역의식에 의한 이기주의, 배타성이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많이한다.

- 사경제에 의한 수익사업(민박, 음식점)
- 사업효과의 귀속이 극히 일부 특정인에 편향된 사업(데크레이션시설 사업)

다. 제 3 섹타(민관협업체)

- 1) 제 1 섹타와 제 2 섹타의 기술지식을 창출해서 종합적사업을 할 수 있다.
- 2) 기획력, 자금력이 충실해진다.
- 3) 신기술 도입, 경영의 판단결정이 빠르다.
- 4) 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 5) 지역출신직원의 경우 지역주민의견에 얽매이기 쉽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많이한다.

- 시설내용과 취급내용이 다양해서 종합전문적인 분야를 포함한사업
- 자금규모, 시설규모 등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

상기와 같이 각 섹타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제 3 섹타 개발방식의 도입시에는 그 역할의 분담을 명확히 해야한다.

그리하여 사업추진은 각 사업주체간에 협력, 연대관계의 상호의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각 섹타관계에서 일반행정기관과 유관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자조노력과 창의성 확립을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 섹타간의 역할을 분담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1) 제 1 섹타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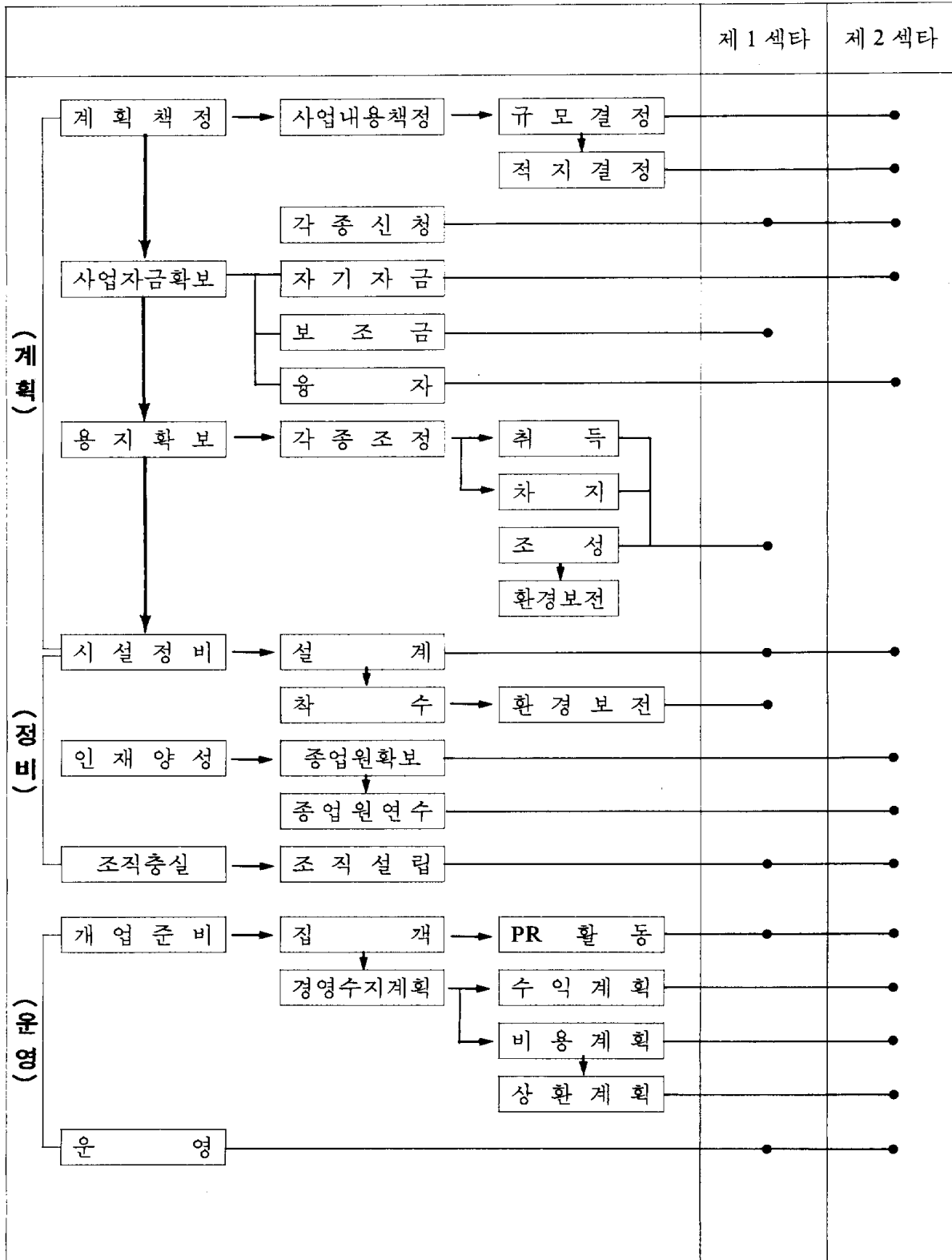
- 재정적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사업에 의한 보조, 용자지원 등(휴양단지사업 등)
- 관련사업지원 :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도로동기반 정비, 관련시설, 주변장비시설 유치
- 환경보전 : 녹지사업(수종갱신), 환경보존사업(폐수정화시설)의 유치

2) 제 2 섹타의 업무

- 인재의 확보 및 육성 : 종사자의 확보, 종업원의 연수, 출향인의 U 턴 유도
- 조직의 확립 : 조직의 확립 및 강화, 조기퇴직기업인 고급공무원 확보
- P.R 활동 : 각종 PR 활동, 이벤트행사기획 실시
- 신기술의 도입 : 재배기술, 공해처리기술 등

이상의 역할분담및 추진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4-9 와 같다.

<표 4-9> 업무의 전개 및 분담모식도



제 4 장 관 리 및 운영지 회

이상의 주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주체 또는 운영주체로써 역할을 분담한 통합조직이 만들어지면 각 주체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 시작된다.

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계획의 수립이다. 이것은 개발의 목적과 방향, 개발의 범위, 입지조건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내용, 규모, 배치, 자금동원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유인력(유치방법)이다.

둘째, 이렇게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를 통해 설명회를 갖게 되는데 투자지분에 대한 개발이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

셋째, 개발이익의 결정은 각자 출자지분 토지나 자본에 대하여 2 개기관 이상의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여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이익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희토지는 필요없지만 영농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개발기간의 출자지분이자도 계산해야 한다.

넷째, 출자금액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이다. 이것은 거짓숫자의 조작을 적발하거나 사업의 정확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다섯째, 운동장이나 잔디밭, 화장실 등 공유토지면적은 사지(인대)비용으로 보상함이 매수 제보다 자금부담이 적다.

여섯째, 개발이익의 독식 또는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조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교환 등 당초에 시설계획과 어긋나서 어지러운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3. 이익의 배분방법

우리속담에 메기의눈이 암만 적어도 자기먹을 것은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와같이 이익의 배분문제는 아주 예민하고 사업의 시작과 진행,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언급하면 백화점식 경영이 좋다. 이 방법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공용용지(주차장, 광장 등)는 차지(임대)보상하고 그 이외의 토지(지역)에서 사업은 능력에 따라 참여를 유도한다.

예를들면 숙박사업(민박, 단체숙박시설)과 유기농업 같은 소자본으로 가능한 사업은 지역민 또는 외지인이 각자 운영하여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대자본이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박물관 같은 것은 외지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한다. 이 때 동원된 정책자금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배당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은 다시 재투자되도록 유도한다.

하품 2리의 경우 일반적인 단독개발방식에 의한 이익독점이 아니고 어느 한 섹터의 사업만으로는 사업존립이 어렵고 버섯박물관(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레크리에이션시설(외지인), 숙박 및 음식(외지인 또는 지역주민), 유기농업(지역주민)등 각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 일심단결할 수 있는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용지의 확보는 매수와 차지(동의임대)방식이 있는데 매수의 경우는 자본부담이 많아 차지(임대)하도록 설득 또는 동의에 의해서 토지신탁, 국공유지의 신탁, 등가교환, 사업수탁 등의 방법으로 외부 자본과 결탁한 총괄개발운영이 되도록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한 이익배분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지방식은 대개 유희농지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민박이나 음식판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외부자본의 도입은 선의에 자금도입이 중요하다. 즉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으로써 보호되어야하고 출향외지인의 고향대한 보답이라든가 농촌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의 유입이 좋다. 그래서 아흔아홉섬농사꾼이 한

섬지기농사꾼의 몫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진자가 베풀고 없는자는 베푸는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생이익이 적을 때는 소액투자자는 정상 배당하고 고액투자자는 소액 또는 무배당도 고려할 수 있다.

제 4 절 개발상의 문제점

1. 사업추진상의 문제

관광농촌마을조성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마을전체(59 호, 8,082,357 m²)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토지이용계획상 수익발생시설용지와 비수익발생용지인 공공시설용지 확보의 문제이다. 또 수익발생지역(민박, 개인음식점, 레크리에이션)이라도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사업추진비용이 없을 때 어떻게 조화있게 추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시설 및 민박시설의 개보수도 정부의 정책자금(융자)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용지(주차장)의 확보는 마을전체의 발전이란 대명제의 설득하에 차지로 확보함이 투자비 절감 등에도 좋다.

둘째, 현행법상 사업추진방법으로는 농어촌 정비법상의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는 없는데 그 규모가 3 만평으로 되어 있고 시설용지의 적지선정상 마을전체에 산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인허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연결될지 3 만평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산재한 지역의 시설용지가 마을전체면적의 시설허가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가 문제시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지역개발형 관광농업 개발사업으로써 새로운 지침이 요구된다. 즉 농촌문화마을사업의 형태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추진에 있어서 운영주체가 제 3 섹터방식을 도입할 때 농어촌 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축협, 수협, 임협, 농지개량조합만이 사업시행자로 정해져 있는바 이들 경영주체가 얼마한 아량을 가지고 마을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또 어느분야를 지원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또 이들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확보한 시설용지가 없어서 매입하든가 아니면 차지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어차피 지역주민과 협의하게 되므로 단독개발 또는 공영개발보다는 차지방식이나 토지평가(감정)에 의한 지분인정으로 제 3 섹터 추진방식이 좋다.

넷째, 시설이용료의 징수문제이다. 민박이나 음식점 개인사업은 모든 수입이 개인에게 돌아가나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은 투자비가 많은데 비하여 이용객이 적으면 누가 투자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시설투자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시설투자자에게 부속시설 또는 인근지역에 매점 또는 식당운영권을 배려하든가 무형상품(체험상품) 판매 때 패키지(Package) 상품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버섯박물관에 인접한 식당이나 기념품점은 처음에는 공동운영한 다음 고객이 많아질 때 개인영업을 시작하게 협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 지역주민, 시설투자자(레크리에이션), 공동투자자의 이익이 균등 배부되도록 사전조정방식이 필요하다.

2. 법률상의 문제

관광농업(관광농촌마을)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관계적용법률이 차이는 있겠으나 농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법률이 관계하고 있다. 하품 2 리 지역에서도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제 4 장 관 리 및 운영계획

첫째, 국토이용관리법 제 15 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경지지역에 해당되므로 농축산업에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의 행위는 제한을 받음. 따라서 제 21 조 우휴지의 개발 등 요건에 의한 용도 변경이 필요함(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휴양단지)

둘째,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0-15 필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관리 지역으로서 200 평 이상의 건물은 건축이 불가하므로 단체숙박시설이나 버섯박물관의 건축을 분리 또는 범위내의 건축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1인 명의에 건축물신청이 불가하므로 공동운영시설이라도 여러사람이 각각 별도 시설물건축허가 신청을 해야함.

셋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전용허가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나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휴양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대체조성비용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 면적이 지번별로 여기저기 분리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처리관계상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음.

넷째, 국토이용관리법 산림개발법상 보존임지내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임지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근래 산지의 레크리에이션적 이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산림개발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현재추진중).

다섯째, 하천법 제 25 조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야만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의 휴양단지를 지정받으면 문제없음.

여섯째, 민박경영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여인숙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영업이 가능함.

일곱째, 단체의 급식이나 매점의 판매업은 공중위생법에 규정할 시설기준에 맞아야하며 정기적인 위생검열을 받아야 한다.

여덟째, 환경영향평가법 제 4 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기준에 의거 3 만 평 이상 관광내지 산지의 개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되어 있어 그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기간도 거의 1 년가까이 걸린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 지역개발형 관광농촌마을 조성사업은 현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대상면적이 넓다고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아홉째, 건축법 제 8 조 1 항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과 개발촉진 지역중 시설용지지구는 연면적 200 m² 이상이거나 3 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가 필요함.

열번째, 눈썰매장이나 트림파크같은 레크리에이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료를 받으려면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알맞은 시설기준에 맞아야한다. 그러므로 눈썰매장 같은 것은 지형조건에 맞게 조그만하게 조성하여 서비스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고 트림파크는 제규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요금으로 받고 무료서비스 제공한다.

열한번째,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때는 각종 세금과 관계없이 율농지세 정도의 적용을 받으나 가공 또는 조리하여 판매할때는 허가기준이 까다롭고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순수농민만이 영농조합법인체를 조직하여 운영할 때면 소득세, 지방세 등 혜택이 많다. 이 때 영농조합법인 조합에 외지인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투자지분에 제한이 있고 막대한 개발자금이 필요하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단지 개발범위와 행위에 한계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S.O.C 법)으로 추진하면 대규모개발이 가능하고 상기에 기술한 법적 제한행위와 농지 및 산림의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또는 조림비, 수도권 정비법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그리고 S.O.C 법 제 50 조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S.O.C 법 규정 제 2 조 3 의 제 2 종 시설 규정에 농어촌정

제 4 장 관리 및 운영계획

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삼입하든가 앞으로 개정 검토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면 편리하므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 95 조 조세감면규정도 조세감면규제법 내용에 포함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 때 제 3 섹터의 운영주체가 모든 사업을 직영하게 되면 각 사업별 세금부과의 복잡성 방지를 위한 관광농원사업의 과세감면대상사업으로의 인정이 필요하다.

제 5 장

투자계획

제 5 장 투자계획

1. 기본 방향

- 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참여 형태를 구분한다.
- 나. 민간 사업 부분은 현 거주민,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한다.
- 다. 산간 농촌의 실제적 이미지와 풍경을 살리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발을 원칙으로 삼아 불요 불급한 투자비 발생을 억제한다.
- 라. 각종 정책 금융의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2. 투자자원 조달방안

가. 공공 부분

- (1) 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방 재정 계획
- (2) 중앙 정부, 광역 단체의 정책 금융 적극 활용
- (3) 일부 수익 사업에 대한 직영 또는 임대 운영
- (4) 공공 사업으로 시행한 시설의 이용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 (5) 상수원 보호 구역에 따른 수요자의 환경 보호 부담금 징수정책건의

나. 민간 부분

- (1) 민간 투자자 및 민간 기업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금융, 세제, 기타 정보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2) 현 주민의 개인 또는 영농법인 결성을 통한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치
- (3) 지역내 기업들의 참여를 우선 배려하고 유도하며 지역 연고 기업들을 적극 유치

다. 정책자금 활용방안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관광농촌마을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농림수산사업 정책자금 현황

사업명	지원내용	활용대상(하포리)사업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	농어민 5호이상일 때, 단지당 2.5 억	버섯재배
휴양단지개발사업	시장, 군수가 직접 개발할 경우 단지당 20 억	휴양단지내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농업생산부대시설
관광농원개발사업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농민 4.5 억 이내	관광농원내의 시설및 작물입식 등 기반시설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농어가 5 호 이상 참여시 2 억 이내 농가당 1 천 만원	민박시설 개보수 또는 증개축
관광목장 조성사업	1 개지구당 20 ha 내외 토지확보 가능지역, 사업주체 : 도지사 15 억(자부담 30%)	토지, 가축, 민박시설, 휴양 및 운영시설 기타부대시설(주차장, 관리실 등)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주체 : 시군농촌지도소장(농가당 210 만원)	민박시설 개보수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250 평 내외 10 억(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사업주체 : 시도지사	기념품판매량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면개발계획의수립 내용의 사업면당 39 억(보조 30 억, 용자 9 억), 사업주체 : 시장, 군수	도로정비, 다목적복지회관, 주택정비 농어촌산업개발, 환경보전시설
집단마을조성사업	정주권면단위중심마을에 지구당 3년 내외에 50 억(보조 20, 용자 30) 사업주체 : 시장, 군수 및 사업자(주민)	농어촌 주택단지, 상하수도, 마을도로, 편익시설 등 농업기반 및 소득원 개발과 병행, 연계추진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마을의 오·폐수처리 지구당 4 억 내외 사업주체 : 시장군수	오·폐수 처리 시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시설사업	농가, 특밥 군상재배 3 억이내, 기타 1 억이내	표고버섯 및 산나물, 약초, 야생화생산, 임산물저장시설
표고재배시설현대화 사업	표고 재배자 및 단체 5 천만원(보조 30%)	표고 버섯 재배단지 구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유림 30 ha 이상 설계예산액의 70% 용자(자부담 30%) 12 억, 국공유림(전액보조)	휴양림 조성
산촌종합개발계획사업	산촌정주권개발과연계, 다목적 소득원 개발지역 휴양림등, 사업주체 : 군수	휴양림, 산촌마을 소득사업
상수원보호환경농업단지조성	농가당 4 천만원 용자 사업주체 : 농협	유기농업 채소재배

3. 사업 분야(시설) 별 투자주체 검토

본 사업의 성격을 공익성, 수익성, 경영 능력, 재정 능력, 민자 유치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투자.

가. 공공 투자

- (1) 기반시설과 공익시설 부분
- (2)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분

나. 민간 투자

- (1) 현 주민이 소유 토지를 바탕으로 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사업
- (2) 지역 주민 또는 기업의 투자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

다. 제 3 섹터, 또는 조인트 섹터(3 자협동개발방식)

- (1) 대규모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
- (2)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사업

라. 사업별 투자 주체 분석

〈표 5-2〉 사업 주체별 검토

사업주체	장 점	단 점	비 고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이 용이 ○재원 조달이 안전 ○각종 행정 처리 용이 ○종합적 균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의 마찰 ○정부사업으로서 편중 ○지자체 재정자금부족시 사업시행 곤란 ○보수적 경영 ○공익성 치중 	
민간기업 또는 민간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이 용이 ○사업 추진이 빠름 ○축척된 노하우 활용 ○적극적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친 수익성 치중 ○종합적 균형 개발 곤란 ○재원 조달의 어려움 	
제 3 섹터 또는 조인트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자본 유치로 대규모 사업 가능 ○민·관의 장점 활용으로 인한 상승효과 ○독립된 조직으로 독립성과 기동성 유지 ○민간기업의 경영노하우 활용 ○유능한 인재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의견 대립 ○공동출자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공익성 보다 사업성 치중 ○역할 분담의 불명확으로 인한 경영 책임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섹터 : 지자체 + (민간 기업, 금융기관) * 조인트섹터 : 지자체 + 민간 기업 + 지역주민

〈표 5-3〉 사업(시설) 별 투자 주체 검토

사업분야	투 자 주 체			비 고
	공공투자	제 3 섹터, 조인트섹터	민간투자	
버섯재배장	×	△	○	
버섯저장·가공장	○	△	△	
버섯박물관	○	△	×	
주말농장	×	×	○	
양어장	×	×	○	
단체숙박시설	△	△	○	
민박	×	×	○	
토속음식점	×	△	○	
기념품판매장	×	×	○	
피크닉장	○	×	×	
눈썰매장	×	△	○	
트림파크	×	×	○	
가족골프장	×	×	○	
산림욕장	○	×	×	
자연학습장	○	×	×	
광장	○	×	×	
주차장	○	×	×	
진입로 정비	○	×	×	
상수도	○	×	×	
하수도	○	×	×	

○ : 양호 △ : 보통 × : 부적합

4. 자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공 공	민 간	제 3 섹터, 조인트섹터	비 고
투자비 (구성비)	6,185 (100 %)	1,771 (29 %)	4,414 (71 %)		

가. 시설별, 자원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공 공	민 간	제 3 섹터, 조인트섹터	비 고
계	6,185	1,771	4,414		
영농시설	3,068	240	2,828		
전시, 판매시설	1,050	660	390		
숙박시설	990		990		
레크레이션 및 학습시설	296	90	206		
기반시설	735	735			
편익시설					
기 타	46	46			

나. 시설별 세부 투자비

(단위 : 천원)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	건설비			투자 년도	비 고
			연면적(㎡)	단 가	금 액		
영 농 시 설	버섯재배장	100,000	간이시설 : 56,000	30	1,680,000	'97. 2001	버섯재배시설 : 부지면적의 70% 3,000㎡당 창고 (30㎡) 1개소
			영구시설 : 14,000	70	980,000	'99. 2001	
	버섯저장고	500	150	600	90,000	'99	
	버섯가공장	500	150	1,000	150,000	'99	
	주말농장	30,000	300	160	48,000	'97	
	양어장	6,000	3,000	40	120,000	'97	
	소 계				3,068,000		
전시 판매 시설	버섯박물관	3,300	660	1,000	660,000	'97	
	토속음식점	1,500	300	700	210,000	'97	
	기념품판매소	1,500	300	600	180,000	'97	
	소 계				1,050,000		
숙 박 시 설	단체숙박	5,000	1,000	700	700,000	'99	민박20호×30㎡
	민 박		600	400	240,000	'97	
	다용도하우스	2,400	1,000	50	50,000	'97	
	소 계				990,000		
레크 레이 션시 설	피크닉장	40,000	40,000	2	80,000	'97	
	눈썰매장	1,500	1,500	100	150,000	'97	
	미니골프장	900	900	50	45,000	'97	
	트림파크	600	5종	1,000	5,000	'97	
	소동물원	100	100	60	6,000	'97	
	자연학습장 및 산책로	1 km	1 km	10	10,000	'97	
	소 계				296,000		
기 반 시 설	광 장	6,000	6,000	10	60,000	'98. 2000	2개소, 1개소 20㎡ 8개소, 1개소 20㎡ 광장, 주차장, 중심 지구진입로
	주차장	11,000	11,000	6	66,000	'98. 2000	
	진입도로정비	1 km	1 km	30,000	30,000	2000	
	상수도	1 식	1 식	150,000	150,000	'98	
	폐수처리시설		1,000	275	275,000	'98	
	주차관리시설		40	200	8,000	'98. 2000	
	화장실		160	600	96,000	'98. 2000	
	공공지역조경		1 식		50,000	'98. 2000	
	소 계				735,000		
편 익 시 설	파고라		4 개	3,000	12,000	'97	
	벤치		12 개	500	6,000	'97	
	음수전		3 개소	3,000	9,000	'97	
	휴지통		30 개	100	3,000	'97	
	안내판		3 개소	2,000	6,000	'97	
	기타				10,000	'97	
	소 계				46,000		
	총 계				6,185,000		

5. 수익성 분석

수익성 분석은 분야별 시설 투자비와 유지관리비(물품비, 인건비 등), 자본이자, 분야별수익, 영업외수익 등을 총괄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관광농촌마을 조성 방법에 관한 연구이고 기본 계획적 성격이 강하므로 자세한 분석은 실시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음 사항을 전제로 분석한다.

가. 투자계획은 전액 고정투자 개념을 적용했다. 그리고 추가 투자 및 유지관리비 자본이자는 계상하지 않았다.

나. 유치목표는 '95 년도 내방 객수를 년 3 만명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매년 여주군 관광객 증가율 10% 를 적용했고 목표년도(2001 년) 유치객 수는 시설 완료시 3.5 배의 유인흡인력 발생과 표적시장의 잠재 관광객을 적극적 마케팅으로 15 만명 유치할 것을 전제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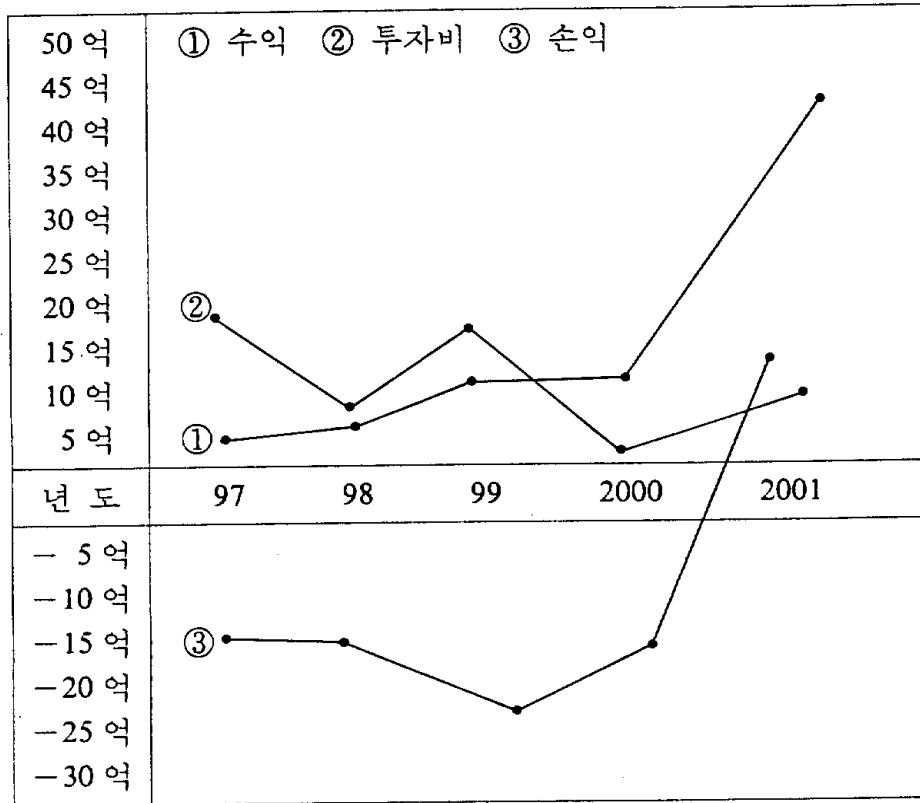
다. 1 인당 객단가는 선행연구의 '92 년 전국관광농원에서 평균소비액이 2 만원⁵¹⁾이므로 년평균 물가상승율 10% 를 가산적용 했다.

〈표 5-3〉 수익성 분석

(단위: 천원, 명)

내용	년도	'97	'98	'99	2000	2001
투자		2,186,000	901,000	1,766,000	506,000	826,000
수	유치목표	33,000	36,300	40,000	44,000	150,000
	객단가	20	22	24	26	28
	금액	660,000	798,600	960,000	1,144,000	4,200,000
손익		-1,526,000	-1,628,400	-2,434,400	-1,796,400	1,577,600

51) 류선무, 1992, 한국관광농업의 운영실태분석과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p. 107 한국관광학회지.



〈그림 5-1〉 수익성분석

제 6 장

결 론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이 국가를 형성한 이래 농업정책을 실시하여 왔고 상당액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농업은 산업구조상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였고 UR 협상 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운 형편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해야 할 일도 많고 농촌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한 두가지만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니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이고 경지 면적이 대략 200만 ha 일때 그 활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면 산림 정책은 조림사업에 성공하여 산림녹화사업에는 성공하였으나 형편없는 목재가격으로 식재인건비, 관리비가 안나오므로 2차적인 활용대책으로 레크리에이션적 이용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물론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는 있으나 자연보호의 개념이 보존, 보전, 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전적 활용 대책으로 계몽·선도하여 실천해야 한다.

농지는 200만 ha 중 117만 ha가 한계농지이고 이 중 유희농지(4.5%)가 자꾸 증가하는 형편이 있어 농업진흥 지역은 계속 농사에 전용될 것이나 한계농지는 농업적 이용과 비농업적 이용으로 활용대책이 시급하다.

농업적이용은 기반조성(경지정리)에 의하여 기계화, 시설화된 유기농업의 도입으로 소비자 욕구에 알맞는 농축수산물 생산을 하는 환경 농업이 유리할 것이고 비농업적 이용 방법은 공업·건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농공단지, 주택단지가 될 것이고 입지 조건이 불리한 산골짜기 다락논밭

등 유희농지는 레크리에이션적 이용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때 레크리에이션적 이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광개발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반적인 관광개발은 일정 면적 또는 기존 관광지에 희망도입 시설을 투자하여 자기의사대로 개발되는 반면 관광농촌 마을 개발이란 토지이용의 제약, 기존생업과의 연결, 행정기관의 지원 등 농업기반에 관광관련 지식(시설)이 접목되는 것이므로 제약요소들이 많아서 농업에 관한 지식, 이해가 없으면 사업계획의 수립이 어렵다. 또 이러한 사업계획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농촌자원을 응용해서 형편을 좀 좋게 활성화하는 것이지 일반 대그룹이나 기업처럼 때돈을 벌거나 팔자를 고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업시도자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겠지만 관광농촌 마을이란 입지의 한계성 때문에 똑같은 학력과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월급에 차이가 있듯이 그 관광농촌 마을의 자원성(관광자원), 접근성(교통조건), 자금력, 면적, 영농기술, 지도자의 유무 등에 따라서 활성화의 사업 추진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입지의 한계성이란 관광의 발전 법칙에서 도입시설의 선택, 투입과 관광잠재시장의 개척으로 활성화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관광농촌마을은 중소기업농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가 재검토 되지 않으면 안된다.

1. 인재의 육성

일반적으로 관광개발계획(기본계획서) 또는 관광농촌 마을 조성 계획서라 할지라도 기초자료조사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그 계획서의 아름다운 조감도와 여러가지 미사어구는 어디까지나 계획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이지 지역주민의 생각과 실천의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촌활성화의 뜻을 갖고 있는 농촌지도자가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지도자란 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농촌환경의 보전, 사업참여자에 대한 책임, 농업 후계자의 육성, 관광농촌 마을이용자에 대한 여러가지 욕구 충족(서비스, 요금, 기분좋은 농산물제공) 등 경영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농촌지도자는 요즈음 하이테크 영농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농과대학에 R.O.T.C 장학제도와 같은 농군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육성되고 졸업 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농촌발전에 핵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지도자에 의해서 관광농촌 마을 계획서가 작성되고 그러한 주관적 역할에 주위의 전문가나 행정담당자가 도와 주는 형식이 되어 스스로 개척 의지가 있어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

그외에 조기 명예퇴직자(기업체간부·고급공무원) 중 농촌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농업)시켜서 농촌에 집을 짓고 농사판 할 수 있게 토지를 제공하여 유인하고 이들은 그간의 노하우와 노령을 농촌을 위해서 자원봉사 한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농촌에서 유인 흡수해야 한다.

2. 관광농촌마을의 개발 범위와 모델 설정

관광농촌마을을 조성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선진 사례를 보고 배워서 자기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나 자기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은 어느 곳이고 없다. 다만 유사한 모델을 보고 연구하여 자기지역 개발에 지식으로 취사선택하여 응용할 뿐이다.

이때 자기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어떠한 성격의 관광농촌마을을 조성할 것인가는 그 지역의입지가 관광적입지가 강한지 농업적입지가 강한지를 검토하여 그 비율의 중심을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생각 해야 한다. 대략 선행연구(한국관광농원의 실태분석과 소득증대방안 : 류선무)에서는 그비율이 50 : 50 으로 나타났고 정부에서는 40% 이상을 농업적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때 지역개발의 성격을 체험농장, 관광목장, 과수공원촌, 어촌박물관, 탄광마을, 문화공원촌 등 지역특성에 맞게 이미지화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개발범위는 암만 좋은 계획서라도 개발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현실화 시킬 수 있으므로 능력에 맞게 개발 범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본력에 의해서 도입시설이 많을수록 수입은 증대되며 농업적요소는 미약해진다. 이때 관광분야의 수입이 증대되어서 생업의 전환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개발방식(주체)의 선택

관광개발의 방식은 개발주체에 따라서 첫째, 단독개발 둘째, 지역주민에 의한 개발 셋째, 국가, 지방정부에 의한 개발 넷째, 제3섹타에 의한 개발 로 분류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방법은 첫째 농어촌정비법, 둘째, 관광진흥법 셋째, S.O.C 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

상기의 개발 방법과 추진 방식의 장단점은 본론부분에서 언급하였기에 재 설명은 피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개발자금의 동원때문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각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희망사항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실천 방법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농촌개발에 재인식하여 앞장서 주고 도시부동자금을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여 농촌에 유입되도록 농림정책이 수립되고 홍보되어 농촌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문제는 개발이익의 분배문제인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자부하지만 의식, 주의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10,000 불 시대에 진입하면 삶에 질을 따지게 되고 자기의 삶에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기업가나 도시자본가는 이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때에 가치 기준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이중에는 농촌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것이고 직접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은 희망하는 만큼 비싼 토지를 확보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혼자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에 보람을 찾고 적당한 수입(이익)만 보장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보람있는 삶을 영위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려면 제3섹타 개발 방식이 도입되어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장점만을 살려서 제도적으로 조직화 되어야 하는데 1994년 제정된 S.O.C 법에는 해당 농촌개발 부분의 관련법이 누락되어 있다.

요즈음 기업체(삼성, 대우 등)에서 농촌자매마을 돕기운동이 전개되고 농산물 팔아주기, 도농직거래 등 사회풍조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민, 농림담당공무원, 농림수산부만의 힘으로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관련부처 등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 꼭 혼자힘으로만 할려고 할 필요가 없으므로 S.O.C 법에 의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민들은 대자본 유입에 대하여 겁을 먹고 종속이론의 개념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활성화가 되면 현재의 형편보다는 나아지므로 도움것은 도움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수 있는 사전교섭방식인 제3섹타 방식 중에서 민관 3자 협동개발 방식(Joint Sector)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4. 행정기관 및 지역상공인의 지원 필요

농학도 출신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기 얼굴에 침뱉는격이 되겠으나 농민만의 힘으로 농촌루네쌍스를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

역부족이다. 그 이유는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의욕이 적으며 자금력이 약하다 또 일부의 고급인력은 현장보다는 사무실 근무희망자가 많고 일부 의욕과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관광농업(관광농촌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극복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역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관광농업정책에 대한 인허가 절차나 자금지원은 농림수산부, 농촌관광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문화체육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인의 농촌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상공부, 재경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에서는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장단기 정책 수립, 사업의 계획, 관광루트의 설정, 관광루트의작성, 지역CI 추진, 지역특산품의 개발, 상품화, 이벤트개최, 홍보, 지역관광관련산업의 활성화, 연수회, 토론회, 인재육성, 기술교육 등 관광과 관련된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행정기관, 지역관광협회, 농, 수, 축, 임협, 농촌지도소, 지역상공회의소, 라이온스크럽 등 관련기관에서 지역진흥을 위한 유기적인 협의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참여유도와 관광농촌마을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S.O.C 법 규정에의한 투자비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정도가 부여되서 유인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초기단계의 출혈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5. 활용대책

우리는 삶의 가치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초중고생들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인간은 지구 생태계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 의해서 자꾸 파괴되어가고

어린이들은 전자오락, 과외수업, 도시생활 등으로 자연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구유럽제국과 일본에서는 주 5일제수업으로 부모들의 주 5일 근무제와 발맞추어 주말에 야외활동을 많이하게되고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주 5일제수업 “가방없는 날” 제정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체험, 농사체험, 도농교류활동은 관광농촌마을에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으므로 그 수요시장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개발될 관광농촌마을의 유형을 어떻게 특색있게 개발하여 농촌활성화의 방법으로 활용할것인가가 문제이다.

더욱이 도농통합도시의 탄생은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나아갈 것인가도 문제이다. 현재의 도농통합도시는 아직까지 농업생산의 기반이 강하고 도시기능은 약하다. 이때 도시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농업기반의 존립방식 또는 농촌구조의 구성형태, 농지이용목적의 재조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가 도시근교지역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로 많이 탈생되고 있고 또한 그 지역 농민들도 그러한 현상을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응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따라서 도시 기능과 농촌의 기능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하고 그 농촌지역 개발 방식은 일반 도시개발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농촌활성화의 대책으로 90%가 관광과 지역특산품개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관광농촌마을조성계획의 활용대책은 지역입지에 따라서 산간지, 중산간지, 평야지, 해안지역에 알맞는 모형개발과 활용자원에 따라 관광목장마을, 과수공원촌, 꽃마을촌, 약초마을촌, 원예랜드, 산림휴양촌 등 다양한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광농업은 휴양단지 중심의 지역개발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내의 개발 대상지역은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개발하면 개발효과가 빠르다.

〈표 6-1〉 경기도내 자연발생유원지(94년, 12월 30일 현재)

유형별	시군명	유원지명	소재지	입장료(수수료)		관리주체	전화번호
				대인	소인		
자연 발생 유원지 (56)	성남시	남한산성	수정구 은행2동 양지동	300	200	수정구청장	
		사기막골	중원구 상대원1동	300	200	중원구청장	
	안양시	비산유원지	만안구 안양2동, 석수1동	300	200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시유원지지부	
	과천시	관악산	중앙동	300	200	대한노인회 관천시 지부, 대한상이 군경회과천시지회	
	의왕시	청계산	청계동	300	200	의왕시	
	하남시	검단산	천현동	300	200	검단노인회	
		학암계곡	감북동	300	200	학암동번영회	
		창우동 한강변	창우동	300	200	배알미동번영회	
	남양주 군	수락산	별내면 청하리	1,000	500	수락산 지역발전 협의회	
		묘적사계곡	와부읍 월문리	1,000	500	월문리 노인회	
		팔현계곡	건점읍 팔현리	1,000	500	팔현리개발위원회	
		신발천계곡	수동면 송천리	1,000	500	송천2리개발위원회	
	여주군	가마섬	강천면 부평1리	300	200	부평리마을회	
		문바위	신북면 하품2리	300	200	하품리마을회	
		강천1리	강천면 강천1리	300	200	강천1리 마을회	
	화성군	수리산	반월면 속달2리	300	200	속달2리 새마을회	
		제부도	서신면 제부리	300	200	제부리 새마을회	
	파주군	감악산	적성면 설마리	300	200	적성면	
	광주군	엄미리계곡	중부면 엄미리	500	300	엄미유원지 운영위원회	
	연천군	재인폭포	연천읍 부곡리	1,000	500	재인폭포번영회	
		동막골	연천읍 동막리	1,000	500	연천군	
		임진강	군남면 진상리	1,000	500	〃	
	포천군	깊이울계곡	산북면 심곡리	500	300	심곡2리 마을회	
		포막	관인면 냉정2리	500	300	냉정2리 마을회	
		지장골	관인면 중1리	500	300	중1리 마을회	
		산정호수 외곽	영북면 산정리	500	300	산정호수 관광지부	

제 6 장 결 론

가 평 군	용추계곡	가평읍 승안리	1,000	500	마 을 회
	경반계곡	가평읍 경반리	1,000	500	"
	두 밀	가평읍 두밀리	1,000	500	"
	구남면	가평읍 산유리	1,000	500	"
		북장리, 금대리			
	화야산계곡	외서면 삼희리	1,000	500	"
	녹수계곡	상면 덕현리	1,000	500	마 을 회
	운악산	하면 하판리	1,000	500	"
	대브리	하면 대브리	1,000	500	"
	병지계곡	북면 도대1리	1,000	500	"
	기돌기	북면 세령리	1,000	500	"
	맨 매	북면 소법리	1,000	500	"
	백문계곡	북면 백문리	1,000	500	"
	장사바위	북면 도대리	1,000	500	"
	삼팔계곡	북면 적북리	1,000	500	"
	논남계곡	북면 적북리	1,000	500	"
	신당	북면 세령리	1,000	500	"
	홍적계곡	북면 화악1리	1,000	500	"
	광악계곡	북면 화악2리	1,000	500	"
	목동리	북면 목동2리	1,000	500	"
소법리	북면 소법2리	1,000	500	"	
영 평 군	사나사저곡	옥천면 용천리	500	300	마 을 회
	봉상밤나무숲	단월면 봉상리	500	300	"
	중원계곡	용문면 중원리	500	300	"
	연수계곡	용문면 연수리	500	300	"
	석산계곡	단월면 석산리	500	300	"
용 신 군	장골해수욕장	자월면 자원1리	500	300	마 을 회
	이일해수욕장	자월면 승봉리	500	300	"
	십리포해수욕장	영흥면 내리	500	300	"
	장경리해수욕장	영흥면 내6리	500	300	"
	방아머리해수욕장	대부면 북4리	500	300	"
도시공원	수 원 시	팔달공원			수 원 시
		서동			
유원지(2)	"	원천유원지			"
		수원 팔달 하동			"

6. 실천의지

요즈음 관광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연구자에게는 많은 자료 요청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황무지와도 같은 새로운 관광농업에 연구 자료도 부족하고 국내 개발현황도 이제 10년의 경험으로 정도의 문턱에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전화 한통화나 1시간 상담 또는 1일 교육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으며 세상천하를 자기 손에 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보는 안목이 있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사회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관광농업(관광농촌마을)에 관심있는 희망농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번이고 전문가의 초청강연, 상담을 했지만 그때는 그럴듯했는데 왜지 실천에 옮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현업과 관광과의 접목 연결고리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특진을 신청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며 약제사는 정확하게 조제하고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농촌마을 조성방법도 관광농업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추진방법상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바둑의 고수들이 대국을 할 때 제한된 시간에 한수의 돌을 놓을적마다 정석보다는 묘수풀이로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놓듯이 부족한 자료들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관광농업의 현주소이고 내용이 빈약하여 욕구충족에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그 안에는 나름대로 응용가치가 있는 취사선택할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리는 바닷속에 묻힌 조개에서 진주알을 찾아내듯 안목을 키우고 성공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순간적인 성과가 아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끝없는 노력이 뒷받침 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명감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농정사에서 70년대에 녹색혁명을 켓츠프레어로 내걸고 전농림

공무원이 일심단결하여 쌀의 증산(자급자족)을 이룩한 적이 있다. 혁명이란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죽음을 각오해야 성공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농촌활성화의 방법으로 관광농촌마을 조성도 그러한 마음의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서 신한국 창조, 신농촌건설은 관심보다 행동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Arc/Info, (주)캐드랜드
2. 경기도, 1993, 가족골프놀이 개발보급계획
3. 교통개발연구원, 1988, 장기관광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4. 교통부, 1992, '92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5. 교통부, 한국관광공사, 1990, 1990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6. 국토개발연구원,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1·2·3 권
7. 김순경, 1994,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국의 난관농원 137선, 강천
8. 김완목, 1994, 도시조경관광법류집
9. 남원시, 1995, 춘향테마공원기본계획
10. 농어촌진흥공사, 1993, 오비도 농촌휴양지 기본계획
1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995, 농협조사월보 3월호
12. 농촌진흥청, 1993, 관광농업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13. 류선무, 1984,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형설출판사
14. 류선무, 1994, 농산어촌의 관광농업개발방법론, 농업기술자협회
15. 류선무, 1992, 한국관광농업의 운영실태 분석과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16. 류선무, 1993, 관광농업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17. 류선무, 1993, 농어촌 관광농원대표자 경영교육교재, 농협중앙회 농촌개발부
18. 류선무, 1993, 설악지역의 관광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관광개발학회
19. 민준기, 1993, 자연농장활동, 한국 청소년 개발원
20. 박석희, 1989, 신관광자원론
21. 박유정, 1992, 도비도 관광어촌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2. 산림청, 1990, 자연휴양림설계기준
23. 양평군, 1994, 1994년도 양평군 통계연보
24. 여주군, 1989, 여주군지, 여주군지편집위원회
25. 여주군, 1993,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서
26. 여주군, 1994, 여주군 농촌지도소 내부자료
27. 여주군, 1994, 여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28. 여주군, 1994, 제34회 여주통계연보
29. 여주군, 1994,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30. 여주군, 1995, 관광여주, 여주군 문화공보실 자료
31. 여주군, 1995, 여주군 산북면 면사무소 내부자료
32. 오정환, 1994, 서비스 산업론, 기문사
33. 용인군, 1994, 1994년도 용인군 통계연보
34. 윤양수 외 2인, 1993, 환경보전적 국토개발정책연구, 국토개발연구원
35. 이벤트관광협회, 소화 62, 이벤트전략, 일본관광협회
36. 이천군, 1994, 1994년도 이천군 통계연보

참고문헌

37. 이천군, 1995, 관광이천, 이천군 문화공보실 자료
38. 일본관광협회, 1994, 관광 337 호, 이론관광협회
39. 일본관광협회, 안봉원, 이동근, 류선무 공역, 1989, 관광시설조경론, 명보문화사
40. 일본농촌개발기획위원회, 1980, 농촌공학연구, 농촌개발기획위원회
41. 일본종합유니콤, _____, 자연대응형 레저파크 종합유니콤
42. 장대수, 1990, 해안경관 특성에 근거한 관광단지 개발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43. 전길화 1994, 레스토랑 서비스, 기문사
44. 제3섹타 연구회, 형성 5년, 제3섹타 전략, 시사통신사
45. 出井信夫, 1990, 제3섹타 비즈니스, 일간공업신문사
46. 한겨레신문, 1995년 5월 16일자
47. 한국관광공사, 1989, 전국관광장기종합 개발계획 보고서
48. 한국관광농업학회, (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94, 관광농업개발국제토론회
49. 한국관광농업학회, 1995, 관광농업연구
50. 한국마사회, 1993, 서울경마장공원화기본계획
51. 한국조경학회, 1991, 조경계획론, 문운당
52. 日本Golf事業年鑑
53. P. F. Cuniff, 1977, Environmental Noise Pollution, Wiley.
54. 환경청고시 제 87-12 호, 1987,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55. 환경청, 1986,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사업 수질부문보고서
56. 日本水道協會, 1979, 雑用水道(中水道)基準調査研究中間報告書
57. 건설부, 1991, 부곡하수처리장 건설기본계획보고서
58. 삼화기술단, 1985, 국립공원 환경실태 조사연구, 삼화건설기술보
59. 환경처, 1994,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60. 화천군, 1992, 화천군 관광단지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별 첨



■ 관광농원이란,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도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서어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1. 귀하의 부락에 관광농원의 도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표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적극찬성	찬성	그저그렇다	반대	적극반대

(①, ② 번은 2 번으로, ③, ④, ⑤ 번은 7 번으로 가십시오)

2. 관광농원의 도입이 부락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100점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입니까? 표하여 주십시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 현재 살고있는 부락이 관광농촌부락으로 개발된다면 다음중 어떠한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 표하여 주십시오.

- ① 농촌체험/농산물 판매를 위주로 한 관광농업으로의 개발
- ②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민속마을로의 개발
- ③ 별장 및 콘도미니엄 조성지역으로의 개발
- ④ 간단한 레저 스포츠 시설을 도입한 종합관광부락으로의 개발
- ⑤ 학생들의 자연학습지역 및 심신수련장을 위주로 한 개발

4. 현재 살고있는 부락이 관광농촌부락으로 개발된다고 할때, 개발 우선정도에 따라서 ()속에 순위를 적어주십시오.

- () ① 낚시터, 수영장 등 물과 관련된 공간
- () ② 산림욕장등 숲과 관련된 공간

별첨

- () ③ 새끼줄 꼬기, 두부 만들기, 짚신삼기 등 향토문화/이벤트 활동이
관련된 공간
- () ④ 토지경작, 과실따기 등 농업관련 공간
- () ⑤ 농산물/토산물의 판매공간
5. 만약 부락이 농촌체험을 위주로 하는 관광농업으로 개발된다면, 귀하가 가장
재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쌀, 보리, 조 등의 곡류
- ② 오이, 배추, 고추 등의 채소류
- ③ 사과, 배, 감, 포도 등의 과수류
- ④ 장미, 안개초, 국화 등의 화훼류
6. 부락의 관광농촌으로의 개발이나 관광사업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 표하여 주십시오.
- ① 모든 사업은 농민이 직접 개발 운영한다.
- ② 모든 사업은 외부자본가가 직접 개발 운영한다.
- ③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 운영한다.
- ④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민과 외부자본가가 협력해서 개발운영하는 것이
좋다.
- 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개발운영하는 것
이 좋다.
- ⑥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민, 외부자본가, 지방자치단체가 능력별로 별도
개발운영하는 것이 좋다.
- ⑦ 지역민과 외부자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서 개발 운영하는 것이 좋다.

*** 1번의 ③④⑤ 번을 응답하신 분은 여기서 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7. 우리마을이 관광농촌부락으로 조성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속에 순위를 넣어주십시오.
- A. 긍정적인 측면
- () 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 () ② 고용기회를 증대할 것이다.

- () ③ 젊은 사람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 ④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 ⑤ 고령자의 고용기회에 기여할 것이다.

B. 부정적인 측면

- () ① 자연환경의 파괴가 진행될 것이다.
- () ②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 () ③ 자녀 교육의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 () ④ 순수농업에 대한 열의가 감소될 것이다.
- () ⑤ 마을 전통의 미풍양속이 저해될 것이다.

8. 현재 마을이 관광농촌부락으로 개발된다면 귀하는 참여하시겠습니까? 표하여 주십시오.

- ① 적극 참여하겠다.
- ② 능력에 따라서 참여하겠다.
- ③ 참여의사가 없다.

주민조사표

세대주명	세대주의 연령	가족수	가족 수		연령별 가족수					
			남	녀	20 세이하	20~30 세	30~40 세	40~50 세	50 세이상	

직 업			주요생산품목	년간소득	
순수농	겸업농	타산업		농업소득	농외소득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